



#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8호 2017.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차례

## 특집 ■ 명청시대(明清時代) 중국 서남 지역의 소수민족 사회와 국가 권력

정철웅 ■ “양순음역(陽卿陰逆), 승극출겁(乘隙出劫)”

– 명(明) 가정(嘉靖) 연간 상서(湘西) 지역의 묘족(苗族) 반란과 국가 권력 14

김홍길 ■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64

정치호 ■ 청대 검둥남(黔東南) 지역의 개토귀류(改土歸流)와 묘족(苗族) 사회의 변화 102

## 논문

장병진 ■ 고구려의 영동지역 진출과 관할 방식 140

구도영 ■ 조선 전기 요동에서 사행(使行) 호송군(護送軍)의 역할과 국제무역의 경계 188

유미림 ■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230

홍선표 ■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와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282

유진숙 ■ 한국 변혁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담론 1988~1992 334

홍찬숙 ■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노동시장 가족주의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 372

조진구 ■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416

## 서평

양시은 ■ 고구려 산성 자료의 집대성

– 정원철(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460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71

# Contents

## Special Issue Ethnic Minority Societies and State Power in Southwest China of Ming-Qing Dynasty

- Chung Chulwoong ■ The Miao Insurrections and State Power in Western Hunan Province during the Emperor Jiajing's Rule of the Ming Dynasty 14
- Kim Honggil ■ The Establishment of Guizhou Province and the Resistance of Indigenous Peoples in Early Ming China 64
- Jeong Jiho ■ The “*Gaitu Guiliu*” (改土歸流) of Qiandongnan (黔東南) in the Qing Dynasty and Changes in the Society of the Miao People (苗族) 102

## Articles

- Jang Byungjin ■ Koguryo's Entry into the Yongdong Area and Its Jurisdiction 140
- Koo Doyoung ■ The Role of Soldiers Escorting Envoys and the Bounda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Liaodong Area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188
- Yoo Mirim ■ A Review of Research and Issues on the “Tenpō Takeshima Ikken” 230
- Hong Sunpyo ■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in New York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Americans 282
- Ju Jinsook ■ The Discourses on Perestroika by Korean Radical Social Movements 334
- Hong Chan-Sook ■ Northeast Asian Familism and the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Labor-market Familism vs. (Limited) Individualization of Family Behavior 372
- Cho Jingoo ■ The Abe Administration's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416

## Book Review

- Yang Sieun ■ Gather Up All of the Materials of Goguryo Fortresses 460

## 특집

명청시대(明清時代) 중국 서남 지역의  
소수민족 사회와 국가 권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서문

중국은 광활한 영토만큼이나 그곳에 사는 민족들 역시 다양하다. 공식적으로는 현재 한족을 포함해 56개 민족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자의적인 분류에 저항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재 중국의 민족 구성이 이처럼 다양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다양성이 거대한 용광로에 이미 오래전 용해되어버렸다고 종종 생각하곤 한다. 일부 소수민족의 반(反)중국 활동이 뉴스에 등장할 때야 비로소 중국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게 대체적인 현실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민족 구성이 다양했던 만큼 여러 소수민족들이 역사 무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수히 등장하는 소수민족들과 한족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 소수민족의 왕조 건립, 소수민족과 한족 사이의 문화적 융합 등이 그 좋은 예다. 더구나 이번 특집호에 실린 세 편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소수민족이 왕조 권력에 집단적으로 대항했던 실례는 무수히 존재한다. 역사상 등장하는 소수민족들의 이런 역할과 저항이 지닌 의미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 성과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관심 부족의 일단을 피상적으로 말하자면, 한족 자체에 대한 역사 연구도 버거운 상황에서 소수민족 문제까지 연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특정 지역의 역사를 거론할 때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대신, 그 ‘구성원’은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관행이 소수 민족을 소홀히 한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역사 변화의 주인공으로 간주해온 강력하고 구체적인 실체에 대한 규명을 넘어, 오히려 그 저변에 존재했던 개별 집단을 새롭게 발굴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실제로 ‘발굴’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지극히 부족하며, 또한 어떤 점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글에서 소수민족의 중요성을 통시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여유는 없으므로, 명청시대에 국한시켜 소수민족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홍무제(洪武帝)가 명 왕조를 건립한 당시, 중국 서남 지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엄연한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국에 합병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다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그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토사제도(土司制度)로서, 이 제도의 정착을 통해 홍무제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해당 지역을 명 왕조 통치 휘하에 성공적으로 편입시켰다. 토사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명 왕조는 조공과 함께 토관들의 계승을 인정해주는 한편, 상사(賞賜)도 수시로 시행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토사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토관(土官)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정책도 빈번히 등장하는바, 소수민족 반란 진압에 대토사(大土司)들의 병력을 빈번히 동원했던 사실이 그 좋은 예다.

둘째, 청대 옹정(雍正) 연간에 이르러 대대적인 개토귀류(改土歸流)를 단행해, 서남 지역 소수민족을 제국의 정식 행정체제 내로 편입시켰던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인구 압력에 따른 내지의 자원 압박 해소와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시각에서 소수민족을 교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개토귀류는 청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강제시키고 내지(內地)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소수민족 지역에 새롭게 설립된 학교와 소수민족 지역에서 전개된 내지 상인들의 활

동이 위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명대에 일종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던 서남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개토귀류를 통해 청제국에 편입되면서 청제국의 판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위 두 양상은 명청시대 소수민족 연구에서 매우 진부한 주제에 속하지만, 명청 두 왕조의 소수민족 정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토사제도와 개토귀류 실상이야말로 거꾸로 소수민족 연구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 역시 사실이다. 소수민족에 대한 두 왕조의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의 정치적·지리적·문화적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소수민족에 대한 명청 두 왕조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연구가 어쩔 수 없이 우세 민족 또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침투라는 시각에서 진행되어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동북아논총』 특집에 게재된 논문들은 일단 의도적으로 기존 소수민족 연구에서 간과한 위 지적을 엄두에 둔 글이라 할 수 있다. 세 편의 논문이 공통적으로 토사제도와 개토귀류라는 소수민족 관련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시각과 논지의 전개는 기존의 연구와 사뭇 다르다. 나아가 토사제도와 개토귀류를 호광(湖廣)과 귀주(貴州)라는 특정 지역에 관련시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민족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고려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먼저, 정철웅의 논문은 가정(嘉靖) 연간 호광 지역의 소수민족 반란을 다루고 있지만, 반란의 양상을 단지 소수민족 대 한족 혹은 국가 권력 차원이 아닌, 해당 지역 토사들의 다양한 행태를 통해 토사제도 자체나 군사력의 동원이 소수민족에 대한 안정적인 통치를 달성하는 데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호광 지역의 영순(永順)과 보정토사(保靖土司), 그리고 용미토사(容美土司)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작았던 오채(五寨)와 간자평장관사(管子坪長官司)의 경우, 중앙 정부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던 지역이라기보다는 재지 세력을 그대로 토관으로 임명했다. 더구나 명대 내내 봉황(鳳凰) 남부 지역은 여전히 생묘

(生苗)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노계현(盧溪縣)과 마양현(麻陽縣) 같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실시된 이갑제(里甲制)도 매우 불안정했다는 점을 아울러 들춰내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명 초에 마련된 토사제도나 이갑제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논문의 의의는 무엇보다 반란 과정에서 드러난 토관, 소수민족의 수장, 관군, 토사 병력 등의 다양한 행태를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이 지역 소수민족 문제가 단순한 민족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 소수민족 지역 고유의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데 있다. 명 중엽에 이르면 일부 토관이나 소수민족 수장들이 재지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소수민족 반란 진압을 위해 동원된 토관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사실은 토사제도의 와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므로 군사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소수민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토사제도가 역설적으로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김홍길 논문은 한마디로 말해 명대 초기에 시행된 개토귀류를 귀주성을 통해 들여다본 논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지호 논문이 다룬 청대 귀주성 개토귀류 양상과 명대의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대 귀주성 설치 당시 귀주 소수민족 지역의 행정 계통이 다양했다고 전제한 후, 위소(衛所) 설치를 시작으로 영락 연간에 포정사(布政司)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일례로 호광성의 토사가 초기부터 비교적 단일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다른 지역의 개토귀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암시이기도 하다.

기존의 선위사(宣慰司) 지역에 부(府) 단위 행정 기구를 설치했지만, 부 밑으로는 여전히 현(縣)과 장관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귀양부(貴陽府)와 같은 지역에서는 현의 설치가 만력(萬曆) 연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 논문의 지적대로 귀주성의 개토귀류가 완만한 과정을 거쳤던 한편, 포정사의 설치 이후에도 사실상 유관과 토관이 병존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

을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귀주성이 영락 11년(1413)에 설치되었다 해도, 명 왕조의 권력이 소수민족 지역 깊숙이 침투하는 건 쉽지 않았던 탓에, 생계(生界) 지역에서는 그 지역 소수민족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 왕조에 저항했던 한편, 군호(軍戶)나 한족(漢族)의 도피처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은 앞의 정철웅 논문에서 소수민족 지역을 ‘착종의 세계’로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홍길 논문의 생계 지역에 대한 환기는 장차 소수민족이나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연구가 ‘소수민족 지역의 변방’에까지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홍길 논문의 또 다른 중요성은 오히려 이런 개토귀류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대응을 잘 지적한 사실에 있다.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개토귀류의 원인을 단지 토사들의 정치적 무능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재 중국 학자들의 연구 경향 대신, 명 왕조 측에 서서 소수민족 반란 진압에 앞장선 토병들이 거꾸로 관군을 공격하거나, 토착민이 토사에 저항하는 사례 등은 소수민족 지역 정치 세력들의 다층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지호 논문은 청대 귀주성의 개토귀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김홍길의 논문과 함께 명청 두 왕조가 동일한 지역에서 시행한 개토귀류의 특징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개토귀류 연구에서 늘 상수처럼 등장하는 한화(漢化)라는 결과와 개토귀류를 통해 중국이 강고한 다민족 융합국가를 이루었다는 기존 연구 경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정지호의 논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된 사항은 개토귀류가 일률적이 아닌, 해당 지역의 정황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청대 귀주성의 개토귀류는 토사 폐지 자체보다 생묘(生苗)의 교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되었다고 이 글은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특히 검동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토사 세력이 미약해 토사의 규제에서 벗어난 생묘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옹정제는 이 지역 개토귀류 실시에서 이른바 중외일체(中外一體)의 관념을 더욱 강조했다고 파악했다. 개토귀류의 이면에는

분명 교화와 군사적 강압 정책이 항상 수반되었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토귀류 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시되었다는 지적이야말로, 거꾸로 소수민족의 지역적·종족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심화된 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이 논문의 커다란 장점은 개토귀류 이후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를 주목한 사실에 있다. 기존 연구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결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고주(古州) 지역의 반란이 평정된 건륭(乾隆) 원년(1736), 건륭제(乾隆帝)는 “묘민의 풍속은 내지의 백성과 크게 다르니 이후 묘중(苗衆)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訟事)는 모두 묘족의 관습에 따라서 처리하고 반드시 관법(官法)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유지를 내렸다. 정지호는 이런 상황을 들어 개토귀류에 대한 옹정제(雍正帝)의 적자(赤子) 관념이라는 시각이 건륭제에 이르러 오히려 내외(內外)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개토귀류로 사라진 토사 대신에 묘족의 유력자들을 갑장(甲長)과 보장(保長)으로 임명하는 한편, 유관이 직접 통치하는 대신, 토사나 토목(土目)들에 의한 간접 통치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생묘 지역에서는 개토귀류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토사가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 논문은 밝히고 있다. 이런 현상만을 본다면 김홍길 논문에서 거론된 명대 개토귀류나 청대 개토귀류 모두 소수민족이나 그 지역 유력자들의 협력이 서남 지역 통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정황을 감지할 수 있다. 옹정 시대와는 달리, 건륭 연간에 이르러 실시된 중외분리(中外分離) 정책으로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한족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족 이주민의 증가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이 논문은 결론짓고 있다.

이 세 편 논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명청시대 국가 권력이 소수민족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에도 궁극적으로는 소수민족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이 지역의 안정을 기약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편의 논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수민족들의 반란은 소수민

족 지역에서 작동한 국가 권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다.

명청시대 소수민족 지역에 관련된 수많은 사료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황은 명청 두 왕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도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내지와는 지리적·정치적·문화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지역이었다는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상기시켜준다. 이 세 편 논문의 필자들이 의도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 편의 논문이 공통적으로 소위 ‘생묘(生苗)·생계(生界)’ 지역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게 그 좋은 증거다. 따라서 중국 왕조는 물론, 토사 지휘와 통제 밖에 존재했던 이 생묘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이 세 편의 논문이 환기시키고 있는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묘 지역에 대한 관심 외에도, 역시 이 세 편의 논문에서 각각 암시한 바 있는 각 토사들의 존재 양태와 그들 사이의 역학 관계도 앞으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이를 통해 각각의 소수민족에 대한 특징은 물론, 해당 소수민족이 존재했던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명쾌히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앙 정부의 개별적 소수민족 정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특집호에 게재된 세 논문의 바탕에는 결국 ‘물리력’이나 ‘힘’이라는 요소가 짙게 깔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수민족 대 한족이라는 대결구도로 소수민족을 파악한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시각의 확대도 절실한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중국 학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두 정치 집단의 의식 세계에 대한 조명이다. 한화(漢化)라는 시각 자체에 내재된 우월감은 쉽게 추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명청시대에 이르면 한족 지식인이 소수민족과 그 지역에 열광했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으며, 거꾸로 소수민족이 깊은 유교적 소양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와 문화적·심리적 차원의 연구도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역시 사료 발굴이라 할 수 있다. 소수민족이 직접 생산한 사료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염

두에 둔다 하더라도 각 토사지(土司志), 족보(族譜), 민요, 소수민족 문인들의 문집, 그리고 현재 중국 학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청수강문서(淸水江文書)와 같은 사료의 확보나 관련 연구의 진행이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중국 사학계에서 소수민족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동북아논총』의 소수민족 관련 특집호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집필자를 대표하여  
정철웅

# “양순음역(陽川鄕陰逆), 승극출겁 (乘隙出劫)”

– 명(明) 가정(嘉靖) 연간 상서(湘西) 지역의 묘족(苗族)

반란과 국가 권력

정철웅 |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명대 오채·간자평장관사의 설치
- III. 명 가정 연간 상서 지역의 묘족 반란
- IV. 토관, 묘인 그리고 명대 국가 권력
- 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소수민족을 통치하는 기본 제도인 토사제도는 송대에 시작된 후, 그 기반이 마련된 원대를 지나, 명대에 완비되었으며, 청대에 쇠락했다는 게 통설이다.<sup>1</sup> 그러나 토사제도가 완비된 시기인 명대만 하더라도 평균 20년에 한 번씩 소수민족의 반란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선덕(宣德) 6년(1431)과 가정(嘉靖) 연간(1522~1566)에 발생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명 왕조는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했다.<sup>2</sup> 청 정부도 옹정(雍正) 연간의 개토귀류(改土歸流)를 통해 소수민족 지역을 성공적으로 장악했지만, 건륭(乾隆) 연간에 다시 명대 반란과 버금가는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다. 명청시대의 이런 정황은 군사 정보에도 두 왕조가 여전히 소수민족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때, 『명사(明史)』 권310, 「호광토사(湖廣土司)」의 내용은 토사의 행태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다. 우선 상서(湘西) 지역의 대토사(大土司)인 영순선위사(永順宣慰司)와 보정선위사(保靖宣慰司)는 토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명 왕조를 도와 왜구나 다른 토사들의 반란을 무찌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기록이 등장한다.<sup>3</sup> 그러나 만력(萬曆) 47년(1619) 영순선위사의 팽원금(彭元錦)이 명령을 거역해 명 왕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

\* 투고: 2017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4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成臻銘, 2010, 「論土司與土司學-兼及土司文化及其研究價值」, 『青海民族研究』 1期, 86쪽.

2 譚必友, 2007(1), 「苗疆邊牆與清代湘西民族事務的深層對話」,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期, 32쪽.

3 이런 이유로 기존 연구는 명 왕조에 대한 호광토사들의 충성심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그들의 품계도 높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吳永章, 1988, 『中國土司制度淵源與發展史』, 四川民族出版社, 166쪽.

사실을 비롯해, 영순과 보정토사 사이의 장기간에 걸친 다툼도 기재되어 있다.<sup>4</sup> 간단히 말하자면, 이러한 양상은 과거 소수민족의 존재 양태가 단일하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사실 외에도, 나아가 대토사(大土司)와 중앙정부의 관계, 각 소수민족 사이의 갈등이 복잡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근래 중국에서 소수민족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토사의 실질적인 존재 양태는 물론, 특히 토사 관할 밖에 존재했던 생묘(生苗) 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5</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명대 보정선위사 휘하의 오채장관사(五寨長官司)·간자평장관사(竿子坪長官司)와 그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명 초 토사제도의 정착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대토사 위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워 주는 한편, 토사제도의 시작이 불완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sup>6</sup>

둘째, 이러한 소토사(小土司)들의 반란 과정에서 드러난 소수민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행동을 언급하려 한다. 특히 가정 연간에 발생한 오채와 간자평 일대 소수민족들의 반란에는 생묘, 소토사, 위소(衛所)의 관군(官軍), 간민(奸民) 등이 골고루 등장한다. 명 왕조는 이러한 반란 진압과 함께 소수민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오채와 간자평 일대에 영초(營哨)나 변장(邊牆)과 같은 군사 시설을 설치했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이전 묘환(苗患)은 길어야 1년이었지만, 가정 연간에 이르면 ‘사시매월(四時每月)’ 지속되었다.<sup>8</sup>

---

4 각각 동북아역사재단, 2013, 『明史外國傳譯註·5』(土司傳·上), 동북아역사재단, 10쪽, 102쪽, 113~114쪽 참조.

5 이룰테면 成臻銘, 1996, 「論湖南元明時期的土司-兼與新添葛蠻安撫司在湖南論者商榷」, 『民族研究』 5기와 같은 하위 토사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

6 이런 시각은 廣西 지역의 토사제도를 조망한 Leo K. Shin, 2006, *The Making of the Chinese State: Ethnicity and Expansion on the Ming Border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74~90에 잘 드러나 있다.

7 張振興, 2014, 「從哨堡到邊牆: 明代對湘西苗疆治策的演遞-兼論明代治苗與土司制度的關係」,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2期.

8 田英産, 「平苗議上督師楊閣部」, 羅汝懷, 2008, 『湖南文徵』 권11, 岳麓書社.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반란 주동자들의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명대 토사 제도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반란에 대한 당시 명 정부와 관료들의 대책과 그 한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시 관료들의 대책을 담은 사료를 통해, 상서(湘西) 소수민족 지역의 반란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토사제도가 지닌 취약점과 토사들의 존재 양태는 물론, 각 토사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양상에 대한 고찰은 명대 토사제도의 실상과 소수 민족 사회의 특징을 밝혀줌과 동시에, 옹정 연간 대대적인 개토귀류(改土歸流)의 실시 이유를 우회적으로 해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주로 다룰 상서 지역은 현재 호남성 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를 지칭하며, 명대 영순과 보정토사의 관할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상서 지역이 일종의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 시기는 가경(嘉慶) 6년(1801) 봉황청(鳳凰廳) 동지(同知)로 임명된 부내(傅鼐, 1758~1811)가 ‘총리묘강변무(總理苗疆邊務)’를 개시한 이후부터였다. 따라서 봉황(鳳凰)·건주(乾州)·영수(永綏)·고장평(古丈坪)의 사청(四廳)과 보정(保靖)·노계(盧溪)·마양(麻陽)의 삼현(三縣)을 의미하는 칠청현(七廳縣)이 전형적인 상서 지역이다.<sup>9</sup> 다만 사천의 유양(西陽)·귀주의 동인(銅仁)·호남의 마양현(麻陽縣)과 노계현(盧溪縣)은 오채와 간자평 장관사 관할은 아니었지만, 상서 지역의 반란이 위 지역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대 개토귀류 이전,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토사였던 영순토사와 보정토사는 명 초 토사체제에 편입되었지만 그 상황은 약간 달랐다. 우선 원명교체에 영순토사보다 보정토사가 명 왕조에 먼저 투항했으며, 명대 내내 보정토

46쪽 상. 동일한 내용이 康熙『麻陽縣志』(日本藏中國罕見地方志叢刊) 권9, 「藝文志」, 40쪽 상~48쪽 상에 나오며, 이 글은 崇禎 13년(1640)에 작성되었다.

9 譚必友, 2007(2), 『清代湘西苗疆多民族社區的近代重構』, 民族出版社, 7쪽. 다만 古丈坪廳은 명대 영순선위사 관할의 施溶溪, 白崖洞, 田家洞長官司 지역이었다. 凌純聲·芮逸夫, 2003, 『湘西苗族調查報告』, 民族出版社, 105쪽.

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 왕조에 협력했다.<sup>10</sup> 둘째, 가정 연간 이후 등장한 대토사들에 의한 장관사나 부근 묘채(苗寨)의 담승(擔承)제도에서도 보정토사가 사실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sup>11</sup> 끝으로 영순과 보정 토사가 모두 토가족(土家族)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보정토사 관할의 오채장관사(五寨長官司)와 간자평장관사(竿子坪長官司) 지역은 특히 명대 이래 전형적인 묘강(苗疆)이라 불렸던 묘족 지역이었으며,<sup>12</sup> 두 장관사 사이의 경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sup>13</sup> 아울러 명대 소수민족 통제를 위한 중요한 군사시설이었던 보초(堡哨)와 변장(邊牆)이 존재한 지역 역시 보정토사 관할 지역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런 점에서 보정토사에 대한 추적이 당시 소수민족 사이의 갈등관계를 확인하기에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지만, 사료가 제한적인 탓에 오히려 영순토사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은 편이다.<sup>14</sup> 더구나 대토사 휘하에 있었던 장관사(長官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상서 지역의 보정토사, 특히 오채와 간자평장관사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10 보정토사는 至正 26년(1366), 영순토사는 洪武 2년(1369)에 각각 朱元璋에게 歸附했다. 또한 『明史』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순토사의 彭元錦이 요동 戰役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반면, 보정토사 彭象乾과 그 일족들은 전쟁에서 몰살당할 정도로 명 왕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동북아역사재단, 2013, 앞의 책, 각각 102쪽과 113~114쪽 참조.

11 謝曉輝, 2013, 「只愿賊在, 豈肯滅賊?—明代湘西苗疆開發與邊牆修築之再認識」, 魏斌 主編, 『古代長江中游社會研究』, 上海古籍出版社, 357쪽.

12 영순과 보정토사의 주체는 土家族이며, 保靖司 남쪽 지역에는 묘족이 많았다. 彭武一, 1987, 「明清年間湘西的土家與苗家—初論土家族苗族歷史上的和睦友好關係」,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1期, 15쪽.

13 譚必友, 2007(2), 앞의 책, 38쪽.

14 근래 출간된 영순토사 관련 중요한 연구인 成臻銘, 2014, 『土司家族的世代傳承—永順彭氏土司譜系研究』, 民族出版社; 羅維慶·羅中 編, 2014, 『土司制度與彭氏土司歷史文獻資料輯錄』(上, 下), 民族出版社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田敏, 2000, 『土家族土司興亡史』, 民族出版社는 명청시대 鄂西와 湘西 지역 土司에 대한 매우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保靖宣慰司 관련 내용은 많지 않다.

## II. 명대 오채·간자평장관사의 설치

『명사(明史)』 「토사전」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의 요체가 그들을 무수(撫綏)해 그 마음을 얻는 데 있으며, 은전(恩典)과 위엄을 동시에 사용해야 그들이 전력을 다해 왕조에 협력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5</sup> 이러한 명 왕조의 입장이 내내 견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각 소수민족들을 토사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은 꽤 다양했다. 나아가 그런 다양성이 오히려 향후 명 왕조의 소수민족 통치에서 중요한 한계로 작용했는데, 일단 영순과 보정 선위사의 형성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동쪽으로 진계소(鎭溪所), 서쪽으로는 대전소(大田所), 남쪽으로 유양사(西陽司), 북쪽으로는 영순사(永順司)와 닿아 있던 보정사(保靖司) 지역의 범위는 동서 480리, 남북이 220리에 달했다. 한편 영순사는 동쪽으로 악주(岳州), 서쪽으로는 보정(保靖), 남쪽으로 진주(辰州), 북쪽으로는 영정(永定)에 닿아 있으며, 그 범위가 동서 790리, 남북이 980리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지역적 관찰 범위는 영순사가 훨씬 넓었다<sup>16</sup>(〈지도 1〉 참조). 또한 상서 지역의 대토사인 영순과 보정선위사는 동일하게 귀부(歸附)를 계기로 설치되었지만, 휘하 장관사의 구성 시기는 영순사가 보정사보다 더 빨랐다.

두 토사의 귀부 시기와 선위사(宣慰使)를 하사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영순토사의 귀부는 홍무(洪武) 2년(1369), 선위사 지위의 하사는 홍무 6년(1373)에 이루어졌다. 반면, 보정토사의 귀부는 지정(至正) 26년(1366), 선위사 하사는 홍무 원년(1368)에 이루어졌다.<sup>17</sup> 이어 3주(州) 6장관사(長官司)로 구성된 영순사의 경우 홍무 연간의 귀부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남야동장관사(蠟惹洞長官司)를 제외하면 휘

15 동북아역사재단, 2013, 앞의 책, 43쪽.

16 同治『永順府志』 권1, 「沿革」, 15쪽 상.

17 田敏, 2000, 앞의 책, 70~72쪽.



하의 소토사들이 모두 홍무 3년(1370)에 귀부했다.<sup>18</sup> 하지만 보정사 관할의 소토사인 오채장관사는 홍무 7년(1374)에, 간자평장관사는 영락 3년(1405)에 각각 설치되었다.<sup>19</sup>

18 羅維慶·羅中 編, 2014(하), 앞의 책, 379~380쪽.

19 오채장관사 지역은 송대 宋沱·烏引·蘆獲·杜望·白崖의 五洞을 지칭하며, 瀘溪

이처럼 귀부를 통해 상서 지역의 초기 토사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영순 지역에 유관(流官)을,<sup>20</sup> 보정 지역에 현(縣)을 설치한 사실<sup>21</sup>은 명 정부가 일찍부터 이 지역을 정식 행정제도 안에 편입시키려 했음을 말해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영순사보다 먼저 귀부한 보정선위사 소속 장관사들의 편입은 거꾸로 영순사보다 늦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영순사와 보정사의 상황과 성격이 그 출발부터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암시한다.<sup>22</sup> 따라서 대토사 휘하의 소토사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정토사 휘하의 소토사에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도광(道光) 『봉황청지(鳳凰廳志)』의 「부폐토사고(附廢土司考)」에 등장한다.<sup>23</sup> 아래 내용은 이 글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송 가태(嘉泰) 3년(1203) 담주(潭州) 지주(知州) 조언려(趙彥勵)의 상언(上言)에 따라 오채장관사로 전씨(田氏)를 임명해 상하오동(上下五洞)을 관찰하도록 했으며, 간자평장관사 일대 48채(寨)의 묘료(苗獠)를 기미(羈縻)하도록 한 『송사(宋史)』의 언급이 있으나, 실제로 전씨를 오채장관사에 임명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sup>24</sup> 다만 『명사(明史)』 「지리지(地理志)」에는 오채

---

서쪽 220리 일대 花苗가 거주한 지역이다. 또한 간자평장관사 지역은 봉황청 동북쪽의 篁子坪 일대를 말하며, 건주청 남쪽 15리에 있었다. 伍新福, 2006, 『湖南民族關系史』(上), 民族出版社, 202쪽과 沈瓚 著·伍新福 交點, 2012, 『五溪蠻圖志』, 岳麓書社, 130~131쪽 참조.

- 20 乾隆 『永順縣志』 권1, 「地輿志」, 14쪽 상~하.
- 21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至正 24년(1364) 徐達이 辰州를 평정한 후, 辰州府를 설치했으며, 당시 沅陵·盧溪·辰溪·溱浦의 네 縣을 설치했다. 이어 홍무 9년(1376) 湖廣省을 설치한 후, 沅州·黔陽·麻陽을 진주부에 귀속시켜 명 초 진주부는 一州六縣이 되었다. 乾隆 『辰州府志』 권1, 「沿革考」, 6쪽 상~하.
- 22 이 점은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보정선위사 지역에 다수의 生苗와 紅苗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劉應中, 「平苗記」, 乾隆 『辰州府志』 권42, 「藝文纂」(記), 8쪽 하.
- 23 이하 내용은 道光 『鳳凰廳志』 권1, 「沿革」, 40쪽 상~41쪽 하에 실린 「附廢土司考」에 근거한 것임.
- 24 嘉泰 3년(1203)의 이 기록은 『宋史』(경인문화사 영인본) 권494, 「列傳253」(蠻夷二), 14194쪽에 등장하지만, 본문의 언급대로 전씨 관련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장관사가 원대(元代)에, 그리고 『명일통지(明一統志)』에는 당대(唐代) 세관(世官) 전씨(田氏)가 송타동(宋沱洞)·오인동(烏引洞)·노적동(蘆荻洞)·두망동(杜望洞)·백애동(白崖洞)을 관할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sup>25</sup>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둘째, 간자평장관사의 경우, 명 초 간자동원수부(管子洞元帥府)를 설치했으며, 영락 3년(1405)에 처음으로 간자평장관사를 설치하고 묘인(苗人) 요표(廖彪)를 장관사에 임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송대와 명대에 모두 장관사를 제수받은 적이 없는 전씨가 간자평장관사를 겸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자료마다 모두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전씨종보(田氏宗譜)』를 근거로 원대 소신교위(昭信校尉)였던 전유명(田儒銘)이 홍무 원년(1368) 파양호(鄆陽湖) 일대에서 주문귀(周文貴)와 함께 전공(戰功)을 세운 후, 중림(中林)·험동(驗洞)·간자(管子)·오채(五寨)·낭계(郎溪)·평두(平頭)·만산(萬山) 일대 묘인(苗人)을 정복해 마침내 타강선무사(沱江宣撫使)를 제수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역시 전공을 세운 전유명의 큰아들 전무문(田茂文)을 오채장관사, 둘째 아들 전무무(田茂武)를 간자평장관사로 각각 임명했으며, 명대 내내 이 두 곳은 전씨가 관할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위 세 사항 중 두 번째 언급은 이 지역에서 전씨가 지닌 세력의 실체를 단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씨 일가가 원말~명초 오채장관사와 간자평장관사 지역 일대의 가장 유력한 실력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앞서 지적한대로 전유명이 15동(峒)을 정복한 공로로 소신교위라는 직함을 받았던 한편, 그의 두 아들이 각각 오채와 간자평 장관사직을 수여받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원말 지정(至正) 연간에 전유명에게 소신교위의 직함이 내려

25 『明史』 권44, 「地理」(5), 1100쪽에는 원대에 오채장관사가 설치된 내용이, 그리고 『大明一統志』 권66, 「保靖州軍民宣慰使司」, 36쪽 하에는 唐代 전씨 관련 기록이 각각 등장한다.

졌으며,<sup>26</sup> 당시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이어 셋째 전무필(田茂弼)은 평두저가장관사(平頭著可長官司), 넷째 전무량(田茂良)은 도평아이장관사(都平峽夷長官司), 다섯째 전무능(田茂能)은 낭계장관사(郎溪長官司)로 각각 임명되었다.<sup>27</sup>

그렇다면 ‘묘인 요표(廖彪)’가 영락 연간에 간자평장관사로 임명되었다는 언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실제 기록에 따르면 영락 3년(1405) 진주위(辰州衛) 지휘(指揮) 공능(龔能)이 간자평 35寨(寨)를 초유한 후, 생묘 요표가 입공하면서 요표를 간자평장관사로 임명하고 간자평장관사 역시 보정선위사 휘하에 두도록 했다.<sup>28</sup> 이는 명대 토사제도가 매우 불안정한 형태로 출발했으며,<sup>29</sup> 원말 이후 적어도 영락 연간 초기까지 이 지역에서는 전씨와 요씨가 서로 세력을

26 龔蔭, 1992, 『中國土司制度』, 雲南民族出版社, 1220쪽.

27 湖南省少數民族古籍辦公室 主編, 1991, 『土家族土司史錄』, 岳麓書社, 35쪽. 이 사실은 道光 『鳳凰廳志』 권13, 「武職官」, 27쪽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 이 사실은 道光 『鳳凰廳志』 권10, 「兵防」, 4쪽 하와 『明實錄』 권44, 永樂 3년 7월 4일조에 등장한다. 당시 요표와 아울러 各野를 答意長官에, 龍峇哥를 治古寨長官에 각각 임명했다. 다만 『明實錄』에는 廖彪가 아닌 龍廖彪로 표기되어 있으나, 대다수 연구서와 지방지가 廖彪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9 『明實錄』 권56, 宣德 4년 7월 5일조에 “湖廣軍民宣慰司舊有二宣慰, 一爲人所殺, 一以殺人今當死”라는 말과 함께, 이 지역에 流官을 설치해야 한다는 兵部의 상주에, 황제는 都督 蕭綏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신망 있는 자를 선출해 다스리도록 명령했다. 대토사들의 이러한 분쟁을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이 宣德 4년(1429)의 기사는 아마도 제22대 보정선위사인 彭藥哈俾(일명 彭葯司徒)가 彭大蟲可宜에게 살해당한 이후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팽대충가의 팽약합비를 살해한 후, 宣德 원년(1426)에 자신의 아들을 입공시켰지만, 당시 명 조정은 이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다가, 선덕 4년에 비로소 인지해 그를 체포하고, 彭勇烈의 아들인 彭南木處를 팽약합비의 후임으로 세습하도록 했다. 당시 兩江口土畝였던 팽대충가의 보정선위사 관할의 14寨를 탈취하는 한편, 선위사를 살해한 사건을 명 왕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명 왕조의 대토사 장악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면이다. 실제 이 사건은 이후 兩江口 토사와 보정선위사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계기가 되었다. 謝華 著·伍新福 交點, 2008, 『湘西土司輯略』, 岳麓書社, 290쪽과 328쪽 참조. 아울러 方濤, 2016, 「“兩江口事件”與明代永順·保靖土司管區的變化」, 『牡丹』 8期는 간략하지만 보정선위사와 양강구장관사의 갈등 양상을 잘 정리한 글이다.

다투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오채와 간자평장관사는 귀부에 의해 설치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세력을 단순히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토사가 정착된 후 상당 기간 동안 명 왕조가 일률적으로 이 지역을 통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한 지역에 두 명의 수장이 임명된 이러한 사례를 일부 연구자들은 예외적인 사례로 파악하고 있지만,<sup>31</sup>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것은 명 왕조 초기 소수민족 통치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그 첫 번째 증거로서 전씨가 장관사로 임명되었음에도 그는 수십 년간 그 지역에 부임하지 않았으며, 간자평 일대는 여전히 생묘구(生苗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sup>32</sup>

둘째, 음룡강(陰隆江)과 활석강(滑石江) 두 순검사(巡檢司)를 다시 설치하고 간자평장관사에 예속시키는 한편, ‘묘수(苗首) 요교승(廖橋勝)’ 등을 순검(巡檢)으로 임명했다는 『명실록』 영락 3년의 기록<sup>33</sup>은 흥미롭다. ‘묘수’라는 직책과 함께 단일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을 순검에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무 2년(1369)에 처음으로 사료에 등장하는 순검사(巡檢司)<sup>34</sup>는 홍무 13년(1380) 칙유를 통해 잡직(雜職)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sup>35</sup> 정규 관료가 관장했던 기구는 아니었다. 이처럼 명 초는 물론 명 중엽 이후에도 소수민족들이 순검사를 담당했

30 이런 점에서 鎮溪와 箆子坪 두 곳의 苗人을 통제했던 鎮箆參將의 설치가 嘉靖 31년(1552)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진간참장도 正德 8년(1513) 진간에 守備를 먼저 설치한 이후에 비로소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道光 『鳳凰廳志』 권1, 「沿革」, 38쪽 상~39쪽 상.

31 游俊·李漢林, 2001, 『湖南少數民族史』, 民族出版社, 144쪽.

32 龔蔭, 1992, 앞의 책, 1221쪽.

33 해당 원문은 “仍命鑄其民租徭, 復設陰隆江滑石江二巡檢司, 隸箆子坪長官司, 以苗首廖橋勝等爲巡檢”이다.

34 『明實錄』 권45, 洪武 2년 9월 1일조에 廣西省 南寧府 일대 獠族과 獞族을 통제하기 위해 순검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한편 진주부의 上里·高巖·乾溪에 처음으로 순검사를 설치한 시기는 洪武 12년(1379)이다. 『明實錄』 권122, 洪武 12년 2월 28일조 참조.

35 『明史』 권75, 「職官志」(四), 1852쪽.

던 예<sup>36</sup>는 상서 지역 일대의 경비가 소수민족들의 관할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끝으로, 선덕 5년(1430)에 요표 이후 이 지역 장관사로 있던 오필랑(吳畢郎)이 귀주 동인부(銅仁府)의 묘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sup>37</sup> 이는 요표 이후에도 이 지역은 전씨가 아닌 오씨의 세력 휘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울러 당시 오필랑의 반란을 진압한 소수(蕭綏)가 이 지역 일대에 이른바 24보를 건설해 방어하도록 했다는 지방지의 기록으로 미루어, 간자평장관사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 역시 매우 뒤늦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간자평장관사의 수장이 전유명 → 요표 → 요교승 → 오필랑으로 변화해가는 양상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상서 지역의 대토사들은 명 초 귀부를 통해 비교적 일찍부터 토사제도의 틀 안으로 편입된 반면, 대토사 휘하의 장관사 지역에는 사실상 국가 권력이 사실상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지역의 다양한 수장들이 세력을 다투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명 왕조로서도 이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재지의 세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명 왕조 초기부터 하위 토사 관할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가 어려웠다는 사실은 송산위의 설치와 폐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홍무 11년(1378) 맹동(孟洞)에 송산위(崇山衛)를 설치하고 다시 홍무 13년(1380) 송산위 지휘 양중명(楊仲名)에게 그곳을 감독하도록 하여,<sup>38</sup> 간자평 일대에 대한 통제를 시도했다. 그러나 홍무 23년(1390) 송산위를 없애고 송산천호소(崇山千戶所)로 바꿨

36 指揮使나 巡檢 등의 流官 외에, 漢人과 소수민족 우두머리들을 副指揮, 副巡檢, 혹은 土官이란 명칭으로 순검사에 배치하는 한편, 廖橋勝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경우 土巡檢이 실질적인 수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었다. 戴楚洲, 1992, 「淺論湖南土家族地區的土司和衛所制度」, 『民族論壇』 4期, 73쪽과 伍新福, 2006, 앞의 책, 196쪽.

37 道光 『鳳凰廳志』 권10, 「兵防」, 4쪽 하~5쪽 상.

38 각각 『明實錄』 권121, 洪武 11년 12월 13일조와 권130, 洪武 13년 3월 5일조 참조.

으며, 이 송산천호소는 다시 홍무 30년(1397)에 진계군민천호소(鎭溪軍民千戶所)로 교체되었다.<sup>39</sup>

이런 명칭상의 변화 원인이 사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주된 이유는 빈번하게 발생한 모족들의 반란을 쉽게 진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송산천호소 일대 모인들이 매우 사나웠던 반면, 송산천호소의 관할 지역이 매우 광범위해 모인들의 공격과 살상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가 불가능했다. 시기상 다소 불일치가 있지만, 양중명과 장록(張祿)을 보내 그들을 토벌했다는 지방지의 설명으로 미루어, 양중명을 보내 그곳을 감독하도록 했다는 홍무 13년(1380)의 기록은 아마도 이 무렵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7~8년이 지나 ‘불복조책자(不服造冊者)’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무력 진압 대신 노계현 주부(主簿) 손응룡(孫應龍)을 보내 초유하도록 했다. 이어 묘장(苗長) 양이(楊二)가 조정에 와서 부역의 경감을 요구하자 부역량을 감소시켜주는 한편 상을 하사했으며, 이후 진계군민천호소가 설치되었다.<sup>40</sup>

「부폐토사고(附廢土司考)」의 언급에서 거론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전씨 일가의 세력 범위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유명의 아들들은 이후 각각 평두저가장관사(平頭著可長官司)·도평아이장관사(都平峨夷長官司)·낭계장관사(郎溪長官司)에 각각 임명되었다.<sup>41</sup> 전유명 일가에 대한 명대 기록이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sup>42</sup> 홍무 초년 실제로 이런 제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그 역사적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전무능(田茂能)이 낭계장관

39 田敏, 2000, 앞의 책, 88쪽.

40 「鎭算總說」, 康熙『麻陽縣志』 권10, 「外紀志」, 5쪽 상.

41 각주 25) 참조.

42 예를 들어 평두저가장관사의 경우, 오히려 당대 田惟定이란 인물이 공을 세워 平頭著可副長官을 제수받았으며, 洪武 5년(1372) 田茂弼이 歸附하고, 다시 홍무 7년(1374) 田任智란 인물이 朝覲한 이래 전씨의 계승이 지속되었다. 일부 자료에는 都坪峨異溪蠻夷長官司로 표기된 도평아이장관사의 경우 전씨가 아닌 何氏와 周氏가 장관사로 있었으며 설치된 시기도 각각 永樂 11년(1413)과 永樂 원년(1403)이었다. 이상의 내용은 龔蔭, 1992, 앞의 책, 각각 959쪽, 961~963쪽 참조.

사로 임명되었다는 언급이 그 좋은 예다. 사남부(思南府) 관할이었던 낭계장관사는 전곡(田穀, 혹은 田穀保)이라는 인물이 원대에 15동(洞)을 정벌한 공으로 정만위무장군(定蠻威武將軍)으로 봉해졌으며, 이어 2대 전무능이 홍무 원년에 치고(治古)와 답의(答意) 지역을 정벌한 공으로 낭계정장관사(朗溪正長官使)로 제수되었다. 또한 낭계에는 임씨(任氏)가 장관으로 있는 낭계부장관사(朗溪副長官司)도 존재했다.<sup>43</sup>

사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기록상의 불일치와 상서 남부로 확대된 전씨 일가의 세력 범위를 더 이상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유명이 장관사로 임명될 당시, 그가 점령한 지역이 이미 낭계와 도평아이 일대를 포괄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전씨 세력의 지역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평두저 가장관사가 귀주성 송도청(松桃廳)에, 도평아이장관사가 역시 귀주성 사주부(思州府)에, 낭계장관사가 사남부(思南府)에 각각 속해 있었다는 점도 귀주·사천·호남 삼성(三省)의 소수민족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전씨 일가의 세력이 상서 남쪽지역에까지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서 일대 상당수 지역은 명 왕조의 통치가 사실상 미치지 않는 전형적인 생묘구(生苗區)로 남아 있었다. 납이산(蠟耳山) 부근이 그 대표적인 곳으로서, 납이(蠟耳)·진간(鎭筭)·동평(銅平) 등의 여러 산에는 묘족의 거주지가 몰려 있었으며, 그 주변 지역의 범위가 천수백 리에 달했다. 따라서 묘족들은 그러한 험지를 이용해 빈번히 반란을 일으켰다. 후술할 가정 18년(1539) 농구아(隴求兒)가 주변의 동평묘(銅平苗)를 규합해 반란을 일으킬 당시, 험난한 지리적 상황을 이용했던 게 그 좋은 예다.<sup>44</sup>

이러한 지리적 험난함 외에 행정적으로도 영순과 보정 대토사 주변은 물론, 상서 남부의 간사평장관사와 마양현(麻陽縣) 경계에 이르는 지역은 민채(民寨)

43 龔蔭, 1992, 위의 책, 각각 979~980쪽.

44 萬曆『湖廣總志』권30, 「兵防志(中)」(險要), 26쪽 상.

와 묘寨(苗寨), 그리고 순검사(巡檢司)와 초보가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섞여 있었다. 이를테면 마양현계에 있었던 오채장관사의 앞은 오채초(五寨哨)가, 뒤로는 산 하나를 넘어 황납동애(黃臘洞崖)가, 좌로는 계곡을 넘어 장충초(長沖哨)가 있었으며, 그것에 딸린 작은 성 밑으로 철당채(鐵塘寨)와 그 위로 맹수채(孟叟寨)가 각각 존재했는데, 이런 지역에는 모두 묘족이 살고 있었다.<sup>45</sup>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환경 때문에 많은 경우 명대 관군과 묘족들이 합세해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명 설립 이후 완비된 토사제도의 영향력이 소토사 관할 지역에는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특히 상서 남부는 여전히 명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생묘구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당 지역의 통치는 여전히 그 지역 소수민족의 수장이 통치하고 있었다. 더구나 험한 산간 지역에 위소의 관군과 묘족들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가정 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상서 지역 소수민족 반란의 구체적 양상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양상은 토사제도의 운용이나 소수민족 사회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 III. 명 가정 연간 상서 지역의 묘족 반란

청 왕조가 개토귀류를 단행해 소수민족 지역을 획일적으로 통치했음에도 옹정~건륭 연간 상서와 귀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소수민족 반란이 발생했다.<sup>46</sup> 이런

45 萬曆 『湖廣總志』 권31, 「兵防志(下)」(苗徼), 27쪽 하.

46 건륭~가경 연간에 호남·귀주·사천에서 동시에 발생한 반란은 명대 반란 지역과 정확히 일치하며, 청대 반란의 주모자 역시 地主나 百戶와 같은 在地 유력자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클로딘 롱바르-살몽 저·정철웅 역, 2015, 『중국적 문화변용의 한 예-18세기 귀주성』, 세창, 475~476쪽.

〈표 1〉 명대 상서 지역 일대의 반란 발생 상황

| 시기                        | 사건 개요   | 진압자                       |
|---------------------------|---|---------------------------|
| 永樂 3년(1405)               | 箐子坪 廖彪와 귀주성 銅仁府 묘족 반란   | 指揮 龔能                     |
| 永樂 5년(1407)               | 鎮箐苗 반란  | 總兵官 張駟                    |
| 永樂 13년(1415)              | 箐子坪 吳者泥가 稱王하면서 金隴과 함께 반란  | 總兵官 梁福                    |
| 永樂 16년(1418)              | 오자니의 아들 吳擔竹이 吳亞麻와 함께 반란   | 都督 蕭綬                     |
| 宣德 5년(1430)               | 간자평장관 吳畢郎 반란  | 總兵官 蕭綬                    |
| 宣德 6년(1431)               | 鎮箐苗 隴三白, 大蟲 등이 귀주 銅仁·平頭苗와 함께 반란                                     | 蕭綬와 都御史 吳榮                |
| 宣德 7년(1432)               | 蕭綬의 辰州蠻 토벌 후, 잔당인 吳不爾 등이 간자평의 생모 隴不登과 함께 반란                         | 蕭綬                        |
| 宣德 8년(1433)               | 군사작전을 통해 간자평 일대 묘족 수장 吳不跳·吳不爾·黃老虎·隴安軸 등을 생포·참수                      | 蕭綬                        |
| 成化 16년(1480)              | 鎮箐苗가 麻陽縣治와 沅州 일대를 공격  | —                         |
| 弘治 2년(1489) <sup>47</sup> | 묘족 수장을 참수   | 平蠻將軍 顧溥                   |
| 弘治 8년(1495) <sup>48</sup> | 鎮溪苗 隴麻羊과 銅仁苗 龍童保가 간자평 일대 공략, 百夫長 隴蒸과 함께 그 일대를 약탈                    | —                         |
| 正德 3년(1508)*              | 鎮溪所 洞苗가 반란  |                           |
| 正德 6년(1511)               | 隴麻羊·隴江西·隴成酒·隴殺強·隴童保 등이 川·湖·貴 交界地域에서 반란                              | 都御史 楊茂元, 湖廣巡撫 劉丙, 貴州巡撫 沈林 |
| 嘉靖 15년(1536)              | 銅仁 且逞寨苗 吳郎拱의 아들 吳柳苟 반란  | 土官 楊再顯                    |
| 嘉靖 18년(1539)              | 간자평 烏牌寨苗 隴母叟가 得禾衝 등 21寨를 공격하고, 鎮溪 鴉油寨 苗頭 隴求兒가 銅平苗를 규합해 油蓬과 平頭 일대 공격 | 清浪衛 指揮 朱衣, 土指揮 田應朝        |

47 道光 『鳳凰廳志』에는 단지 弘治 초년 顧溥가 平蠻將軍의 자격으로 湖廣을 鎮守 했으며, 苗寨의 우두머리를 참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明實錄』에 근거해 弘治 2년(1489)으로 표기했다. 『明實錄』 권32, 弘治 2년 11월 1일조 참조.

48 道光 『鳳凰廳志』에 홍치 중엽으로 표기된 이 반란의 주모자인 隴麻羊과 龍童保가 반란을 일으킨 시기는 弘治 8년(1495)이었다. 『明實錄』 권126, 正德 10년 6월 24일조 참조. 한편 『明實錄』에는 隴麻羊이 龍麻陽으로 표기되어 있다.

| 시기           | 사건 개요   | 진압자                               |
|--------------|---|-----------------------------------|
| 嘉靖 19년(1540) | 五寨苗 侯答保와 귀주 르逞 일대 채묘가 麻陽 일대 공격/鴉西苗 隴柳比가 苗官 隴騰霄를 공격  | 辰沅兵備副使 李瑜, 平溪衛 都指揮 高岡鳳, 沅州衛 指揮 周寶 |
| 嘉靖 21년(1542) | 간자평 烏牌寨苗 隴母叟가 隴求兒와 銅平苗를 규합해 마양현을 공격   | 都御史 萬鏜                            |
| 嘉靖 22년(1543) | 隴求兒가 稱王하고, 隴母叟·隴子賢과 인척관계에 있는 귀주 土獠들과 함께 사천의 여러 蠻族을 선동해 호남·사천·귀주에서 반란/ 同年 3월에는 貴州苗가 麻陽縣 공격 | 萬鏜, 湖廣巡撫 車純, 指揮 李勇, 參將 高強鳳        |
| 嘉靖 23년(1544) | 彭宗舜 등이 臘耳山과 雷公山 일대를 정복/ 隴母叟 투항  | 萬鏜, 彭宗舜                           |
| 嘉靖 25년(1546) | 萬鏜이 묘족 반란 토벌  | 萬鏜                                |
| 嘉靖 26년(1547) | 銅平 隴子賢의 재반란   | 張岳                                |
| 嘉靖 30년(1551) | 隴許保와 吳黑苗 등이 鎮筸으로 잠입해 반란   | 張岳                                |
| 嘉靖 39년(1560) | 激浦獠 沈亞當 반란  | 石邦憲                               |
| 萬曆 15년(1587) | 篁子哨에서 묘족이 指揮 高松喬 살해   | -                                 |
| 崇禎 10년(1637) | 鎮筸苗가 麻陽縣을 약탈  | -                                 |
| 崇禎 15년(1642) | 진간묘가 沅州와 五郎溪 일대 약탈/激浦의 紅苗 반란  | 知縣 林龍彩 (홍묘 진압)                    |
| 崇禎 16년(1643) | 진간묘가 麻陽과 沅州 일대 약탈/苗酋 吳老文이 鎮筸 乾州守備 唐良臣, 遊擊 向文良, 參將 魏禎을 살해                                  |                                   |

출처 : 道光 『鳳凰廳志』 권12, 「兵防」(2), 5쪽 상~14쪽 상.

\* 嚴如煜, 『苗防備覽』 권14, 「述往」(上), 8쪽 하.

사실을 감안하면 토사제도를 통한 통제가 불안정한 채로 시작한 명대에 상서 지역에서 반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지방지에서 확인한 상서 지역, 그중에서도 오채와 간자평 일대에서 발생한 반란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 등장하는 반란이 명대 이 지역의 모든 반란을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반란은 연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

면,<sup>49</sup> <표 1>의 27회 반란은 충분히 대표성을 지닌다. 아마도 이처럼 빈번하게 반란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소수민족 사회의 근본적인 물자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sup>50</sup> 그러나 단순한 물자 부족을 넘어 명대 상서 지역 반란에는 당시 소수민족 사회의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논지 전개를 위해 일부 반란은 좀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홍치(弘治) 8년(1495) 농마양과 용동보의 반란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료에는 이들의 반란 원인이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반란 양상과 사후 처리에 관련된 기록은 상당히 흥미롭다. 우선, 모두(苗頭)인 위 두 사람 외에 토관(土官) 이춘(李椿)·하양(夏昂)·전종새(田宗璽), 백부장(百夫長) 용진(龍眞) 등의 다양한 계층이 반란에 가담했다. 또한 명 왕조의 사후 처리도 매우 차별적이었다. 이 일대 유력자인 용진은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엄한 훈계를 내리는 데 그쳤으며, 용진으로 하여금 가담한 무리들을 통솔하도록 했다. 특히 황제는 당시 호광순무(湖廣巡撫)에게 조칙을 내려 용진의 죄를 면제해

49 예를 들어 彭春芳, 2010, 「明清時期湘西苗疆“邊牆”研究」,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1~24쪽에는 모두 30회의 반란이 기록되어 있지만, 상서뿐 아니라湖廣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嘉靖 연간의 연속적인 반란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50 彭春芳, 2010, 앞의 글, 25~27쪽 참조. 소수민족 반란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상황에 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그나마 영순토사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陳廷亮, 2006, 「土司時期湘西土家族地區社會經濟形態簡論」,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2期; 胡炳章, 2014, 『塵封的曲線-溪州地區社會經濟研究』, 民族出版社, 214~215쪽 참조. 정통 연간의 卯峒土司 向那吾의 개간 권장(張興文 등 注釋, 2001, 『卯峒土司志校注』, 民族出版社, 31쪽)이나 귀주 水西 지역의 토사들이 적극적으로 한족의 기술과 경작체제를 받아들였던 사실(John E. Herman, 2007,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Harvard University Press, p. 145)을 상기하면, 토사 역시 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 사회의 경제 발전 상황과 부존자원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永順과 保靖土司가 採辦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벌목 노동자들에게 쥐야 할 미곡 공급을 두고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토관들의 역할 분담도 중요한 대립 원인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徐珊, 『卯峒集』 권2, 10쪽 상~하 참조.

주는 대신, 모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했다. 반면 백호(百戶) 손계훈(孫繼勳)과 이춘은 체포해 그 죄를 물었다.<sup>51</sup>

이처럼 농마양과 용동보 반란에 묘두(苗頭)·토관(土官)·위소(衛所) 관군이 동시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명대 소수민족 통치의 실상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면이자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란의 주모자이자 그 일대 유력자로 추정되는 용진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명조는 이 지역 일대의 안무(按撫)를 그에게 위임했다. 이는 토사제도가 존재했지만 명 중엽까지도 명 왕조는 여전히 소수민족 지역을 제지 세력에 위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상서 지역 일대 소수민족 반란을 명 왕조와 소수민족 사이의 대결구도로만 보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란 주모자들이 약탈이나 살상과 같은 일반적인 행위 외에도 거사에 앞서 토사부(土司府)를 압박한 사실<sup>52</sup>은 소수민족끼리도 많은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일찍이 전영산(田英産)은 소수민족 반란이 일시적이 아닌, ‘사시매월(四時每月)’ 지속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홍치 8년(1495)에 시작된 이 반란 역시 정덕(正德) 10년(1515)에 비로소 종결되었다. 이처럼 소수민족 반란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중요한 이유는 명 왕조의 진압 실패의 탓이 아닌, 오히려 토사제도 자체의 결함과 당시 소수민족 사회의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정

51 『明實錄』 권126, 正德 10년 6월 24일조, 道光 『鳳凰廳志』에 등장하는 龍蒸이란 인물이 『明實錄』에는 龍眞으로 표기되어 있다.

52 토사와 토사 구성원 사이의 이러한 갈등 문제는 이 글의 논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토사의 통치를 받았던 일반 소수민족들은 노역과 병역을 동시에 부담해야 했으며 그러한 부담은 소수민족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 구성체였던 ‘旗’를 단위로 이루어졌다. 일종의 兵農合一體였던 旗의 기능과 구성은 乾隆 『永順縣志』 권1, 『地輿志』(坊里), 29쪽 상~하에 자세히 등장한다. 아울러 호남북 일대 토사의 旗를 다룬 鄧輝, 2000, 「論土家族土司制度下的兵制“旗”」, 『中南民族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권, 3기와 羅維慶·羅中, 2014, 「明代衛所設置對土家族土司社會構建的影響」, 游俊 主編, 2014, 『土司研究新論-多重視野下的土司制度與民族文化』, 民族出版社, 353쪽 참조. 또한 토사 치하에서 일반 소수민족들이 담당했던 다양한 부담의 종류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陳廷亮, 2006, 앞의 글, 90~91쪽 참조.

연간의 반란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정 18년(1539) 간자평 오패채(烏牌寨)의 농모수(隴母叟)가 일으킨 가정 연간 반란의 단초는 가정 15년(153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53</sup> 가정 15년 동인(銅仁)의 단령채(旦逞寨) 묘족(苗族) 오랑공(吳郎拱)이 술에 취해 전호(佃戶)를 포박한 죄로 동인부(銅仁府) 지부(知府) 위문(魏文)<sup>54</sup>에게 매를 맞고 사망하자, 오랑공의 아들 오류순(吳柳荀)이 반란을 일으킨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가정 연간의 반란은 가정 31년(1552)에 종결되었는데,<sup>55</sup> 그 구체적인 정황과 주목할만한 사안을 각 시기별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가정 15년 오류순이 반란을 일으키자, 사석도(思石道) 병비(兵備) 전여성(田汝成)과 지휘(指揮) 순서(荀瑞)는 사천 평다사(平茶司) 토관(土官) 양재현(楊再顯)에게 그들을 초무(招撫)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지부(知府)인 위문(魏文)은 반란 진압에 대한 대가로 반란 지역 묘인들의 토지를 동인토사(銅仁土司) 단계(段契)와 양재현에게 지급하는 걸 허락했다. 그러나 귀주순무가 토지 지급을 허락하지 않자, 위문은 토지 대신 은 1천 냡을 양재현에게 지급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토지 대신 은전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실망한 양재현이 여러 묘인들을 선동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sup>56</sup>

53 이하 嘉靖 15년과 16년의 반란 상황은 道光 『鳳凰廳志』 권12, 「苗防」(2), 9쪽 상 참조.

54 道光 『鳳凰廳志』에 魏文으로 표기된 이 인물은 嘉靖 13년(1534) 동인부 知府로 부임한 魏文相을 말한다. 萬曆 『銅仁府志』(日本藏中國罕見地方志叢刊本) 권4, 「秩官志」, 8쪽 상.

55 嘉靖 15년(1536)에 시작된 반란은 嘉靖 31년(1552) 石邦憲이 吳黑苗를 참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嚴如煜, 『苗防備覽』 권14, 「述往」(上), 12쪽 하.

56 제13대 平茶長官使였던 양재현의 행적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때 그는 전공을 세운 명목으로 武略將軍에 봉해졌으며(龔蔭, 1992, 앞의 책, 443~444쪽 참조), 嘉靖 25년 『明實錄』 기사에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미뤄, 가정 18년(1539) 당시 반란으로 처벌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明實錄』 권 315, 嘉靖 25년 9월 19일조 참조. 한편 양재현이 반란 묘족 지역의 토지를 탐했던 정황은 萬曆 『銅仁府志』 권8, 「兵防志」, 13쪽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가정 16년(1537) 도지휘가 순서(荀瑞)에서 소감(邵鑑)으로 교체되었는데, 소감은 호광의 묘인들이 동평묘(銅平苗)들과 함께 약탈한 재물을 간자평의 농로흡(隴老恰)과 농당수(隴黨叟)의 채내(寨內)에 은닉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어 진간수비(鎭筭守備) 진표(陳表)는 토사(土司) 전흥작(田興爵)<sup>57</sup>으로 하여금 두 묘인을 유인해 그들을 사로잡았던 한편, 진원병비(辰沅兵備)가 농로흡을 감후(監候)에 처해 결국 그는 옥사했다. 농노흡의 아들 농모수(隴母叟)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전흥작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어 마침내 묘인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사단 끝에 가정 18년(1539) 간자평 오패채(烏牌寨)의 농모수가 득화총(得禾衝)의 21채를 공격했던 한편, 다시 진계 아우채(鴉西寨)의 묘두(苗頭) 농구아(隴求兒)가 동평묘를 규합해 유봉(油蓬)과 평두채(平頭寨)를 공격했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반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간수비 진표는 탄핵을 받아 위(衛)로 복귀했으며, 청랑위(淸浪圍) 지휘 주의(朱衣)가 진계소(鎭溪所) 토병(土兵) 600명을 토지휘(土指揮) 전응조(田應朝)에게 맡겨, 결국 전응조가 본거지인 박목평(樸木坪)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농모수와 농구아 등의 묘인들은 우마(牛馬)를 상납하면서 진압 병사들의 퇴각을 간청했다.

이어 가정 19년(1540)에 오채묘(五寨苗) 후담보(候荅保)가 간자평 및 앞서 등장한 귀주성 단령채묘를 선동해 마양현 일대를 공격했다. 또한 아우묘(鴉西苗) 농류비(隴柳比)가 묘관(苗官) 농등소(隴騰霄)를 공격하는 한편, 묘족들이 남이산 일대에 진을 치게 되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명 정부는 보정과 영순 토사로부터 각각 400명과 600명의 병사를 차출했다. 이렇게 차출된 병사들을 평계위(平溪衛) 도지휘 고강봉(高岡鳳)과 원주위(沅州衛) 지휘 주보(周寶)에게

57 전흥작이란 이름은 施州衛 소속 忠建宣撫使에 등장하며, 청 順治 연간에 귀부했다는 설명(龔蔭, 1992, 위의 책, 1261쪽) 하나와, 『淸實錄』 권198, 康熙 39년 3월 8일조에 忠建宣撫使 田世勳이 병사하고 후사가 없어 조카 田興爵이 세습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 두 사실 역시 전후가 맞지 않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田興爵과 청 초의 田興爵은 별도의 인물이다.

배분해 그들을 진압하도록 했다. 나아가 고강봉 등은 영순·보정·진계소의 병력 1천 명을 동원해 남이산에 진을 치고 있던 무리들을 진압했다.

한편, 가정 18년(1539) 반란을 일으킨 바 있는 농모수가 농구아(隴求兒)와 동평묘(銅平苗)를 규합해 다시 반란을 일으킨 시기는 가정 21년(1542)이었으며, 가정 22년에는 이들의 반란이 사천·호남·귀주 일대로 확산되어 그 제압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처럼 반란이 급속하게 확대된 이유는 당시 칭왕(稱王)했던 농구아가 농모수 및 농자현(隴子賢)과 인척을 맺은 한편, 귀주의 토요(土酋) 및 사천의 여러 소수민족들과 연합했기 때문이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도어사(都御史) 만당(萬鎗)을 필두로, 진주위(辰州衛) 수비(守備) 우흠(尤欽) 등이 영순선위사 팽중순과 전응조의 병사를, 수비 철관(鐵冠) 등이 팽신신(彭薰臣)과 전홍작의 병사를, 수비 주보(周寶) 등이 오채와 마양 토병을 각각 동원해 근거지를 공격했는데, 당시 동원된 병사들의 수효가 약 1만 7천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반란을 일으킨 묘족의 연합 세력은 그들이 지닌 풍부한 식량과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 진압 병력과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압이 용이하지 않았다.

가정 18년 발생한 농모수의 반란은 가정 23년(1544) 그가 항복해 요동으로 귀양을 가는 것으로 일단 막을 내리지만, 농모수의 항복 후에도 여전히 그 여파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의 전개 과정에서 반란 진압의 초기부터 등장하는 전홍작과 전응조의 행태는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반란 전개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가정 22년(1543) 반란의 진압을 지휘한 만당은 가정 25년(1546) 다시 진주(辰州)에 와서 병사들을 모집해 묘족들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 그런데 그 이유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간자평 토관(土官) 전홍작은 가정 25년 이전에 이미 진주부에 수감되어 있었다. 묘족들이 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석방시켰지만, 석방된 후 전홍작이 패악을 일삼자 묘족들은 관서를 공격했으며, 진계묘(鎭溪苗)도 가세해 반란을 일으켰다.<sup>58</sup> 또한 귀주 동평(銅平)의 관원들이 묘인(苗人)들의 세금 불납(不納)을 이유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 납부를 재촉하자 토관들

은 입장을 가지고 도주하는 한편, 여러 묘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sup>59</sup>

이처럼 가정 25년에는 단령묘·진계묘·동평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에 등장하는 진계(鎭溪) 토지휘(土指揮) 전응조(田應朝)의 행태 역시 흥미롭다. 당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진주에 도착한 만당은 전응조에게 임무를 맡긴다면 충분히 소임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전응조를 순포(巡捕)에 임명했다. 하지만 가정 25년 반란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해당 지방지는 전응조의 인물됨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매우 교활한 인물로서, 영순과 보정 두 토사의 구원(舊怨)을 이용해 양측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면서도 적(賊, 苗人)을 비호하는 한편, 거짓 공로로 상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묘인들을 완전히 진압하기 어려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sup>60</sup>

한편, 가정 25년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만당은 묘추(苗酋) 농자현(隴子賢)을 소환했지만 농자현도 인질을 요구하자 만당은 천호(千戶)를 인질로 보내고 나서야, 농자현은 만당의 소환에 응했다. 이에 만당은 농자현을 돌려보내지 않고 살해했으며, 이에 농자현 측도 천호를 사살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가정 25년(1546)의 반란은 농자현의 뒤를 이어 반란을 계속한 농허보(隴許保)에게 소와 술을 하사하고, 관대(冠帶)를 수여하는 등의 위무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

58 이에 관련된 내용은 道光 『鳳凰廳志』 권12, 「苗防」(2), 11쪽 상~12쪽 하에 등장하는데, 해당 내용의 첫머리가 단지 ‘先是’로 되어 있어, 전홍작의 구금 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

59 嘉靖 21년(1542) 묘인들이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감옥에 있던 田興爵을 석방시키자, 그는 蠟耳山에 은닉했다가 嘉靖 22년(1543)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자신의 위세를 믿고 부녀자를 강탈한 탓에 묘인들이 이반했으며, 隆 ㄷ이란 인물이 묘인을 규합해 전홍작에게 대항했다. 바로 이 당시, 평두장관사가 인장을 지닌 채 묘인들을 이끌고 역시 남이산으로 도망가 전홍작과 합세해 반란을 일으켰으며, 전응조는 이 두 사람의 반란 진압에 등장한다. 이상의 보충 내용은 湖南省少數民族古籍辦公室 主編, 1991, 『湖南地方志少數民族史料』, 岳麓書社, 383쪽 참조.

60 道光 『鳳凰廳志』 권12, 「苗防」(2), 11쪽 하.

만당의 이런 초무책(剿撫策)을 당시 어사 무문룡(繆文龍)은 모두 실책(失策)이라고 규정했는데, 실제로 위무책이 실시된 후 곧 바로 농허보와 오희묘(吳黑苗)가 가정 25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정 31년(1552)에야 겨우 진압되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명 왕조는 장악(張岳, 1492~1553)을 호광(湖廣)·운남(雲南)·귀주(貴州)·사천(四川) 네 성(省)의 군무(軍務)를 통괄하는 총독(總督)으로 임명했다. 당시 농허보와 오희묘가 가정 30년에 진간으로 들어가 일당을 규합해 사주부 일대를 공격하자, 장악은 영순과 보정 신위사의 병력을 동원해 이들을 토벌했다.

바로 이 반란의 와중에 앞에서 언급한 전응조는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다시 유양(酉陽)의 병력과 합세해 평다(平茶)를 공격하는 한편 관군을 방해했다. 장악은 결국 전응조와 그의 숙부 전면(田勉)을 참수했지만, 당시 농허보와 오희묘는 여전히 포획하지 못했다. 석방헌(石邦憲)이 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수신(守臣)들이 다투어 군사를 거둬들이려 한 탓에 결국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다.<sup>61</sup> 농허보는 가정 30년(1551)에 생포되었으며, 오희묘는 가정 31년(1552)에 참수되어 가정 연간의 장기간에 걸친 소수민족 반란이 일단 종료되었다.

이런 가정 연간의 반란 양상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소수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토사제도가 거꾸로 명 왕조에 대한 반란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홍치 8년(1495)의 이춘(李椿)·하양(段昂)·전종새(田宗璽), 그리고 가정 18년(1539)의 양재현(楊再顯)은 모두 토관 신분이었으며, 여기에 토사들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담당했던 위소(衛所) 군관들까지 가세했다. 그러므로 명 왕조 성립 이후 하대로 내려오면서 행정력이 이완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해도 가정 연간 반란에 줄곧 등장하는 토관의 존재는 토사제도를 통한 소수민족의 통제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둘째, 명 초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명 중엽 이후 소수민족들이 재지의

61 道光『鳳凰廳志』권12, 「苗防」(2), 12쪽 상~하.

엄연한 중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황을 가장 잘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인 사건은 도어사(都御史) 만당이 농자현을 소환하자 농자현도 만당에게 인질을 요구한 점이다. 소수민족이 명조 관원에게 이처럼 대등한 조건을 요구한 건 물론 전라 차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토관 양재현의 예는 당시 소수민족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지역의 토지를 토관에게 하사하는 관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62</sup> 토지 대신 은 천 냥을 준다는 말에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토관들에게 은 천 냥이 큰 의미가 없는 액수로 비취질 만큼, 그들은 경제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홍치 연간 반란 주모자 용진(龍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토사 지역 유력자의 정치적 권한도 상당했다.

셋째, 오히려 소수민족들 사이의 대립과 긴장 관계가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영순과 보정 토사들이 소수민족 반란 진압에 앞장섰던 상황을 통해서 일단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여성(田汝成)과 순서(荀瑞)가 토관 양재현에게 반란을 진압하도록 했으며, 농모수와 농구아가 오히려 다른 묘채를 공격했던 한편, 농류비(隴柳比)가 다른 토관을 공격하는가 하면, 일반 묘인(苗人)들이 묘관들의 세금 독촉에 반기를 들기도 했던 정황이 등장한다. 물론 묘족들 사이의 이러한 대립 원인에 대해 해당 사료는 침묵하고 있지만, 적어도 전응조와 전홍작의 행태는 당시 소수민족 반란이 개인이나 특정 묘채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반란의 진압자이자 주모자이기도 했던 전응조는 반란 진압 과정에서 사실상 관군과 소수민족 모두의 용병 역할로 사익을 챙겼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전응조는 묘족도 한족도 아닌 일종의 중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토사제도가 소수민족을 통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 왕조의 대전제를 무색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실제로 전응조는 가정 27년(1548) 장악의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

62 이 사실로 미루어 명 왕조는 관직의 제수 외에도 토지나 금전을 하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재현도 이미 전공을 세워 武略將軍과 奉政大夫를 제수받았다(龔蔭, 1992, 앞의 책, 444쪽)는 점을 상기하면, 당시 소수민족들에게 하사한 명목상의 벼슬이 큰 효용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 않았다.<sup>63</sup> 전응조의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명대 토사제도가 얼마나 소수민족의 현실과 유리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명 왕조가 전개한 무력 진압의 이면에는 늘 위무책이나 심지어 타협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석방현이 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농허보 등의 소재 파악을 시도하거나, 특히 만당이 농허보를 안무했던 게 그 좋은 예다. 가정 연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관원과 군사들은 물론, 영순과 보정의 대토사들의 병력이 동원되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토사들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관군의 철저한 진압 역시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명 왕조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무가 반란 진압의 중요한 대책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처럼 지속적인 반란에 대한 당시 명 왕조와 관료들의 구체적인 대응과 그 과정에 등장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V. 토관, 묘인 그리고 명대 국가 권력

가정 연간의 반란과 그 진압 양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언급은 자칫 명 왕조의 소수민족 정책이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 국한되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물론 토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과 토관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위소(衛所)의 존재는 명대 소수민족 통치의 군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sup>64</sup> 그러나 명 왕조가 토사제도와 병행해 이갑제를 실시할 목적으로 편리(編里)를 단행했다는 사실

63 전응조는 결국 嘉靖 30년(1551)에 처형되었으며, 이 사건이 종결된 가정 31년(1552)에 장악은 다시 12哨를 설치하는 한편, 沅州府를 개설했다. 湖南省少數民族古籍辦公室 主編, 앞의 책, 1991, 384쪽.

64 따라서 衛所를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招撫를 단행한 경우도 빈번하다. 일례로 洪武 3년(1370) 辰州衛 指揮 劉宣이 古州·新化·湖耳·亮寨·歐陽 일대를 정복하고 해당 지역의 洞長을 蠻獠長官司로 임명해 洞民을 다스린 바 있다. 乾隆 『辰州府志』 권12, 「備邊考」, 23쪽 하.

은 소수민족 연구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앞서 가장 연간 반란의 대다수 주모자들은 토관이었으며, 그들의 행태가 단 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데, 명대 소수민족 사회의 이갑제 편성 과정은 그러한 소수민족 사회의 단면을 우회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란의 실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상서의 노계현(盧溪縣)과 마양현(麻陽縣)이다.

우선 노계현의 이갑제 편성 과정은 만력 연간 노계현 지현을 역임한 오일본(吳一本)의 글에서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명 초 노계현은 58리(里)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묘족 반란으로 둔영(屯營)이 설치된 탓에 겨우 12리만 존재하게 되었다. 12리 가운데 2리가 만민(蠻民)으로, 나머지 10리가 한민(漢民)으로 편성되었다는 그의 설명<sup>65</sup>은 이 지역 소수민족의 인구수를 염두에 둔다면 이갑제에 편입된 소수민족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sup>66</sup>

그 이면에는 일부 지역에서 명 초부터 편리에 대한 반발이 존재했는데, 이는 명 초 주원장이 소위 조책(造冊)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오계만(五溪蠻)에 대한 초유(招諭)를 노계현 주부(主簿) 손응룡(孫應龍)<sup>67</sup>에게 위임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과정을 소상히 전하고 있는 당시 지방지에 따르면,<sup>68</sup> 당시 소수민족들이

65 吳一本, 「均平盧溪戶口記」, 乾隆『辰州府志』 권41, 「藝文」(2), 34쪽 하.

66 지방지에 노계현의 인구 수치가 나와 있지 않지만 노계현에 해당했던 지역인 辰州府 乾州廳의 인구를 살펴보면, 강희 43년(1702) 苗戶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改土歸流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건륭 16년(1751) 永綏廳의 묘호 비율도 약 50% 정도였다. 乾隆『辰州府志』 권9, 「賦役考」, 각각 26쪽 하와 29쪽 하 참조.

67 『明實錄』에는 孫應龍이 孫應隆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盧溪縣 鉛場 등의 苗寨 우두머리인 石答踵 등을 초유해 그들을 이끌고 來朝한 시기는 홍무 29년(1396)의 일이었다. 『明實錄』 권248, 洪武 29년 11월 1일조.

68 이와 관련된 기사는 乾隆『辰州府志』 권12, 「備邊考」, 24쪽 하~25쪽 하에 나와 있다. 다만 해당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방지에 기록된 홍무 20년(1387)이 아닌 홍무 28년(1395)이다. 여기서는 이 사건을 좀

편리(編里)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가 적고 생산성이 낮은 데도 세금은 많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손응룡은 거수(渠首) 양이(楊二)와 함께 수도로 와서 진계군민천호소(鎭溪軍民千戶所)의 치소 설치와 함께,<sup>69</sup> 기존의 전량(錢糧) 1만3천 냥을 1만 냥으로 낮춰줄 것을 주청하자, 명 태조는 그의 요청을 허락해줬다. 이어 124채를 10리로 구성하고, 양이를 백부장(百夫長)으로 임명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기령묘채(畸零苗菜) 132명은 토군(土軍)에게 군향을 납부하는 등의 잡역에 종사하도록 했다. 당시 귀주성의 오살위(烏撒衛)나 사천성의 노주위(瀘州衛) 관할 소수민족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적어도 홍무 중·후반 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상당수 소수민족 지역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갑제의 시행으로 영순토사 관할 지역의 해묵은 분쟁이 해소되고, 소수민족들의 세금 납부가 잘 이루어졌지만, 생묘 지역이었던 영수청(永綏廳) 관할의 상륙리(上六里) 묘민은 여전히 다스리기 어려웠다. 이는 묘족 지역에 토사제도 뿐 아니라, 편리의 실시도 용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sup>70</sup>

한편 편리를 시행한 마양현 역시 홍무 14년(1381)에 39리가 편성되었지만,

---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段汝霖 저, 伍新福 交點, 2008, 『楚南苗志』 권3, 岳麓書社, 112~123쪽을 참조했다.

69 일부 사료에서는 鎭溪軍民千戶所의 설치 시기를 홍무 28년(1395)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明實錄』에는 홍무 30년(1397)으로 되어 있다. 각각 沈瓚, 2012, 앞의 책, 129쪽과 『明實錄』 권250, 洪武 30년 2월 12일조 참조.

70 이런 점에서 『명실록』에 등장하는 손응룡 관련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각주 67)에서 인용한 洪武 29년 11월 1일조에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저항했던 石答踵 등 35명을 초유해 그들을 이끌고 손응룡이 來朝하자, 홍무제가 衣服·文綺·鈔錠 등을 하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기사인 홍무 29년 11월 11일조에는 ‘다시’ 손응룡을 노계현 주부로 임명했다는 설명과 함께, 본래 노계현 주부는 林彥聰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어떤 사안으로 체포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明實錄』 권248, 洪武 29년 11월 11일조 참조. 따라서 임언총의 후임으로 主簿가 된 손응룡이 이 지역 일대 초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손응룡이 초무할 당시, 새롭게 귀부한 백성들까지 포함되었다는 서술은 이러한 편리 과정이 점진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홍무 24년(1391)에 24리로 병합되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묘족의 침입으로 거주민이 도망해 영락 원년(1403)에는 이러한 편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따라서 잔존호를 평계(平溪)·청평(淸平)·편교(偏橋)·진계(鎭溪)·진주(辰州)·원주(沅州)의 각 위소에 재편입시킨 결과, 이 지역의 비옥한 땅을 둔군(屯軍)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편호 수요는 겨우 7리에 불과했다.<sup>71</sup> 명 초 둔군이 이처럼 대다수 비옥한 지역을 차지했음에도<sup>72</sup> 이런 생산력의 확보가 묘족들의 반란 진압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마양현의 현성(縣城)이 경태(景泰) 6년(1455)과 가정 26년(1547)에 묘족들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sup>73</sup>

적어도 노계현과 마양현의 편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노계현 양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편리의 단행 과정과 실제 운용에서 재지의 소수민족이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둘째, 마양현의 편리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명 초부터 위소 군인과 묘인들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이갑제가 실시된 후에도 묘족들의 침입으로 이내 이갑체제가 붕괴되었던 상황도 확인된다.

편리에 관련된 다른 지역의 증거를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명 초 소수민족 지역의 이갑제 실시 과정에서 등장하는 묘족들의 빈번한 침입과 소수민족 지역의 다양한 재지 세력의 존재는 가정 연간 반란에 등장하는 양상과 동일하다. 또한 당시 이갑 실시 지역과 위소 관할 지역의 병존<sup>74</sup>과 함께 두 지역

71 康熙『麻陽縣志』권1, 「沿革」, 3쪽 상~하.

72 홍무 연간에 부임한 知縣 齊伯良이 辰州·沅州·平溪·淸平·偏橋·鎭溪의 衛軍을 둔전을 경작하도록 해 일반인들이 혜택을 입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군둔 지역은 분명히 일정 정도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다. 康熙『麻陽縣志』권4, 「秩官志」, 2쪽 상.

73 康熙『麻陽縣志』권3, 「城池」, 1쪽 하.

74 湘西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정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은 호북성 長陽縣이다. 이곳은 容美土司 관할 지역, 百里荒千戶所 관할 지역, 그리고 流官이 다스리던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鶴峰縣民族事務委員會 編, 1993, 『容美土司史料續編』, 101쪽.

사이를 오갔던 주민들이야말로 전용조와 같은 ‘중간적 존재’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명 초 이래 소수민족에 대한 행정적 통제 역시 매우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가정 연간 발생한 일련의 반란 때문에 명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에 군사 시설을 축조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소수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명 왕조가 진간과 오채 일대에 본격적으로 군사 시설을 건설한 시기는 오필랑(吳畢郎) 반란을 진압한 총병관(總兵官) 소수(蕭綬)가 24보(堡)를 만든 선덕 5년(1430)의 일이다.<sup>75</sup> 이어 가정 31년(1552) 장악(張岳), 부사(副使) 고현(高顯), 참장(參將) 손현(孫賢)이 소수가 이전에 건설한 만계보(灣溪堡) 등을 재정비해 12개의 영초(營哨)를 만들었다.<sup>76</sup> 이 영초에는 성(城)·누(樓)·교장(較場)·애문(隘門)·관아(官衙)·사창(社倉)이 존재했다는 당시 기록으로 보아, 단순한 초소가 아닌 비교적 완비된 형태의 주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초에는 독비(督備)·영반(領班)·영대(領隊)·영정(領征) 등의 관원들이 두목(頭目)·사인(舍人)·식자(識字)·건보(健步)·타수(打手)·향(鄉)·토(土)·파(播)·개(凱)·힐묘(犴苗) 등을 통할했다.

이러한 영초의 건설에 뒤이어, 상서 지역의 대표적인 군사 시설이자 그 의의를 두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변장(邊牆)을 진원병비참정(辰沅兵備參政) 채복일(蔡復一)이 건설하였다. 당시 채복일은 영초(營哨)가 너무 산재되어 있으며, 묘로(苗路)가 험해 방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구찰도 어렵다고 판단해, 약 4만 냥을 들여 동인에서 보정에 이르는 약 300리 길이의 토장(土牆)을 건설했다.<sup>77</sup>

이처럼 선덕 5년(1430) 소수의 24보(堡) → 가정 31년(1552) 장악의 12초(哨) → 만력 연간(1573~1620) 채복일의 변장(邊牆)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75 道光『鳳凰廳志』권10, 「兵防」, 4쪽 하~5쪽 상.

76 이하 營哨 관련 설명은 道光『鳳凰廳志』권10, 「兵防」, 5쪽 상~하에 근거한 것이다.

77 道光『鳳凰廳志』권12, 「苗防」(2), 13쪽 상.

이 지닌 특징을 기존의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sup>78</sup> 첫째, 소수의 24보는 군사적인 목적 외에 소수민족 사회에 관한 정보 수집과 같은 문화적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었으며, 둘째, 장악의 영초는 초보의 수효를 감축해 군사비용을 절약하고, 토사와 토관의 힘을 빌리는 한편, 한화(漢化)된 묘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변장은 묘민들에 대한 방어와 정벌을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치묘(治苗)와 교화(教化)에 그 설치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장의 축조를 계기로 한족과 묘족, 나아가 생묘(生苗)와 숙묘(熟苗)의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논지<sup>79</sup>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장악보다 먼저 활동한 우겸(于謙, 1398~1457)은 경태(景泰) 원년(1450) 귀주 지역의 묘족 반란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홍무 연간부터 적어도 영락 연간까지는 단지 칙서를 통해 상(賞)을 하사하거나, 한 명의 대신(大臣)으로 이 지역의 방어가 충분했다고 전제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지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그 지역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완전한 진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 초무(招撫)를 강조했다.<sup>80</sup> 적어도 이러한 우겸의 온정주의적 태도는 명 중엽까지도 일부 관료들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되었다.<sup>81</sup> 그러므로 당시 초보와 변장이 단순한 군사적 목적만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명 왕조는 이미 정통(正統) 2년(1507) 사임(思任)·사륜발(思倫發)의

78 張振興, 2014, 앞의 글, 121~122쪽.

79 張應強, 2001, 「邊牆興廢與明清苗疆社會」,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期, 74쪽.

80 于謙, 「兵部爲懷柔遠人疏」, 『明經世文編』 권34, 17쪽 상~18쪽 하. 그의 글에 總兵官 保定伯과 梁瑤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해당 반란은 景泰 원년(1450) 귀주 지역의 묘족 반란을 의미하는 것이다. 『明實錄』 권191, 景泰 元年 4월 14일 조 참조.

81 따라서 王守仁은 상황에 따라, 그 지역의 풍속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관과 토관을 각기 설치해야 하며, 그 둘 중 어느 쪽이 더 편리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王守仁, 「處置平復地方以保久安疏」, 『明經世文編』 권131, 35쪽 상~하.

반란으로 총 15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른바 ‘전향반천하(轉餉半天下)’를 겪었으며,<sup>82</sup> 특히 가정 연간 상서 지역의 지속적인 반란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반란에서 얻은 교훈 중의 하나는 모족이 빈번하게 ‘양순음역(陽順陰逆), 승극출겁(乘隙出劫)’의 행위를 한다는 점이었다.<sup>83</sup> 따라서 오히려 전략적 측면에 좀 더 관심을 가진 장악은 소수민족 지역의 병사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실제로 장악은 가정 28년(1549) 농허보 등이 일으킨 반란 진압 과정에서 인근의 관병들이 그들을 토벌하려 했지만 지휘 권한이 분산되어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sup>84</sup>

장악과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귀주순안어사(貴州巡按御史)를 역임한 소단몽(蕭端蒙, 1521~1554)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면,<sup>85</sup> 넓은 지역에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지휘해 작전을 시행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악은 이전 규칙대로 유격(遊擊)과 도사(都司) 등의 관원이 영초(營哨)를 관할하고 포정사와 안찰사 소속 관원이 그 모든 걸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부위(府衛) 이하 관원들은 포정사와 안찰사의 장인관(掌印官)과 함께 용병(用兵)을 청하도록 했다.<sup>86</sup> 말하자면 장악의 12초 건설은 소수민족 지역의 군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소수민족을 군사적으로 진압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2초의 수군(戍軍)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상서 지역의 관군의 상당수가 오히려 토사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여성(田汝成, 1503~1557)의 지적대로, 명 초엽 20만에 달했던 수졸(戍卒)의 수효가 16세기에 이르면 10~20%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휘관이나

82 「麓川之役」, 谷應泰, 1956, 『明史紀事本末』, 三民書局, 권30, 321쪽과 324쪽.

83 張岳, 「極陳地方苗患并論征剿撫守利害疏」, 『小山類稿』(四庫全書本) 권4, 16쪽 하.

84 張岳, 「論湖貴苗情并征剿事宜疏」, 『小山類稿』 권4, 7쪽 하.

85 蕭端蒙, 「特建總督重臣疏」, 『明經世文編』 권286, 2쪽 하.

86 張岳, 「論湖貴苗情并征剿事宜疏」, 『小山類稿』 권4, 9쪽 하~10쪽 상.

일반 병사 모두 사실상 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이었기 때문에 소수민족 토벌에 반드시 토병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sup>87</sup>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명 왕조의 소수민족 진압 대책은 물론 전체 토사제도 운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명 중엽에 이르면, 한족과 소수민족이 뒤엎겨 동시에 혼란을 부추기는 양상이 전개되었는데, 그러한 단서가 만력 연간 진주부(辰州府) 추관(推官)을 역임한 후가지(侯加地)의 글에 등장한다. 그는 묘족의 인구 증가와 함께 그들과 내통하는 간악한 무리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자들이 무역을 빌미로 묘족 지역에 깊이 들어가 간묘(姦苗)들과 내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묘족들은 이들을 이용해 촌장(村莊)의 부유한 집을 파악한 후 다시 그들을 향도(嚮導)로 앞세워 그 지역을 약탈한다고 언급했다.<sup>88</sup>

후가지는 소수민족과 외성(外省)의 한족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묘족 지역 내부의 정황도 밝히고 있다. 그는 변장 일대에도 사납고 탐욕스런 생모와 교활하고 음흉한 숙모가 뒤섞여 있는데, 생모들은 숙모가 가리키는 일반민을 향도로 앞세워 반란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sup>89</sup> 아울러 초병(哨兵)들도 종종 반란을 일으키지만 사실상 막을 방도가 없어 방묘(防苗)만을 논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방병(防兵)을 논해야 하며, 나아가 병(兵)과 묘(苗)의 문제를 동시에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90</sup> 이는 분명 초병이 묘인들의 사주나 협조 하에 반란을 일으킨 정황을 말한다.

수졸들과 토인들의 이러한 결합은 소수민족 지역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사료에 따르면 토사와 관군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외부의 토관이나 토인들과 결친해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단을 선동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귀주의 사남(思南)·오살(烏撒)·영녕(永寧), 도균(都勻)의 위

87 田汝成, 「上巡撫陳公書」, 『明經世文編』 권257, 3쪽 하.

88 侯加地, 「邊哨說」, 光緒『乾州廳志』 권7, 「苗防志」(苗防1), 4쪽 상.

89 물론 熟苗도 빈번하게 이런 향도 역할을 했다. 湖南省少數民族古籍辦公室 主編, 1991, 앞의 책, 372쪽에 등장하는 蔡復一의 글 참조.

90 侯加地, 「邊哨疆域考」, 光緒『乾州廳志』 권7, 「苗防志」(苗防1), 5쪽 상~하.

소, 사천의 오살부(烏撒府)와 영녕(永寧)·과주선무사(播州宣撫司), 광서의 남단(南丹)·사성(泗城), 운남의 점익주(霑益州), 호광(湖廣)의 진간(鎭筭) 지방 등에 두루 나타난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관군과 토사와의 결합이 소수민족 지역에서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91</sup>

나아가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토관들이 사익을 취하는 극적인 현상도 등장했다. 이 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장약의 언급을 들어보기로 하자.

湖廣과 貴州가 여러 해 동안 병사를 운용하면서 모두 土兵을 동원했지만, 각 지역의 해당 토관들은 적과 내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불법과 강제로 사익을 취하고, (자신의 뜻을) 굽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 그 방자함이 더욱 심합니다. 또한 軍兵의 식량은 관례대로 매월 4斗 5升을 (지급하고), 兩廣의 土兵들은 단지 3斗를 지급받고 있으나, 오직 호광의 토병들만 4斗 5升 외에 많게는 그 倍를 요구합니다. 1두를 은 5分으로 환산하면, (호광 토병이 받는 액수는) 銀 2錢 5分에 이르며, 만약 1만 명의 병사에게 (그 돈을 지불한다면), 매월 은 2천 5백 냥에 달합니다. 호광은 작년에 토병 3만 6천 명을 동원했으므로 매월 9천 냥을 지급했으며, 산으로 진격(을 시작한 날부터) 토병이 해산될 때까지 모두 15개월 동안 실제 13만 5천 냥을 지급한 셈이 됩니다. 당시 行糧 명목으로 한 명당 4두 5승 외에, 이유 없이 많은 비용을 사용한 액수 13만 5천 냥을 (다시) 토관에게 지급했습니다. 호광이 이러하니 사천과 귀주도 (그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관은 병영 높은 곳에 앉아 참전 일수를 계산해 은량을 얻을 수 있으니, 다만 적이 (항상) 존재하기를 바랄 뿐 어찌 그 적을 없애려 하겠습니까?<sup>92</sup>

간단히 말해 위 상황은 명 왕조가 운용한 토사제도가 명 중엽에 이르러 어떻

91 徐問, 「議處地方事宜疏」, 『明經世文編』 권173, 2쪽 하~3쪽 상.

92 張岳, 「論湖貴苗情并征剿事宜疏」, 『小山類稿』 권4, 11쪽 상~하.

게 변질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그러한 토사제도의 와해가 단지 명 중엽 이후 중앙 정부 행정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금전 지급이 토병의 동원의 전제가 된 상황에서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건 불가능했으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반란이 가능했다.

따라서 가정 연간 이후 명 왕조의 소수민족 대책은 소수민족에 대한 위무와 군사적 공략 모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가정 24년(1545) 귀주순안어사(貴州巡按御史)를 역임한 소단몽(蕭端蒙, 1521~1554)의 글은 잘 보여준다. 특히 이 글은 앞의 장악의 글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 소단몽의 글에서 먼저 소수민족 전체의 대책을 논한 ‘결대계(決大計)’ 중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sup>93</sup>

대체로 治苗에 대한 논의는 慰撫와 공격(剿)이라는 두 극단만이 존재합니다. 묘족이 반란을 일으킨 10년 이래 대체로 慰撫의 (사용을) 의논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건대 현재 慰撫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위엄으로 묘인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恩典을 내려 (은전에 대한) 묘인들의 마음이 결정되면 그들로 하여금 위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어서, 후한 이득을 그들에 바치고, (조정이 비굴하게 뜻을 굽혀) 그들을 맞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아래와 위가 서로를 속이고 모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행여 묘인들이 귀찮고 염증이 나서 수개월을 나오지 않아도, 또한 그것을 (관원) 스스로의 공으로 삼으며, 병사를 거두고 방비를 철수합니다. (하지만) 일단 갑자기 사단이 발생하면 당황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미리 정한 계획이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병사들이 죽고 戰勢가 위태로우면 위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무를 하되 비용이 들지 않을 때 위무가 가능합니다. 비용이 들어도 근본에 손상

93 이하 소단몽 글의 인용 부분은 『明經世文編』 권285에 있는 「條陳地方事宜四事疏」의 1쪽 하~2쪽 상과 5쪽 상이다.

이 가지 않으면 위무가 가능합니다. 근본이 손상되어도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면 이 또한 위무가 가능합니다.

현재 마구잡이로 口糧을 지급하고, 해마다 규정 외로 주는 魚鹽이 있으며, 공로를 치하해 음식을 내리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아), 그 비용이 번잡합니다. 저잣거리에서 백성(土民)을 죽여도 감히 비난하지 못하며, 土民을 公府에 고발해도 그 (행위를) 달갑게 받아들이니, 두려워하고 일부러 승복하며 아첨하는 모습이 마치 大國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그들의 뜻을 거역하면 바로 반란을 일으키니 당연히 근본이 손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위무를 받고도 저녁이면 노략질을 나가고, 衷心을 담은 招諭라 하더라도 土官의 마음을 묶어두기가 충분하지 않으니, (위무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 글에서 소단몽은 심지어 소수민족에 대한 위무마저도 전적으로 토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소수민족을 토벌하기 위해 동원한 토사들이 오히려 금전적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장악이 묘사했다면, 소단몽의 언급은 거꾸로 유효적인 수단에서도 명 왕조는 명백히 불리한 입장에서 있었다는 점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은전(恩典)을 받은 후 그 은전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 소수민족의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위무가 가능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시(戰時)와 동일하게 토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소단몽의 언급이 좀 더 흥미로운 이유는 적어도 『명사』 권310, 「토사전」에서 최후까지 명 왕조에 충성을 다했다고 묘사된 영순과 보정 등의 대토사에 대한 비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세 번째 주제로 다룬 ‘엄가어(嚴駕馭)’의 일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湖廣의 영순과 보정 두 토사, 四川의 西陽과 平茶 두 토사를 둘러본 (결과), 모두 苗僮와 가깝게 지내고 있으며, 逆黨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니 그 죄가 (일반) 묘인들보다 심하고, 평소에도 그들은 묘인과 내통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臣의 (이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병사를 동원할 경우에는 속내에 품은

간사함이 더욱 심해져 죄인을 비호하고 도망자를 은닉시킬 뿐 아니라, (동원된) 병사를 구실로 식량을 원조받으며, 기밀을 누설하고, 거짓으로 패배하는 경우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한다면 우리들에 대한 (그들의) 두 마음 때문에 兵機를 그르칠까 두렵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묘인들과 합세해 그 근심과 폐해가 과중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양과 평다의 (토병을) 귀주에서 이용한다면 다시 다른 省에 왔다는 핑계로 갖가지 교만과 방자함을 부리고, 많은 兵餉을 강제로 요구하는 한편 억지를 부려 增兵을 요구할 것이니, (이는) 영순과 보정 토사보다 통제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사 관련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들은 묘인을 제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토사들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당시 대토사들이 돈을 받고 거짓으로 반란 세력들에게 패배당하는 소위 ‘매진(賣陣)’의 존재는 소토사와 명 관군의 통제 밖에 있었던 묘인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통제된 대토사<sup>94</sup>들 역시 사실상 명 왕조가 의지할 수 없었던 세력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단몽은 토사 병력만을 이용한 전투는 물론 토사병을 배제한 채 관군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전투 모두가 어렵다는 사실을 생생히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소단몽의 대책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토사와 묘인들에 대한 명 왕조의 입장은 분명 무력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소단몽은 동평(銅平) 묘인(苗人)의 수효가 800명, 진간(鎭竿) 묘인이 3천 명으로, 그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금을 계산한다면 약 2만 냥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2만 냥은 명 왕조가 이 일대 묘인을 위무하고 수병(戍兵)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나마 그가 제시한 적극적인 대책은 상서

94 이를테면 소토사를 증설해 대토사를 약화시키려 한 명 왕조의 정책을 들 수 있다. 祝國超, 2009, 「明代中央政權對土司的政治控制探析-以土家族土司爲例」, 『社會科學家』 11期, 146쪽.

소수민족 지역 일대에 대도(大道)를 건설하는 한편, 기존의 초보(哨堡)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초보의 수군(戍軍)은 기군(旗軍) 가운데 원하는 자들만을 그대로 두고 부근의 군민(軍民)들을 모집해 충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초나 변장이 군사시설이란 점을 감안하면 영초의 증설은 곧바로 군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가정 40년 총병관(總兵官) 석방헌(石邦憲)과 함께 건주청(乾州廳)과 마양 일대 28채 묘인을 진압한 바 있는 만사화(萬士和, 1516~1586)<sup>95</sup>는 13초보(哨堡)를 축조한 이후 군향(軍餉)이 증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96</sup> 이는 만력 연간 말년에 활동한 채복일의 언급처럼, 묘인들 자체의 식량 수요가 이전보다 훨씬 증가했을 뿐 아니라,<sup>97</sup> 일부 지역에서는 위소 병사들이 가솔을 데리고 생활했던 탓에서도 기인한다.<sup>98</sup>

또한 앞서 언급한 장악의 지적대로, 당시 군량의 부족은 상서 한 지역에만 그치지 않았다. 상서 지역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이 일어났던 한편, 묘인들이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란 진압에는 사천과 귀주 지역의 토병들도 빈번히 동원되었다.<sup>99</sup> 따라서 상서 지역의 이러한 군량의 부족이 그대

95 『明實錄』 권496, 嘉靖 40년 5월 5일조 참조.

96 萬士和, 「湖北民隱錄序」, 乾隆『辰州府志』 권44, 「藝文」(5), 1쪽 상~하.

97 蔡復一, 「撫治苗疆議」, 乾隆『辰州府志』 권40, 「藝文纂」(記), 18쪽 하. 명대 소수민족 관련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채복일의 이 글은 光緒『乾州廳志』 권7, 「苗防」(上), 6쪽 하~11쪽 상, 그리고 嚴如煜, 『苗防備覽』 권20, 「藝文誌」(中), 3쪽 상~5쪽 하 등에 두루 실려 있지만, 각각 그 내용과 문장이 달라 쉽게 판독하기 어렵다. 여기서 인용한 대목은 乾隆『辰州府志』에 등장한다.

98 雍正『瀘溪縣志』 권2, 「規建志」, 19쪽 상. 성화 연간에 土寇가 소란을 일으킬 당시, 노계현에는 省에서 뽑은 객병이 존재했다. 하지만 성에서 병사를 차출하는 것은 중심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는 都御史 閔珪(?~1511)의 건의로 客兵을 없애는 대신, 각 府의 衛에서 차출한 관군이 직접 家屬을 데리고 와 머무르면서 특정 지역을 수비했다.

99 예를 들어 가정 28년(1549) 당시 농허보와 오효묘는 銅仁府 省溪司 衙門에 대한 공격에 이어, 湘西의 蠟耳山과 冷水, 사천 西陽의 小平茶 일대, 思州府와 印江縣의 朗溪長官司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장악은 유양과 평다의 병사 각각 천여 명, 호광의 영순과 보정 토사의 병력 각각 2천 5백여

로 귀주 동인부 일대까지 영향을 줬다. 동인부의 목통(木桶) 일대의 영초(營哨) 관군 5천여 명은 진간(鎭竿) 일대 반란으로 증설된 채 반란 진압 후 그 수효를 감축하지 않아 군량 부족이 심각했던 가정 41년(1562)의 예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sup>100</sup> 당시 귀주 지역 군량의 대부분은 사천과 호남성에서 조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01</sup> 그리고 상서와 귀주 일대의 이러한 군량 부족은 그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만력 26년(1598) 귀주순무로 임명된 곽자장(郭子章, 1543~1618)의 지적에 따르면 지속적인 반란으로 동인(銅仁), 애상(崖桑)과 철산영(鐵山營), 위평(威平)과 보정(普定) 일대 등에 모두 3천여 명의 관병이 증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만 7천여 냥이 필요했지만 수요를 충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sup>102</sup>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소수민족 반란 양상을 ‘양순음역(陽順陰逆), 승극출겁(乘隙出劫)’이라 표현한 사료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서 지역에서 농허보 등이 한창 반란을 일으킬 때인 가정 27년(1548) 당시 호광순안어사(湖廣巡按御史)로 있던 가대형(賈大亨)은 초묘(剿苗)는 결국 달성하지 못했으며, 무묘(撫苗) 역시 온갖 술수를 동원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다시 대토사들이 휘하 소토사를 책임지는 소위 담승(擔承)을 주장했다. 가대형은 당시 보정선위사로 있는 팽개신(彭蓋臣)에게 간자평 일대 채묘(寨苗)를, 영순선위사 팽명보(彭明輔)와 토지휘(土指揮) 전응조(田應朝)에게 진계 일대 채묘(寨苗)를 각각 분담시켜야 한다고 상주했다.<sup>103</sup> 하지만 전응조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상기한다면 가대형의 상주는 사실상 귀부(歸附)가 주조였던 명 초기 토사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

명, 귀주 獨山州 토병 5백여 명을 銅仁府 및 黃蠟灘 및 地架 등 지역으로 파견해 관군과 서로 협조하도록 했다. 張岳, 「極陳地方苗患并論征剿撫守利害疏」, 『小山類稿』 권4, 16쪽 하~17쪽 하.

100 『明實錄』 권509, 嘉靖 41년 5월 5일조.

101 郭子章, 「題買楚蜀鹽魚以餉新兵疏」, 『明經世文編』 권419, 20쪽 하.

102 郭子章, 「題鹽本餉本馬本疏」, 『明經世文編』 권419, 30쪽 상~하.

103 『明實錄』 권341, 嘉靖 27년 10월 2일조.

## V. 맺음말

지금까지 상서 지역 일대에 발생한 소수민족 반란을 통해 명 초에 설립된 토사 제도 기능의 한계를 명 중엽 반란에서 드러난 토관들의 행태를 통해 살펴왔다. 그리고 이러한 토사제도의 한계는 오히려 명대 귀부(歸附)를 통해 형성된 토사 제도 하에서 토관들이 꾸준한 자신의 세력을 신장시켜 왔다는 사실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 명 정부의 권력이 이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간자평장관사의 설치 과정이 그 좋은 예다. 결국 명대 토사제도는 명 초 마련된 대토사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도 더 진전하지 못한 채 대토사에게 소수민족의 통제를 위임한 것에 불과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영순과 보정토사와 같은 대토사들이 여러 소토사와 생묘 지역에 대한 통치를 수행했지만, 크고 작은 촌寨(村寨) 단위로 나뉜 소수민족 사회의 특성상 대토사 역시 그들을 효율적으로 장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오히려 대토사 휘하의 소토사와 생묘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명 왕조의 군사력에 도전했으며, 이러한 군사적 도전이 명 왕조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명 가정 연간의 묘족 반란에서는 관군과 토사들이 빈번하게 결합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자주 태도를 바꾼 토사들이 반란 세력과 명 왕조 사이를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일부 토관들은 대담하게 관군에게 인질을 요구하는 한편,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대가로 반란 지역 토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토관들이 소수민족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명 왕조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심지어 토관에게 금전을 지급하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토관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 골몰했다.

물론 장악(張岳)과 같은 당시 관료들과 명 왕조는 이처럼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토관들과 토사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군사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결국 토관

들의 이러한 비협조로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탓에 명 왕조는 명 중엽 이후 군사 시설물의 신설과 확충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많은 비용이 들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 불과했다.

명대 변장 설치에 관한 사료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장의 설치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동인부(銅仁府) 동북쪽 정자관(亭子關)에서 시작해 고장평(古丈坪) 서남쪽의 희작영(喜鵲營)까지의 경계선은 분명 많은 반란을 일으킨 생묘 지역에 대한 통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륭 60년(1795) 묘족 반란으로 진간(鎭竿)의 상하오동(上下五峒), 건주(乾州)의 만계진(灣溪鎭), 영수(永綏)의 화원(花園)과 다동(茶峒), 노계(瀘溪)의 천당(天塘)·답호(踏虎), 마양(麻陽)의 고촌(高村), 암문(巖門) 및 보정(保靖)의 사도(四都), 그리고 고장평(古丈坪)의 용비취(龍鼻嘴) 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sup>104</sup>은 변장 서쪽과 남쪽 지역의 통치가 여전히 어려웠다는 중요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sup>105</sup>

생묘·속묘·한인들이 뒤섞여 있었으며, 반란 진압에 나선 관군조차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명대 이 지역은 분명히 착종(錯綜)의 세계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를 토사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통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때, 강희 19년(1680) 진주지부를 지낸 유응중(劉應中)이 변장의 재건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변장 문제는 진주(辰州) 한 곳이 아닌, ‘전초지보장(全楚之保障)’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 건<sup>106</sup> 매우 의미 있다.

104 嚴如煜, 『苗防備覽』 권13, 「屯防」, 4쪽 상.

105 청대 이르러 상서 지역에 군사 시설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姚金泉, 2002, 「明清統治者對湘黔邊苗民的政策及其影響」,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期, 49쪽 참조. 아울러 傅鼎, 「治苗」, 『皇朝經世文編』 권88, 「兵政」(苗防), 7쪽 상 참조.

106 劉應中, 「邊牆議」, 光緒 『乾州廳志』 권7, 「苗防」(上), 14쪽 하.

결국 강희제가 개토귀류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sup>107</sup>를 보였던 청 초(淸初)를 지나, 옹정 연간에 이르러 전면적인 개토귀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보다 호광 지역은 물론 소수민족 지역 모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08</sup> 이런 점에서 외견상 개토귀류는 토사제도에 내포된 토관·위소·생묘·숙묘·한인 등의 다의성을 소수민족 대(對) 한족이라는 단일성으로 환원시킨 조치<sup>109</sup>라 할 수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규명이 필요하다.

107 이 문제에 대해서는 瞿州蓮·瞿宏州, 2014, 『金石銘文中的歷史記憶-永順土司金石銘文整理研究(一)』, 民族出版社, 270~271쪽 참조.

108 이런 시각의 단초는 雍正 연간 당시 湖廣 지역을 “有可不改而不得已竟改者”로 인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瞿州蓮·瞿宏州, 2014, 「湖廣土司改土歸流原因新探」, 『中南民族學院學報』(社會科學版) 2期, 68쪽 참조.

109 이런 관점의 개토귀류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개토귀류 이후 토사들의 권한이 명대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John E. Herman, 1997, “Empire in the Southwest: Early Qing Reforms to the Native Chieftain Syste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6, No. 1, p. 48과 Donald S. Sutton, 2003, “Violence and Ethnicity on a Qing Colonial Frontier: Customary and Statutory Law in the Eighteenth-Century Miao Pale,” *Modern Asian Studies*, Vol. 37, No. 1, 특히 pp. 47~48 참조.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사료집

光緒 『乾州廳志』

谷應泰(明), 1956, 『明史紀事本末』, 三民書局.

羅汝懷(淸), 2008, 『湖南文徵』, 岳麓書社.

雍正 『瀘溪縣志』

段汝霖(淸) 著, 伍新福 交點, 2008, 『楚南苗志』, 岳麓書社.

『大明一統志』

『明史』(景仁文化社影印本)

『明實錄』(www.history.go.kr)

道光 『鳳凰廳志』

謝華 著 · 伍新福 交點, 2008, 『湘西土司輯略』, 岳麓書社.

徐珊(明), 『卯峒集』.

徐學謨(明), 1997, 萬曆 『湖廣總志』(四庫全書存目叢書), 齊魯書社.

『宋史』(景仁文化社 影印本)

沈瓚(明) 著 · 伍新福 交點, 2012, 『五溪蠻圖志』, 岳麓書社.

嚴如煜(淸), 『苗防備覽』.

乾隆 『永順縣志』

同治 『永順府志』

張岳(明), 『小山類稿』(四庫全書本).

張興文 等 注釋, 2001, 『卯峒土司志校注』, 民族出版社.

陳以躍(明), 1992, 萬曆 『銅仁府志』(日本藏中國罕見地方志叢刊), 書目文獻出版社.

陳子龍(明) 編, 1997, 『明經世文編』, 中華書局.

乾隆 『辰州府志』

『清實錄』(www.history.go.kr)

賀長齡(淸) 編, 1963, 『皇朝經世文編』, 國風出版社.

鶴峰縣民族事務委員會 編, 1993, 『容美土司史料續編』(내부발행).

湖南省少數民族古籍辦公室 主編, 1991, 『土家族土司史錄』, 岳麓書社.  
 湖南省少數民族古籍辦公室 主編, 1991, 『湖南地方志少數民族史料』, 岳麓書社.  
 黃志璋(明), 1992, 康熙『麻陽縣志』(日本藏中國罕見地方志叢刊), 書目文獻出版社.

## 2. 연구서

동북아역사재단, 2013, 『明史外國傳譯註·5』(土司傳·上), 동북아역사재단.  
 클로딘 롱바르-살몽 저·정철웅 역, 2015, 『중국적 문화변용의 한 예-18세기 귀주성』, 세창.  
 龔蔭, 1992, 『中國土司制度』, 雲南民族出版社.  
 瞿州蓮·瞿宏州, 2014, 『金石銘文中的歷史記憶-永順土司金石銘文整理研究(一)』, 民族出版社.  
 羅維慶·羅中 編, 2014, 『土司制度與彭氏土司歷史文獻資料輯錄』(上, 下), 民族出版社.  
 凌純聲·芮逸夫, 2003, 『湘西苗族調查報告』, 民族出版社.  
 譚必友, 2007, 『清代湘西苗疆多民族社區的近代重構』, 民族出版社.  
 成臻銘, 2014, 『土司家族的世代傳承-永順彭氏土司譜系研究』, 民族出版社.  
 伍新福, 2006, 『湖南民族關係史』(上), 民族出版社.  
 吳永章, 1988, 『中國土司制度淵源與發展史』, 四川民族出版社.  
 魏斌 主編, 2013, 『古代長江中游社會研究』, 上海古籍出版社.  
 游俊·李漢林, 2001, 『湖南少數民族史』, 民族出版社.  
 游俊 主編, 2014, 『土司研究新論-多重視野下的土司制度與民族文化』, 民族出版社.  
 田敏, 2000, 『土家族土司興亡史』, 民族出版社.  
 胡炳章, 2014, 『塵封的曲線-溪州地區社會經濟研究』, 民族出版社.  
 Herman, John E., 2007,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Harvard University Press.  
 Shin, Leo K., 2006, *The Making of the Chinese State: Ethnicity and Expansion on the Ming Borderla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 논문

瞿州蓮·瞿宏州, 2014, 「湖廣土司改土歸流原因新探」, 『中南民族學院學報』(社會

- 科學版) 2期。
- 羅維慶·羅中, 2014, 「明代衛所設置對土家族土司社會構建的影響」, 游俊 主編, 『土司研究新論—多重視野下的土司制度與民族文化』, 民族出版社。
- 譚必友, 2007, 「苗疆邊牆與清代湘西民族事務的深層對話」,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期。
- 戴楚洲, 1992, 「淺論湖南土家族地區的土司和衛所制度」, 『民族論壇』 4期。
- 鄧輝, 2000, 「論土家族土司制度下的兵制“旗”」, 『中南民族學院學報』(社會科學版) 3期。
- 方壽, 2016, 「“兩江口事件”與明代永順·保靖土司管區的變化」, 『牡丹』 8期。
- 謝曉輝, 2013, 「只愿賊在, 豈肯滅賊?—明代湘西苗疆開發與邊牆修築之再認識」, 魏斌 主編, 『古代長江中游社會研究』, 上海古籍出版社。
- 成臻銘, 1996, 「論湖南元明時期的土司—兼與新添葛蠻安撫司在湖南論者商榷」, 『民族研究』 5期。
- 成臻銘, 2010, 「論土司與土司學—兼及土司文化及其研究價值」, 『青海民族研究』 1期。
- 姚金泉, 2002, 「明清統治者對湘黔邊苗民的政策及其影響」,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期。
- 張應強, 2001, 「邊牆與廢與明清苗疆社會」,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期。
- 張振興, 2014, 「從哨堡到邊牆: 明代對湘西苗疆治策的演遞—兼論明代治苗與土司制度的關係」,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2期。
- 陳廷亮, 2006, 「土司時期湘西土家族地區社會經濟形態簡論」,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2期。
- 祝國超, 2009, 「明代中央政權對土司的政治控制探析—以土家族土司為例」, 『社會科學家』 11期。
- 彭武一, 1987, 「明清年間湘西的土家與苗家—初論土家族苗族歷史上的和睦友好關係」,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1期。
- 彭春芳, 2010, 「明清時期湘西苗疆“邊牆”研究」,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Herman, John E., 1997, “Empire in the Southwest: Early Qing Reforms to the Native Chieftain Syste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6, No. 1.
- Sutton, Donald S., 2003, “Violence and Ethnicity on a Qing Colonial Frontier: Customary and Statutory Law in the Eighteenth-Century Miao Pale,” *Modern Asian Studies*, Vol. 37, No. 1.

“양순음역(陽順陰逆), 승극출겁(乘隙出劫)”  
- 명(明) 가정(嘉靖) 연간 상서(湘西) 지역의  
묘족(苗族) 반란과 국가 권력

정철웅

이 논문에서는 상서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소수민족 반란을 통해 명초(明初) 이래 유지된 토사제도(土司制度)의 한계를 반란과정에서 드러난 토관(土官)들의 행태를 통해 살펴봤다. 오寨(五寨)와 간자평(篁子坪) 장관사(長官司)의 설치과정에서 드러나듯, 매우 불안정한 채로 시행된 명 초 토사제도는 대토사(大土司) 위주의 정책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소토사(小土司)들과 생묘(生苗)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명 왕조의 군사력에 도전했으며, 이러한 군사적 도전에 명 왕조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명(明) 가정(嘉靖) 연간의 묘족 반란을 통해, 관군과 토관들의 결합, 이해관계에 따라 자주 태도를 바꾼 토사들의 이반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토관들은 대담하게 관군에게 인질을 요구하거나,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대가로 반란 지역 토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등장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당시 토관들이 소수민족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명 왕조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심지어 토관에게 금전

을 지급하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토관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 골몰했다.

당시 명 왕조는 이런 토관들의 행태와 토사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군사적 진압으로 일관했다. 결국 토관들의 이러한 비협조로 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명 왕조는 명 중엽 이후 많은 군사 시설물의 신설과 확충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명 중엽 건설된 변장(邊牆)이 방어적 기능 외에, 생묘(生苗) 지역에 대한 통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한 일종의 군사 경계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생묘·숙묘(熟苗)·한인(漢人)들이 뒤섞여 있었으며, 반란 진압에 나선 관군조차도 다양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명대 이 지역은 분명히 착종(錯綜)의 세계였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를 토사제도를 통해 일률적으로 통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때, 강희(康熙) 19년(1680) 진주지부를 지낸 유응중(劉應中)이 변장의 재건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변장 문제는 진주(辰州) 한 곳이 아닌, ‘전초지보장(全楚之保障)’의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 건 매우 의미 있다.

결국 강희제(康熙帝)가 개토귀류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청초(淸初)를 지나, 옹정(雍正) 연간에 이르러 전면적인 개토귀류(改土歸流)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보다 호광(湖廣) 지역은 물론 소수민족 지역 모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견상 개토귀류는 토사제도에 내포된 토관·위소(衛所)·생묘·숙묘·한인 등의 다의성을 소수민족 대(對) 한족이라는 단일성으로 환원시킨 조치라 할 수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한 규명이 필요하다.

**주제어:** 반란, 변장(邊牆), 상서(湘西) 지역, 소수민족, 영순(永順)과 보정(保靖) 토사(土司), 오채(五寨)와 간자평장관사(管子坪長官司), 토사제도(土司制度)

## ABSTRACT

# The Miao Insurrections and State Power in Western Hunan Province during the Emperor Jiajing's Rule of the Ming Dynasty

Chung Chulwoong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ollapse of the chieftain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through the insurrections of ethnic minorities in western Hunan Province in the early Ming dynasty and maintained subsequently, is reflected in the behavior of tribal chiefs in a series of insurrections. As see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osition of squad leader in the Wuzhai and Ganziping areas and the chieftain system inaugurated in a very incomplete form in the early Ming period, there was no more than a grand chieftain-oriented policy similar to a pacification commissioner. This is why the Ming dynasty failed to effectively meet the military challenges against state power which were raised in a variety of ways by sub-chieftains and the wild Miao in areas inhabited by ethnic minorities.

The Miao insurrections which occurred during the rule of the Jiajing

Emperor clearly reveal the union of the government army and tribal chiefs, and the periodical secession of tribal chiefs who were apt to change their posi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ests. Further, some tribal chiefs claimed their right to hostages to the Ming government army, or to the estate of rebels after they had suppressed the insurrection.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the tribal chiefs at that time had already established their power in the areas of ethnic minorities. The Ming dynasty provided cash to them in order to suppress the rebels, which eventually allowed the tribal chiefs to fill their pockets.

Even though the Ming dynasty was clearly aware of such behavior by tribal chiefs and the serious problems of the system, the government was unswervingly devoted to assuming military measures without arriving at tangible and fundamental solutions. The lack of commitment by tribal chiefs led to the Ming dynasty's failure to suppress the revolts completely, which caused insurrections to occur periodically in these regions. From the middle of the Ming period, the dynasty had been endeavoring to establish and expand the military facilities, but this seemed to be no more than a passive defense strategy. In this light, we must remember that the frontier wall, which was built during this period, was not only a defense line but also a type of military border line intended to evade their control over the wild Miao.

Considering that Western Hunan Province was a region with an ethnic mixture of wild Miao, tame Miao, and Han people, we can observe that during the Ming dynasty the province was certain to be in disorder in various contexts. It was essentially impossible, therefore, to rule this region of diversity only through the uniform chieftain system.

Consequently, it is meaningful that Liu Yingzhong, who served as the prefect of Chenzhou in 1680, while assuming a careful attitude toward the reconstruction of the Frontier Wall insisted that the matter of the Frontier Wall was not merely that of a single place in Chenzhou, but of the Huguang region.

The eventual reason why the Yongzheng Emperor took the step of extensively carrying out the “*gaitu guiliu*” policy following the Kangxi Emperor’s having assumed a very careful attitude toward it must be, above all, his reconsideration of not only the Huguang area but also the areas of the ethnic minorities. For that reason, the *gaitu guiliu* policy seems to have been a strategy of transition from the multi-spectrum of tribal chiefs, guards, wild Miao, tame Miao, and Han people, which is implied in the chieftain system, to the single spectrum of ethnic minorities vs. Han people. However, this transition requires closer examination in the future.

**Keywords:** chieftain system, ethnic minorities, frontier wall, insurrections, Western Hunan Province, Wuzhai and Ganziping squad leader, Yongshun and Baojing chieftaincy

#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김홍길 |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귀주성 설치의 배경
- III. 귀주 행정기구와 토사(土司)
- IV. 토착민의 저항
- V. 맺음말



## I. 머리말

중국 서남부에 위치한 귀주성은 현재 중국의 성별(省別) 국내총생산액(GDP)의 순위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 속해 있다.<sup>1</sup> 귀주는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가 매우 적은 지형으로 온난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띠고 있는데, 예로부터 가난한 지역으로 불렸고<sup>2</sup>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다른 성과의 격차는 현저하다. 그로 말미암아 성의 재정 자립도 역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sup>3</sup>

그런데 귀주의 열악한 재정 상태는 처음 성이 설치될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귀주성이 설치된 것은 명대 초기 영락(永樂) 연간(1403~1424)인데 초창기부터 다른 성에서 재정 원조를 받아야 했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을 무릅쓰고도 명 조정이 귀주 지역에 성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에 관한 논의는 제II장에서 나올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귀주는 현재도 이른바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인데, 명대 초기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상황이어서 비록 성을 설치하고 예하에 부(府)를 두었다 해도 그 밑에 주(州)·현(縣)의 행정기구가 제대로 배치되고 작동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예전부터 내려오던 토착민의 통치

---

\* 투고: 2017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2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중국 각 성의 GDP에서 귀주는 31개 省區市 중 25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http://www.258.com/news/1665476.html>)

2 예로부터 귀주에는 “天無三日晴，地無三尺平”이라는 말이 있어서(朱彝尊 編, 『明詩綜』 卷100, 黔中諺, 『四庫全書』 所收本, 32뒤) 그 기후와 지형을 전해주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에 “人無三分錢”이란 말이 덧붙여졌다.

3 다음의 URL에 1991~2013년까지의 각 성의 재정 적자액이 나와 있다. [http://wenku.baidu.com/link?url=ZxUga60AHtvmkR18FcMiMAk58P2A1Bo2iSEX47YID\\_q1fT6HTbWbh-EpTMNH-mWzoZggNY4IXGwhY44MPPQGNV\\_Q7wX\\_dE7o\\_f6pGCAJ6AK](http://wenku.baidu.com/link?url=ZxUga60AHtvmkR18FcMiMAk58P2A1Bo2iSEX47YID_q1fT6HTbWbh-EpTMNH-mWzoZggNY4IXGwhY44MPPQGNV_Q7wX_dE7o_f6pGCAJ6AK).

기구인 토사(土司)가 강고히 자리잡고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은 III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명조 권력이 밀고 들어가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그곳 원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날 갑자기 무슨 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면서 뭔가 다스리는 사람이 새로 온다고 한다면 그들의 공동체 생활이나 그것이 영위되는 터전의 존속에 대한 심각한 위협 내지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일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었을 것이다. 사실 명대는 물론 청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묘족의 반란으로 대표되는<sup>4</sup> 서남지역 원주민들의 장기간에 걸친 저항투쟁은 그 치열함이나 지속성에서 역사상 유명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명대 귀주성이 설치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발생한 그들의 저항투쟁의 면모를 살펴보고 그에 관한 고찰을 진행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저항투쟁 중에서도 특히 명 초기가 가지는 성격이 있는지도 탐색해볼 것이다.

명청시대 서남지역 원주민의 저항투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중국의 경우 특히 당시 지역사회의 실제 정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의미의 부여가 앞서가는 경향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그 대다수는 한족이 원주민을 소위 문명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입장에서 서서 접근하는 것이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성이 다분하여 때로 역사연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명 초

---

4 여기서 묘족이라 함은 사료에서 쓰이는 용례로서, 오늘날 중국의 소수민족 이름이 아니라 전근대 시대에 중국 남방에 살던 토착민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쓴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H. J. Wiens, 1954, *China's March toward the Tropics*, New Haven, 후에 *Han Chinese Expansion in South China* 로 개제하여 동 출판사에서 출판, 1967, pp. 68~69; R.D. Jenks, 1994, *Insurgency and Social Disorder in Guizhou, The Miao Rebellion, 1854~18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29~30; 田玉隆 等, 2006, 『貴州土司史』 上冊, 貴州人民出版社, 代序 3~4쪽; 吳榮臻 等 編, 2007, 『苗族通史』 第1冊, 民族出版社, 11~12쪽; 吉開將人, 2009, 「苗族史の近代(續篇)」,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 127, 89쪽 등 참조. 이하 본고에서 나오는 묘족 역시 별다른 注記가 없는 한 모두 이 개념에 따른다.

귀주성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로 위소(衛所)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sup>5</sup> 토착민의 저항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6</sup> 구미(歐美)나 일본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본고는 명대 초기 귀주 지역에 성 및 여타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구체적 정황과 그 특성, 그리고 그곳 지역 토착민의 그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매우 영성한 사료의 조건에서나마 최대한 추적하고 분석하여 지역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이 서남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초기 단계에 얽혀 있는 여러 갈등과 모순,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밝혀 중국 소수민족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일조가 되고자 한다.

## II. 귀주성 설치의 배경

명 영락 11년(1413) 2월 귀주승선포정사사(貴州承宣布政使司, 간칭 포정사사 혹은 포정사)가 설치되었다.<sup>7</sup> 포정사는 명 초에 원대의 행중서성(行中書省) 대신 설치한 기구이므로 이의 설치는 귀주가 성급 행정기구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귀주 지역은 고대 이래 토착민이 세운 나라들이 명멸해왔던 곳인데 원

5 陳國安·史繼忠, 1981, 「試論明代貴州衛所」, 『貴州文史叢刊』, 1981年 3期; 郭紅, 2003, 「明代衛所移民與地域文化的變遷」, 『中國歷史地理論叢』 18-2; 鍾鐵軍, 2004, 「釋明代貴州之“州衛同城”」, 『中國歷史地理論叢』 19-1; 湯芸·張原·張建, 2009, 「從明代貴州的衛所城鎮看貴州城市體系的形成機理」,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09年 10期; 唐莉, 2015, 「試論明代貴州衛所的特點」, 『民族史研究』 12 등은 그 대표적 예다.

6 伍新福·龍伯亞, 1992, 『苗族史』, 四川民族出版社, 262~263쪽; 田玉隆 等, 2006, 『貴州土司史』 下冊, 505~513쪽; 吳榮臻 等 編, 2007, 『苗族通史』 第2冊, 404~407쪽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소략한 편이다. 田玉隆 等, 2006은 비교적 자세하나 본격적인 분석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7 『太宗實錄』 卷137, 永樂 11年 2月 辛亥.

8 앞서 洪武 15년(1382)에 군사기구인 都指揮使司를 설치하였고 永樂 15년(1417)

대에 들어와 중원왕조에 복속되면서 이른바 토사가 통치하는 곳이 되었다. 토사란 원대에 시작된 것으로, 변경의 토착민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왕조권력에 반기를 들지 않도록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대부분 기존의 토착민 지배자에게 준 관직의 통칭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위사(宣慰司)·선무사(宣撫司)·안무사(安撫司)·장관사(長官司) 등 관부(官府)의 장(長)이나 토지부(土知府)·토지주(土知州)·토지현(土知縣) 등을 가리킨다.<sup>9</sup> 토사는 그 지배지역에 대해서 원래 하던 그대로 자율적으로 다스리고 그 지위도 세습한다. 따라서 이는 당대(唐代)의 기미(羈縻)제도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다.<sup>10</sup>

홍무(洪武) 4년(1371) 명군(明軍)이 사천(四川) 쪽으로 진군해오자 귀주 지역의 토사 중에는 명조에 복속되기를 청하는 자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귀주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귀주선위사(貴州宣慰使) 애취(爨翠)와 송몽고알(宋蒙古歹) 등이다.<sup>11</sup> 명조는 그들에게 원래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그 밑의 장관사들을 관할토록 하였다. 당시 명조의 관심은 운남(雲南)에서 버티고 있는 원조(元朝)의 종친 양왕(梁王)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에 있었다. 귀주 지역은 호광(湖廣)에서 운남에 들어가는 교통로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기에 명조로서는 이 지역을 안정되게 유지하여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절

---

에 사법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提刑按察使司를 설치하여 성급 단위의 최고기구인 三司가 모두 성립되었다.

- 9 전자는 武職 계통이고 土字가 붙는 후자는 文職 계통으로 각각 정해진 품급이 있다. 자세한 것은 余貽澤 등, 1968, 『明代土司制度』, 臺灣學生書局, 7~8쪽; 龔蔭, 1992, 『中國土司制度』, 雲南民族出版社, 63~67쪽 등 참조. 토사는 또한 土官으로도 불리는데, 전자의 司와 같은 용례로 쓰지 않고 흔히 함께 쓰이고 있다.
- 10 土司制는 羈縻制보다는 제도의 내용면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된 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중앙정부와의 역학 관계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자세한 것은 龔蔭, 1992, 위의 책, 22~23쪽; 김홍길, 2005, 「명대의 彝族 정권과 土司」, 『중국과 한국』(崔韶子教授停年紀念論叢), 서해문집, 389~390쪽 등 참조.
- 11 당시 貴州宣慰使司는 四川行省 소속이었고 그들이 歸附한 것은 洪武 5년 초였다(『太祖實錄』卷71, 洪武 5年 正月 乙丑). 한편 萬曆 『貴州通志』에서는 앞서 洪武 4년에 酋長 密定 등이 歸附한 예를 들고 있다(萬曆 『貴州通志』卷3 合屬志, 貴陽府, 3뒤~4앞).

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명조는 군사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과 함께 이 지역의 토착민 지배자들을 포섭하는데 나섰다. 홍무 4년에 귀주위(貴州衛)와 영녕위(永寧衛, 현재는 사천의 서영현[敘永縣] 지역)를 설치하고<sup>12</sup> 다음 해에 평벌(平伐)·노산(蘆山)·산목(山木) 등의 원주민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그곳의 지배자들이 와서 복속을 청하도록 만든 것은 그 한 예다.<sup>13</sup>

빈발하는 토착민의 저항을 제압하고(IV장 참조) 배후를 안정시킨 명조는 홍무 14년(1381) 드디어 운남에 쳐들어가 양왕 세력을 몰아내고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듬해에 그곳에 14개의 위(衛)를 설치하였다.<sup>14</sup> 그러나 역시 귀주 지역의 교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운남의 지배가 흔들릴 수 있음을 염려한 주원장(朱元璋)은 “지금 이미 운남을 취하였는데…… 애취와 같은 무리들이 다 복종하지 않으면 비록 운남을 차지했다 해도 또한 지키기 어렵다”<sup>15</sup>고 말할 정도였다.

귀주 지역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군대의 주둔이 필요하였다. 우선 새로운 군사지휘부로서 귀주도지휘사사(貴州都指揮使司, 간칭 도사[都司])를 홍무 15년(1382)에 창설하고, 그 후 호광에서 운남에 이르는 교통로의 요지에 위소(衛所)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지도 1에서<sup>16</sup> 보는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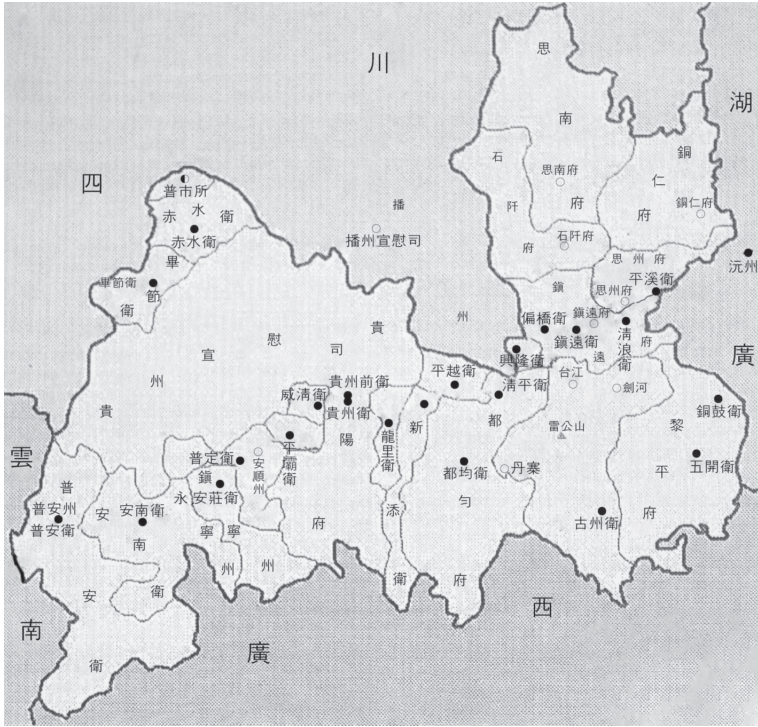
12 당시 貴陽 지역은 湖廣行省 예하에 있었으나 貴州衛를 설치하면서 永寧衛와 마찬가지로 四川의 成都都衛에 소속시켰다(『太祖實錄』 卷70, 洪武 4年 12月 丙申).

13 『太祖實錄』 卷75, 洪武 5年 7月 壬子.

14 14개의 衛는 雲南左·右·前·後·善定·黃平·建昌·東川·烏撒·善安·水西·烏蒙·芒部·尾洒이다.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年 正月 丁亥條 참조.

15 今雲南旣克, …… 至如靄翠輩不盡服之, 雖有雲南, 亦難守也 (『太祖實錄』 卷141, 洪武 15年 正月 甲午). <지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靄翠는 영역이 가장 광활한 貴州宣慰司를 지배하고 있어서 주원장은 귀주 지역을 대표하는 토사로 그를 들고 있는 것이다. 靄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홍길, 2005, 앞의 논문, 392~396쪽 참조.

16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제7책, 中國地圖出版社, 明代 貴州 지도를 저본으로 衛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까만 동그라미가 衛를 가리키고 반달 모양은 直隸所인 守禦千戶所다. 교통로의 요지에는 驛站도 설치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楊正泰, 2006, 『明代驛站考』 增訂本, 上海古籍出版社, 127쪽도 참조.



지도 1 명대 귀주 지역 위(衛)의 배치

같이 위(衛)가 설치된 위치가 주로 그 교통로에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당시 명조의 귀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명 시기 전체에 걸쳐 귀주 지역에 설치된 위는 전부 29개인데 이 중 대부분이 홍무 연간에 설립된 것이다(표 1) 참조.<sup>17</sup>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의 설치가 집중되는 시기는 홍무 23년(1390)이고 그다음은 홍무 15년 무렵이다. 홍무

17 『太祖實錄』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서 귀주 지역이라 함은 <지도 1>에 나타나 있는 명대 귀주 지역을 가리킨다.

〈표 1〉 홍무 연간에 설치된 귀주 지역의 위(衛)

| 위 명칭 | 현재 위치  | 설치 시기      | 설치 당시 소재지 | 비고              |
|------|--------|------------|-----------|-----------------|
| 貴州   | 貴陽市    | 洪武 4년 12월  | 貴州宣慰司     |                 |
| 永寧   | 四川 敘永縣 | 〃          | 永寧安撫司     |                 |
| 普定   | 安順市    | 洪武 15년 1월  |           | 3월에 軍民指揮使司로 됨   |
| 普安   | 普安縣    | 〃          | 普安軍民府     |                 |
| 黃平   | 黃平縣    | 〃          | 黃平安撫司     | 윤2월에 千戶所로 되돌아감  |
| 烏撒   | 威寧縣    | 〃          | 烏撒部       | 소속: 雲南→四川→貴州都司  |
| 平越   | 福泉縣    | 〃 윤2월      | 貴州宣慰司     |                 |
| 畢節   | 畢節市    | 洪武 17년 2월  | 〃         |                 |
| 五開   | 黎平縣    | 洪武 18년 4월  | 思州宣慰司     | 思州 苗亂 진압 후 설치   |
| 赤水   | 四川 敘永縣 | 洪武 21년 10월 | 貴州宣慰司     | 초기에는 四川都司 소속    |
| 層臺   | 畢節市    | 〃          | 〃         |                 |
| 興隆   | 黃平縣    | 洪武 22년 6월  | 黃平安撫司     | 黃平 苗亂 진압 후 설치   |
| 鎮遠   | 鎮遠縣    | 〃 7월       | 思南宣慰司     | 湖廣都司 소속         |
| 新添   | 貴陽市    | 洪武 23년 2월  | 貴州宣慰司     | 후에 軍民指揮使司로 됨    |
| 平溪   | 玉屏縣    | 〃 3월       | 思州宣慰司     | 湖廣都司 소속         |
| 龍里   | 龍里縣    | 〃 4월       | 貴州宣慰司     | 〃               |
| 清浪   | 青溪縣    | 〃          | 思南宣慰司     | 湖廣都司 소속         |
| 偏橋   | 施秉縣    | 〃          | 〃         | 〃               |
| 威清   | 清鎮市    | 〃          | 貴州宣慰司     |                 |
| 平壩   | 安順市    | 〃 윤4월      | 金筑安撫司     |                 |
| 安莊   | 鎮寧縣    | 〃 5월       | 納吉堡       |                 |
| 都勻   | 都勻市    | 〃 10월      | 都勻安撫司     | 都勻 苗亂 진압 후 설치   |
| 安南   | 普安縣    | 〃 12월      |           | 25년에 현 晴隆縣으로 옮김 |
| 淸平   | 凱里市    | 洪武 23년     | 淸平長官司     |                 |
| 貴州前  | 貴陽市    | 洪武 26년     | 貴州宣慰司     |                 |
| 古州   | 榕江縣    | 〃          | 思州宣慰司     | 얼마 안 가서 7월에 폐지  |
| 銅鼓   | 錦屏縣    | 洪武 30년     | 〃         |                 |

15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귀주도사를 설치한 때이기도 하고 운남 지역을 장악한 후의 조치인데, 홍무 23년의 설치는 바로 조금 앞선 시기의 토착민의 저항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홍무 17년 운남 원정군이 회군한 이후 토착민의 강렬한 저항투쟁이 빈발하여 홍무 21년 다시 원정군이 투입되어 진압하면서 위를 많이 설치했던 것이다. 토착민의 저항투쟁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위소는 또한 단순한 군사기구가 아니다. 주원장은 안정적인 군량조달과 재정부담의 절감을 위해서 위소에 둔전(屯田)을 설치토록 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가족들을 데리고 와 살게 하였기 때문에 위소는 군호(軍戶)들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터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소의 둔전은 군량의 보급을 위한 것임은 물론, 군호와 그 가족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제도상 한 위는 그 밑에 다섯 개의 천호소(千戶所)를 관할하고 있고 한 천호소는 그 밑에 10개의 백호소(百戶所), 한 백호소는 밑에 두 개의 총기(總旗), 한 총기는 밑에 5개의 소기(小旗)를 관할하는데, 한 소기가 병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위는 대략 5,600명 정도를 거느리는 부대다.<sup>18</sup> 그 밖에 여기에 가족들이 더해지므로 위소의 설치는 대량의 한족 이민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그들의 생존과 부대의 운영을 위해 역시 대량의 둔전이 필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둔전의 토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귀주 지역은 왕조권력이 새로 들어온 곳이므로 토착민이나 토사의 땅을 빼앗는 것에 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sup>19</sup> 홍무 연간 귀주도사 소속의 둔전 원액이 9,339경(頃) 29무(畝) 정도인데<sup>20</sup> 그중에 많은 부분이 점탈된 것이라면 그것이 토착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명약 관화한 일이다. 토착민의 강렬한 저항이 일어났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

18 『明史』 卷90 兵志二, 中華書局 활자본, 1974, 제8책, 2193쪽.

19 王毓銓, 1965, 『明代的軍屯』, 中華書局, 92~93쪽 참조.

20 萬曆 『大明會典』 卷18 戶部五, 屯田, 7뒤~8앞. 여기서 제공되는 군량은 93,811石 7斗 4升 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는 반년의 용도밖에 안 되어 湖廣과 四川 두 省에서 協濟를 받는다고 하였다. 수치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何起鳴, 『嚴權協濟疏』, 萬曆 『貴州通志』 卷19 經略志 上, 6뒤~7앞도 참조.

을 수 없다.

홍무제는 토착민의 저항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도 토착민의 지배층인 토사에게는 회유책으로 나왔다. 그들의 지배권을 인정해주면서 다만 권력 승계시에는 입조(入朝)하라는 조건을 달고 부세(賦稅)도 납부하라는 의무를 지웠다. 그러나 부세라 해도 실제로는 토사가 내겠다는 액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침인데다가 그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불문에 부치는 경우도 있었다. 홍무 7년(1374)에 중서성(中書省)에서 파주선위사(播州宣慰司)와 귀주(貴州)·금축(金筑) 등 장관사의 공부(貢賦) 액수를 정하자고 상주하자 홍무제는 “파주는 서남이(西南夷)의 땅으로 옛날부터 판도에 들어와 공부(貢賦)를 바쳐와서 다만 마땅히 고요함으로써 다스려야 할 것이니(當以靜治之) 혹 소란을 피워도 그 본성이 아닐 것이다. 짐이 천하에 군림하매 그가 술선해서 귀부해왔으니 모든 전세(田稅)는 그 수입에 따르고 꼭 다시 액수를 정할 필요가 없다”<sup>21</sup> 고 하였다. 홍무 21년(1388)에는 호부(戶部)에서 귀주선위사와 금축안무사가 여러 해 동안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상주하자 역시 말하기를 “오랑캐가 궁벽한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조정을 두려워하여 부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성교(聲教)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니 그 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어찌 고의겠느냐? 반드시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있어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것일 터이니 그 체납한 것은 모두 감면해주도록 하고 이제 마땅히 그 액수를 정할 때에 관대하게 감해주는 것에 힘쓰라”<sup>22</sup> 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홍무제의 시대가 가고 영락 연간이 되면 기류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감지된다. 홍무 14년(1381) 무렵 도독(都督) 마엽(馬燁)은 귀주선위사를 없애고자 그들을 격분시켜 반란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선위사(宣慰使) 사향(奢香)을 육보였는데 사향은 선위동지(宣慰同知) 유숙정(劉淑貞)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

21 『太祖實錄』 卷88, 洪武 7年 3月 甲戌.

22 『太祖實錄』 卷188, 洪武 21年 2月 庚申.

고 홍무제에 호소하여 마역을 죽이도록 한 일이 있었다.<sup>23</sup>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에 따르면 홍무제는 황후에게 마역이 충성심에서 한 일이었을 뿐인 것을 알기는 하지만 어찌 한 사람을 아껴 한 지방을 편안치 않게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다.<sup>24</sup> 반면 영락 3년(1405) 귀주도지휘첨사(貴州都指揮僉事)가 사사롭게 분을 내어 토관을 장살(杖殺)한 일이 있었는데, 담당관이 법에 따라서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상주하였지만 영락제는 변방에 귀양보내고 공을 세워 속죄하라고 처리하였다.<sup>25</sup>

사실 홍무제와 영락제 사이에 서남지역의 토사나 토착민에 대한 인식이나 기본 정책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주 지역에 처음 진입한 상황에 있었던 홍무제와는 달리 이 지역에 왕조권력이 어느 정도 자리잡은 상태로 된 때의 영락제는 토사 문제의 처리를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귀주 지역의 동부에 있는 사남선위사(思南宣慰司)의 전종정(田宗鼎)은 영락 8년(1410)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위사가 되었는데 남쪽의 사주선위사(思州宣慰使) 전침(田琛)과 주사(朱砂)가 함유되어 있는 모래 옹덩이 땅을 놓고 다투어 원한을 맺었다. 한편 종정은 전부터 사남선위부사(思南宣慰副使) 황희(黃禧)와 원한이 있었다. 이에 전침과 황희는 결탁하여 군사를 일으켜 사남을 공격하여 종정의 일가를 도륙내었고 종정은 도망가 조정에 호소하였다. 조정에서는 진원후(鎭遠侯) 고성(顧成)이 군사를 이끌고 와 전침 등을 잡아 수도로 압송하였다. 종정은 이 기회에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여 황희의 불륜 행위를 고발하자 그쪽에서도 종정의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고발하게 되니 이에 영락제는 두 토사를 다 폐하고 사남선위사 땅에 사남·진원(鎭遠)·동인(銅仁)·오라(烏羅)의 4부(府), 사주선위사 지역에는 사주·신화(新化)·여평(黎平)·석천(石阡)의 4부를

23 『明史』卷316 列傳, 貴州土司; 谷應泰, 『明史紀事本末』卷19 開設貴州 등 참조.  
 24 『明史紀事本末』卷19, 開設貴州.  
 25 『太宗實錄』卷47, 永樂 3年 10月 庚午.

설치하여 이른바 개토귀류(改土歸流)를 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귀주포정사도 설치하게 된 것이다.<sup>26</sup> 바로 귀주성의 탄생이다.

사실 토사끼리의 반목과 분쟁은 전부터 여러 곳에서 자주 있어왔던 일이었다. 영락제 자신도 전에 오랑캐끼리 서로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온 일이라고 말한 터에<sup>27</sup> 이번엔 이 사단을 계기로 아예 개토귀류를 행하고 더 나아가 성급 행정기구까지 설치하는 데 이른 것이었다. 그만큼 이전보다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본 것일 터인데 무엇보다도 역시 군사적인 제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홍무 연간에 귀주 지역에 위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한 것을 간과할 수 없겠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고성면밀한 작전으로 두 선위사를 신속히 체포하고 지역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도 작용하였으리라고 본다.<sup>28</sup>

### Ⅲ. 귀주 행정기구와 토사(土司)

귀주포정사사의 설립으로 귀주가 성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외모는 갖추었으나 실상은 껍데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우선 사남·사주 두 선위사 지역에 설치된 8개 부(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하에 주현(州縣)이 포진되어 관할하는 전 지역을 아우르는 게 아니라 주현은 오히려 소수거나 아니면 아예 주현이 없이 원래 선위사 밑에 있던 장관사 등 토사기구가 그대로 다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주부가 바로 그러한 예로, 밑에 장관사 넷이 있는게 전부였고, 여평부는 현은 하나에 장관사가 13개였으며, 석천부는 현 하나에 장관사 셋, 사남부는

26 『太宗實錄』卷137, 永樂 11年 2月 辛亥.

27 永樂 2년에 麓川 등의 宣慰司에서 孟養 등 府가 자주 침입해온다고 호소하자 禮部에서 孟養 쪽을 벌주자고 건의하였는데 영락제는 “蠻夷相攻奪, 自昔有之”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太宗實錄』卷30, 永樂 2年 4月 癸未條 참조.

28 『明史紀事本末』卷19, 開設貴州.

3현 3장관사, 진원부는 2현 1장관사, 동인부는 1현 5장관사 등이었다. 신화부와 오라부는 후에 장관사로 강등되어 각각 여평부와 동인부에 속하게 된다.<sup>29</sup>

이들 이외에 나중에 부로 되는 것이 정번(程番, 후에 귀양[貴陽])·안순(安順)·도균(都勻)·평월(平越)인데 그 예하에 각각 3주 2현 16장관사, 3주 6장관사, 1주(州) 1현 8장관사, 그리고 2위(衛) 1주 3현 2장관사가 있다. 그 밖에 직예주(直隸州)로 진녕(鎭寧)·영녕(永寧) 그리고 보안(普安)이 있고, 위가 군민지휘사사(軍民指揮使司)의 이름으로 행정기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으니 필절(畢節)·적수(赤水)·신첨(新添) 등이다.<sup>30</sup>

부에 속해 있는 주현의 숫자를 말했으나 사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출입이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주현이 설치된 시기를 주목해보아야 한다. 귀양부 같은 경우 주현이 설치되는 것은 대부분이 만력(萬曆) 연간(1573~1619)에 가서의 일로 그동안엔 온통 장관사 같은 토사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 토사의 협조가 없이는 행정이 운용될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사와의 협치(協治)구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포정사가 설치된 지금의 귀양시도 귀주선위사와 귀주선위동지(貴州宣慰同知), 즉 수서(水西)와 수동(水東)의 양대 토사가 나누어 관할하던 곳이었다.<sup>31</sup> 그 밖의 부 중에는 부 자체의 설립시기가 늦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예하 주현의 설치시기가 일러도 홍치(弘治) 연간(1488~1505) 정도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주현이 설치된 뒤에도 장관사의 숫자가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행정기구가 중국 본토의 경우와 같이 운용될 수가 없었다. 우선 행정기구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명대 행정기구의 기저에서 작동의 기반이 되는 이갑(里甲)을 조직하기 힘들어서 이갑이 편성된 곳이 매우 적었다.<sup>32</sup> 주민의 대다수가 토착민이고 그들은 토사의 관

29 牛平漢 編著, 1997, 『明代政區沿革綜表』, 中國地圖出版社, 176~199쪽 참조.

30 牛平漢 編著, 1997, 위와 같음.

31 湯芸·張原·張建, 2009, 앞의 논문, 10쪽.

32 羅康智 等 編, 2008, 『明史貴州地理志考釋』, 貴州人民出版社, 11~12쪽.

할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명의 행정조치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이다. 본래 이곳의 부주현의 전신이 위소였던 만큼 이갑 대신에 작동하는 것은 군사조직이었다. 다시 말하면 둔전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일반 행정기구 쪽으로도 흘러와야 했던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 토사 쪽의 협조나 이웃한 성(省)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sup>33</sup>

사실은 부주현의 관아 자체가 대개 위소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본래 원주민이 살던 곳에 들어와서 한 곳을 차지하여 성보(城堡)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며 정착해나간 과정이라 행정중심지라는 곳이 마치 원주민의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은 양상을 띠었던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구의 명칭을 가지고는 있어도 군사기구에 의지하는 바가 많았다. 만력 연간에 관원을 역임하고 여행을 즐기며 지리에 밝았던 왕사성(王士性)은 귀주 지역에 대하여 “그 개설 초기에는 단지 위소(衛所)만 있다가 나중에 점점 유관(流官)으로 바뀌어 군읍(郡邑)을 두었는데 모두 위소 안에 있었다. 위소가 주인이고 군읍이 객(客)인 것이다”<sup>34</sup>라고 하여 당시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토사 쪽을 보기로 하자. 원대 이전에는 독립적인 작은 국가들을 이루고 살던 귀주 지역의 토착사회가 원대에 들어오면서 왕조권력에 복속되어 그 지배층이 토사로 임명되었는데 사실상 거의 반독립적인 상태였다. 당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귀주 지역의 토사는 귀주(貴州)·사주(思州)·사남(思南)의 세 선위사였다.<sup>35</sup> 귀주선위사는 당시 과라(猓族)라 불리던 민족이 그 주체가 되어 있는데, 과라는 지금의 이족(彝族)에 해당하는 민족으로 고대부터 강대한 세력을 지녀 서남지역에 웅거하는 국가를 세우기도 하였으니 당대(唐代)의 남조(南詔)가 그것이다. 송대에는 대리국(大理國) 동쪽에서 소국을 경영하다가 원대에

33 曹端波, 2014, 「明代“苗疆走廊”的形成與貴州建省」, 『廣西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6-3, 20쪽 참조.

34 王士性, 『廣志釋』卷5 西南諸省, 貴州, 中華書局, 2006년 활자본, 325쪽.

35 현재 遵義 지역을 중심으로 한 播州宣慰司도 역시 강대한 토사였는데 당시에는 사천에 속해 있어 제외하였다.

들어와서는 역해불설(亦奚不薛, 즉 水西) 선위사가 되었다가 명대에 들어와 귀주선위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명 초기에는 선위사가 애취였는데 홍무제도 그의 동향에 매우 신경을 썼던 것은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또 이미 언급한 마엽의 사건에서 나왔던 사향은 바로 애취의 처(妻)로 애취가 죽은 후 선위사가 되었던 것이다.<sup>36</sup>

이 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데다가 지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귀주선위사이니 그 자리에 비록 위를 두 개나 설치하고(지도 1 참조) 또 성급 행정기구를 세웠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토사가 아니었다. 사실상 귀주의 행정체계는 선으로 이어진 것에 불과하고 면으로는 확장되지 못했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명 말에 이르러 만력삼대정(萬曆三大征)의 하나로 유명한 파주(播州)의 양응룡(楊應龍)의 난을 능가하는 규모의 사안(奢安)의 난은 바로 귀주선위사 세력이 주체가 되어 일어났던 것이다.

사주와 사남의 전씨(田氏)는 원래 같은 일족으로 이미 송대부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원대에 와서 사주선위사로 임명되었는데, 명대에 들어와 홍무제가 사주와 사남의 두 선위사로 나누었던 것이다.<sup>37</sup> 그 후 주사(朱砂)가 포함되어 어있는 모래 웅덩이 지역을 놓고 두 선위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명대 귀주 지역에 있었던 토사는 전부 228가(家)를 헤아리는데 이 중 선위사가 넷, 선위동지가 둘, 안무사가 일곱, 정장관(正長官)이 120, 토지휘사(土指揮使) 1 등이고, 문관 계통으로는 토지부 2, 토지주 1, 토지현 2 등이 있고 나머지는 각각의 속관에 해당하는 직함으로 역시 가문이 정해져 있다.<sup>38</sup> 이 중에서 하위직을 이루는 토사의 소속은 원래 그 위의 상급 토사가 되지만, 명조의 행정기구가 설치된 이후에는 토사라도 명조의 기구에 속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것도

36 김홍길, 2005, 앞의 논문, 396~397쪽 참조.

37 『明史』 卷316 列傳, 貴州土司, 思南.

38 龔蔭, 1992, 앞의 책, 747쪽 참조.

명 측의 소속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경주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원래 귀주선위사 예하의 장관사는 23개였는데 성화(成化) 12년(1476)에 귀양(貴陽) 남쪽의 정번(程番) 장관사에 정번부를 설치하여 선위사 예하에 있던 팔번(八番)·소정번(小程番)·방번(方番)·나번(羅番)·상마교(上馬橋)의 다섯 장관사를, 다른 안무사 예하의 목과(木瓜)·마향(麻響)·대화(大華)·노산(廬山)의 네 장관사와 함께 가져갔다. 용경(隆慶) 3년(1569)에는 정번부의 이름을 귀양부(貴陽府)로 고치면서 치소(治所)도 귀양성(貴陽城)으로 옮겨 성의 북쪽 반을 관할하게 하여서 선위사 예하의 장관사를 다시 11곳으로 줄였다.<sup>39</sup> 만력 연간에 들어와서는 귀양부 관할이 장관사 18에, 안무사 하나로 된 것에 대해서 선위사 예하로는 수동(水東)·중조(中曹)·청산(靑山)·차좌(筓佐)·용리(龍里)·백납(白納)·저채(底寨)·괴서(乖西)·양용갱(養龍坑)의 9개 장관사만 남게 된다.<sup>40</sup> 요컨대 귀주선위사의 영향력을 그렇게 해서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조 관부의 귀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침투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 부호를 찍지 않을 수 없다. 토사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주현은 물론, 토사의 통치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도처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시인들의 이른바 생계(生界)고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른바 생묘(生苗)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앞의 지도 1은 만력 10년(1582)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때에도 여평부와 도균부 사이에 아무런 지명이 없는 곳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묘강(苗疆)이라고 불린 생계 지역인 것이다.<sup>41</sup> 지도상에서 금방 확인되는 광대한 지역이 생계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고 토사나 주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도 소규모의 생계가 도처에 존재하

39 乾隆『貴州通志』卷3, 建置, 13앞~뒤.

40 『明史』卷316 列傳, 貴州土司, 貴陽.

41 譚其驤의 지도에는 裡古州라고 하여 마치 행정기구가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그것은 오류다. 楊斌, 2015, 「《譚圖》明代貴州地圖正誤」, 『貴州社會科學』 307-7, 63~64쪽 참조.

였다. 원주민들은 국가권력이나 토사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당할 때에는 그곳을 지키기 위한 저항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명대는 물론 청대에도 빈발했던 것으로 유명한 이른바 모란(苗亂)은 그들이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그곳의 한족의 입장에서 생계의 존재는 하나의 도피처가 되기도 하였다. 군호(軍戶)의 도피자나 민호(民戶)의 요역을 피하려는 자, 또는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였고, 한족의 생활과 문화에 접하여 한족과 생묘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숙묘(熟苗)가 생계를 드나들며 이익 활동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토착민의 반란에는 여러 원인이 얽혀 있지만 그 가운데는 권력자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과 생계 사이에서 활동하는 숙묘나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특히 명대 중기 이후에 그러하였다.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한 약간의 언급을 할 것이다.

#### IV. 토착민의 저항

명대 초기, 즉 홍무에서 영락 연간에 이르는 시기 귀주 지역의 반란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이 되는데,<sup>42</sup> 대략 1, 2년 혹은 3년 간격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조 권력이 이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시기에 일어난 것이니 앞서 위소의 설치 시기를 보여준 <표 1>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위소의 설치의 처음에는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기 위해서지만 후에는 대개 반란을 진압한 후에 이루어지는 예가 많았다. <표 1>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홍무 18년(1385)에 오개위(五開衛)를 설치한 것은 그 지역의 반란을 진압한 뒤의

42 비교에 주기가 없는 한 모두 실록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엄밀하게 명대 귀주의 영역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귀주와 접경지대에 있는 호광 서쪽이나 사천 남부 지역도 일부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는 당시 소속의 출입이 있는 경우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그 반란이 귀주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쳤거나 관련이 깊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2〉 명 초기 귀주 지역의 반란

| 시기       | 지역       | 주모자     | 진압자    | 비고                   |
|----------|----------|---------|--------|----------------------|
| 洪武 5년 1월 | 古州       |         | 江陰侯 吳良 |                      |
| 6년 3월    | 貴州衛 太平伐  |         |        | 苗獠의 난                |
| “ 4월     | 思南屬 長官司  |         |        | 土官 楊世榮을 축출           |
| “ 윤11월   | 新添衛 谷峽 등 | 의令      | 指揮僉事張岱 |                      |
| 7년 1월    | 新添衛 平伐 등 |         | “      |                      |
| “ 12월    | 播州       | 黃安      | “      |                      |
| 8년 3월    | 平猪 등 14寨 |         | “      |                      |
| “ 5월     | 平越衛 江力 등 | 土酋 把具 등 | 指揮同知胡汝 | 苗獠 2,000여 명          |
| 9년       | 瓮蓬 등 寨   |         | 指揮 顧成  | 民國 『貴州通志』            |
| “ 10월    | 黃平       | 都麻堰     | 重慶諸衛   |                      |
| “ 12월    | 新添       |         | 指揮 顧成  | 狻猊의 난                |
| 11년 6월   | 五開       | 吳面兒     | 指揮 楊仲名 |                      |
| 14년 5월   | 五溪       |         | 江夏侯周德興 |                      |
| 15년 4월   | 普定 西堡    |         | 指揮同知顧成 | 蠻 15,000여 명 普定 공격    |
| 18년 4월   | 思州       |         | 信國公 湯和 | 分屯하여 살다가 진압          |
| “ 7월     | 五開       | 吳面兒     |        |                      |
| 19년 5월   | 靖州       |         |        |                      |
| “ 6월     | 平越衛 麻哈   | 楊孟      | 穎國公傅友德 |                      |
| 22년 4월   | 都勻       |         | 都督僉事何福 | 참수 4,700여, 금획 6,390여 |
| “ 6월     | 黃平       |         | 穎國公傅友德 |                      |
| 23년 1월   | 平越       |         | 延安侯唐勝宗 | 平越衛 土兵, 亂에 合勢        |
| “ 6월     | 都勻 散毛洞 등 |         | 鳳翔侯 張龍 |                      |
| “ 8월     | 普安       | 百夫長 密卽  | 都指揮 蔣文 |                      |
| “ 10월    | 都勻       |         | 都督 何福  |                      |
| 24년 11월  | 五開       |         | 都督 茅鼎  | 25년 2월 평정. 『明史』      |
| 25년      | 天柱·五開·龍里 | 王漢      |        | 26년 정월에 京師 압송        |

| 시기      | 지역        | 주모자        | 진압자    | 비고                   |
|---------|-----------|------------|--------|----------------------|
| “ 1월    | 都勻·畢節     |            | 何福     | 民國『貴州通志』             |
| 26년 7월  | 普定 西堡     | 寨長 卜刺贊     | 都指揮 顧成 |                      |
| 27년 12월 | 紫江·新藍     |            | 指揮使 程暹 |                      |
| 28년 6월  | 普定 西堡     | 土官 阿傍      | 指揮同知顧成 | 11월 평정, 5,326명擒殺     |
| “ 윤9월   | 沅州        |            | 指揮僉事李貞 | 참수 3,700여, 금획 4,020여 |
| “ “     | 鎮遠 鬼長箐    |            | 指揮 許能  | 참수 73, 금획 38         |
| 29년 1월  | 清水江       | 金牌黃        | 程暹     |                      |
| “ 3월    | 清水江中平寨 등  |            |        | 500명 京師에 압송          |
| “ 5월    | 都勻衛 平浪    | 狄把         | 指揮使 程暹 | 長官司土官 王應名 살해         |
| 30년     | 五開·龍里     |            | 總兵官 宋晟 | 『明史』                 |
| “ 2월    | 水西        | 居宗必登       | 都督僉事顧成 | 4월에 평정               |
| “ 4월    | 古州        | 林寬         | 都指揮使齊讓 | 10월에 평정              |
| “ 6월    | 靖州        | 楊高         | 都督僉事顧成 |                      |
| “ 8월    | 黔陽·辰溪     |            | 楚王 朱楨  |                      |
| 31년 2월  | 水西        | 土酋么不率化狁阿由那 | 都督僉事顧成 | 西堡·滄浪 등 寨長必莫도        |
| “ “     | 普定 西堡     | 阿革榜        | “      | 3,000여 명이 다시 봉기      |
| 永樂 1년   | 普安 安隆所    | 賴子         |        | 民國『貴州通志』             |
| 4년 10월  | 洪州泊里      | 吳蘭 등       |        | 招諭로 해결               |
| “ 12월   | 合江州       | 寨長 光眼 등    | 鎮遠侯 顧成 | 招諭로 해결               |
| 11년 5월  | 思州 臺羅 등 寨 | 苗普亮 등      | 總兵官 顧成 | 이듬해 正月에 진압           |
| 12년     | 箐子坪       | 吳者泥·苗金龍 등  | 副總兵 梁福 | 9월에 진압               |
| “       | 鎮遠 綏寧縣 등  |            |        | 3월에 苗人을 民으로          |
| “ 10월   | 箐子坪       | 吳者泥子 擔竹 등  | 都督僉事蕭授 |                      |
| 13년     | 施溪 近子平    |            | 總兵 梁福  |                      |
| 14년     | 普安        | 安撫 慈長      | 布政使 孟驥 | 전년 12월 安撫司를 州로       |
| 18년 5월  | 鎮溪        | 龍南木謂 등     | 都督 蕭授  |                      |

일이었고,<sup>43</sup> 홍무 22년(1389)에 흥릉위(興隆衛)를 설치한 것은 황평안무사(黃平安撫司) 관할의 토착민이 난을 일으키자 부우덕(傅友德)이 그것을 진압한 다음의 일이다.<sup>44</sup> 홍무 23년에 도균위(都勻衛)가 세워진 것은 당시 있었던 반란을 도독(都督) 하복(何福)이 진압한 다음에 위(衛)의 설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sup>45</sup>

홍무 연간 꾸준히 이어지던 반란이 진압되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던 저항 투쟁은 귀주성 설치 시기인 영락 11년(1413) 무렵부터 다시 급증한다. 특히 귀주성 설치를 촉발시킨 핵심지역의 하나였던 사주부에서 대라채(臺羅寨)를 비롯한 14채를 이끈 묘보량(苗普亮) 등과 그 동쪽의 홍강(洪江)·횡피(橫陂) 등 채의 묘보(苗普)·나철(羅哲) 등 2천여 명은 명조에 불복하여 진원·청랑(淸浪) 등의 위를 공격하는 등 격렬한 저항 투쟁이 일어났다.<sup>46</sup> 명조는 그해 8월 진원후 고성을 총병관(總兵官)으로 삼고 도독 양복(梁福) 등을 부관으로 삼아 호광·귀주의 두 도사(都司) 및 무창(武昌) 등 위소(衛所)의 관군 3만 명을 이끌고 치게 하였는데<sup>47</sup> 여의치 않았던 듯 10월에는 귀주에서 1만 명, 호광 진원(辰沅) 등 위에서 2천여 명, 파주선위사(播州宣慰司)의 토군(土軍) 6천 명을 증원하여 보내도록 하고 있다.<sup>48</sup> 결국 저항 투쟁은 이듬해 정월에 보량(普亮) 등이 참수당하며 끝이 난다.<sup>49</sup>

43 『太祖實錄』卷172, 洪武 18年 4月 丙辰.

44 『太祖實錄』卷196, 洪武 22年 6月 癸亥.

45 『太祖實錄』卷205, 洪武 23年 10月 丙寅.

46 『太宗實錄』卷140, 永樂 11年 5月 乙巳. 『明史』에는 앞서 언급한 사달로 顧成에게 체포되어 압송된 思州宣慰使 田琛의 처 冉氏가 普亮을 부추겨서 난이 일어났다고 하였다(『明史』卷316 列傳, 貴州土司, 제27책, 8177~8178쪽). 아울러 『明史』에는 普亮의 姓이 분명치 않으나 여기서 인용한 실록의 기록에는 “苗人 苗普亮”으로 나와 이를 따랐다.

47 『太宗實錄』卷142, 永樂 11年 8月 乙巳.

48 『太宗實錄』卷144, 永樂 11年 10月 庚戌.

49 『太宗實錄』卷147, 永樂 12年 正月 庚寅.

요컨대 이 시기의 저항은 명의 군사력이 처음 진입하여 주둔하며 군사적 지배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나중에는 새로이 행정기구를 만들어 지배하려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성격을 띠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그리고 어떤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던 것일까? 사료의 제약이 심하여 분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간간히 나오는 단편적인 기술로나마 원인과 관련하여 약간의 유형화를 시도해볼까 한다.

첫째는 명조 권력의 진입으로 토착민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이 커진 것으로 말미암은 저항이다. 앞서 귀주의 전략적 가치가 호광에서 운남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곳을 장악하는 위소가 설치되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한 역참(驛站)의 설치와 그 운용이 제대로 되어야 했다. 역참이 설치된 곳은 지도 1에 나온 위(衛)가 있는 위치와 거의 일치하고 곳에 따라 위와 위를 연결하는 선상에 한두 개 더 있는 정도인데<sup>50</sup> 문제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잡다한 일들이 대개 당지의 주민에게 요역으로 부과되는 것에 있었다. 원래 역참의 역(役)은 말이나 노새의 관리, 역에 저장해두어야 할 양곡의 납부, 공무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대 등 그 부담이 무거운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잡역의 하나인데<sup>51</sup> 그것이 토착민에게 부과되니 그들로서는 견디기 힘든 노릇이었을 것이다. 실록의 홍무 17년(1384) 기사를 보면 “근래 들으니 귀주의 황평(黃平) 등 역(驛)이 공무로 왕래하는 자들에게 매우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서 오랑캐들이 그 역(役)을 견디지 못하고 산림으로 숨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sup>52</sup> 고 하여 그 일면을 엿보게 해준다.

다음으로는 역시 부세 부담의 증가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본래 기미제도와 토사제도를 비교할 때 중요하게 드는 것 중의 하나가 토사에게 부과되는 부세제

50 楊正泰, 2006, 앞의 책, 127쪽 참조.

51 山根幸夫, 1966, 『明代徭役制度の展開』, 東京女子大學學會, 73~76쪽 참조.

52 『太祖實錄』卷166, 洪武 17年 10月 丁卯.

(賦稅制)의 유무인 것인 만큼<sup>53</sup> 명조의 토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선 그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홍무 시대에는 그 강제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하나 문제는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졌을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무 말년에 귀주와 접경지대에 있는 호광 진주부(辰州府) 노계현(盧溪縣)에서 현의 주부(主簿)가 촌채(村寨)에 내려갔을 때 그곳 묘민의 수장들이 부역이 너무 무거워 묘민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sup>54</sup> 역시 홍무 연간에 인접지역인 광서 유주부(柳州府) 마평현(馬平縣)에서도 한 주부가 부역의 부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황제에게 보고하고 있다.<sup>55</sup> 시대가 좀 내려가지만 정덕(正德) 연간(1506~1521)에 안순주(安順州) 서보(西堡)의 한 토관이 부세의 면제를 상실했으나 허락되지 않아서 징수하러 촌채에 갔다가 채장(寨長)에게 살해되는 일도 일어났다.<sup>56</sup>

바로 위의 예에서도 나왔지만 토사 지역에서는 토관이 조세를 징수한다. 요컨대 중앙에서 부세를 부과할 때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와 같이 토지 면적과 세율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백성에게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 관한 일체를 토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명사』 식화지의 전토 문제를 논한 부분을 보면 “귀주의 전토는 토지대장이 없어서 모두 다 토관에게 징수시키고 있다”<sup>57</sup>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토사들이 수탈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저항의 창끝은 토사를 향하기도 한다.<sup>58</sup> 이 유형은

53 주 10 참조, 그리고 田玉隆 等, 2006, 앞의 책, 299~303쪽도 참조.

54 沈瓚, 『五溪蠻圖志』 第4集 五溪兵事, 伍新福 校點, 岳麓書社, 2012, 294쪽. 이 일을 계기로 이 지역에 鎮溪軍民千戶所가 설치되었다(『太祖實錄』 卷250, 洪武 30年 3月 乙未).

55 『太祖實錄』 卷172, 洪武 18年 3月 丙辰.

56 『明史』 卷316 列傳, 貴州土司, 安順, 제27책, 8188쪽.

57 『明史』 卷77 志, 食貨一, 제7책, 1882쪽.

58 水東을 관할하는 귀주선위사 宋然의 탐학(『明史』 卷316 列傳, 貴州土司, 貴陽), 鎮遠府의 邛水長官司 장관과 예하 土目的 가렴주구(『明史』 卷316 列傳, 貴州土司, 鎮遠), 그리고 인접한 四川 馬湖 土知府(『明史』 卷311 列傳, 四川土司, 馬

토착민이 토사의 압제나 수탈에 저항하는 예로서 중국 연구자들이 개토귀류의 정당성을 부여할 때 즐겨 인용할 만한 것들이다. 사실 토사의 압제나 수탈에 대해서는 중국의 연구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바이긴 하지만<sup>59</sup> 중국의 왕조 권력이 들어온 후 특히 토착민의 저항이 많아지고 계속 이어진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토사의 압제나 수탈이 그 원인이었다 해도 그 배후에 명조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명조 권력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치 사회적인 질서나 관행이 깨지거나 훼손당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사료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명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는 홍무 연간에 많은 저항투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이 요인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주원장은 귀주에 명군이 처음 진입하는 홍무 5년(1372)에 바로 저항투쟁이 벌어지자 이쪽의 오랑캐들이 항상 복종하지 않고 난을 일으킨다고 하였고,<sup>60</sup> 홍무 11년(1378)에 오개(五開, 지금의 黎平縣)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삼묘(三苗)가 교화를 따르지 않는다”<sup>61</sup>고 하면서 토벌을 명하였다. 난이 진압된 후에는 “삼묘가 불인(不仁)하여 예로부터 제왕들이 초무(招撫)하였으나 끝내 교화를 따르지 않아서 대대로 백성들의 근심이 되었다”<sup>62</sup>면서 묘족과 한족 관계의 역사적인 맥락까지 언급하고 있다. 아무튼 이 교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토착민들이 그들 나름의 사회적인 질서나 문화적 특성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말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원장은 그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저항투쟁에 데인 듯 홍무 30년(1397)에는 여러 반란 진압에 큰 공을 세운 정남장군(征南將

---

湖)와 廣西 토관의 학정(『明史』卷126 列傳, 沐英, 沐琮) 등은 그러한 예인데, 여기에는 부세 이외에 여타 폭정도 그 저항의 원인으로 작용한 예도 포함한다.

59 王曉衛, 1996, 「改土歸流前西南土司的虐殺之風」, 『貴州文史叢刊』1期는 그 제목에서도 대표적이다.

60 『太祖實錄』卷71, 洪武 5年 正月 甲戌.

61 『太祖實錄』卷119, 洪武 11年 6月 己巳; 『太祖實錄』卷120, 洪武 11年 10月 戊申.

62 『太祖實錄』卷121, 洪武 11年 11月 庚午.

軍) 우도독침사(右都督僉事) 고성(顧成)을 수도로 돌아오도록 하면서 오랑캐들이 관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반드시 의구심을 품어 복종시키기 어려울 것이니 우선 완화시켜서 회유하는 뜻을 보이자는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sup>63</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 초 저항투쟁의 또 한번의 큰 흐름은 영락 11년(1413) 귀주성을 설치한 개토귀류 이후인데 이 역시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한 저항임은 물론이다. 앞서 서술한 11년 5월 사주 대라채의 묘보량 등의 난을 비롯하여 12년에 귀주 동인부의 장관사 지역과 연계하여 일어난 호광 보정선위사 예하 간자평의 오자니(吳者泥) 등의 난과 뒤이어 그 아들로 이어진 난은 대표적이다. 정덕(正德) 연간(1506~1521)에 일어난 수동(水東) 관할 귀주선위사 송연(宋然)의 탐학으로 말미암은 변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토귀류가 논의되자 당시 순무 진천상(陳天祥)은 해당 지역 장관사의 이민(夷民)이 부현(府縣)의 개설을 원치 않는다면 극력 반대하여 관철시키고 있고,<sup>64</sup> 정덕·가정 연간의 명장으로 알려진 심희의(沈希儀)는 귀주 남쪽의 광서(廣西) 사은(思恩) 지역의 난을 진압한 후 오랑캐들이 한법(漢法)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주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sup>65</sup> 모두 개토귀류에 대한 저항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료의 성격을 감안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토착민 쪽에서 개토귀류를 원하였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는 대체로 토사 내부의 권력 다툼이나 토사 간의 분쟁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명조의 간여를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저항투쟁이 발발하기도 하였다. 개토귀류와 얽혀 있지 않더라도 지역 내의 권력투쟁이나 기득권 싸움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명조에 대한 저항으로 전화된 경우를 세 번째 유형으로 들고자 한다. 홍무 29년

63 『太祖實錄』卷253, 洪武 30年 5月 丁卯.

64 『武宗實錄』卷116, 正德 9年 9月 戊辰; 『明史』卷316 列傳, 貴州土司, 貴陽.

65 『明史』卷211 列傳, 沈希儀.

(1396) 운남 순녕부(順寧府)에서 토관 자리를 놓고 일어난 숙질 간의 분쟁에서 명조가 개입하자 그에 대항하여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진 일이 있었고,<sup>66</sup> 앞서 서술한 영락 11년의 귀주성 설치를 촉발한 사건도 바로 이 유형에 속한다. 시대가 내려갈수록 토사 지역 내부의 분쟁 사건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테면 성화(成化) 연간(1465~1487) 도균(都勻)의 진몽(陳蒙)·난토(爛土) 장관사 지역에서 토지를 둘러싸고 일어난 다툼의 경우 결국 반란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난을 진압한 홍치 7년(1494)에는 문제가 되었던 장관사들을 아예 없애고 독산(獨山)과 마합(麻哈)의 두 주(州)를 설치하기도 하였고,<sup>67</sup> 가정 연간(1522~1566)에 역시 도균 소속의 평랑(平浪)장관사 지역에서 있었던 반란이 난으로 비화되었을 때 그것을 진압한 후 문제가 된 지역의 이름을 멸묘진(滅苗鎮)으로 했던 예도 있다.<sup>68</sup>

반란이 일어났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명조의 공식적인 토사 직함을 갖지 않은 지역 지도자의 존재다. <표 2>에 보이는 반란의 주모자들 가운데 채장(寨長)이나 토추(土酋)로 표현된 사람들은 토사 관할지역이든 생계(生界)지역이든 마을 단위나 그보다 큰 범위를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일 것이고, 그 밖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인물들도 토사에 대한 요구나 집단행동을 이끌만한 지도력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홍무 11년(1378) 오개(五開)에서 난을 일으킨 오면아(吳面兒)의 경우 사법(邪法)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고,<sup>69</sup> 영락 4년(1406)에 귀주와 접경지대인 호광의 홍주박리(洪州泊里) 장관사 지역의 반란 지도자 오란(吳蘭)·오광(吳廣) 등은 요언(妖言)으로써 무리를 모았다고 하니,<sup>70</sup> 필시 종교적인 카리스마가 있는자들

66 『太祖實錄』 卷248, 洪武 29年 11月 癸丑.

67 『明史』 卷316 列傳, 貴州土司, 8189~8190쪽; 『孝宗實錄』 卷87, 弘治 7年 5月 戊申.

68 『明史』 卷316 列傳, 貴州土司, 8190쪽.

69 『太祖實錄』 卷119, 洪武 11年 6月 己巳.

70 『太宗實錄』 卷60, 永樂 4年 10月 癸卯.

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홍무 8년에 평월의 강력(江力)채 등 40여 채를 연대시켜 2천여 명을 이끌고 난을 일으킨 토추(土酋)라든가<sup>71</sup> 홍무 31년(1398)에 수서(水西) 지역의 토추가 서보(西堡)장관사의 채장 등과 연합하여 일으킨 난이 실패한 후 얼마 안 가 다시 3천여 명을 규합하여 난을 일으킨 서보장관사 지역의 아혁방(阿革傍)도<sup>72</sup> 역시 만만치 않은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홍무 29년 청수강(淸水江) 유역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 선위사 송성(宋誠)에게 몸을 의탁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문에 부쳐진 김패황(金牌黃)이나<sup>73</sup> 홍무 30년 고주(古州)에서 대규모의 난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임관(林寬) 같은 인물들은<sup>74</sup>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란을 일으킨 주모자들은 명조의 임명을 받은 토관보다 하급이거나 그 같은 직급과는 무관한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시기를 명 초로 한정해서 보면 그들이 난을 일으킨 동기를 밝히는 것은 현재의 사료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 홍무 6년(1373)에 사남선위사 용계지자평(溶溪芝子坪) 장관사의 토착민이 그 장관 양세영(楊世榮)을 축출하였고<sup>75</sup> 홍무 29년에는 도균위(都勻衛) 평랑(平浪)장관사 동수채(洞水寨) 등의 적파(狄把)가 난을 일으켜 토관 왕응명(王應名)을 살해한 일이 있어<sup>76</sup> 토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인가 짐작해보긴 하지만 역시 그 실상은 분명치 않다. 다만 토사 내부의 일이든 명조 권력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이든 명 초 귀주 지역 반란의 주모자는 명조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아 기득권을 누리며 고위 토사보다 하층이거나

71 『太祖實錄』 卷100, 洪武 8年 5月 庚申.

72 『太祖實錄』 卷256, 洪武 31年 2月 辛丑.

73 『太祖實錄』 卷246, 洪武 29年 8月 辛丑.

74 『太祖實錄』 卷251, 洪武 30年 3月 庚辰; 『太祖實錄』 卷252, 洪武 30年 4月 辛卯, 己亥 등.

75 『太祖實錄』 卷81, 洪武 6年 4月 戊寅.

76 『太祖實錄』 卷246, 洪武 29年 5月 乙丑. 龔蔭, 1992, 앞의 책, 895~896쪽에 보면 『都勻縣志稿』를 인용하여 平浪長官司 長官 王氏의 계보를 기술하고 있는데 王應名 이름의 한자나 그 沒年이 실록의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등급과는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지도자들에게서 주로 나왔다고 하는 계층성은 추출해놓고자 한다. 주원장도 임관의 난을 진압한 뒤인 홍무 30년 10월에 임관의 난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난의 실제 근원은 마을의 추장급[諸洞蠻酋]이라고 하고 있다.<sup>77</sup>

시대가 내려가면 세력이 큰 고위급 토사가 명조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때로 국가 간의 전쟁이라 할 만큼 그 규모가 큰 경우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만력 삼대정(三大征)의 하나인 만력 24년(1596)경에 시작된 파주(播州) 양응룡(楊應龍)의 난, 천계(天啓) 원년(1621)과 그다음 해에 시작된 사천 영녕(永寧)선무사 사승명(奢崇明)과 귀주 수서(水西)선위사의 실력자 안방언(安邦彦)의 난이 그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끝으로 토착민의 저항투쟁의 원인으로서는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이 한족 이주민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인데 명 초기라 이 부분은 아직 그리 침예한 것 같지는 않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위소를 설치하면서 군인 가족을 중심으로 한족이 다수 들어왔지만 앞의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주로 군 주둔지에 모여 살아서 현지민들과의 접촉은 그리 많지 않았다.<sup>78</sup> 또한 군량을 조달하는 상인을 비롯하여 일반민이 들어오기도 하였지만 숫자는 아직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듯하다.<sup>79</sup> 귀주 지역에 일반민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홍치 연간(1488~1505)에 이르러 외부에서 대대적으로 이주민이 들어오면서부터인데<sup>80</sup> 이때부터 변란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sup>81</sup> 이 문제는 위에서

77 『太祖實錄』卷255, 洪武 30年 10月 丙戌.

78 郭紅, 2003, 앞의 논문, 151~152쪽 참조.

79 曹樹基, 1997, 『中國移民史』第5卷 明時期, 福建人民出版社, 315~316쪽에는 당시 인구를 추산하여 洪武 연간에 귀주 지역의 군인과 군인가족을 대략 42만 명, 일반 한족 인구는 5,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80 弘治 4년(1491) 귀주의 民籍 인구가 258,96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梁方仲 編, 1980,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人民出版社, 203~204쪽).

81 思南府의 경우 弘治 연간 이래 四川의 전란으로 말미암아 流移民이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 客이 나이지고 주인은 약해져 禍亂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였다(嘉靖

언급한 지역의 중하급 지도자 문제와 함께, 모순이 본격화하는 명대 중기 이후 시기를 다룬 논고로 넘긴다.<sup>82</sup>

## V. 맺음말

하나의 성(省)을 세울 만한 재정 규모와 사회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던 귀주 지역에 성급 행정기구를 설립한 것은 무엇보다도 운남을 확보하고자 하는 명조의 강력한 의도가 작용한 때문이었다. 운남 지역은 원대 이전에는 중국 왕조의 지배 영역이라 볼 수 없는 곳이었지만 원대 이후로는 그곳이 느슨하나마 중원 왕조에 복속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원조(元朝)를 북쪽으로 몰아내긴 하였으나 주원장으로서의 원조의 종친 양왕(梁王)의 세력이 운남에 버티고 있는 것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귀주는 명군이 운남에 들어가기 위한 교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운남을 치기 전에 귀주를 먼저 제압하여 교통로를 장악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우선 귀주에서는 먼저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부부터 시작하였다. 명대 군사 단위의 기본인 위소를 설치한 것이다. 위소의 위치는 그 목적에 맞게 교통로의 요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위소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위협의 제거와 아울러 군사력만으로는 귀주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본디 어렵기에 토사들을 포섭하여 명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어놓는 일도 병행하였다.

10여 년을 준비한 끝에 결국 운남을 장악한 명조는 이후 빈발하는 귀주 지역의 저항투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소를 더욱 많이 설치하였다. 그 결과 서남지역에서 가장 밀집한 형태의 위소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이 안정

『思南府志』卷7 拾遺志, 2앞~뒤).

82 김홍길, 2017, 「苗糧에서 苗牆으로-明代 後期 苗族의 저항과 明朝의 대책-」, 『明清史研究』 48 참조.

이 되자 이제는 군사기구에서 행정기구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는데 그 실현은 영락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영락 11년(1413)에 두 개의 선위사를 없애고 8개의 부(府)를 만들면서 귀주포정사를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이때부터 귀주는 성급 행정기구가 되었다.

성(省) 밑에 부(府)가 있으면 부 밑엔 주(州)와 현(縣)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귀주의 부 아래엔 주현이 지극히 적고 대부분이 본래 토사의 통치기구인 장관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말하자면 실제 행정은 원래 그들이 했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어서 중국 본토에서 운용되고 있는 행정기구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행정기구의 기저를 이루고 있어야 할 이갑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서 세역(稅役)의 수취도 대개 토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위소 산하에 있는 둔전에서 수입과 토사를 통한 세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성의 재정은 이웃한 성의 도움을 받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편 일견 원래의 지배 질서의 많은 부분을 온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토사 측에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 관할 지역 안팎에서 혹은 다른 토사와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이제는 자의든 타의든 명조 권력의 간섭을 받게 되고 그것이 명조에 대한 저항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명 초 저항투쟁을 이끈 지도자의 대부분이, 명조로부터 토사로 임명받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고위 토관급이 아니라 그 예하에 있는 지역 또는 생계(生界) 지역의 지도자들이었던 점은 토사 사회 내부의 문제와도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반면 명조는 사태에 대한 간섭과 변란 진압을 기화로 그 지역의 토사 기구를 아예 없애고 왕조의 지방 행정기구로 대체하는 이른바 개토귀류(改土歸流)의 실행을 종종 시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명 일대를 통하여 개토귀류는 단속적이거나 끊이지 않고 시도되고 행해지고 있었다. 그것이 또한 반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일반 토착민으로 볼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관행과 질서 속에서 살고 있던 사회에 새로운 군사 및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지배를 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거기에는 명조 권력의 진입은 부세나

요역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에 대한 저항도 끊이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은 주원장의 토사 지역에 대한 세역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치가 지방의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토사 중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을 빌미로 수탈을 가중시키는 자들도 있었다. 명 초에 토착민의 저항투쟁이 그같이 빈발한 것은 이 같은 정치적·경제적 문제가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명 초기 토착민들의 앞에 있던 한족은 주로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이었다. 15세기 말 명 중기 이후부터는 한족의 대대적인 이주가 시작되어 이때까지와는 다른 사회적·경제적 제 문제로 인한 알력과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부터는 이제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저항투쟁이 자주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들은 반란까지는 안 가더라도 외부자들을 불안하고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도 빈번히 행하였는데 이에 관한 고찰은 별고(別稿)에서 진행하였다. 아무튼 이 같은 치안불안 사태와 반란의 빈발은 명대를 넘어 청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 참고문헌

### 1. 사료

『明史』

『明實錄』

嘉靖 『貴州通志』

嘉靖 『思南府志』

康熙 『思州府志』

乾隆 『貴州通志』

道光 『思南府續志』

萬曆 『貴州通志』

萬曆 『大明會典』

弘治 『貴州圖經新志』

顧祖禹, 『讀史方輿紀要』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羅繞典, 『黔南職方紀略』

徐家幹, 『苗疆聞見錄』

愛必達, 『黔南職略』

田汝成, 『炎徼紀聞』

貴州省文史研究院校勘, 1987, 『貴州通志·前事志』, 貴州人民出版社.

沈瓚, 2012, 『五溪蠻圖志』, 伍新福 校點, 岳麓書社.

### 2. 연구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4, 『明史 外國傳 譯註 6, 土司傳 中』, 동북아역사재단.

클로딘 롱바르 살몽, 정철웅 역, 2015, 『중국적 문화변용의 한 예: 18세기 귀주성』, 세창출판사.

龔蔭, 1992, 『中國土司制度』, 雲南民族出版社.

羅康智 等 編, 2008, 『明史貴州地理志考釋』, 貴州人民出版社.

- 梁方仲 編, 1980,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人民出版社.
- 楊紹猷·莫俊卿, 1996, 『明代民族史』, 四川民族出版社.
- 楊正泰, 2006, 『明代驛站考』增訂本, 上海古籍出版社.
- 余貽澤 等, 1968, 『明代土司制度』, 臺灣學生書局.
- 伍新福·龍伯亞, 1992, 『苗族史』, 四川民族出版社.
- 吳榮臻 等 編, 2007, 『苗族通史』, 民族出版社.
- 王毓銓, 1965, 『明代的軍屯』, 中華書局.
- 牛平漢, 1997, 『明代政區沿革綜表』, 中國地圖出版社.
- 田玉隆 等, 2006, 『貴州土司史』, 貴州人民出版社.
- 曹樹基, 1997, 『中國移民史』第5卷 明時期, 福建人民出版社.
- 山根幸夫, 1966, 『明代徭役制度の展開』, 東京女子大學學會.
- Herman, J. E., 2007,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enks, R. D., 1994, *Insurgency and Social Disorder in Guizhou, The Miao Rebellion, 1854~1873*,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iens, H. J., 1954, *China's march toward the tropics: A discussion of the southward penetration of China's culture, peoples, and political control in relation to the non-Han Chinese peoples of south China and i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Hamden: The Shoe String Press.

### 3. 논문

- 김한규, 1999, 「7~8세기 東아시아 世界秩序의 構造의 特性和 그 運營體制의 機能」, 『震檀學報』 88.
- 김호동, 1993, 「唐의 羈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 김홍길, 2005, 「명대의 彝族 政권과 土司」, 『중국과 한국』(崔韶子教授停年紀念論叢), 서해문집.
- 김홍길, 2017, 「苗糧에서 苗牆으로-明代 後期 苗族의 저항과 明朝의 대책-」, 『明清史研究』 48.
- 서인범, 2002, 「명대의 捐納制와 軍戶」, 『역사학보』 174.

- 윤정분, 1984, 「明代 軍戶制와 衛所制에 대하여」, 『동방학지』 43.
- 郭紅, 2002, 「明代貴州都司建置研究」, 『貴州文史叢刊』 2002年 1期.
- 郭紅, 2003, 「明代衛所移民與地域文化的變遷」, 『中國歷史地理論叢』 18-2.
- 唐莉, 2015, 「試論明代貴州衛所的特點」, 『民族史研究』 12.
- 楊斌, 「《譚圖》明代貴州地圖正誤」, 『貴州社會科學』 307-7.
- 王繼紅·羅康智, 2007, 「論明代貴州衛所建置的特點及其職能」, 『貴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5-6.
- 王曉衛, 1996, 「改土歸流前西南土司的虐殺之風」, 『貴州文史叢刊』 1996年 1期.
- 曹端波, 2014, 「明代“苗疆走廊”的形成與貴州建省」, 『廣西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6-3.
- 鍾鐵軍, 2004, 「釋明代貴州之“州衛同城”」, 『中國歷史地理論叢』 19-1.
- 陳國安·史繼忠, 1981, 「試論明代貴州衛所」, 『貴州文史叢刊』 1981年 3期.
- 湯芸·張原·張建, 2009, 「論明代貴州的城鎮看貴州城市體系的形成機理」,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09年 10期.
- 岡野昌子, 1967, 「明代土司制度考」, 『待兼山論叢』 史學篇 1.
- 吉開將人, 2008~2011, 「苗族史の近代」(1)~(7),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 124~134.
- 大林太郎, 1970, 「中國邊境の土司制度についての民族學的考察」, 『民族學研究』 35-2.

##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김홍길

명대 초기 운남에 남아 있던 원조의 잔존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명조의 군사 행동에서 귀주 지역은 그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 확실히 인식되어 위소의 군사기지가 그 교통로를 따라 설치되었다. 그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저항투쟁이 계속 이어지자 그것을 진압하면서 위소가 증설되었고, 운남을 장악한 후에도 위소는 계속 유지되었다. 군사적인 지배에 머물던 귀주 지역이 일반 행정기구를 통한 지배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은 영락제 시대인 1413년에 귀주성이 설치되면서 예하에 몇몇 행정기구를 갖추면서였다.

그러나 귀주성 행정기구의 실제 운용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본래 귀주는 원조의 지배하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여러 토착민 정권들이 자치를 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명조가 이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협조적인 정권들에게는 원조의 전례를 이어받아 명조 지방 지배기구의 하위직을 구성하는 토사로서 임명하여 포섭하였다. 귀주에 성이 성립된 후에도 예하의 행정기구는 완비하지 않고 많은 지역은 그들 토사 지배기구에 맡겨놓았던 것이다. 그들 토사를 일소하고 명조의 직접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그 군사적·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어서 애초에 엄두를 낼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명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토

사의 일에 개입하여 그 힘을 약화시키거나 그 지배지역을 축소시키고자 하였고, 때로는 아예 토사 기구를 철폐하고 일반 행정기구로 대체하는 개토귀류를 실행하기도 하였다.

반면 토착민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질서와 관행으로 나름대로 살아오던 것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거나 방해받을 위협에 처하게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명조 권력이 진입하면서 세역의 부담도 늘어났다. 명조에서 토사로 임명받고 기득권을 계속 누리는 토관이라면 몰라도 토사 관할 구역이든 어느 관할도 받지 않는 생계(生界) 구역이든 토착민의 기층 지도자들은 명조에 대한 저항투쟁을 각지에서 전개하였다. 다만 명 초기에는 귀주에 아직 한족의 대량 이주가 행해지지 않아 그 저항을 하게 만드는 사회적 인자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명 초기의 반란은 청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 토착민 저항투쟁의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주제어:** 위소(衛所), 토사(土司), 채장(寨長), 개토귀류(改土歸流)

[부기] 심사자들께서 귀중한 지적과 제언을 주신데 감사드린다. 특히 귀주성의 설립을 운남뿐만 아니라 영락제의 베트남 침공과도 관련지어 보라는 말씀은 후일 필히 반영하고자 한다.

## ABSTRACT

# The Establishment of Guizhou Province and the Resistance of Indigenous Peoples in Early Ming China

Kim Honggil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bases called *weisuo* in the Guizhou region was part of the military actions taken by the Ming Dynasty at its beginning in order to expel the remnants of the Yuan Dynasty remaining in Yunan. During these actions, the importance of the Guizhou region's position in transportation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actions of the early Ming Dynasty invited a chain of uprisings by indigenous peoples, which in turn led to a larger military base for suppressing the revolts. The Guizhou base remained despite the Ming Dynasty having secured Yunnan. The military administration there became an administrative rule in 1413 under the Yongle Emperor, when Guizhou Province was formally established and additional administrative substrata were established below the province level.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Guizhou Province was, however,

very limited. Guizhou remained autonomous even during the Yuan Dynasty, as indigenous people ruled the area. Following the precedents of the late dynasty, the Ming Dynasty adopted conciliatory measures toward collaborating regional elites by naming them as the native chieftain, or Tusi.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Guizhou Province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never became fully established, as sub-regional administration still remained in the hands of Tusi. It was too costly for the early Ming Dynasty in both military and economic contexts to deprive Tusi of sub-regional administrative power and to place the entire regional administration under their direct rule. As chances permitted, however, the Ming Dynasty ventured the risk by interfering in Tusi affairs, by limiting the Tusi's administrative area, or sometimes by exercising “*gaitu guiliu*,” repelling the Tusi system, and resorting to the genera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Ming Dynas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indigenous people, they could not accept any measure which implied a disturbance of the status quo or interference in the existing order. They could not condone the rising taxes and corvee imposed by the Ming Dynasty. With only the exception of Tusi named by the the Ming Dynasty allowed to enjoy their Tusi privileges, all the regions under Tusi administration and regions which enjoyed autonomous rule by indigenous elites under no influence from above resorted to uprisings as a means of protest against the Ming Dynasty. The social cause of the uprisings remained still limited during the early Ming Period, as the mass immigration of Han Chinese into the Guizhou area was not yet fully implemented. The uprisings that started in the early Ming Period, however, heralded consistent and unabated uprisings by indigenous people, as is true of

even the late Qing Period.

**Keywords:** Weisuo (military units of the Ming Dynasty), Tusi (native chieftain), village leaders, *gaitu guiliu*

# 청대 검동남(黔東南) 지역의 개토귀류(改土歸流)와 묘족(苗族) 사회의 변화

정지호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검동남 지역의 개토귀류 과정
- III. 개토귀류 후 검동남 묘족 사회의 변화
- IV. 맺음말



## I. 머리말

묘족(苗族)은 중국 서남지구를 대표로 하는 귀주를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이 에스닉 집단의 분포지역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국경을 넘어 태국과 라오스·베트남 등 인도차이나반도의 산악지대에까지 분포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명대 서남 중국의 소수민족 지대에서는 소수민족의 수장에게 관위를 부여하여 간접 통치를 실시한다는 이른바 토사(土司) 제도가 존재했다. 나아가 청대 초기에도 마찬가지로 융화정책을 시도했지만, 묘족 사회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기능하지 않았다. 한족 이주자의 증가에 따라 한화가 진행되면서 한족의 경제적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에 토사·토관(土官)을 선두로 한 저항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청조는 1666년 묘족 거주 지역에 ‘유관(流官)’을 파견하여 토사·토관을 대신하는 ‘개토귀류(改土歸流)’ 제도를 실시하여 직접 통치를 실행하게 되었다. ‘유관’은 정식 관료로서의 권력과 의무를 지녀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거해 획일적인 행정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한족 지역의 주현관(州縣官)과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청조 정부의 ‘개토귀류’ 정책에 대해 묘족 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것은 물론이다. 묘족의 일부는 여러 차례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 등 청조 정부에 저항을 계속했다. 이들 반란은 모두 무차별적으로 진압되었으며, 묘족의 다수는 청조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산악지대까지 남하해 갔다. 이와 같이 묘족은 지배계급인 만주족과 한족의 압박에 대해 저항해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청조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묘족을 탄압하거나 감시했기 때문에 묘족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 한적(漢籍) 사료도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 투고: 2017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9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종래 청대 ‘개토귀류’ 제도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현지인들이 한화되었다고 파악되면 토사·토관을 폐지하고 직할지의 지방관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는 황제의 은덕을 입은 백성이나 지역이 증가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sup>1</sup> 게다가 중국 학계에서는 ‘개토귀류’를 민족의 융합과 강고한 다민족 국가 통일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수민족의 생존을 보장했다거나 중앙정권이 귀주를 통제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촉진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중화민족 다원일체를 강조하는 현재 중국의 입장을 의식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개토귀류’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지배계급인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개토귀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청대 귀주 묘족 사회의 토사제도 문제를 청조의 국가권력과 묘족 사회의 기층권력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귀주 지역 개토귀류의 원인에 대해 재고찰한다. 종래 개토귀류의 원인으로 토사제도의 폐단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했다. 즉, 토사가 절대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면서 토민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인신예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sup>3</sup> 그렇다면 이러한 토사의 횡포를 제거하기 위해 단행한 개토귀류에 대해 귀주 묘족 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토사의 문제에 국한해서 개토귀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황제의 덕치

---

1 川島真, 2010, 「近現代中国における国境の追憶-‘本来の中国の領域’をめぐる」, 『境界研究』 1, 2쪽.  
 2 楊軍, 2013, 「清代貴州土司制度探析」, 『法制與經濟』 2013-3; 程昭鑫, 1989, 「貴州土司制度与改土归流」, 『貴州民族研究』 1989-4.  
 3 余宏模, 1997, 「试论清代雍正时期贵州的改土归流」, 『貴州民族研究』 1997-2.

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둘째로 청조의 개토귀류는 그동안 방입주의를 취하고 있는 변경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한족이 비한족의 지역에 확대됨에 따라 한족적 가치관의 확대 혹은 강요로 이어지면서 경계의 안쪽에서 균일화가 진척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결국 청조가 국민국가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인 기능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묘족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추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갔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묘족 사회는 한족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의 역사로 점철되어왔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고는 검동남(黔東南), 즉 귀주 동남부 지역의 묘족 사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검동남 지역은 천주(天柱)·금병(錦屏)·여평(黎平)·검하(劍河)·삼수(三穗)·대강(臺江)·시병(施秉)·황평(黃平)·개리(凱里)·뇌산(雷山)·마강(麻江)·단채(丹寨)·도군(都勻) 등을 포함하며, 이 지역을 흐르는 최대 하천의 이름을 따서 청수강(淸水江) 유역이라고도 한다. 청수강 유역에는 오늘날에도 묘족(苗族)·동족(侗族) 등 소수민족이 주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다.<sup>4</sup> 동부에 위치한 여평·금병·천주·삼수와 북부의 황평·시병 및 서부의 도군 등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발이 진행되어 명대에 이미 토사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검하·대강·개리·뇌산·단채 등지는 비교적 개발이 늦어 청대 강희 말년에도 여전히 ‘화외지지’라고 하여, 청조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던 지역이다.<sup>5</sup>

4 예를 들면 청대 黎平府에 속해 있던 금병현은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19만 344명인데, 그중에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侗族은 92,584명으로 전체 총인구의 48.44%를 차지하며, 그다음인 묘족은 68,997명으로 36.09%를 차지하며, 한족이 28,984명으로 15.16%를 차지하여 동족과 묘족이 이 현의 주요한 소수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현성 자체도 청수강에 면한 王寨라는 묘족의 촌락에서 발전한 것이다. 貴州省錦屏縣志編纂委員會 編, 1995, 『錦屏縣志』, 貴州人民出版社, 86쪽.

5 王宗勛, 1997, 「淸水江流域封建商品經濟發展初探」, 『黔東南民族師專學報(哲社版)』 15-4, 12쪽.

## II. 검동남 지역의 개토귀류 과정

청조는 원조(元朝)와 마찬가지로 정치문화제도에서 민족적 이원성, 지배원리에 서 지역적 다원성을 유지하면서 다민족 통합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조의 판도 내부에서의 다민족 통합은 그 성격에서 본다면 서북지역에서의 ‘번부지배(藩部支配)’와 서남지역에서의 ‘개토귀류’라는 이중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정책은 청조의 중국 지배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반드시 모두 ‘중화’를 위한 것으로 정리될 수는 없었다.

원대 이래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토사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토사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서남부 지역의 종족이나 부족의 추장을 토사·토관으로 임명하여 그들에게 중앙정부에 대한 정령(政令)을 받아들이고, 조공·납세를 전제로 현지의 관습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권력 및 세습권을 부여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sup>6</sup>

이러한 간접통치 정책을 지탱하는 원리의 하나는 ‘화이사상’으로 명청시대 토사제도는 비한족 세계를 중화세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완충장치로 기능했다.<sup>7</sup> 또한 토사제도는 청조의 입장에서 볼 때, 언어와 습속이 전혀 다른 비한족 세계를 직접 통치하는 데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토사 추장의 경우 공납과 기타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게 되어 위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서로 합치하는 가운데

6 일반적으로 토사제도는 宣慰使·宣撫使·長官司 등 무관 계통과 土地府·土地州·土地縣 등 문관 계통으로 나뉘어 각각 병부와 이부에 귀속하게 되었다. 전자를 토사, 후자를 토관으로 구별하지만, 명대 중엽 이후 양자를 총칭해서 토사라고 칭하게 되었다. 余貽澤, 1944, 『中國土司制度』, 重慶: 正中書局; 谷口房勇(楊勇, 寥國一譯), 2007, 「土司制度論」, 『百色學院學報』 20-3 참조.

7 武内房司, 1997, 「西南少數民族-土司制度とその崩壊過程をめぐって-」, 『明清史學の基本問題』, 汲古書院, 584~585쪽.

나온 타협의 산물이었던 것이다.<sup>8</sup>

귀주 지역의 토사 문제는 강희 연간부터 등장한다. 예를 들면, 강희 31년(1692) 7월 15일 귀주순무 위기제(衛既齊, 1645~1701)의 상주에서 “토관 노군충(盧君寵)은 묘민(苗民)에게 해를 끼쳐 방자하게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그 직을 혁파해야 합니다. 그의 장자 노대건(盧大乾)도 평소 불법을 일삼으니 그 직을 승계해서는 안 되며, 응당 차남인 노대진(盧大晉)이 계승해야 합니다”<sup>9</sup>라고 건의하고 있다. 토사의 악행을 명목삼아 그의 직을 혁파할 것을 건의하면서도 토사 자체에 대한 폐지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강희제는 “토사의 습속은 각각 다르니 반드시 그 성정(性情)에 순응해서 위무해 다스려라”<sup>10</sup>라고 하여 토사의 습속을 거스르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귀주 지역에 청조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것은 옹정 연간이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토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옹정 2년(1724) 5월, 옹정제는 사천·섬서·호광·광둥·광서·운남·귀주의 총독, 순무 등에 상유를 내려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각 지역의 토사는 법률과 규율을 아는 자가 적다. 매양 소속 토민에게 갖은 명목으로 科派(징수의 의미)하니 이를 有司가 正供을 징수하는 것과 비교하면 몇 배에 달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소와 말을 취하거나 자녀를 빼앗으며 살리고 죽이는 것을 멋대로 한다. 土民은 그들의 어육이 되어 분노가 치밀어도 감히 표출하지 못하는데, 누구들 나의 赤子が 아니겠는가! 바야흐로 천하가 모두 즐거움과 이로움을 향유해야 하는데, 오직 토민만은 그러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심히 견딜 수가 없다.<sup>11</sup>

8 大林太郎, 1970, 「中國邊境の土司制度についての民族學的考察」, 『民族學研究』 3-2, 135쪽.

9 『聖祖仁皇帝實錄』 卷155, 康熙 31年 7月 15日 壬申條(中華書局, 1985).

10 위와 같음.

11 『世宗憲皇帝實錄』 卷20, 雍正 2年 5月 辛酉條(中華書局, 1985). “朕聞各處土

라고 하여 각지의 토사에 대해 비판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옹정제의 토사 관에는 옹정 4년(1726) 본격화하는 개토귀류의 복선이 깔려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2</sup>

토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복건성 장포(漳浦) 출신의 남정원(南鼎元, 1680~1733)은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리고 있다.

黔省(귀주)의 토사는 1년에 네 번 小派하고 3년에 한 번 大派하는데, 소파는 동전으로 계산하고 대파는 은량으로 계산합니다. 토민이 매년 토사에게 납부하는 것은 한족 인민의 丁糧에 비해 10배나 많습니다. 토사는 어느 날 아들이 부인을 맞이하기로 하면 토민은 3년간 감히 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토사는 묶어서 죽이는데,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은 오히려 토사에게 은량을 바치니, 60량·40량 등 일정하지 않으며 최하라도 24량인데, 이를 玷刀銀이라고 합니다. 갖은 착취를 당해도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sup>13</sup>

토사의 가파(苛派)는 개토귀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로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거론되었으며, 근래 중국의 학계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양군(楊軍)은 강희 연간 후기부터 토사의 폐단은 이미 노정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 후, “토사가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두목은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인민을 폭력적으로 통치하여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며 법에 의거하지 않았다. 토사 간에

---

司, 鮮知法紀, 每於所屬土民, 多端科派, 較之有司徵收正供, 不啻倍蓰, 甚至取其馬牛, 奪其子女, 生殺任情, 土民受其魚肉, 敢怒而不敢言, 孰非朕之赤子, 方令天下共享樂利, 而土民獨使向隅, 朕心深為不忍.”

12 武內房司, 1997, 앞의 책, 587쪽.

13 南鼎元, 「論邊省苗蠻事宜書」, 『清經世文編』卷86, 兵政17(苗防上)(中華書局, 1992), 2135쪽. “黔省土司, 一年四小派, 三年一大派, 小派計錢, 大派計兩, 土民歲輸土徭, 較漢民丁糧, 加多十倍, 土司一日爲子娶婦, 則土民三載不敢婚姻, 土民一人犯罪, 土司縛而殺之, 其被殺者之族, 尙當斂銀以奉土司, 六十兩四十兩不等, 最下亦二十四兩, 名曰玷刀銀, 種種賸削, 無可告訴.”

도 재물을 탐하여 계투가 끊이지 않았다. 조정에 대해서는 항상 자치를 구실로 삼아 정령(政令)을 위반하고 변강의 불안을 조장했다”<sup>14</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사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토사의 가렴주구 문제에 대해서 기쿠치 히데아키[菊池秀明]<sup>15</sup>가 지적하고 있듯이 토사가 영민(領民)을 확대한 배경에는 무책임한 한족 관료[流官]의 늑색(勒索)이 있었기 때문이며, 심지어 토사 중에는 한족 관료보다 더 성실하게 지방을 경영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도 있다는 평가도 있는 것에서 옹정 연간의 관료 중에도 토사의 실상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사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옹정제는 악이태(鄂爾泰)·장광사(張廣泗)를 중심으로 한 기인(旗人), 군인층의 견해를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개토귀류를 진행하게 된다. 옹정 4년(1726) 운귀총독 악이태는 상주하여

운귀의 큰 근심은 苗만한 것이 없습니다. 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夷를 제압하여야 하며, 夷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토귀류를 해야 합니다.<sup>16</sup>

라고 하고 개토귀류를 통해 ‘일로영일(一勞永逸, 한번의 수고로움으로써 영원히 편안하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17</sup> 악이태는 또한 옹정제에 올린 보고서에서 개토귀류의 목적을 “전제이관(剪除夷官), 청사전토(清查田土), 이증조부(以曾租賦), 이정지방(以靖地方)”<sup>18</sup>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불법을 자

14 楊軍, 2013, 앞의 글, 43쪽.

15 菊池秀明, 1994, 「明清期廣西チワン族土官の漢化」と科擧, 『中國-社會と文化-』 9號, 75쪽.

16 趙爾巽 等 撰, 1979, 『清史稿』 卷512, 列傳299, 土司1, 中華書局, 14204쪽. “雲貴大患, 無如苗蠻, 欲安民必先制夷, 欲制夷必改土歸流.”

17 趙爾巽 等 撰, 1979, 위와 같음.

18 鄂爾泰, 1992, 「改土歸流疏」, 賀長齡·魏源 等 編, 『清經世文編』 卷86, 兵政

행하는 토사를 혁파한 후 그들이 다스리는 토지를 정부에서 파견된 유관이 직접 관할해서 토지를 조사한 후에 조세를 부과해 모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사가 점유하던 토지를 모두 국유로 돌리고 토사가 차지하던 조세 수입을 모두 국고로 수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악이태는 토사를 혁파함으로써 변경의 큰 폐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변경의 모든 문제가 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논리는 실상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고자 하는 정당성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이태는 이어서 개토귀류의 방법으로 회유책[撫]과 강압책[剿] 중 전자를 우선시하면서도 해당 지역 토사의 저항 강도 등 상황에 따라서 양자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9</sup> 즉, 개토귀류는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의 토사제도나 저항의 강도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책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는 2년 후인 옹정 6년(1728) 올린 상주에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토사개류는 원래 政務에 속합니다. 다만, 개토귀류를 시행해야 하는 곳과 시행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으며, 시행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며, 전혀 시행할 수 없지만, 시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으며, 반드시 시행해야 하지만 그 시행을 완만하게 해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행해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결국 시행해야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일 과오를 범했는지의 유무를 논하지 않은 채, 칙령을 내려 일괄적으로 개토귀류를 강제한다면, 죽히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후 처리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토사가 있는 곳이 평안하다면 유관이 있는 곳과 다를 바 없고, 유관이 있는 곳이 평안하지 않다면 또한 토사가 있는 곳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sup>20</sup>

17(苗防上), 中華書局, 2136쪽.

19 鄂爾泰, 1992, 위와 같음.

20 「正疆界定流土疏」, 賀長齡·魏源等編, 『清經世文編』卷86, 兵政17(苗防上), (中華書局, 1992), 2140쪽. “土司改流, 原屬政務. 但有應改者有, 不應改者有.”

이와 같이 악이태는 일률적으로 개토귀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현지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지의 사정과 형편이란 ‘과오를 범했는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해서 청조의 법령에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한 토사만을 혁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이태의 입장은 개토귀류를 연구하는 근래 중국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지만, 개토귀류가 법을 어긴 토사만을 폐지한 것이라면, 귀주 지역의 묘족이 개토귀류에 대해 여타 소수민족 지역에 비해 거세게 저항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개토귀류는 단지 토사를 폐지하고 유관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조의 지배력이 전혀 미치지 않던 소수민족 지구의 문화와 습속을 귀류 즉 한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귀주의 토사는 운남의 토사에 비해 사정이 매우 달랐다.

옹정 4년(1726) 악이태는 보고에서 “운남의 토관은 대체로 강력하여 소속된 묘중(苗衆)은 그 지시를 잘 따라 잔혹하고 횡포함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고 이에 반해 “귀주의 토사는 매우 힘이 약하여 소속 (영지)을 관할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묘환(苗患)이 더욱 심하다”<sup>21</sup>라고 하여 ‘군묘(群苗)’와 ‘토사’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즉 운남의 경우 토사만 혁파하면 되지만, 귀주의 경우에는 토사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큰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귀주의 개토귀류는 단지 토사를 폐지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외지(化外之地, 황제의 덕화가 미치지 못한 지역이라는 의미)’인 생묘(生苗)의 교화에 더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동남 지구의 개토귀류 과

---

可改可不改者有，必不可改必不可不改者有，必應改而不得不緩改者有，可不改而不得已竟改者。……若不論有無過犯，一概勒今改流，無論不足以服人，兼恐即無以善後。如果相安在土原無異於在流，如不相安在流亦無異於在土也。”

21 民國『貴州通志』前事志 十九，「鄂爾泰實授雲貴總督陳奏兩省事宜」(貴陽書局，民國37)，188쪽.

22 林建曾，1992，「清朝前期完善貴州省建置，開闢『苗疆』及其影響」，『貴州民族研究』50，55쪽.

정을 통해 이 문제에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검동남 지역의 묘족은 대체로 깊은 산림 속에서 거주하며 전통적으로 흑색의 옷을 즐겨 입었기 때문에 ‘흑묘(黑苗)’라고 불리었다. 건륭 『귀주통지』에 따르면

흑묘는 도균의 八寨·丹江, 鎮遠의 淸江, 여평의 古州에 분포하고 있으며, 산에 거주하는 자를 山苗·高坡苗라고 하고, 강 근처에 [거주하는] 자를 洞苗라고 하는데, 중간에 토사가 있는 것을 熟苗라 하고, 관할이 없는 것을 生苗라고 한다. 의복은 모두 흑색을 즐겨 있었기 때문에 흑묘라고 한다.<sup>23</sup>

라고 하여 토사의 간접통치를 기준으로 숙묘와 생묘로 구별하고 있다. 이 검동남 묘족 지역은 청수강과 도유강(都柳江)을 경계로 호남성 및 광서성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게다가 검동남 지역은 산림이 풍요로운 곳으로 청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수의 임업산지로서 많은 묘족과 동족이 삼목(杉木)의 식림과 운반 및 가공 등의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상황을 조사한 악이태는 옹정제에 대한 보고에서 “검성(黔省) 하류 일대에 거주하는 생묘는 거리낌 없이 살상을 하거나 도로를 가로막아 그 해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sup>24</sup>라고 하고 전력을 기울여 개발하여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커다란 후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악이태의 심복인 장광사도 이에 호응하듯 검동남 일대의 생묘는 실로 민(民)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어 지방의 우환이 되고 있으니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개발해서 서서히 교화를 시켜 선량한 인민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23 乾隆『貴州通志』卷7, 苗蠻(乾隆6年刻), 122쪽. “黑苗在都勻之八寨, 丹江, 鎮遠之淸江, 黎平之古州, 其山居者曰山苗, 曰高坡苗, 近河者曰洞苗, 中有土司者爲熟苗, 無管者爲生苗, 衣服皆尚黑故曰黑苗.”

24 中國第一歷史檔案館外, 1987,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鄂爾泰奏剿平丹江苗寨折』, 光明日報出版社, 16쪽.

언급하고 있다.<sup>25</sup>

검동남 묘족 지역의 실상을 세세하게 파악한 진원지부(鎭遠知府) 방현(方顯)은 말하기를

生苗은 관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토사의 관할도 받지 않는다. 관민이黔에서 검, 검에서楚, 검에서粵로 갈 때에는 모두 묘의 땅을 직접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內地의奸民이 법을 어겨 서둘러서 체포하려고 하면 묘의 땅으로 숨어 들어가니 감히 심문할 수가 없다. 묘민은 또한 때때로 경계를 벗어나 객상들을 약탈해서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내부적으로는 약육강식이 판을 쳐 선량하고 약한 자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는 검성의 큰 해악이다.<sup>26</sup>

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동남 묘족 지역은 중국 서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곳을 지방 관아와 토사의 관할도 받지 않는 생묘가 점거하고 있는 것은 치안은 물론 상업적인 면에서 커다란 폐해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악이태 역시 숙지하고 있었다.

지금 수로는 통하지 않고 육로는 매우 험해서 왕래하며 장사를 하는데 짐을 어깨에 메지 않으면 말에 실어 나르니,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반면에 이익은 매우 적다. 이 때문에 [상인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모든 물건의 [유통이] 매우 곤란한 지경이다.<sup>27</sup>

25 中國第一歷史檔案館外, 1987,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112쪽.

26 民國『貴州通志』前事志 十九, 「鎭遠知府方顯上平苗事宜」, (貴陽書局, 民國37), 192쪽, “生苗不籍有司無土司管轄. 官民自黔之黔之楚之粵, 皆迂道遠行不得取直道由苗地過, 內地奸民犯法捕之急, 則竄入苗地, 無敢過問, 苗又時出界外, 剽掠商旅尤以爲苦, 界以弱肉強食, 良懦控訴無所, 此黔省大害也.”

27 民國『貴州通志』前事志 十九, 「鄂爾泰實授雲貴總督陳奏兩省事宜」(貴陽書局, 民國37), 188쪽, “今水路不通, 陸路甚險, 往來貿易, 非肩挑卽馬馱, 費本既多, 獲利甚微. 是以裹足不前, 諸物艱難.”

따라서 청조의 입장에서는 서남지역의 상업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검동남 지역을 개발해서 교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시급했던 것이다. 옹정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고주(古州) 등의 묘만(苗蠻)은 검(黔)과 월(粵) 사이의  
 경계에 있어 자고로 교화가 미치지 않아 종족끼리 살상하고 내지의 범법자들이  
 은닉하여 지방의 우환이 되니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sup>28</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검동남 지역의 개토귀류는 악이태의 심복인 안찰사 장광사가 주도하였다.  
 옹정 6년(1728) 악이태의 명령을 받은 장광사가 도균부(都勻府)의 요충지이자  
 단강·청강·고주 등 검동남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팔채(八寨)에 대  
 한 토벌<sup>29</sup>을 시작으로 해서 옹정 12년(1734) 합원생(哈元生)이 구고묘(九股苗)  
 를 평정<sup>30</sup>한 것을 끝으로 일단 완료된다. 당초 개토귀류의 방침에 대해서는 회  
 유책[撫]과 강압책[剿] 중에서 무엇을 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  
 다. 진원지부 방현은

묘민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강압책만을 사용한다면 천지의 조화를 손상시  
 킴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묘민은 대부분 짐승과 같기 때문에 오로지  
 회유책만을 사용한다면 또한 흉악하고 완미한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자는 마땅히 어느 한쪽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sup>31</sup>

라고 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회유책을 우선으로 하

28 『世宗憲皇帝實錄』 卷88, 雍正 7年 11月(中華書局, 1985), 141쪽.

29 民國『貴州通志』 前事志 十九, 「鄂爾泰令按察使張廣泗討八寨苗」(貴陽書局, 民國37), 194~195쪽. 이 팔채에 대한 토벌을 학계에서는 이른바 ‘개벽묘강(開關苗疆)’의 시작이라고 한다.

30 民國『貴州通志』 前事志 十九, 「夏六月提督哈元生九股頑苗蕩平籌議先後」, (貴陽書局, 民國37), 210~211쪽.

31 民國『貴州通志』 前事志 十九, 「鎮遠知府方顯上平苗事宜」(貴陽書局, 民國 37), 192쪽. “苗亦人類, 必專用剿, 未免傷天地之和. 苗多獸心, 若專用撫, 亦難懾凶頑之膽, 二者不宜偏廢.”

고 강압책을 나중으로 하는 ‘선무후초(先撫後剿)’ 방식을 주장했다.<sup>32</sup> 악이태도 처음에는 회유책을 주로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양자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sup>33</sup> 옹정 9년(1731)에 올린 상주에서는

신이 조사하건대 묘만은 [청조의] 위세를 두려워해야 매양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심합니다. 만약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은혜에 감사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징벌을 한 이후에 복종을 받아야 합니다.<sup>34</sup>

라고 하여 묘민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강압책을 우선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장광사의 검동남 지역 평정 과정은 대단히 강압적으로 진행되었다. 클로딘 롱바르-살몽은 장광사의 검동남 지역 평정 과정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광사의 군대는 가혹한 진압을 통해 여러 촌寨(村寨)를 불태우고 반란세력을 처형했으며, 투항한 묘족들에게는 “피를 마시고 나무에 글을 새기며, 돌을 매장해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게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묘족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청강(淸江) 방면에서는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어 “묘족들이 사방의 산에서 울부짖었다”<sup>35</sup>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옹정에서 건륭시기 묘민 기의 중에 묘족 지구의 촌寨 1,224좌(座)가 파괴되었으며, 기의의 희생자는 17,600여 명에 이른다. 포로로 잡힌 묘민 25,000여 명 중에 11,000여 명이 살해당했으며, 포로 중의 13,000여 명은 개토귀류 중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으로 하사되어 노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청조 군사에 산寨(山寨)가 포위

32 위와 같음.

33 본고 주 20) 참조.

34 中國第一歷史檔案館外, 1987,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鄂爾泰奏古州大局全定折」, 78쪽. “臣查苗蠻之畏威, 每甚于感恩, 若威無可畏, 亦恩不知感, 故必先創徵, 而後收服.”

35 클로딘 롱바르-살몽 저, 정철웅 역, 2015, 『중국적 문화변용의 한 예: 18세기 귀주성』, 세창, 465~470쪽.

되어 자살하거나 굶어 죽은 자가 실로 만 명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sup>36</sup>

일찍이 옹정제는 ‘중외일체(中外一體)’의 ‘대일통(大一統)’ 사상에 입각해서 민족적 차원에서 ‘화’와 ‘이’를 구분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도 모두] 짐의 적자가 아닌가!”라는 옹정제의 표현에는 종래의 ‘화이사상’에서 벗어나 민족적 차별을 희석화시킴으로써 변경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다민족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토귀류는 바로 이러한 ‘적자’ 관념에 입각해서 황제의 덕화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교화하여 청조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검동남 지역은 몽골·티베트 지역과는 달리 청조 지배질서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묘족의 문화와 사회는 교화의 대상으로 인지되지 않았다. 개토귀류의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검동남 지역의 개토귀류 과정에서 나타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지역질서의 무시와 무차별적인 살상 및 약탈 등은 바로 그러한 측면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대규모 살상은 청조에 대한 묘족들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여 오히려 묘족의 끊임없는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민족 통합의 시점에서 시작한 개토귀류는 그 논리와 실천면에서 오히려 전혀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옹정 13년(1735) 2월, 고주(古州)의 묘민들이 무리를 규합해서 고주의 도성을 공격한 것을 필두로 해서 청강·대홍 각지에서 청조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이 일어났다.<sup>37</sup> 묘민들의 저항은 곧 진압되었지만,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개토귀류를 주도한 장광사는 옹정제에 대한 상주에서 묘족들의 반란이 창궐해서 그 지역이 천여 리에 이르며 반란군도 수십만을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sup>38</sup>

36 沈乾芳·馬國君, 2013, 「苗疆開闢與苗疆社會的重建-以雍乾時期黔東南土司設置爲視野」, 『曲靖師範學院學報』 32-5, 46쪽.

37 中國第一歷史檔案館外, 1987,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馮光裕奏古州苗民聚眾攻打汛城折」, 88쪽.

38 中國第一歷史檔案館外, 1987,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張廣泗奏大兵于大局定貼之後方可回撤折」, 117쪽.

여하튼 5년간에 걸친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검동남 지역의 묘족 지역의 평정을 일단락 한 청조는 우선, 단강(丹江, 현 雷山)·고주(古州, 현 榕江)·청강(淸江, 현 劍河)·팔채(八寨, 현 丹寨)·대공(臺拱, 현 臺江)·도강(都江, 현 三都) 등지에 각각 청(廳, 이를 ‘新疆六廳’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진원부(鎭遠府)·여평부(黎平府)·도균부(都勻府) 세 곳으로 나누어 관할하게 했다. 이 지구는 명대 요패(天霸)의 토사가 설치된 팔채를 제외하면 모두 인근의 토사가 대신 관할하던 곳이었다.<sup>39</sup>

청조는 검동남 지구에 귀주 병력의 절반 이상을 배치하여 새롭게 개척한 묘족 지구를 관할했으며, 묘민들의 무기를 압수했다. 이외, 당초의 목적인 수륙 교통로의 확보로서 청수강과 도강(都江) 등의 수로가 개통되었으며, 양강의 좌우로 육로와 수로를 연결하는 거점이 확보되었다. 이리하여 새롭게 확보된 ‘신강 6청(新疆六廳)’ 지역에는 청조의 관리와 군사가 파견되어 묘민들을 직접 통치하게 됨으로써 검동남 지구의 개토귀류는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 Ⅲ. 개토귀류 후 검동남 묘족 사회의 변화

청조는 옹정 11년 약 5년간의 군사작전을 통해 검동남 지구의 개토귀류를 달성하고서 ‘신강6청’을 설치했다. 이후 관리를 파견하고 군사를 주둔시켜 해당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새롭게 설치된 6청 중에서 도강청을 제외한 5청은 모두 위·보·둔전을 설치하고 묘강(苗疆)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로써

39 張永國, 1981, 「略論貴州“改土歸流”的特點」, 『貴州文史叢刊』 3, 104쪽. 부연하면, 요패는 청대 강희 연간 묘민들에 의해 축출되었기 때문에 옹정 연간 본격적인 개토귀류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사가 없는 ‘생묘’지역이었다.

40 馬國君·黃健琴, 2011, 「略論清代對貴州苗疆“生界”的經營及影響」, 『三峽論壇』 4, 75쪽.

해당 지역의 개토귀류는 일단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러나 검동남 지구에서의 묘족의 저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클로딘 롱바르-살몽은 개토귀류 이후 발생한 묘족의 저항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sup>41</sup> 반란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청말 위원(魏源)이 옹정 13년(1737) 묘족 지역의 관리들이 세량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곳의 촌채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한인 관리들이 규정 이상으로 과중한 세금을 걷어 이에 대한 불만이 각지에서 표출했던 것 같다. 이후 묘족의 저항은 각지로 확산되어 “태공(太拱)과 청강(淸江) 사이의 군영이 반란 세력에 넘어가 반역의 기운이 사방에서 일어났다”<sup>42</sup>고 위원은 기록하고 있다.

개토귀류 이후에도 묘족의 저항이 끊이지 않자 일부 관원들은 검동남 묘족 지구에 대한 통치를 재고하게 된다. 당시 묘족의 실상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던 양명시(楊名時, 1661~1737)는 묘족의 반란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귀주의 묘족 지역은 남쪽에 생묘가 있고 북쪽에 한인이 있으며 그 중간에 숙묘가 있어 서로 안주한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개토귀류 이후 생묘 지역에 관병이 주둔하게 되면서 생묘들이 주거지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란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묘족을 기미(羈縻)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토관에게 세습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지역을 나누어 관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아마 병란(묘족의 반란)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양명시는 변경 통치의 관점에서 토관에 통치를 맡기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상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묘민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청군과 묘민 사이의 공방전은 장기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sup>43</sup> 이 양명시의 주장은 악이태 등이 단행한 무력을 통한 개토귀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41 클로딘 롱바르-살몽, 2015, 앞의 책, 470~474쪽.

42 魏源, 1984, 『聖武記』 卷7, 「雍正西南夷改流記下」, 中華書局, 292~293쪽.

43 沈乾芳·馬國君, 2013, 앞의 글, 47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검동남 지역의 개토귀류를 진두지휘한 장광사는 옹정 13년(1737) 겨울 옹정제에게 자신이 사후 처리를 잘하지 못한 죄가 크므로 자신의 관직<sup>44</sup>을 헤편하여 군에 모범을 보일 것을 청했으나 옹정제는 허락하지 않았다.<sup>45</sup> 이후 검동남 묘족의 계속되는 반란은 옹정제 사후 건륭 원년(1736), 운귀총독과 귀주순무에 동시에 임명된 장광사에게 철저하게 진압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sup>46</sup> 그러나 무력 진압에 따른 평온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묘족의 저항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건륭 원년 7월 고주(古州) 등을 평정한 후 건륭제는 말하기를 이들 역묘(逆苗)들은 마땅히 엄히 징벌해야 하지만 짐이 보기에 “온 하늘 아래(普天之下) 모두 나의 적자가 아닌가! 이들은 단지 적자 중의 불초한 자일 뿐이다”<sup>47</sup>라고 하고 “묘민의 풍속은 내지의 백성과 매우 다르니 이후 묘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는 모두 묘족의 관습에 따라서 처리하고 반드시 관법(官法)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sup>48</sup>고 했다. ‘하늘 아래 모두가 다 나의 적자’라는 관념은 옹정제가 개토귀류를 개시하면서 토사에게 고통을 받는 토민을 향해 한 표현이다. ‘중외일체’의 관념에서 교화의 명목으로 진행된 개토귀류는 결과적으로 묘족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됨에 따라 묘족과 내지의 차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옹정제의 적자

44 당시 그는 개토귀류의 공적을 인정받아 호광총독으로 승진했다.

45 魏源, 『聖武記』 卷7, 「雍正西南夷改流記下」, 293쪽. 부언하면 악이태는 개토귀류의 공적을 인정받아 백작의 지위를 하사받았는데, 개토귀류 이후 묘족의 저항이 끝이지 않아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백작의 지위를 반납하고 관직을 헤편해줄 것을 요청하자 옹정제가 받아들였다.

46 장광사의 진압 상황에 대해서는 클로딘 롱바르-살몽, 2015, 앞의 책, 473~474쪽 참조.

47 民國『貴州通志』前事志 二十, 「認豁免古州等處新設錢糧永不徵收」(貴陽書局, 民國37), 225쪽.

48 民國『貴州通志』前事志 二十, 「認豁免古州等處新設錢糧永不徵收」(貴陽書局, 民國37), 226쪽.

관념이 건륭제에 이르러 내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된 점은 매우 흥미롭다.

건륭 원년(1736) 10월 장광사는 묘족 지구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건륭제에게 “산을 벌목하여 도로를 개설하고(伐山通道) [묘족의] 미신을 금지하며(飭禁師巫), 교화를 중용하여 묘족의 풍속을 바꾼다(懲惡化導以變苗俗)”는 내용을 담은 상주를 올렸다. 이에 대해 건륭제는 일을 처리할 때에는 모두 공평하게 논의하여 “저들(묘족)로 하여금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서 차마 배반하지 못하게 하며, 위세가 있어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sup>49</sup>라고 하여 새로 개척한 묘족 지역에 대한 정책을 시행함에 묘족들이 본질적으로 감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2년 후인 건륭 3년(1738) 12월에는 묘족 지역의 수령(守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령이란 백성을 새롭게 (교화) 하는 관리로 가장 중요하다. 게다가 변경 지역은 민과 夷가 잡거하니 회유하여 교화하는 데 직임이 더욱 막중하다.……조사에 따르면 운남과 귀주의 여러 묘족은 종래 王化의 밖에 있어 지방의 해악이 되고 있다. 근래 토사를 변경하고 유관을 설치해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러나 당초 백성들이 입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 반드시 어질고 선량한 관원으로서 은혜와 신뢰를 겸비하고 모든 일을 타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여 저들의 마음을 감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오랫동안 태평하고 무사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이와 같이 청조 정부는 개토귀류를 완성한 후, 어질고 현명한 관리를 파견해

49 『高宗純皇帝實錄』卷29, 乾隆元年 10月 29日 丙辰條(中華書局, 1986).

50 『高宗純皇帝實錄』卷83, 乾隆三年 12月 16日 戊午條(中華書局, 1986). “守令為親民之官, 最關緊要. 而邊疆之地, 民夷雜處, 撫綏化導, 職任尤重. ……查雲貴諸苗, 向在王化之外, 為害於地方. 近來改土設流, 漸次安輯, 然瘡痍初起, 元氣未復, 必得循良之員, 恩信兼著, 調劑咸宜者, 令其心志貼服, 然後可以久安於無事.”

서 새롭게 개척된 묘족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건륭제도 인정하고 있듯이 묘족 사회는 지리적 환경, 사회구조 및 풍습이 내지와는 크게 달랐기 때문에 유관(流官)에게만 통치를 위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이에 장광사는 무력을 동반한 개토귀류의 좌절을 거울삼아 다윈 복합적인 지방사회에 군사력에만 의지해서 내지의 행정체제를 이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마침내 토사 제도를 차용해서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는 말하기를 “묘족 지역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도로에 익숙하지 않아 문무아문은 각각 묘어에 능통하고 도로에 익숙한 사람을 고용하여 통사(通事)를 설치해서 묘민을 위로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이 통사를 통해 묘족에게 상유의 내용을 전달하고 아울러 세량을 징수하는 등의 사무를 맡기는 것을 건의했다.<sup>51</sup>

또한 귀주 안찰사 방현(方顯)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묘족들은 야만적이며 종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어 모두 불손합니다. 촌채에는 한 두 명의 지사가 있어 우두머리[苗頭]가 금지하고자 해도 평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묘족들은 규약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유를 하고자 한다면 각 촌채의 호구를 조사하여 10인당 1甲으로 하고 그중 한 명의 노인을 갑장으로 삼아 위패(독무가 하급관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내리는 문서)를 하사합니다. 10갑당 1보로 하고 한 명의 유력자를 보장으로 삼아 위패를 하사합니다. 무릇 초하루와 보름에 보장에게 명을 내려 근처 지방 아문에 나아가 상유를 듣게 하고, 통사와 번역에는 소금[鹽]과 담배[煙]를 상으로 내려 그 노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장에게는 산채를 돌려 갑장을 통솔하고 가가호호에 상유를 전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묘족들이 각각 규약을 준수하게 되면 나날이 가다듬어져 수년이 지나지 않아 그 야만성은 점차 길들여져 교화의 효과 역시 점차 나타날 것입니다.<sup>52</sup>

51 民國『貴州通志』前事志 二十, 「張廣泗奏苗疆善後事宜」(貴陽書局, 民國37), 230쪽.

52 中國第一歷史檔案館外,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方顯奏請于苗疆編立保甲折」, 132쪽. “群苗野性, 向無統屬, 凡有蠢動, 寨中即有一二知事, 苗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유관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묘족의 유력자를 갑장과 보장으로 삼아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족 지역의 통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묘족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치하자는 것으로 종래의 토사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건륭 15년(1750) 4월, 귀주순무 애필달(愛必達)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조사하건대 귀주성의 구강은 숙묘와 한인이 잡거하고 있는데 매우 공순하며, 土司·土舍·土目 및 苗鄉約·寨頭管束이 있습니다. 新疆(새롭게 개척한 묘족 지역)에는 생묘와 주둔군이 섞여 있으며 또한 土弁·通事·寨長·百戶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성정이 우둔하고 미혹됨이 많습니다. 신은 부임한 이래 통행을 엄격하게 단속하였습니다. 무릇 도망자를 체포하거나 흉악범을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에 함부로 각 부·청·주·현에서 [용의자]를 체포하지 말고 모두 土司·土舍·토목·토번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해서 무리하게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토사나 토목 등이 불법을 자행하면 묘민들에게 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한인으로 구강의 묘족 땅에 오래 거주하며 가산을 소유하고 있고 평소 품행이 방정한 자는 토사·토목 등에게 명해 연말에 호구수를 조사하여 수시로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자는 체류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신강 일대의 각 묘채의 경우에는 지방관에게 조사를 시켜 한인의 置産을 허가하지 않고 또한 그 땅에 몰래 들어가는 것조차 허가하지 않았습다.<sup>53</sup>

頭欲行禁止，奈平素無權，群苗罔遵約束，今若就其求撫時，卽于各寨編立煙戶冊，每十人爲一甲，擇一老成者爲甲長，給以位牌，每十甲爲一保，擇一強干者爲保長，給以位牌，凡遇朔望，令保長赴就近地方官衙門聽講上諭，通事·番譯，仍量賞鹽煙，以示獎勵，并令保長回寨，督率甲長，家諭戶曉，如此庶群苗各遵約束，而日漸月摩，不出數年，其野性可以漸馴，教化亦可以漸孚矣。”

53 『高宗純皇帝實錄』卷363, 乾隆 15年 4月 27日 庚午條(中華書局, 1986). “查黔省舊疆，熟苗與漢人比屋雜居，甚為恭順，有土司·土舍·土目及苗鄉約·寨頭管束，新疆生苗與屯軍錯處，亦額設土弁·通事·寨長·百戶分管，但性愚多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청조는 개토귀류 이후 새롭게 개척된 묘족 지구를 부(府)·청(廳)·주(州)·현(縣)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유관의 직접통치를 도모했지만, 실제로는 유관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사나 토목, 토변이 간접 통치를 하였던 것이다. 즉, 검동남 지역에서는 옹정제의 개토귀류로 혁파된 토사 등이 회복되었으며, 나아가 본래 토사가 존재하지 않던 생묘 지역은 오히려 토사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sup>54</sup> 그러나 종래 토사가 해당 지역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토사가 부정을 행할 경우에는 토민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사의 권한이 대폭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족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묘족 지구에 들어가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나아가 묘족들과 함부로 그들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건륭 16년(1751) 귀주순무 개태(開泰)는 말하기를

귀주성은 종래 馬販(말 상인)이 사천이나 귀주에 갈 때에는 상단의 무리가 10명을 넘지 못하게 했으며, 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 후에는 해당 지방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한 후에 비로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도균·여평·남풍 3부, 장채·낭대·팔채·대공·고주·귀화·단강·청강·도강 등 11청현, 정번·독산·영풍 3주, 여파·영중 2현 및 도균부에 속한 도균현, 여평부에 속한 개태현은

惑. 臣到任後, 即通行嚴飭. 凡遇緝逃查兇取結事件, 各府廳州縣, 不許濫差出票, 俱交承辦之土司·土舍及土目·土弁等, 勒限拏繳. ……若土司目等, 敢有索詐欺濫, 許苗人赴控究治. 至漢人在舊疆苗地住久, 置有房產, 素行良善者, 飭土司土目等於年底查造戶民, 數時附造入冊, 仍毋許招留冊外之人, 與新疆一帶各苗寨, 令地方官稽查, 不得聽漢人置產, 亦不許濫處其地.”

- 54 『黔南職方紀略』에 따르면 청조는 6청을 설치한 후 “臺拱에 8, 淸江에 13, 都江에 2, 丹江에 3, 古州에 10개의 토변을 각각 설치했다”고 한다(馬國君·黃健琴, 2011, 앞의 글, 76쪽 재인용). 구체적으로는 土通事·土千總·土把總·土辦 등의 지위가 있어 묘족 지구에는 각각 대소 토사가 병존하는 형세가 되었다. 『청사고』 권 75 지리지에 따르면 八寨廳에는 “양무배조사장관 1명, 영안사장관 1” 진원현(鎮遠縣)에는 공수사정부장관 1 등이 있었다.

모두 묘족 지역의 요충지이므로 마판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sup>55</sup>

라고 건의하여 건륭제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이 묘족 지역에서의 상업 활동의 제한은 귀주 검동남 지역의 최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입업 경영에서 두드러진다. 18세기 중엽 이후 양자강 중류나 강남 등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대량의 목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휘주상인을 비롯한 많은 객상(客商)이 청수강이나 도유강 연안의 산간지대에서 산출하는 삼목을 구하기 위해 검동남 지역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객상은 현지 묘족 촌락에 가서 묘족 상인과 직접 가격을 흥정한 후 구매할 수 없었다. 청수강에서의 목재 유출은 모坪(茅坪)·왕채(王寨)·괘치(卦治) 3채로 구성된 3강 3채에서 돌아가면서 목시(木市, 목재 시장)를 열고, 여기에서 강서상인 등 외래 객상(이들을 ‘水客’이라고 함)이 청수강 유역의 현지 상인(이를 ‘山客’이라고 함)과 가격을 흥정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한족 상인이 직접 묘족의 산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sup>56</sup>

청조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새롭게 개척된 묘족 지구를 무력으로 개토귀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토사를 설치하여 간접 통치를 함으로써 묘족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묘족 지구에 한족이 들어가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함으로써 한족에 의해 묘족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중외일체’ 관념에 의해 시작된 개토귀류는 결국 ‘중외분리’라는 정책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sup>57</sup>

55 『高宗純皇帝實錄』卷397, 乾隆 16年 8月 30日 辛未條(中華書局, 1986). “黔省舊例, 馬販赴川·黔, 夥伴不得過十人, 官給印照, 買齊後該地方官鈐印, 方許趕回,…… 今議得都勻·黎平·南籠 三府, 長寨·郎岱·八寨·台拱·松桃·古州·歸化·丹江·都江·清江·水城 十一廳, 定番·獨山·永豐·三州, 荔波·永從二縣, 及都勻屬之都勻縣, 黎平屬之開泰縣, 均苗疆要區, 禁止馬販.”

56 이에 대해서는 金弘吉, 2009, 「清代 서남지역의 목재교역과 소수민족 상인 - 貴州 錦屏縣 지역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32집 참조.

57 건륭제는 역모를 도모한 曾靜을 직접 심문하고 그 문답을 모아 간행한 『大義覺迷錄』을 禁書로 지정하고 증정을 사형에 처한 바 있다(閔斗基, 1964, 「『大義覺迷

그러나 한족과 묘족의 분리 통치 정책에도 건륭 연간 중 후기에는 점차 한족의 이주가 진행되어 묘족과 한족이 잡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장채(長寨)의 경우를 보면, 한족[漢民]이 2,329호, 숙묘가 116채, 생묘가 276채가 있는데, 산채의 경우 규모가 큰 것은 20여 호, 작은 것은 3~4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 장채는 증가묘(獨家苗)와 청묘(淸苗)로 구분되는데, 특히 증가묘는 옹정 4년(1727) 악이태의 무력을 동반한 개토귀류의 계기가 된 곳으로 처음 평정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이 묘족이고 한족은 매우 적어 풍속이 소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점차 한족이 이주하고 또한 묘족의 한화가 진행되어 어느 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sup>58</sup> 김동남 지역에 새로 설치한 6청 중의 하나인 대공청은 본래 생묘지로서 산길이 험하고 협소해서 인적이 드물었으나 옹정 11년(1734) 평정된 이후 도로가 개통되고 한족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건륭 후기에는 한족이 모두 437호, 2,072명에 이르고, 묘채는 161채, 9,891호에 이르러 한인(漢人)이 상당수 이주해서 정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조는 이 대공청에 토천총(土千總) 3인, 토파총(土把總) 5인, 통사 10인을 두어 각각 촌채를 분담 관할하게 했다. 각 산채에 아직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과시(科試)를 준비하는 문무 동생(童生)이 있었다고 한다.<sup>59</sup>

청조는 묘족 지구에 한인의 이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으나, 현실적으로 묘족 거주지에는 점차 한인이 이주함에 따라 묘족의 풍속도 변화하게 되었다. 김동남 6청 중의 하나인 청강청 역시 본래 생묘지였는데, 옹정 연간 장광사가 평정한 후 점차 한인이 이주하게 되어 청강청 관할 내의 동묘(洞苗)의

---

錄』에 대하여, 『震檀學報』 25. 후에 민두기, 1973, 『중국근대사연구-신사층의 사상과 행동』, 일조각에 수록). 이는 만주와 한인을 민족적으로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옹정제의 논리는 소수의 滿洲가 다수의 한인을 지배하는 당시의 체제질서 속에서 만주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토귀류 이후 한족과 묘족 사회를 분리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58 愛必達, 『黔南識略』 卷1, 「長寨同知」(成文出版社影印, 民國 57年), 18~19쪽.

59 愛必達, 『黔南識略』 卷13, 「臺拱同知」, 95~96쪽.

경우에는 중화의 풍습[華風]을 배워 성씨를 바꾸었으며, 부녀자들은 한족 복장을 입고 주둔군과 결혼하는 자도 많아졌다.<sup>60</sup> 묘민이 대부분이고 한인이 적은 여평부(黎平府)의 동묘(洞苗)도 한화가 진행되어 남자들은 농사를 짓고 독서를 해 한인과 다를 바 없었으며, 여자들도 한인 복장을 하고 한인과 통혼하기도 했다.<sup>61</sup> 정번주(定番州)의 팔만묘(八萬苗)의 경우에도 복식(服飾)이 한인과 같았다.<sup>62</sup> 앞에서 언급한 대공청 역시 내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묘민의 풍속이 점차 변해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인 복장을 하였다.<sup>63</sup> 단강통판(丹江通判)의 흑묘는 본래 성정이 완고하고 포악했으나 장광사에 의해 개혁된 이후에는 점차 양순해지고 어느 정도 한어가 통하게 되었다.<sup>64</sup>

고주(古州)의 경우를 보면, 아직 학교는 설립되지 않았지만, 옹정 8년(1731) 구월(口月) 등 3곳의 산체에 1개소의 의학(義學)을 세웠으며, 옹정 11년(1734), 12년(1735)에는 낙향(樂鄉) 등의 산체에 6개소의 의학을 세웠다. 게다가 이곳의 묘족 중에 동묘의 남자는 모두 변발을 하고 한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 건륭원년에 이르러서 묘민은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65</sup> 묘족 지구의 의학 설치는 점차 확대되어 건륭 5년에는 24개소에 이르러 학문적 자질이 있는 생모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되었다.<sup>66</sup>

이와 같이 건륭 연간의 개토귀류는 한족과 묘족 지구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격리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묘족 지역의 한화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인구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묘족 사회를 중국의 내지와 마찬가지로 보갑제 하의 지역

60 愛必達, 『黔南識略』卷13, 「清江通判」, 100쪽.

61 愛必達, 『黔南識略』卷13, 「黎平府」, 147쪽.

62 愛必達, 『黔南識略』卷3, 「定番州」, 34쪽.

63 愛必達, 『黔南識略』卷13, 「臺拱同知」, 97쪽.

64 愛必達, 『黔南識略』卷9, 「丹江通判」, 74쪽.

65 愛必達, 『黔南識略』卷22, 「古州同知」, 151~153쪽.

66 民國『貴州通志』前事志 二十, 「命貴州立社學」(貴陽書局, 民國37), 238쪽; 范連生, 2013, 「清代黔東南民族地區的苗疆義學」, 『教育評論』2013-3 참조.

사회로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족의 이주로 인해 묘족 사회는 크게 변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독서를 통해 과거에 응시하고, 한족의 성과 복장을 따르며, 심지어는 한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족의 이주민 증가에 따라 묘족 사회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변화했다. 검둥남 지역의 경우 둔전의 확대에 의해 농지 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면화 등 상품 작물의 재배도 증대했다. 특히 천주현(天柱縣)과 금병현(錦屏縣) 등 청수강 하류 지역은 귀주의 대표적 임업 산지로서 명대 중엽이래 궁궐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皇木이라고 함)를 공급했으며,<sup>67</sup> 청대 강희 연간이래 목재 생산과 무역으로 상품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당시 여평부(黎平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淸江에서 茅坪에 이르기까지 약 200리에 걸쳐 양쪽 기슭에는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목이 울창하게 자라 대들보나 서까래 등으로 쓸 만한 목재가 모두 구비되어 있다. 벌목하는 소리가 계곡을 뒤흔들고 상인들은 거리에 넘쳐나며 강에서는 목재를 커다란 뗏목으로 묶고 있다. 江淮(강소성과 안휘성 일대) 지방으로 운반되는 목재는 여기에서 산출되는 것이다.<sup>68</sup>

여기에는 당시 청수강 유역 목재 자원의 풍부함과 목재 재질의 뛰어난, 벌목과 교역의 활발함 등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sup>69</sup> 이러한 목재 무역을 통해 소수민족(주로 苗族·侗族) 상인인 산객(山客) 중에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도 등장했

67 金弘吉, 2013, 「明代 皇木採辦과 木商」, 『歷史教育』 125 참조.

68 愛必達, 『黔南識略』 卷21, 「黎平府」, 147쪽. “自淸江以下至茅坪, 二百里兩岸, 翼雲承日無隙, 土無漏陰, 棟梁宋桷之材, 靡不備具, 坎坎之聲, 鏗匄空谷, 商賈絡繹於道, 編巨筏放之大江, 轉運於江淮間者, 產於此也.”

69 楊有賡, 2003, 「淸代苗族契約文書의 學術的意義」, 『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匯編』 3, 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語言文化研究所, 53~54쪽.

다.<sup>70</sup> 특히 금병현 문두채(文斗寨)의 강씨(姜氏) 일족은 임업·상업경영을 통해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묘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묘족 사회의 변화는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문두채의 강씨 일족 등 일부 묘족과 동족의 경우는 강고한 촌채 결속을 통해 한인 상인과 이주민의 전토나 산림수탈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상당수 묘족 사회는 상업·고리대업을 하는 한인 상인과 이주자에게 수탈을 당해 점차 자신들의 전토나 산림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sup>71</sup> 이에 따라 묘족 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문두채와 같이 광대한 전토와 산림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묘족 사회는 그들의 전토가 되어 임업경영에 종사하거나 목재 운반 등을 통해 힘겨운 생활을 지탱해 나갔던 것이다. 다케우치 후사지(武内房司)가 지적하였듯이 문두채의 강씨 일족은 묘족임에도 태평천국 시기 묘족의 반란에서는 오히려 관군의 입장에서 반란군 진압에 협조하는 한편, 대공청의 묘족은 민간종교와의 결사를 통해 반란을 추진하는 등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토귀류 이후 묘족 사회의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sup>72</sup> 필자가 문두채를 방문해서 흥미롭게 여겼던 것은 지금도 마을을 둘러싸고 세워진 성벽이 남아 있는데, 외부(주변 묘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개토귀류 이후 묘족 사회 내부의 변화는 ‘한/비한’의 경계에서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0 王宗勛, 1997, 『清水江流域封建商品經濟發展初探』, 『黔東南民族師專學報(哲社版)』 15-4, 참조.

71 武内房司, 1994, 『清代貴州東南部 ミャオ族にみる『漢化』の一側面-林業經營を中心に』, 竹村卓二 編, 『儀礼・民族・境界: 華南諸民族『漢化』の諸相』, 風聲社, 88~89쪽.

72 武内房司, 1994, 위의 글. 특히 문두채 강씨 일족의 경우 일찍이 한족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과거시험을 통해 한족에 가까이 가면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비한족’임을 내세워 약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유교적 논리에 호소하기도 했다는 점은 매우 자신들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묘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청대 검동남 지역 묘족 사회의 행정 개편과 변화 실태를 개토귀류 운용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래 개토귀류의 원인으로는 토사의 폐단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다. 즉 세습적 권력을 지닌 토사가 절대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며 소속되어 있는 토민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며 인신 예속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사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토민 역시 황제의 은혜를 입어야 할 적자라는 관념에서 황제의 덕치에 장애가 되는 이 토사를 제거한다는 것이 개토귀류의 주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사제도란 본래 언어와 풍토 등의 이유로 황제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비한족 세계에 대해 그 지역의 유력자에게 공납과 기타 의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장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른바 양측의 이해가 절묘하게 합치되는 가운데 성립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사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개토귀류를 단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선행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권력을 이용해서 토민을 착취하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지만,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개토귀류에 대해 묘족 사회가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저항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느낌이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검동남 지역의 경우에는 토사의 권한이 매우 미약하고 게다가 토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생묘가 상당수 분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개토귀류를 추진한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인 악이태가 토사의 권력이 강한 운남과 달리 토사의 권한이 미약한 귀주의 묘족을 더욱 위구시했던 것은 바로 개토귀류가 단지 토사의 폐단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국 이 생묘는 토사의 지배하에 있던 숙묘와 달리 개토귀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면서 강렬하게 저항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청조는 개토귀류를 통해 토사를 폐지하고 유관으로 대치하는 행정개편을 단행했지만, 검동남 지역의 경우 묘족 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여전히 직접 통치하는 데 곤란함을 느끼고 현 아래 토관·토목·통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게다가 종래 토사가 없던 생묘 지역에는 새롭게 토사제도를 설치하는 등의 변화를 도모한다. ‘중외일체’의 관념에서 시작된 개토귀류는 오히려 ‘중외격리’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청조는 묘족 사회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비한의 세계를 분리하여 묘족 지역에 한족의 이주 등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족 사회의 한화 정책 역시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한족 이주민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묘족 사회는 크게 변화하게 된다. 검동남 지역의 경우 둔전의 확대로 농지 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면화 등 상품작물의 재배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청수강 하류지역의 경우 목재 자원이 풍부하고 목재의 재질도 뛰어나 임업경영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하게 된다. 현재 청수강 유역의 임업경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방대한 분량의 계약문서는 당시의 임업경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업경영을 통해 가령 문두채 강씨 일족과 같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집단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묘족은 한족 이주민 또는 상인 등의 수탈을 통해 전토와 산림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이들은 전호가 되어 임업경영에 종사하거나 목재를 운반하는 등의 힘겨운 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개토귀류 이후 묘족 사회의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상실한 묘족 사회의 불만은 결국 언젠가지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청조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균열을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 乾隆『貴州通志』, 乾隆6年刻.  
『高宗純皇帝實錄』, 中華書局, 1986.  
民國『貴州通志』, 貴陽書局, 民國37.  
『聖祖仁皇帝實錄』, 中華書局, 1985.  
『世宗憲皇帝實錄』, 中華書局, 1985.  
『清經世文編』, 中華書局, 1992.  
愛必達, 『黔南識略』, 成文出版社影印, 民國 57年.  
魏源, 1984, 『聖武記』, 中華書局.  
趙爾巽等撰, 1979, 『清史稿』, 中華書局.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人民大學清史研究所·貴州省檔案館編, 1987, 『清代前期苗民起義檔案史料(上)』, 光明日報出版社.

### 2. 논저

- 클로드인 롱바르-살몽 저, 정철웅 역, 2015, 『중국적 문화변용의 한 예: 18세기 귀주성』, 세창.  
金弘吉, 2009, 「清代 서남지역의 목재교역과 소수민족 상인 - 貴州 錦屏縣 지역을 중심으로」, 『明清史研究』 32.  
金弘吉, 2013, 「明代 皇木採辦과 木商」, 『歷史教育』 125.  
閔斗基, 1964, 「『大義覺迷錄』에 대하여」, 『眞檀學報』 25.  
余貽澤, 1944, 『中國土司制度』, 重慶: 正中書局.  
馬國君·聶太廣, 2010, 「略論清朝經營黔東南苗疆政策的演變」, 『曲靖師範學院學報』 29-2.  
馬國君·黃健琴, 2011, 「略論清代對貴州苗疆“生界”的經營及影響」, 『三峽論壇』 2011-4.  
沈乾芳·馬國君, 2013, 「苗疆開闢與苗疆社會的重建 - 以雍乾時期黔東南土司設

- 置爲視野」,『曲靖師範學院學報』32-5.
- 楊軍, 2013,「清代貴州土司制度探析」,『法制與經濟』2013-3.
- 余宏模, 1997,「試論清代雍正時期貴州的改土歸流」,『貴州民族研究』1997-2.
- 王宗勛, 1997,「清水江流域封建商品經濟發展初探」,『黔東南民族師專學報(哲社版)』15-4.
- 韋啟光, 1996,「儒家文化對貴州少數民族文化的影响」,『貴州社會科學』3.
- 林建曾, 1992,「清朝前期完善貴州省建置,開闢『苗疆』及其影響」,『貴州民族研究』50.
- 張永國, 1981,「略論貴州“改土歸流”的特點」,『貴州文史叢刊』1981-3.
- 程昭鑫, 1989,「貴州土司制度與改土歸流」,『貴州民族研究』1989-4.
- 陳濤, 1985,「改土歸流以來湘西黔東北的民族關係」,『貴州民族研究』1985-1.
- 王柯, 2006,『20世紀中國的國家建設と「民族」』,東京大學出版會.
- 谷口房男, 楊勇·塚國一 譯, 2007,「土司制度論」,『百色學院學報』20-3.
- 菊池秀明, 1994,「明清期廣西チワン族土官の‘漢化’と科擧」,『中國-社會と文化-』9號.
- 大林太郎, 1970,「中國邊境の土司制度についての民族學的考察」,『民族學研究』3-2.
- 武內房司, 1994,「清代貴州東南部 ミャオ族にみる『漢化』の一側面-林業經營を中心に」,竹村卓二 編,『儀禮・民族・境界:華南諸民族「漢化」の諸相』,風響社.
- 武內房司, 1997,「西南少數民族-土司制度とその崩壞過程をめぐって-」,『明清史學の基本問題』,汲古書院.
- 楊有賡, 2003,「清代苗族契約文書の學術的意義」,『貴州苗族林業契約文書匯編』3,東京外國語大學アジア・アフリカ語言文化研究所.
- 川島真, 2010,「近現代中國における国境の追憶-‘本來の中國の領域’をめぐる」,『境界研究』1.

## 청대 검동남(黔東南) 지역의 개토귀류(改土歸流)와 묘족(苗族) 사회의 변화

정지호

본고는 청대 검동남 지역의 행정 개편과 묘족 사회의 변화 실태를 개토귀류 운용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검동남 지역의 경우에는 토사의 권한이 매우 미약하고 게다가 토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생묘(生苗)가 상당수 분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개토귀류를 추진한 주요 인물 중의 하나인 악이태(鄂爾泰)가 토사의 권력이 강한 운남과 달리 토사의 권한이 미약한 귀주의 묘족을 더욱 위협시켰던 것은 바로 개토귀류가 단지 토사의 폐단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국 이 생묘는 토사의 지배하에 있던 숙묘(熟苗)와 달리 개토귀류를 통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면서 강렬하게 저항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청조는 개토귀류를 통해 토사를 폐지하고 유관(流官)으로 대치하는 행정개편을 단행했지만, 검동남 지역의 경우 묘족 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여전히 직접 통치하는 데 곤란함을 느끼고 현 아래 토관(土官)·토목(土目)·통사(通事)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게다가 종래 토사가 없던 생묘 지역에는 새롭게 토사제도를 설치하는 등의 변화를 도모한다. ‘중외일체

(中外一體)의 관념에서 시작된 개토귀류는 오히려 ‘중외격리(中外隔離)’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청조는 묘족 사회의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비한의 세계를 분리하여 묘족 지역에 한족의 이주 등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족 사회의 한화 정책 역시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편, 한족 이주민이 서서히 증가함에 따라 묘족 사회는 크게 변화하게 된다. 검동남 지역의 경우 둔전의 확대로 농지 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면화 등 상품작물의 재배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청수강(淸水江) 하류지역의 경우 목재 자원이 풍부하고 목재의 재질도 뛰어나 임업경영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하게 된다. 현재 청수강 유역의 임업경영의 실태를 보여주는 방대한 분량의 계약문서는 당시의 임업경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업경영을 통해 가령 문두채(文斗寨)의 강씨(姜氏) 일족과 같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집단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묘족은 한족 이주민 또는 상인 등의 수탈을 통해 전토와 산림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이들은 전호가 되어 임업경영에 종사하거나 목재를 운반하는 등의 힘겨운 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개토귀류 이후 묘족 사회의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을 상실한 묘족 사회의 불만은 결국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청조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균열을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주제어:** 검동남(黔東南), 토사(土司), 개토귀류(改土歸流), 생묘(生苗), 숙묘(熟苗), 중외일체(中外一體), 중외격리(中外隔離), 한화(漢化)

## ABSTRACT

# The “*Gaitu Guiliu*” (改土歸流) of Qiandongnan (黔東南) in the Qing Dynasty and Changes in the Society of the Miao People (苗族)

Jeong Jiho

This study reviewed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of Qiandongnan, Guizhou in the Qing Dynasty and changes in the society of the Miao people focusing on the operating status of “*gaitu guiliu*.” The results are as follows.

Generally, negative effects of Tusi (土司, native officials) have been discussed as the cause of *gaitu guiliu*. That is, Tusi with hereditary power possessed an absolute majority of land, and pressed the natives (土民) financially and wielded their power to have the people under their control.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gaitu guiliu* was to be rid of Tusi, who had been an obstacle for the benign government of the emperor, since the natives who had been suffering under the oppression of Tusi should also enjoy benefits from the emperor.

However, the original Tusi system was for giving non-Han people,

who were difficult for the emperor to control directly due to reasons including language and climate, the status of head in the tribute payment and other duties. This can be considered the product of compromise with mutual interests satisfied. Therefore, conducting *gaitu guiliu* to eliminate the evil effects of Tusi was nothing but an ostensible reason. As seen in preceding research, it is undeniable that the Tusi exploited the natives using their absolute power. However, this seems insufficient to explain why the Miao people strongly resisted *gaitu guiliu*.

The authority of Tusi was very weak in the Qiandongnan area of Guizhou, and there were numerous societies without Tusi, which were also called “Sheng Miao” (生苗, Miao people not affected by Chinese culture). Actually, the fact that Ortai (鄂爾泰), one of the major figures who promoted *gaitu guiliu*, regarded Miao people in Guizhou, where the power of Tusi was weak, as more dangerous than Yunnan (雲南), where Tusi had strong power, clearly shows that *gaitu guiliu* was not simply due to the negative effects of Tusi. Consequently, unlike the Shu Miao (熟苗, Miao people affected by Chinese culture) who were under the control of Tusi, the Sheng Miao ended up being expelled from their home area due to *gaitu guiliu*. This is why they chose to firmly resist.

In the Qing Dynasty, the Tusi system was abolished through *gaitu guiliu* and replaced with “*liuguan*” (流官). Despite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Qiandongnan faced resistance by the Miao people and difficulties in ruling the society directly. Therefore, Qiandongnan decided to control them indirectly through Tuguan (土官), Tumu (土目), and Tongshi (通事), which were under the county. Moreover, Qiandongnan changed the Sheng Miao region that had no Tusi by introducing a new Tusi system. Started from the concept of “*Zhongw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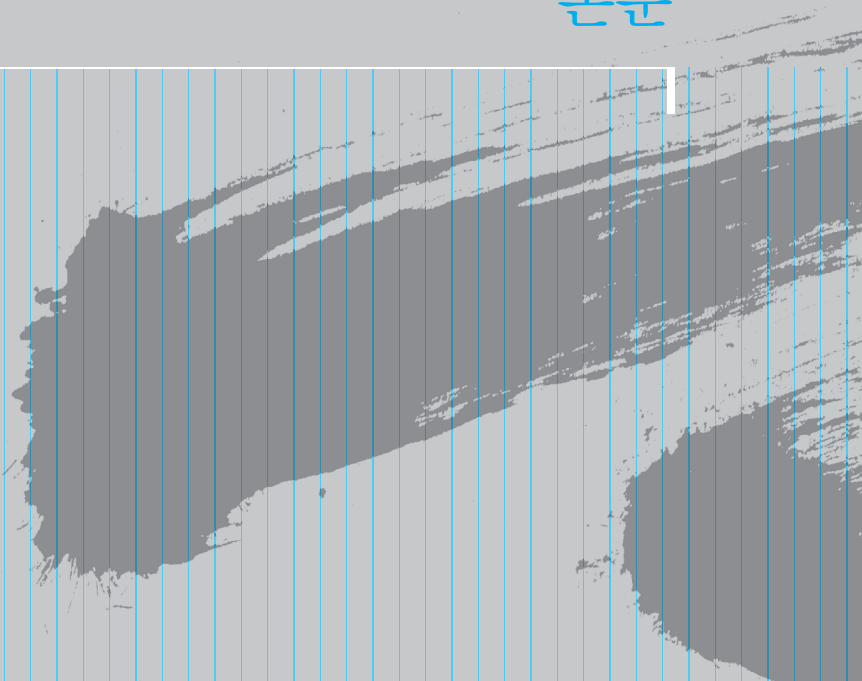
*yiti*” (中外一體), or China and non-China becoming one, *gaitu guiliu* instead caused “*Zhongwai geli*” (中外隔離), or China and non-China being separated). By dividing the Han/non-Han world so not to stir the ethnic feelings in the Miao people, the Qing Dynasty showed double sides by limiting the migration of Han people (漢族) to the Miao people’s region and promoting the Hanification (漢化) of Miao society.

Meanwhile, with the gradual increase of Han immigrants, the Miao people’s society changed significantly. As for Qiandongnan, agricultural areas increased greatly due to the expansion of Tuntian (屯田), and cultivation of cash crops such as raw cotton grew. For the downstream region of Qingshuijiang (清水江) in particular, forest management became a significant industry due to the rich and high-quality lumber resources. The extant trove of contract documents relating to forest management in the Qingshuijiang basin shows the scale of the forest industry at that time. Through forest management, including that by the Jiang (姜氏) family in Wendouzhai (文斗寨), some people made fortunes. On the other hand, other people lost their territory (田土) and forest due to exploitation by Han immigrants or merchants. They ended up becoming peasants and made a living by working in forest management or hard labor, such as logging. This means that after *gaitu guiliu*, the society of the Miao people was not uniformly changed. Complaints in the Miao society that had lost the means of production included instability that could erupt anytime. This was one of the causes for the Qing Dynasty to bring division within the governing system.

**Keywords:** Qiandongnan (黔東南), Tusi (土司), *gaitu guiliu* (改土歸流), Sheng Miao (生苗), Shu Miao (熟苗), *Zhongwai yiti* (中外一體), *Zhongwai geli* (中外隔離), Hanification (漢化).



#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구려의 영동지역 진출과 관할 방식

장병진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한사군의 개편과 영동 7현의 동향
- III. 고구려의 영동지역 세력화 과정과 관할 방식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는 국가성립 과정부터 꾸준히 주변의 정치세력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한(漢) 군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20여 년 만에 현도군을 요동 방면으로 퇴축시켰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요동·현도군과 각축을 벌였다. 남쪽으로 낙랑군을 압박하여가면서 4세기 초에는 중국의 군현세력(낙랑·대방)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였다. 고구려 전기의 역사 발전 과정을 중국 군현에 대한 저항과 극복의 과정으로 이해한 것<sup>1</sup>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구려의 영역확대 과정은 예맥세력의 통합 과정이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군현과의 각축전이기도 하였다. 계루부 집권 이후 이른 시기부터 주변 소국에 대한 정복활동을 전개하였고,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하여 옥저·예 등의 세력을 복속시켰다. 4~5세기를 거치면서 광역을 아우르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이어온 영역 확장의 결과였다. 고구려가 사방으로 진출하여 확보한 지역들을 어떻게 관할하였는지는 고구려 국가의 지배체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다.<sup>2</sup>

국가의 성립과 지배체제의 정비 과정은 선행 국가의 역사적 경험, 사회적 토

\* 투고: 2017년 5월 8일, 심사 완료: 2017년 10월 24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00쪽. 중국 군현과의 관계를 고구려 발전의 중요한 배경으로 이해하기도 한다(李龍範, 1987,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관계」,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2 고구려 전기의 복속지(지방) 관할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林起煥,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慶熙史學』 14; 박경철,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狀」, 『韓國史學報』 15;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 지배 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崔熙洙, 2009, 『高句麗 地方統治 運營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와 무관하지 않다.<sup>3</sup> 한국 고대의 여러 국가들 역시 내적인 조건과 주변 정세의 영향 속에서 지배체제를 정비해 나아갔을 것이다. 한 군현의 지배체제 역시 단순히 저항과 극복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과 지배체제의 정비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동예(嶺東濊)’의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sup>

영동에는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고조선과 한 군현, 고구려의 지배를 차례로 겪었다. 특히 군현 설치 이래로 임둔·현도·낙랑군으로 소속의 변화가 있었고, 동부도위의 설치와 후국(侯國)의 운영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군현지배를 직접 경험한 지역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국 군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하면서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어갔다. 따라서 당시 영동예 역사의 궤적을 살피는 것은 고조선 고지(故地)에서 한의 군현지배의 특징을 규명하는 동시에 군현지배의 경험이 고구려의 지배체제 정비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고구려의 복속지 지배 방식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마련해 보고자 한다.

- 
- 3 고구려의 국가 성립과 체제 정비 과정이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선행한 고조선이나 부여, 혹은 한 군현 체제의 사회적 토대 위에 상위 권력의 실체가 고구려로 대체되는 과정이었다는데 주목하려는 것이다. 고조선과 그 이후의 정치체를 계기적으로 파악하지 않고(盧重國, 1990, 「總論: 韓國 古代의 國家形成의 諸問題와 關連하여」,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31쪽), 삼국이 이전 단계의 역사 경험을 상당 부분 다시 거쳐야 했다(金基興, 1990, 「高句麗의 國家形成」,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202~203쪽)는 관점에 대한 문제 제기(하일식, 1990, 「서평: 국가성립사연구와 방법론」, 『역사와 현실』 4)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4 영동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낙랑군 동부도위의 관할이 되었던 영동 7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 II. 한사군의 개편과 영동 7현의 동향

### 1. 영동지역의 낙랑군 이속과 재편

고조선 고지에서 한의 군현지배는 순탄하지 못하였다. 진번과 임둔군이 20여 년 만에 폐지되어 그 영역이 낙랑군과 현도군으로 귀속되었고,<sup>5</sup> 이어진 ‘이맥소침(夷貊所侵)’의 사건으로 현도군은 다시 고구려의 서북방면으로 퇴축되었다. 현도군 퇴축 이후 단단대령 동쪽의 옛 임둔·현도군의 관할 지역까지 낙랑군의 관할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영동지역의 관할이 현도군에서 낙랑군으로 변경된 것은 단순히 소속 관계의 변화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토착 사회에 대한 현도군과 낙랑군의 지배방식이 다소 달랐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sup>6</sup>

한 초기에 연의 망인인 위만이 조선에서 왕 노릇을 할 때, 옥저가 모두 (조선에) 복속하였다. 한 무제 원봉 2년(전 109)에 조선을 정벌하였다. 위만의 자손 우거를 죽이고 그 땅을 나누어 4군으로 삼았다.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는데, 후에 이맥의 침입을 받아 군을 구려의 서북방면으로 옮기니, 지금 소위 현토고부라는 곳이다. 옥저는 다시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 한은 그 지역이 넓고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단단대령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 동부도위를 나누어 두고, 불내성을 치소로 하여 영동 7현을 따로 관할하게 하였다. 이때에 옥저(의 읍락)가 모두 현이 되었다.<sup>7</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5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낙랑군을 통하여 관리하고, 단단대령 동쪽의 동해안 지역은 현도군을 통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구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장병진, 2015,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 『韓國古代史研究』 77, 31쪽).

6 최근 현도군과 낙랑군의 옥저 지배방식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李丞鎬, 2014, 「漢의 沃沮 지배와 토착 지배층의 동향-夫租蕤君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57). 물론 낙랑과 현도군에서의 지배방식의 차이는 初置 당시 관할 대상이 되었던 토착 사회의 존재 양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7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본래 옥저성을 군치(郡治)로 하여 현도군이 설치되었다가 ‘이맥소침’의 사건 이후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지역으로 퇴축되면서 옥저 지역은 낙랑군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현도군이 퇴축된 이후 옥저를 포함한 영동 7현 지역은 동부도위의 관할로 하고, 도위부는 불내성에 두어졌다. 한편 이 단락의 말미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옥저의 관할이 낙랑군에 이속되고 동부도위가 설치되는 시기에 처음으로 현이 설치된 듯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옥저성이 현도군의 군치였다는 사실은 옥저가 이미 현도군 예하의 현(縣)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8</sup>

이러한 내용은 현도군 내에 고구려현과 토착의 고구려가 별개로 존재하였던 상황<sup>9</sup>을 참고하면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옥저 지역도 현도군의 관할에 있으면서 부조현장(령)<sup>10</sup>이 옥저의 제 읍락을 직접 통치하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 8 현도군의 추이에 대한 전반적 논의는 李丙燾, 1976, 앞의 책과 金美旻, 2002,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 24가 참고된다. 초치 당시 동옥저 지역이 현도군의 관할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된 바 있으나(李丙燾, 1976, 앞의 책, 170쪽; 權五重, 2002, 「漢과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245쪽; 기수연, 2007, 「현도군과 고구려의 건국에 대한 연구」, 『高句麗研究』 29, 187~188쪽), 현전 사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초치 당시의 현도군은 혼하 유역에서 압록강 중류를 거쳐 동해안 함흥 지역에 이르는 교통로 상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여도(和田淸, 1951, 「玄菟郡考」, 『東方學』 1; 和田淸, 1955, 『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12~14쪽; 田中俊明, 1994, 「高句麗의 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東京大學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12쪽)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장병진, 2015, 앞의 글, 11~14쪽).
- 9 토착의 고구려는 어디까지나 현도군에 ‘오는(詣郡)’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현도군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상 內治의 대상이라기보다는 外交의 대상이었다. 이때 고구려현은 토착 고구려국에 대하여 현도군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장병진, 2015, 위의 글).
- 10 평양 정백동 2호분에서 ‘夫租長印’과 ‘高常賢印’이 출토되었는데, 부조현장을 지낸 고상현의 무덤인 것으로 파악된다(岡崎敬, 1968, 「「夫租叢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49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3, 「락랑구역일대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토착의 대군장이 개별 읍락을 거느리고 있는 가운데 부조현은 고구려현과 마찬가지로 동옥저의 대군장과 현도군(漢)의 외교창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1</sup>

낙랑군으로 관할이 변경되면서 동옥저의 읍락이 모두 현으로 되었다는 것은 동옥저의 제 읍락을 아우르는 대군장의 독자적 지배 권한을 박탈하고, 개별 읍락을 부조현이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재편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짐작된다. 3세기 초까지 동옥저 읍락의 거수들이 삼로를 칭하고 있었던 사실<sup>12</sup>은 군현 체제로의 재편 과정에서 토착 거수, 유력자에게 삼로 등의 향직을 부여하고 군현 지배에 참여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sup>13</sup>

한편 당시 낙랑군의 동옥저 재편과 관련하여 낙랑군의 군치(郡治)가 마련된 평양 지역의 무덤에서 ‘부조예군(夫租藏君)’ 인장이 출토된 사실이 주목된다. 부조예군 은인이 출토된 정백동 1호분은 초원 4년(전 45) 낙랑군 호구부가 출토된 정백동 364호분이나 지절(地節) 4년(전 66) 명 칠갑(漆匣)이 출토된 정백동 37호분보다 앞선 시기의 무덤 양식을 보인다는 점<sup>14</sup>에서 그 묘주가 기원전 1세

---

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7~25쪽; 金基興, 1985, 「夫租藏君에 대한 고찰-漢의 對土着勢力 施策의 一例-」,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0쪽). 무덤에서 함께 출토된 일산대의 ‘永始三年’(전 14) 명문을 통하여 기원전 1세기 후반의 시기에는 부조현에 현장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원전 1세기 전반의 시점까지 소급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11 물론 명목상 현도군에 신속을 구하고 있었던 만큼 토착 사회의 동향을 감시하고, 일정한 부조를 징수하는 등의 통제는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낙랑군으로 관할이 옮겨지기 전까지 옥저는 현도군의 군현지배와 토착 세력가를 중심으로 일정한 자치권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원적 사회였다고 파악하기도 한다(李丞鎬, 2014, 앞의 글, 263쪽).

12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沃沮諸邑落渠帥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현국의 제도라는 표현에서 후한대의 사실이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지만, 같은 책 예조의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라는 구절을 참고하면 전한 이래의 사실로 보아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13 金基興, 1985, 앞의 글, 31쪽.

14 리순진,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중심, 60~63쪽. 리순

기 전반기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sup>15</sup> 다만 왕(王)이나 후(侯)가 아닌 군(君, 읍군)의 칭호에 그치고 있어 여러 읍락을 아우르고 있었다기보다는 개별 읍락의 수장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인장의 주인인 ‘부조예군’을 부조지역(동옥저)의 제 읍락을 아우른 대군장으로 이해하고, 낙랑군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고 평양 지역으로 사거(徙居)되었다고 파악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우거(右渠)를 배반하고 요동군과 직접 교섭을 추진하였던 예맥세력 가운데 대표격으로 언급되었던 남려(南閼)가 ‘예군(濊君)’의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sup>16</sup> 또 읍락의 수장인 읍군, 읍장에게는 대체로 동인(銅印)이 수여된 것과 달리, 부조예군은 은인을 수여받았던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7</sup> 은인은 당시 관인들 중에서도 관질(官秩)이 ‘비이천석(比二千石)’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sup>18</sup> 낙랑군 지역의 장리 중에서도 태수와 도위 외에는 은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하였다. 은인이 읍군의 지위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인장이 공인(公印)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sup>19</sup>도 있었으

---

진은 일찍이 정백동 1호분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전반기로 판단하였으나(리순진, 1983, 「우리 나라 서북 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론문집』 8) 이후 그 연대를 군현 설치 이전인 기원전 2세기 후반기로 견해를 수정하였다(리순진, 1996, 「평양 일대 나무곽무덤의 성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 이러한 연대 상향의 문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남규, 2006, 「낙랑 지역 한대 철제 병기의 보급과 그 의미」,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부장품의 상한 연대가 군현 설치 이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부조예군이 평양 지역에 묻혔다는 사실은 군현 설치 이후의 사정, 특히 옥저 지역을 낙랑군이 관할하게 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 15 이성제, 2010, 「낙랑의 군현 재편과 예(濊)」,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17쪽; 李丞鎬, 2014, 앞의 글, 248쪽.
- 16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예.
- 17 李丞鎬, 2014, 앞의 글, 274~275쪽.
- 18 『한서』 권19상, 백관공경표.
- 19 田村晃一, 1979, 「樂浪郡地域の木槨墓」, 『(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 東洋史・考古學論集』, 朋友書店, 624~625쪽.

나, ‘부조예군 은인’은 당시 실인(實印)의 조건에 어긋남이 없다고 한다.<sup>20</sup> 어떠한 경우라도 부조예군이 낙랑군에서 높은 대우를 받았음은 분명해 보인다.<sup>21</sup>

활동 시기나 은인의 수여 사실 등을 고려하면, 부조예군은 낙랑군 부조현을 중심으로 동옥저의 토착 사회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군치 지역으로 이주된 동옥저의 대군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삼국지』에서 동옥저에 대군왕이 없다고 기술한 사실과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낙랑군이 대군왕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군현이 읍락을 직접 관할하게 된 이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다. 『삼국지』 기사가 채록된 시점에 대군왕이 없었음을 표현하였을 뿐, 과거부터 줄곧 대군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sup>22</sup>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방면으로 퇴축된 이후 동옥저의 읍락들은 부조현으로 편제되어 낙랑군의 통치를 받았다. 그리고 동옥저의 읍락을 아우르던 부조예군은 군치 지역으로 이주되었다. 동옥저 이외의 영동지역 다른 현들의 경우에도 임둔군이 폐지된 이후 현도군과 낙랑군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낙랑군이 영동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편되고 20여 년 후인 초원 4년(전

20 金基興, 1985, 앞의 글, 9~10쪽. 관인의 경우에는 사후 회수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인이라기보다는 토착 지배세력을 회유하고 정치적 지위의 보장을 약속하는 일종의 징표[賞賜品]라고 파악하기도 한다(李丞鎬, 2014, 앞의 글, 274~275쪽). 그러나 인장의 여러 출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外夷의 수장에게 수여한 인장들이 철저하게 회수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1 정백동 1호분의 부장 양상은 동 시기 낙랑 고분 중에서도 양과 질의 면에서 우월한 양상을 보인다. 동 시기 주요 분묘의 부장 양상은 이남규, 2006, 앞의 글, 211~213쪽을 참조.

22 고구려 중심의 논의이지만, 현도군 지역은 군현 설치 이전에 고조선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었고, 토착 사회의 정치적 결집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3군과는 달리 토착 대군장과의 타협을 거쳐 군현이 설치되어 대군장의 지배구조가 온존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가 참고 된다(金光洙, 1983, 『고구려 古代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18쪽; 金基興,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韓國史論』 1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쪽; 池炳穆, 1987, 「高句麗 成立過程考」, 『白山學報』 34, 69~70쪽).

45)에 43,845호 285,261구였던 호구는 47년 후인 원시 2년(후 2)<sup>23</sup>에는 62,812호 406,748구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한대 통상 인가증가율에 부합하는 것으로,<sup>24</sup> 낙랑군의 군현지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현도가 다시 구려로 옮겨지고, 단단대령의 동쪽으로 옥저, 예맥은 모두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 후에 경토가 광원하니, 다시 영동 7현을 나누어 낙랑 동부도위를 설치하였다. (낙랑군에) 내속한 이후로 풍속이 점차 각박해지고, 법금 또한 점차 많아져 60여 조에 이르렀다.<sup>25</sup> (『후한서』 권85동이열전, 예)

『후한서』 예조에서는 영동 7현 지역이 낙랑군에 속하게 되고 동부도위를 설치하게 된 이후 풍속이 각박해지고 법금이 많아졌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토착 사회의 독자성이 유지되었다는 측면보다는 군현지배의 강화라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26</sup> 해당 구절은 고조선 고지에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의 변화상을 서술한 『한서』 지리지의 기사<sup>27</sup>를 인용한 것이지

23 『한서』 지리지의 군국별 戶口籍은 元始 2년(후 2), 소속 현의 목록은 元延·綏和之交(전 9~전 8)에 작성되었던 것으로 예외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肥後政紀, 1998, 「『漢書』地理支記載の戶口統計の年代について」, 『明大アジア史論集』 3, 49쪽; 윤용구, 2006, 「高句麗의 흥기와 幟溝濶」,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12쪽).

24 윤용구, 2010, 「낙랑군 초기의 군현 지배와 호구 파악」,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97~198쪽.

25 “玄菟復徙居句驪 自單單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 後以境土廣遠 復分領東七縣 置樂浪東部都尉 自內屬已後 風俗稍薄 法禁亦浸多 至有六十餘條.”

26 일찍이 김한규는 옥저와 동예 지역에서 인민을 직접적·개별적으로 지배하는 철저한 군현지배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하였다(金翰奎, 1982, 『中國古代の世界秩序研究』, 一潮閣, 276~277쪽). 현도군 지배 아래 독자성이 강하게 잔존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는 영동지역에 별도의 군사 기구인 부도위를 설치한 것도 군현지배의 강화 의도와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김기흥 역시 낙랑군 동부도위로의 移屬을 군현지배의 강화로서 이해하였다(金基興, 1985, 앞의 글, 27~31쪽).

27 『한서』 권28하, 지리지 8下,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藏 及賈人往者 夜則

만, 적어도 『후한서』의 찬자는 영동 7현 역시 그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 이해된다.

한의 군현지배가 강화되면서 토착 거수들이 행사하던 지배력이 제한되었을 것이지만, 토착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변군 지역에서 이원(吏員)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상시 적지 않은 결원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면,<sup>28</sup> 군현지배를 유지하는데서 토착 세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속리로 임명되어 군현지배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조현장 고상현과 같이 장리직을 역임한 사례도 있었다.<sup>29</sup>

한편 기원 전후한 시기의 중원 정세는 매우 혼란하게 되었고, 그 영향은 낙랑군 지역까지 미쳤다. 경시제(更始帝)가 패한 후(후 25), 낙랑군에서는 토인(土人) 왕조가 봉기하여 태수를 살해하고 스스로 대장군 낙랑태수를 칭하였다. 왕조의 난은 건무(建武) 6년(후 30) 광무제가 군대와 함께 왕준을 태수로 임명하여 보내자 낙랑의 속리들이 왕조를 살해하고 왕준을 받아들이면서 정리되었다.<sup>30</sup> 왕조의 난 당시 영동 7현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왕조의 난이 평정된 그해에 후한 제국의 통치체제 개편이 있었고, 당시 낙랑군 지역, 특히 영동 7현의 상황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이 전해진다.<sup>31</sup>

---

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寤多 至六十餘條。”

- 28 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韓國古代史研究』 78, 157~158쪽.
- 29 토착세력이 군현지배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배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한다(홍승현, 2015, 「後漢時期 邊郡 통치의 변화와 樂浪郡-王調반란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61, 126~127쪽).
- 30 왕조의 난에 대한 대략의 상황은 『후한서』 권1하, 광무제기와 『후한서』 권76, 왕경전을 참조하였다.
- 31 건무 6년의 지방 통치체제의 개편이 왕조가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홍승현, 2015, 앞의 글). 그러나 “更始敗 某某, 建武六年 某某”의 문장 구조에서 보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왕경전의 기록에서 왕조의 난이 발발한 시점과 건무 6년의 시점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왕조의 난이 발발한 시점은 건무 6년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이해된다.

## 2. 영동 7현의 후국 전환과 “기영동지(棄領東地)”

광무제는 호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비대해진 지방의 행정조직을 축소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리를 줄이고, 군현을 통합하였으며, 도위관을 혁파한 일련의 조치가 그것이다.<sup>32</sup> 이러한 조치는 낙랑군 지역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으니, 동부도위가 폐지되고 영동 7현은 후국이 되었다고 한다.

건무 6년(후 30)에 변군을 줄이니, 도위도 이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그 후 현에 있는 거수로 모두 현후를 삼으니, 불내·화려·옥저 등의 여러 현은 모두 후국이 되었다.<sup>33</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광무제에 이르러 도위관을 폐지하였다. 후에 모두 그 거수를 봉한 까닭에 옥저후가 되었다.<sup>34</sup>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동옥저)

대체로 낙랑군 동부도위의 치하에서 옥저를 포함한 영동 7현 지역은 일반적인 군현지배보다 느슨한 통제 아래 토착 수장의 자치가 상당히 용인되었고, 도위부의 폐지 이후에는 후국으로 전환되면서 군현지배에서 벗어나 자립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대 부도위의 역할은 군정(軍政)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영동 7현에서의 민정(民政)을 낙랑군 동부도위가 담당한 것으로 파악한 기존의 이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sup>35</sup> 나아가 후국으로의 전환 역시 군

32 『후한서』 권1하 광무제기 1하, 건무 6년.

33 “漢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34 “至光武罷都尉官 後皆以封其渠帥 爲沃沮侯.”

35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歷史學報』 217; 김병준, 2013, 「진한제국의 변경 이민족 지배와 부도위」, 『전통

현지배의 포기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내군의 사례와 낙랑군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변군의 사례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sup>36</sup>

실제 낙랑군의 행정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초원 4년(전 45) 호구부’에서 동부도위의 역할과 관련된 어떠한 특이점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37</sup> 낙랑군이 확대 개편된 이후 진번의 잔현(殘縣)에 설치되었다고 이해되는 남부도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배송지의 주(注)로 전하는 『위략』의 일문(逸文)에서 진한의 염사착이 함자현을 통하여 낙랑군에 귀부하는 과정에서도 현에서 직접 군으로 보고한 사실만 나타날 뿐<sup>38</sup> 남부도위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시대 동아시아의 외교와 변경기구』, 동북아역사재단; 김병준, 2015, 앞의 글. 기존의 논의가 낙랑군 지역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한군현지배의 보편적 원리 속에서 낙랑군 지역만을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 36 최근 일본에서도 한대 부도위의 역할을 군정에 한정하고, 민정을 담당한 현정의 체계와 구분되어 있었음을 규명한 연구가 발표되었다(野口優, 2012, 「前漢邊郡都尉府の職掌と邊郡統治制度」, 『東洋史研究』 71-1).
- 37 李丞鎬, 2014, 앞의 글, 254~255쪽. 한편 부도위의 설치를 군현지배의 약화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영동 7현이 낙랑군으로 이속된 이후 적어도 초원 4년까지는 부도위가 설치되지 않고, 철저한 군현지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이성재, 2010, 앞의 글, 215~222쪽). 최근 「초원 4년 낙랑군 호구부」의 ‘其戶(口)’가 낙랑군 전체 호구수에서 영동 7현(동부도위) 지역을 제외한 호수와 근사한 값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부도위의 分治를 강조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Dae-Jae Park, 2017, “A New Approach to the Household Register of Lelang(樂浪) Commande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2-2). 다만 구수의 경우는 판독의 불완전함을 고려하더라도 수천의 편차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38 『삼국지』 권30 동이전, 한 소인 배송지주 『위략』, “魏略曰 …… 至王莽地皇時 廉斯鑿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 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鑿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可 鑿因將戶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鑿爲譯 從岑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鑿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

한편 열후(列侯) 봉작(封爵)의 구체적 계기는 알 수 없지만,<sup>39</sup> 후한이 들어서면서 영동 7현은 후국이 되었다. 현 중의 거수를 ‘현후(縣侯)’로 삼았다는 언급으로 보아, 변경지역의 군장들에게 수여한 이후(夷侯)·읍장(邑長)·읍군(邑君)의 작호와와는 다른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40</sup> 현을 열후의 식읍으로 수여한 경우에 후국이라고 불렀는데, 열후는 식읍을 수여받았을 뿐 후국에서 직접적인 통치의 권리는 가지지 못하였고, ‘상(相)’이 파견되어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1</sup> 상은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으로서 열후에게 식읍의 조세를 납부할 뿐 그에게 신속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름만 다를 뿐 현령(혹은 현장)과 같은 위상과 역할을 지녔으며, 질(秩) 역시 본래 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후국은 열후를 보좌하는 후가(侯家)의 이속(吏屬)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현과 동일한 조직을 갖춘 동급의 행정 단위였다.<sup>42</sup> 영동지역의 현들이 후국이 되었더라도 군현지배가 관철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sup>43</sup>

그런데 『후한서』 군국지(『속한서』 군국지)에는 낙랑군의 속현으로 영동의 7현을 제외한 18개의 현(성)만 기재되어 있어 의문을 던진다. 영동의 후국이 현과 동급의 행정 단위로 파악되는 현국이 되었다면, 낙랑군 예하 속현으로서 기

匹 鏹收取直還 郡表鏹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39 왕조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왕굉 등의 유공자를 모두 열후로 봉하였다고 하는데(『후한서』 권76 왕경전, “建武六年 光武遣太守王遵將兵擊之 至遼東 闕與郡決曹史楊邑等共殺調迎遵 皆封爲列侯 闕獨讓爵”), 이를 제외하면 다른 계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김병준, 2015, 앞의 글, 172~175쪽). 다만 왕조의 난 이후 공신후로 봉해져 추국한 사례가 영동 7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다소 공교롭다는 의문이 남아 있다.

40 김병준, 2015, 위의 글, 168~169쪽.

41 『후한서』 지28 백관5, 열후, “列侯 所食縣爲侯國 …… 每國置相一人 其秩各如本縣 〈本注曰 主治民 如令長 不臣也 但納租于侯 以戶數爲限〉 其家臣 置家丞 庶子各一人.” \*〈〉는 『續漢書』의 찬자 司馬彪의注文이다.

42 한대의 열후와 후국에 대해서는 李成珪, 1977, 「前漢 列侯의 性格-郡縣支配下에서 封建制의 一變貌-」, 『東亞文化』 14; 鄭勉, 2009, 「漢代 列侯爵制의 변화와 侯國制의 변모」, 『西江人文論叢』 25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43 김병준, 2015, 앞의 글, 169쪽.

재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무 6년(후 30) 도위관을 없애고, 마침내 영동지역을 방기하였다. 그 거수를 모두 봉하여 현후로 삼으니, 때마다 모두 와서 조하하였다.<sup>44</sup> (『후한서』 권85 동이 열전, 예)

더구나 영동 7현이 군국지에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위관이 폐지된 이후 “수기영동지(遂棄領東地)”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동부도위의 폐지와 영동 7현의 후국 전환을 두고 군현지배의 포기, 혹은 군현지배로부터 토착 세력의 이탈로 이해해온 것도 이러한 사료 정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45</sup>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위관의 폐지를 군현지배의 포기로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sup>46</sup> 실제로 태조왕 66년(후 118) 고구려가 ‘화려성’을 공격했다는 기사<sup>47</sup>는 당시 화려성이 후한의 군현체제 아래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sup>48</sup> 비슷한 시기의 저술로 알려진 『설문해자』에서 ‘동이(東曺)’가 여전히 낙랑의 동이현으로 기록되었던 사실도 참고가 된다.<sup>49</sup>

44 “建武六年 省都尉官 遂棄領東地 悉封其渠帥爲縣侯 皆歲時朝賀.”

45 일반적으로 동부도위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후국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광무제의 조치는 군현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불필요한 吏員을 줄이기 위해 군현조직의 통폐합을 단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현국으로의 전환은 호구의 규모가 작았던 변군의 7개 현에 侯家吏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부도위의 폐지와 연결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6 앞의 각주 35)를 참조.

47 『후한서』 권85 동이열전, 고구려, “元初五年 復與濊貊寇玄菟 攻華麗城”; 『삼국사기』 권15, 태조왕 66년, “夏六月 王與穢貊襲漢玄菟 攻華麗城.”

48 『후한서』에서는 縣(또는 후국)을 城으로 표현하고 있다.

49 『설문해자』 권7 日部, “曺 日行曺曺也 从日施聲 樂浪有東曺縣 讀若馳 弋支切”; 권11 魚部, “鱮 魚名 皮有文 出樂浪東曺 神爵四年 初捕收輸考工 周成王時 揚州獻鱮 从魚禺聲 魚容切.”

도위관의 폐지나 후국으로의 전환이 군현지배의 포기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면, 영동 7현이 낙랑군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배경과 시기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단 군국지에서 영동 7현이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기준 연대가 영화(永和) 5년(후 140)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sup>50</sup> 후한 광무제의 집권 이후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하면, 그동안 영동 7현의 상황도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겨울 11월에 왕이 부위염에게 명하여 북옥저를 정벌하게 하여 멸망시키고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sup>51</sup> (『삼국사기』 권13, 동명왕 10년)

가을 7월에 동옥저를 정벌하고 그 땅을 취하여 성읍으로 삼았다.<sup>52</sup> (『삼국사기』 권15, 태조왕 4년)

고구려는 각각 동명왕 10년(전 28)과 태조왕 4년(후 56)에 북옥저와 동옥저를 정벌하여 자신들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한다. 북옥저와 동옥저(남옥저)는 서로 8백여 리 떨어져 있었고, 풍속은 비슷하였으며, 북쪽으로는 읍루와 접하고 있었다고 한다.<sup>53</sup> 일반적으로 두만강 하류의 훈춘(琿春) 일대에 비정되는 책성

50 김병준, 2015, 앞의 글, 175~176쪽.

51 “冬十一月 王命扶尉猷 伐北沃沮滅之 以其地爲城邑.”

52 “秋七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53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挹婁接.” 관구검의 침공 당시 宮(동천왕)이 북옥저로 도망하였다고 하였는데, 관구검전에서는 ‘買溝’로 도망하였다고 하여 차이가 있다(『삼국지』 권28 관구검전, “六年 復征之 宮遂奔買溝). 置溝(婁)와 買溝의 차이는 傳寫 과정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중국 정사의 기록과 「광개토왕릉비」, 『삼국사기』에 나오는 관련 지명들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후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柵城) 지역이 북옥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sup>54</sup> 동옥저 지역은 초기 현도군의 치소인 부조현(옥저성)이 설치된 곳으로, 이후 낙랑군 동부도위의 관할이 되었던 지역이며, 지금의 함흥 일대로 파악하는데 이견이 없다. 『삼국사기』의 서술을 따른다면, 도위부의 폐지나 후국으로의 전환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부조현(옥저)의 경우에는 『후한서』 군국지의 기준 시점인 영화 5년 이전에 고구려에 복속되어 낙랑군의 관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라(동옥저)가 작아 대국의 사이에서 시달리다가 끝내 (고)구려에 신속하였다.<sup>55</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단단대산령의 서쪽은 낙랑군에 속하였고, (단단대산)령에서 동쪽의 7현은 도위가 주관하며 모두 예인으로 민을 삼았다. 후에 도위를 없애고 그 거수를 후로 삼았으니, 지금 불내예가 모두 그 종족이다. (후)한 말에 다시 (고)구려에 속하였다.<sup>56</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예)

중국 기록에서도 옥저를 포함한 영동예 지역이 고구려에 복속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고구려가 영동예를 복속한 것이 조위(曹魏)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명분

54 책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훈춘 지역이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데 학계의 논의가 합치되어가고 있으나 특정 城址와 직접 연결하는 것에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朴眞奭, 1995, 「高句麗 柵城遺址에 대한 고증」; 「高句麗 柵城遺址를 다시 논함」, 朴眞奭·姜孟山 外, 『中國境內 高句麗遺蹟 研究』, 예하를 참조). 延邊 일대의 성곽 분포와 지형, 교통로 등 제반 조건을 검토하여 책성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최근의 논의로는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이 참고된다. 한편 책성을 단일한 성채로 파악하기보다 일대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현숙, 2005, 앞의 책, 408쪽).

55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56 “自單單大山領以西 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漢末更屬句麗.”

이 되었던 사실을 참고하면, 3세기 전반 영동 7현 지역의 대부분은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불내에 등이 후한 말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참고하면, 140년 이전에 고구려가 영동 7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후한서』 군국지에 영동 7현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과 고구려가 이 지역을 복속시킨 사실을 곧바로 대응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영동지역에 대하여 ‘상실’이 아닌 ‘방기’로 표현한 사실이 주목된다.

동부도위가 폐지되고 영동 7현이 후국으로 전환된 이후 이적(夷狄)들이 다시 서로 공벌(攻伐)하게 되었고,<sup>57</sup> 큰 나라의 사이에 끼어 핍박받던 옥저가 결국 고구려에 신속(臣屬)한 사실은 더 이상 후한(낙랑군)에서 영동지역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서역에서 도호를 철수시킴으로써 “끝내 서역을 방기하게 되었다[수기서역(遂棄西域)]”고 표현하였고, 이후 흉노가 서역의 세력들을 복속시킨 사실<sup>58</sup>은 동부도위 폐지 이후 영동지역의 정세 변화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이민족이 거주하는 변경 지역에 군대를 보내 주둔시킨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이민족을 제어하여 정세를 안정시키고 방비를 강화하는 데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군현을 설치하여 제국의 통치 공간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 이민족을 군사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개별 세력들이 군현을 직접 초략(抄掠)하는 것을 막고, 한편으로는 이민족 세력들이 통합하여 더 큰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었다. 도위의 폐지와 후국으로의 전환을 곧바로 군현지배의 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변경의 이민족을 제어하기 위하여 배치되었던 군사력이 약화되면서 군

57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58 『후한서』 권88 서역전, “及孝和晏駕 西域背畔 安帝永初元年 頻攻圍都護任尙段禧等 朝廷以其險遠 難相應赴 詔罷都護 自此遂棄西域 北匈奴即復收屬諸國 共爲邊寇十餘歲.”

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낙랑군에서는 동부도위의 폐지로 영동지역에서 고구려의 진출과 이민족[예(濊)]의 이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점차 상(相)을 포함한 장리를 파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면서 군국지에서도 자연스럽게 영동지역이 낙랑군의 관할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인 찬자의 입장에서 영동지역에서의 정세 변화가 도위관의 폐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sup>59</sup> “끝내 영동지역을 방기하게 되었다[수기영동지(遂棄領東地)]”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 Ⅲ. 고구려의 영동지역 세력화 과정과 관할 방식

#### 1. 동옥저 복속과 직접지배의 시행

고구려 초기의 영역 확장은 영동 7현 지역인 옥저 방면으로의 진출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sup>60</sup> 고구려의 중심지가 농사짓기 적합하지 못하고 물산이 부족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sup>61</sup> 동해안 지역의 환경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자연 지리적 조건 외에도

59 변군 지역에서 吏員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현실을 생각하면, 도위부가 폐지된 이후 영동지역에 相을 포함한 장리의 파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은 다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遂棄領東地”를 군현지배의 포기로 해석하여 후국 전환 이후 相이 파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성규, 2006, 「중국 군현으로서의 낙랑」,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90~91쪽)한 견해가 그러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후국으로 삼았을 당시의 후한 정부는 군현지배의 포기가 아닌 ‘유지’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0 金美炅, 2000, 「高句麗의 沃沮服屬과 그 性格」,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해안, 100쪽.

61 『삼국지』 권30 동이전, 고구려,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고구려를 둘러싼 대외 정세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당시 동쪽 방면으로의 진출은 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漢)·부여 등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고,<sup>62</sup> 현도군을 서북의 요동방면으로 퇴축시킴으로써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루트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63</sup>

고구려는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동부도위의 폐지로 근현의 방비가 약화된 정세를 활용하여 영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sup>64</sup> 물론 내부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주변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토대 위에서 영동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태조왕 4년 고구려는 동옥저를 정벌하여 성읍(城邑)으로 삼았고, 그보다 앞서 행인국과 북옥저 지역도 성읍으로 삼았다고 한다.<sup>65</sup> 그러나 성읍으로 편제된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복속하여 성읍으로 삼은 모든 지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배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서에는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방식을 언급한 구절이 있어 주목된다.

나라(동옥저)가 작아 대국의 사이에서 시달리다가 끝내 (고)구려에 신속하였다. 구려는 그중 대인을 사자로 삼고, 상으로 하여금 主領하게 하였다. 또 대가로 하여금 그 조세와 맥포·어·염·해중식물을 통채하게 하니, 천리를 짊어지고 바쳤다. 또 미녀를 보내면 비첩으로 삼고, 노복처럼 대우하였다.<sup>66</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62 余昊奎, 2008, 「鴨綠江 중상류 연안의 高句麗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29, 154쪽.

63 현도군을 퇴축시킨 배경에 동해안 지역으로의 진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한과 대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는 동옥저 진출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余昊奎,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韓國古代史研究』 38, 76~77쪽).

64 金美旻, 2000, 앞의 글, 105쪽; 余昊奎, 2005, 위의 글, 76쪽.

65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동명성왕 6년; 동명성왕 10년.

66 “國小 迫於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猶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

위와 같은 해석은 학계의 일반적 이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로 고구려가 동옥저 사회 고유의 지배구조를 용인하여 토착 유력자를 사자로 임명하고, 각 읍락의 거수들과 ‘함께’ 통치하게 하였으며, 부과된 공물을 대가가 취하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sup>67</sup> 토착 거수의 통치권을 용인하고, ‘맥포·어·염·해중식물’ 등이 진상되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sup>68</sup> 고구려는 동옥저에 대하여 집단 예속민으로 편입시키고 공납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지배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고구려 전기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3세기 초중반의 시기까지 5부의 연합체적 성격을 띤 고구려가 복속지에 대하여 지방관을 파견한 직접지배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지 유력자를 활용하여 간접지배를 시행하고, 복속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자기 기반을 바탕으로 정벌을 주도한 ‘부(部)’, 혹은 ‘대가’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았다.<sup>69</sup>

그러나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주저되는 바가 있다. 대

---

奴僕.”汲古閣本에서는 각각 ‘使者’와 ‘租稅’를 ‘主者’, ‘租賦’로 표기하였다.

67 “(東沃沮는) 나라가 작고 큰 나라의 틈바구니에서 핍박을 받다가 결국 (고)구려에 臣屬케 되었다. (고)구려는 그 (지역 인물) 중에서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아 (토착 渠帥와)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 또 大加로 하여금 租稅를 통괄 수납케 하여, 貂·布·魚·鹽·海草類 등을 천리나 되는 거리에서 저나르게 하고, 또 동옥저의 미인을 보내게 하여 종이나 첩으로 삼았으니, 그들(동옥저 사람)을 奴僕처럼 대우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 編, 1987,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一』, 國史編纂委員會, 258~259쪽)

68 동해곡이 고구려왕에게 鯨·朱豹·美女를 헌상한 사실과 관련하여 東海太守나 海谷太守도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아니라, 본래 이 지역 읍락사회의 지배자로 파악하고, 공납적 지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임기환, 2012, 앞의 글, 57쪽), 현물의 진상이 간접지배를 증명하는 것은 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69 대가가 최종 수취자로서 권한을 갖는다고 보고, 양맥·속신부락 등을 거느리도록 했던 명림답부나 양국군 달가의 경우와 같은 사례로 이해하기도 한다(林起煥, 1987, 앞의 글, 24~25쪽; 林起煥, 2012, 앞의 글, 56쪽).

가가 통책(統責)한 ‘조세맥포어염해중식물(租稅貂布魚鹽海中食物)’의 내용을 공납의 형태로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대가가 조세를 통책하였고, 그 조세에 해당하는 맥포·어·염·해중식물을 천리 길을 짊어지고 나르게 했다고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소 작위적이다. 사료에서 조세와 맥포 등은 분명히 동격으로 표현되었다.<sup>70</sup> 주곡(主穀)을 매개로 이루어졌을 조세와 특산물에 대한 수취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같은 책의 고구려조에서 “하호가 좌식자에게 ‘미량·어·염’을 멀리서 짊어지고 공급하였다”는 구절<sup>71</sup>도 참고가 된다.

고구려 후기에는 인두세(人頭稅)나 호조(戶租)의 징수<sup>72</sup>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만, 3세기 무렵까지 소급시켜 볼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고구려가 동옥저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공납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시 동옥저의 주민(호구)과 토지에 대한 파악과 일정한 수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고구려에 복속되기까지 동옥저의 읍락에서 한의 군현 통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수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기반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물자를 운반, 공급하는 “천리담부치지(千里擔負致之)”의 상황을 역역 동원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sup>73</sup> 조용조(租庸調) 전반의 수취가

70 이러한 해석과 관련하여 『후한서』의 관련 기사가 참고된다. 『삼국지』의 기사와 비교할 때, 일부 자구의 변경과 탈락이 있음이 유의되지만, 『후한서』에서도 분명히 ‘其租稅貂布魚鹽海中食物’의 구절이 모두 ‘責’과 결합하여 문장을 이뤘음을 확인할 수 있다(『후한서』 권85 동이열전, 동옥저,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句驪 句驪復置其中大人爲使者 以相監領 責其租稅貂布魚鹽海中食物 發美女爲婢妾焉”).

71 『삼국지』 권30 동이전, 고구려,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72 『수서』 권81 열전 46, 동이 고려,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73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0~161쪽;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45~149쪽. 『삼국지』 고구려조에서 하호들이 좌식자에게 ‘米糧魚鹽’을 멀리서 운반해 공급하였다고 하는데, 동옥저조의 구절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고구려와의 관계 속에서 동옥저의 물자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총 65자에 불과한 기사이고, 그중에서 해석에 논란이 되는 자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기사의 재해석에 천착하려는 것은 단순히 사료 한 구절의 해석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기사가 고구려의 복속지 지배, 나아가 한국 고대 국가 초기의 복속지 지배의 ‘전형’으로 제시되어 왔던 만큼 재해석의 문제는 작지 않은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사상주령(使相主領)”의 구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구절의 해석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로 동옥저의 대인을 사자로 삼아 토착 거수들과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고 해석하거나<sup>74</sup> 혹은 각 읍락의 거수들을 사자로 삼아 서로 더불어 통치하도록 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75</sup> ‘상(相)’을 ‘함께’, ‘서로 더불어’ 등의 의미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실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처음에 千夫長과 百夫長이 있어 서로 統領하였다. 마음을 다하였고, 능히 공훈을 세우고 국가에 힘썼으니, 이에 王侯의 명을 받게 되었다.<sup>76</sup> (『삼국지』 권30 오환전, 배송지주 『영웅기』)

를 운반한 주체가 동옥저인이었다면, 이들 역시 고구려의 하호로 편입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 74 林起煥, 1987, 앞의 글, 24쪽; 國史編纂委員會 編, 1987, 앞의 책, 258~259쪽.
- 75 武田幸男, 1967, 「魏志東夷伝にみえる下戸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 19쪽. 전자의 견해가 동옥저 지역의 유력자 1인을 사자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한 것 과 달리, 복수의 읍락 거수들로 이해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1인의 유력자가 사자로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던 임기환도 최근의 논의에서는 개별 읍락의 거수들을 사자로 삼은 것으로 견해를 수정하였다(林起煥, 1995, 앞의 학위논문, 125쪽; 林起煥, 2012, 앞의 글, 56쪽).
- 76 “始有千夫長百夫長 以相統領 用能悉心 克有勳力於國家 稍受王侯之命.”

『삼국지』 오환전의 배송지의 주로 인용된 왕찬(王粲)의 『영웅기』의 일문에서 원소가 오환의 세 왕에게 사자를 보내 선우로 삼으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여기서 “이상통령(以相統領)”은 복수의 토착 거수들이 서로 무리를 거느리고 토착 사회를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후한서』 동옥저조에서 “이상감령(以相監領)”이라는 비슷한 표현이 확인되는데,<sup>77</sup> 동옥저 여러 읍락의 거수들을 사자로 삼아서 서로 감령(監領)하게 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그러나 『삼국지』의 표현은 이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사상주령(使相主領)”에 이어지는 문구가 “우사대가통책(又使大加統責)”이라는 점에서 ‘상(相)’과 ‘대가’가 대구를 이루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상이 주령하고, 또 대가가 통책하게 했다”라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78</sup> 『후한서』의 표현이 『삼국지』 찬자의 문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sup>79</sup> 설령 토착 거수들이 서로 감령하였다는 표현이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위에서 관할하는 상의 존재를 설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상의 존재를 상정한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방식은 사료에 등장하는 대인(사자), 상, 대가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고구려에서 사자로 삼았다고 하는 대인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보자. ‘기중(其中)’의 표현으로 보건대, 일단 대인은 동옥저의 토착 인물임은 분명하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에서의 다음 용례들을 통하여 대인의 성격

77 앞의 각주 70)을 참조.

78 徐毅植, 1990, 「新羅「中古」期 六部の 部役動員과 地方支配」, 『韓國史論』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徐毅植, 2010, 「「中古」期 六部の 部役動員과 地方支配」,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19~220쪽.

79 『후한서』에서는 찬자의 판단으로 『삼국지』의 기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달라진 경우도 찾을 수 있다. 동옥저조의 경우에도 광무제가 동부도위를 폐지하고,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하였다는 『삼국지』의 구절을 “後皆以封其渠帥 爲沃沮侯”로 변경하여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을 짐작할 수 있다.

건무 25년(후 49) 오환의 대인 학단 등이 9천여 인의 무리를 이끌고 궁궐로 오니, 그 거수를 후·왕으로 봉한 자가 80여 인이었다.<sup>80</sup> (오환)

건무 30년(후 54)에 선비의 대인 어구분이 무리를 이끌고 궁궐을 방문하여 조공을 바치니, 이에 어구분을 왕으로 봉하였다. 영평 연간(후 58~75)에 제용이 요동 태수가 되어 선비에게 재물을 주며 배반한 오환의 흡지분 등의 머리를 베도록 시켰다. 이때 돈황과 주천의 동쪽에 있던 선비 읍락의 대인들은 모두 요동으로 와서 상사를 받았다.<sup>81</sup> (선비, 배송지 주 『위서』<sup>82</sup>)

가비능은 본래 선비의 작은 무리였는데, 용건하고 법을 단행함에 있어 공평하고 진실하였으며 재물을 탐하지 않으니, 무리가 추대하여 대인으로 삼았다.<sup>83</sup> (선비)

나라를 나설 때에는 증수를 놓은 금계를 즐겨 입고, 대인은 그 위에 호, 리, 유와 백, 흑의 초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더하여 입고, 금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sup>84</sup> (부여)

연(소)노부가 본래 국주였기 때문에 지금 비록 왕이 되지 못하지만 적통대인은 그 추가를 칭할 수 있다. 또한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sup>85</sup> (고구려)

80 “建武二十五年 烏丸大人 郝且等九千餘人率眾詣闕 封其渠帥爲侯王者八十餘人.”

81 “建武三十年 鮮卑大人 於仇賁率種人詣闕朝貢 封於仇賁爲王 永平中 祭彤爲遼東太守 誘賂鮮卑 使斬叛烏丸欽志賁等首 於是鮮卑自燉煌酒泉以東邑落大人 皆詣遼東受賞賜.”

82 魏晉代 王沈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기전체의 사서로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83 “軻比能本小種鮮卑 以勇健 斷法平端 不貪財物 衆推以爲大人.”

84 “出國則尙縵繡錦罽 大人 加狐狸狽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85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대군장이 없고, 음악에는 각기 대인이 있다.<sup>86</sup> (읍루)

위에서 보듯이 오환·선비의 대인은 부락(읍락), 또는 부락 연합체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다.<sup>87</sup> 부여·고구려조의 대인은 고관·귀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되지만, 이들 역시 ‘가(加)’로 붙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무대군장 읍락각유대인(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이라는 읍루조의 구절은 동옥저조의 “무대군왕 세세읍락 각유장수(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에 상응하는 구절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용례들을 참고하면, 동옥저조의 ‘대인’은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거수’·‘장수’ 등의 칭호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sup>88</sup> 대군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고려하면, 여러 읍락을 아우르는 상위의 지배자라기보다는 ‘삼로’를 자칭하던 개별 읍락의 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인을 ‘복치(復置)’하고, 사자로 삼았다고 하였다. 복치의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회복하여 다시 두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을까 한다. 동옥저가 고구려에 복속되고 약 200년의 시간이 지난 3세기 중반까지 읍락의 거수들은 여전히 그 지위를 세습하고 있었으며, 한 군현의 유제(遺制)인 삼로를 자칭하고 있었다. 고구려가 동옥저 지역을 복속한 후에 현지 읍락의 거수들을 통치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켰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된다.<sup>89</sup>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에서 현지 거수에게 기대한 역할의 구체적 내용에 대

86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87 선비조에서는 제 읍락을 아우르는 대인(혹은 大帥)과 구별하여 개별 읍락의 거수를 ‘小帥’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읍락의 거수도 대인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한편 선비 읍락의 거수는 “不世繼也”라는 점에서 동옥저와는 차이가 있었다.

88 『후한서』 이현의 주석에서 “大人謂渠帥也”라고 언급한 사실도 참고가 된다.

89 비류국왕 송양이 항복해 오자 구토를 회복시키고(多勿), ‘주’로 봉한 사실도 복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해서는 이어지는 상의 역할과 관련하여 함께 살펴보자. 사료에서는 상이 ‘주령’하고, 대가가 그 조세 등을 ‘통책’하였다고 하는데, 양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상의 행정적 지배와 대가의 경제적 지배라는 이원적 지배구조를 상정하기도 하였다.<sup>90</sup> 그런데 행정적 지배와 경제적 지배의 분리, 특정 지역에서 조용조의 수취를 배제한 순수 행정적인 대민 지배를 상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관할 지역의 호구 및 토지의 파악과 관리로 대표되는 행정적 지배는 결국 인적·물적 수취(경제적 지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을 특정 직책(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sup>91</sup> 그 실체를 행정조직을 통괄하는 중앙정부의 상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언급하거나<sup>92</sup> 왕권의 대리자로서 국상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였다.<sup>93</sup> 이와는 달리 최근 동옥저조의 상을 한대 후국에 파견된 지방장관인 ‘상’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주목된다.<sup>94</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국의 상은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으로서 현령(현장)과 다름이 없었다. 고구려에 복속되기 직전 동옥저 지역은 낙랑군 예하의 후국(현국)으로 운영되었고, 실제로 고구려에 복속되고 약 200년이 지난 시점까지 동옥저 읍락의 거수들이 여전히 삼로를 자칭하는 등 ‘옛 현국

90 徐毅植, 2010, 앞의 글, 219~220쪽; 김미경, 1996,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進出과 그 支配形態」, 『學林』 17, 49~51쪽. 대체로 동옥저 정벌에 참여한 대가에게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91 일찍이 이옥도 동옥저조의 ‘상’을 구분된 존재(국상)로 파악하였다(이옥, 1981, 「高句麗의 征服과 爵位(試論)」, 『東方學志』 27, 12~13쪽). 다만, 상과 대가의 관계에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처리한 한계가 지적된다.

92 徐毅植, 2010, 앞의 글, 219쪽.

93 김미경, 1996, 앞의 글, 49~50쪽. 천자 아래 승상(상국)을 두고, 제후와 열후의 왕국이나 후국에도 각각 상을 파견하였던 것처럼 구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 중앙의 최고위직인 ‘국상’의 기원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94 김남중, 2013, 「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 『韓國古代史探究』 14, 27~31쪽.

의 제도'가 남아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sup>95</sup>도 간과하기 어렵다. 고구려 역시 상으로 볼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하여 동옥저 지역을 지배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을 고구려가 동옥저를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지방관으로 파악한다면, '주령'이라는 상의 역할과도 부합한다. 물론 한의 후국 운영과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구려가 복속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상을 파견하였다고 일반화하여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동옥저에 한정한다면, 새로운 지배 대상이 되었던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관으로서 상을 파견하였다면, 사자로 삼은 토착 거수의 역할은 무엇이 있었을까? 비록 시간적·지역적 편차를 감안해야겠지만, 6세기 신라 금석문에 등장하는 '사인(使人)'은 동옥저의 사자를 이해하는 데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성리비·봉평비·청제비병진명·적성비 등에서 '사인'의 용례가 확인되는데, 중앙정부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거나 중앙에서 파견한 군지휘관·행정관의 업무를 조력하는 존재였다.<sup>96</sup> 특히 봉평비에서는 신라 국가가 거벌모라에 도사(道使, 지방관)를 파견하고, 그 예하 촌락인 아대혜촌과 갈시조촌, 남미지촌 등에는 현지 유력자를 '(촌)사인'으로 임명하여 지방관을 보좌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sup>97</sup> 지방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도사의 역할과 함께 현지 유력자인 촌주의 조력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sup>98</sup>

95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96 하일식, 2009, 「포항중성리신라비와 신라 관등제」, 『韓國古代史研究』 56, 186~187쪽.

97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183~185쪽. 사인의 직명은 보이지 않지만, 냉수비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한 진이마촌이 '담수 도사' 예하의 촌이었고, 지방 지배를 매개하는 현지의 유력자로서 촌주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이다.

98 창녕비에서 도사와 함께 등장하는 '外村主' 역시 비슷한 역할을 담당한 존재로 이해된다.

동옥저에서 사자로 임명된 대인의 역할도 신라 지방에서의 촌주, 사인의 역할에 견주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sup>99</sup> 고구려 국가는 동옥저를 복속시킨 후 관리를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주변 세력을 복속시키고자 한 것은 내외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1차적 목표는 역시 수취 기반의 확대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동옥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 지방관(상)을 파견하였으며, 각 읍락을 제어할 수 있는 거수들을 사자로 삼아 지방관을 조력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가 동옥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현지에서 그를 조력한 토착 거수와는 별개로 ‘대가’의 존재가 확인된다. 대가는 동옥저에서의 조세와 공물을 ‘통책’하였다고 한다. 문장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대가는 상으로 하여금 ‘주령’하게 한 것에 대응될 만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상과 사자(현지의 대인)와는 별개로 조세와 공물 등을 통책한 대가의 실체와 역할은 무엇일까?

조세와 공물의 부과, 그리고 그것들이 중앙으로 옮겨지는 일련의 수취 과정을 생각하면,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과 현지의 조력자 외에 그 과정에서 통책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존재로는 중앙에서 재정을 운영, 관리하는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다만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의 존재, 혹은 그 직명이 확인되지 않고, 대가가 그것을 담당하였다고만 언급되어 있는 점은 의문스럽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국가 재정과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대사농(大司農)이나 소부(少府) 등의 기구가 마련되어 있었고, 다소 후대지만 신라의 경우에도 품주(粟主)·창부(倉府) 등의 기구가 확인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관서)나 관직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99 고구려 중앙의 관등으로서 사자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다만 관등으로서 사자의 기원, 성격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관부(관서), 혹은 그 직명이 등장하지 않고, 대가가 업무를 담당한 사실만 언급된 것은 관료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한 단계에서 특정 인물에게 직임을 맡기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따름이다.<sup>100</sup>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구려 말기까지도 관부의 분화 양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관등만을 소지한 채 특정한 직임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관부의 미분화(미발달) 상황에서 대가들이 국정을 나누어 수행하는 고대 국가의 ‘초기’ 형태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sup>101</sup>

고구려가 동옥저를 복속한 직후부터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태조왕 62년(후 114) 국왕의 순수가 이루어진 사실<sup>102</sup>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sup>103</sup> 동해안 지역에서 동옥저 지역은 북쪽의 책성 지역과 함께 정치·군사·경제적 거점으로 기능하였고,<sup>104</sup> 동옥저를 거점으로 남쪽으로 영동의 예 세력들을 복속해간 것으로 이해된다. 적어도 『삼국지』에 보이는 고구려는 동옥저에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였고, 동옥저인들에게 조세와 역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 동옥저를 실질적인 고구려의 지방 행정 단위로 편입하여 직접지배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100 구체적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라에서는 관직과 관부가 미분화된 상황에서 특정 임무를 부여받은 상급의 관료군(대등)이 있었고, 또 그를 보좌하여 실무에 담당하는 하급 관료군의 구분이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은 참고가 된다(李文基, 1982, 「新羅 眞興王代 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大丘史學』 20·21).

101 이와 관련한 문제는 별고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102 『삼국사기』 권15, 태조왕 62년, “秋八月 王巡守南海 冬十月 至自南海.”

103 남해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성 천도 이후 집안 중심의 방위 관념에서 동옥저 지역을 가리킨다고 사실은 연구를 통해 논증된 바 있다(余昊奎, 2005, 앞의 글, 65~69쪽).

104 김현숙은 동옥저 지역이 일찍부터 고구려의 주요 거점지가 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면서 당시 거점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재편과 함께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배 의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지배방식에 대해서도 간접지배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김현숙, 2005, 앞의 책, 125~148쪽).

## 2. 고구려의 점진적 진출과 불내예의 존재 양태

그렇다면 고구려가 동옥저를 지배했던 방식을 영동지역의 다른 세력들에게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을까? 다음의 기록은 3세기 전반 영동지역에서의 고구려의 지배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진무 6년(후 30)에 변군을 줄이니, 도위도 이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그 후 현에 있는 거수로 모두 현후를 삼으니, 불내·화려·옥저 등의 제현은 모두 후국이 되었다. 이적들이 다시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였으나, 오직 불내예후만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조·주부 등의 제조를 두었는데, 예인이 모두 그 직을 담당하였다. 옥저 여러 읍락의 거수들은 모두 삼로를 자칭하니, 바로 옛 현국의 제도이다.<sup>105</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위 사료에서는 당시 한 군현의 지배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공조·주부 등 제조를 갖추고 있던 것은 오직 불내예후뿐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동옥저 등에서는 제조 등 군현의 지배 조직이 붕괴되었음을 반증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동옥저에 대한 고구려의 재편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불내예와 동옥저에 대한 고구려의 관할 방식이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태조왕 4년(후 56) 동옥저(부조현)를 복속시켰고, 같은 왕 66년(후 118)에는 화려성(화려현)을 공략하였다. 그리고 불내(불이현)를 포함한 영동 7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후한 말의 시점이었다. 아마도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교통로를 통하여 서서히 남진하여 영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 정황을 통하여 방증된다.

105 “漢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표 1〉 「초원 4년 낙랑군 호구부」 구역별 속현

| 구역 | 현 (기재 순서에 따라)                           | 비고   |
|----|---|------|
| 1  | 조선 - 남감 - 증지 - 점제 - 사망-둔유               | 군치   |
| 2  | 대방 - 열구 - 장잠 - 해명 - 소명-제해-함자            | 남부도위 |
| 3  | 수성 - 누방 - 혼미 - 패수-탄열                    |      |
| 4  | 동이-잡태 - 불이(불내) - 화려 - 사두매 - 전막 - 부조(옥저) | 동부도위 |

평양에서 출토된 초원 4년 낙랑군 호구부에 기재된 속현들은 4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sup>106</sup> 4구역이 바로 영동 7현이다. 낙랑군 호구부의 현별 기재 순서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첫머리에 기재된 현과 각 현을 하나씩 연결하는 방사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된다.<sup>107</sup> 각 구역의 첫머리에 기재된 현은 해당 구역과 군치를 연결하는 교통로상의 거점이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군치와 속현 간의 행정체계, 곧 서로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주목된다.<sup>108</sup> 각 현의 위치 비정에 대한 논란에도 대체로 그러한 경향 속에서 기재되었던 사실은 수긍된다.

조선현이 포함된 낙랑군의 중심지역인 1구역의 마지막에 둔유현이 기재되어 있으며, 2구역의 마지막은 함자현, 그리고 4구역은 부조현이 마지막에 기재되어 있다. 호구부의 2구역은 이후 대방군으로 분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낙랑군의 남부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대방군은 둔유현 이남을 분할하여 설치되었고, 왕망대 진한의 우거수 염사착은 함자현을 통해 낙랑군에 귀부하였다.<sup>109</sup> 또한 부조현이 영동 7현의 최북단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영동 7현의 지리적 특징으로 보아, 4구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동이에서 부조로 이어지는 남북 교

106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0~121쪽.

107 윤용구, 2010, 앞의 글, 193~195쪽.

108 이성제, 2010, 앞의 글, 223~227쪽.

109 『삼국지』 권30 동이전, 한 소인 배송지주 『위략』.

통로를 기준으로 원근에 따라 기재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sup>110</sup> 구체적인 위치는 차치하더라도 동이·잠태·불이(불내)현은 영동 7현의 남쪽, 그리고 부조·전막·사두매현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세기 초에 편찬된 『설문해자』에서는 ‘동이’를 여전히 낙랑의 동이현으로 기록한 반면, 사두매현은 ‘예 사두국(歲 邪頭國)’으로 표현하고 있는데,<sup>111</sup>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사두매현이 비교적 빨리 낙랑군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동이현은 여전히 낙랑의 관할 하에 있었던 상황이 『설문해자』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찬자가 당시 낙랑 지역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sup>112</sup> 같은 책에서 낙랑에 대한 정보가 적지 않게 등장하는 사실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sup>113</sup> 군치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었던 부조·사두매 등이 상대적으로 일찍 고구려에 복속되거나 낙랑군의 관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118년 화려성을 공격한 후 후한 말에 이르러 불내 등이 고구려에 복속되었던 사실은 속현의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sup>114</sup>

110 기재 순서 그대로 배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11 『설문해자』 권7 日部, “曬 日行曬曬也 從日施聲 樂浪有東曬縣 讀若醜 弋支切”; 권11 魚部, “鮓 魚名 出歲邪頭國 從魚免聲”; “魴 魚名 出歲邪頭國 從魚分聲 符分切”; “鱣 魚名 皮有文 出樂浪東曬.”

112 낙랑군의 소속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이가 후국으로 되었음을 고려하면, 동이현의 표현은 前代의 정보를 담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이성규, 2006, 앞의 글, 91쪽). 그러나 현과 후국이 동급의 행정단위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국의 상이 현령(장)과 구분되지 않았던 사실을 참고하면(鄭勉, 2009, 앞의 글, 168~169쪽), 낙랑군 예하의 후국을 현, 혹은 성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3 『설문해자』의 낙랑 지역 정보에 대해서는 김남중, 2017, 『說文解字』의 고조선·낙랑 기록과 典據, 『先史와 古代』 51을 참조.

114 최근 고구려의 동옥저 진출이 황초령을 넘어 함흥으로 이어지는 현도군의 옛 교통로가 아닌 영원에서 마유령을 넘어 금야 지역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종록, 2016, 「高句麗의 東沃沮 정벌과 樂浪郡」, 『先史와 古代』 49). 논자는 금야 지역을 불내예로 비정하면서 고구려가 일찍이 맹산을 거쳐 금야로 직접 진출하는 교통로를 장악하고 불내 지역을 거쳐 동옥저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118년에 화려성을

영동지역에서 군현의 영향력이 약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불내예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그 영향력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부도 위의 치소였던 불내현은 낙랑군 동부지역의 군사 거점이었다. 도위부가 직접적으로 현정(縣政)과는 별개의 체계를 갖춘 태수 예하의 군사 조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민족을 제어할 수 있는 군사 기반은 군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은 광무제가 변경의 군사·행정 조직을 축소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일거에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영동지역에 대한 장리 파견이 중단된 이후 영동지역의 토착 세력들은 자치를 누리며 독립된 정치체로서 존속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읍락 사회 내부에서는 한 군현과의 관계 속에서 읍락의 거수에게 수여된 칭호를 군현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거수들 스스로 그 칭호를 내세우면서 읍락에서의 권한과 지위를 세습하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후한(낙랑군) 정부에서 후·읍장·읍군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내속의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후한 환제의 재위기간에 예의 특산품이 여전히 낙랑의 이름으로 현상되고 있었던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된다.<sup>115</sup>

이적들이 다시 서로를 공벌하였다고 하지만,<sup>116</sup> 우월한 세력을 구심으로 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던 것 같다. 현정(후국)의 지배구조가 해체된 이후 대체로 개별 읍락을 단위로 분리된 양상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불내예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불내예의 경우에는 불내후가 구심이 되어 현정의 조직을 장악하고 예하의 읍락을 통할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조위(曹魏)에 항복한 불내예후가 예궐한 이후 불내예왕으로 봉해진 사실

---

공격하고, 후한 말에 이르러 불내 등의 세력을 복속했다는 사료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는다.

115 『삼국지』 권30 동이전, 예, “樂浪檀弓出其地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116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도 토착 사회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sup>117</sup> 예인의 풍속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당시 영동예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음악을 서로 침범하면 항상 벌로써 생구와 우마를 부과하니, 책화라고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게 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적다. 창을 만드는데 길이가 3장에 이르니,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며, 보전에 능하다.<sup>118</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예)

‘책화’의 풍속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음악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상위의 권력(기구)이 온존한 상황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당시 영동예 사회에서 과거 군현 체계와 같이 여러 음악을 아우르는 행정조직이 온존한 지역은 불내예가 유일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 약간의 억측을 더한다면, 아마도 사료(동이전 예조)에 나타난 풍속에 대한 많은 정보는 불내예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가 아닌가 짐작된다. 특히 병종과 전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그 군대를 직접 경험한 속에서 가능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추측에 다소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정시 6년(후 245)에 낙랑태수 유무와 대방태수 궁준은 영동의 예가 고구려에 복속하자, 군대를 일으켜 정벌하였다. 불내후 등이 읍을 들어 항복하였다. 그 8년에

117 불내예왕의 거처가 민간에 섞여 있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정치체의 발전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성을 중심으로 군현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사실과 불내예후(왕)가 현정의 체계를 장악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환의 대인들을 왕후로 봉하여 塞內 군현으로 이주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남은 무리들을 통치, 회유하는데 활용했던 사례(『삼국지』 위서 권30 오환선비동이전, 오환, 배송지주 『위서』)와 달리 불내예왕으로 봉해진 후 京師, 혹은 塞內의 군현으로 이주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 아닐까 짐작된다.

118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예결하여 조공하므로, 조서를 내려 불내예왕으로 봉하였다.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사사로 예군하여 조알하였다. 2군에 ‘군정부조’가 있으면 ‘공급역사’하니 마치 민과 같이 대우하였다.<sup>119</sup> (『삼국지』 권30 동이전, 예)

당시 영동에 지역의 군대에 대한 정보가 전해진 상황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관구검의 침공 당시 위군(魏軍)은 옥저 지역까지 진출하여 읍락들을 파괴하고, 3천여 급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던 일이 있었다.<sup>120</sup> 그러나 『삼국지』의 기록에서 옥저와 예의 기록이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구분되고 있었고, 완전히 패퇴한 군대에 대한 평가로 보기에는 예의 군사에 대한 기록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획득한 정보였을 가능성은 다소 낮게 생각된다. 그보다는 불내예후가 조위에 항복한 이후 낙랑·대방군에 군정(軍征)이 있었을 때, ‘역사(役使)’를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역’의 표현은 병력의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당시 불내예민은 군현에 직접 편제된 주민이 아니었던 만큼,<sup>121</sup> 인원을 징발하여 군현에서 군대를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내예가 편성한 군대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역사(供給役使)’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긴 창을 다루고, 보전에 능하다는 평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정시연간에 조위 관구검의 고구려 침공 당시 불내후 등이 ‘거읍(擧邑)’하여 항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불내예(불내현)가 후한 말에 이미 고구려에 복속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내후가 읍락을 거느리는 존재로서 남아 있었다는 사실

119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舉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120 『삼국지』 권30 동이전, 동옥저, “毋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121 장병진, 2015, 앞의 글, 25~26쪽.

이 주목된다. 앞서 보았듯이 불내예후를 중심으로 제조(諸曹)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예인들이 제조의 직임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은 내치(內治)에서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동옥저의 경우에는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 정복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불내예가 고구려에 복속된 계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후한 말에 복속되었다고 전해질 뿐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기력이 있고, 전투에 익숙하다”는 내용에 이어 옥저와 영동예가 속하였다고 언급한 사실을 참고하면, 직접적인 군사 활동을 통하여 복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sup>122</sup> 그러나 화려성을 공략한 이후 영동지역에서 고구려의 군사 활동은 확인하기 어렵다. 2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는 요동지역 군현과의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었고, 동남쪽 지역에 이미 동옥저를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영동지역에서 군사 정벌을 단행할 만한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후한 말 불내예 등이 고구려에 복속된 계기와 관련해서는 후한 말 “한예(韓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sup>123</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삼국지』 한(韓)조의 해당 기록은 낙랑군의 남부와 영서 지역에 대한 상황을 주로 언급한 것이지만, 이 지역의 토착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와해된 상황 속에서 영동의 예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원 정세의 혼란으로 변경에서 후한 군현이 더 이상 권력의 구심이 되기 어렵게 되면서 주변 이민족 세력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장리의 파견이 중단된 이후에도 낙랑군과의 교섭을 유지했던 불내예 역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고구려가 동옥저를 거점으로 이미 화려성을 공략하고 영동지역 깊숙이 진출해 있던 상황에서 불내예는 고구려에 복속을 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실상에 가까

122 『삼국지』 권30 동이전, 고구려,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123 『삼국지』 권30 동이전, 한,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운 것이었을 수도 있다.

당시 고구려와 불내예의 관계는 고구려와 동옥저의 관계보다는 고구려나 부여가 중국의 군현과 맺었던 관계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된다.<sup>124</sup> 불내예후가 ‘거읍(舉邑)’하여 조위에 항복하였으나 불내예의 주민들을 민과 같이 대우한다는 표현[우지여민(遇之如民)]은 그들이 군현민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고구려와 동옥저, 불내예 관계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구려 역시 불내예인을 고구려의 주민으로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내예에서는 때마다 사절을 보내 조하(朝賀)하고 공물을 헌상하였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력이나 군량에 대한 부담도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피복속 세력의 의지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 다소 유동적인 출입을 보이는 사실 역시 고구려와 불내예 관계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sup>125</sup>

####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부터 3세기 중반에 이르는 시기의 영동지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 군현의 지배가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점차 군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구려가 이 지역을 지배하기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

124 고구려가 복속한 세력들을 모두 동일한 형태로 관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하위 동맹국 내지는 종속국적인 성격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참고된다(노태돈, 1999, 앞의 책, 128쪽).

125 요동에서 공손씨 정권이 들어서고 공손씨와 고구려 관계의 부침에 따라 주변 예맥 세력의 동향에도 변화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의 정세와 예맥의 동향에 대해서는 여호규, 2007, 「3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歷史學報』 194, 11~21쪽이 참고된다.

양상을 보였는지, 그리고 고구려는 이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퇴축된 이후 동옥저의 읍락들은 부조현으로 편제되어 낙랑군의 통치를 받았다. 옥저를 제외한 영동지역의 다른 현들의 경우에도 임둔군이 폐지된 이후 현도군과 낙랑군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낙랑군으로 이속된 영동지역은 동부도위가 설치되어 토착 사회의 독자성이 크게 용인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오히려 낙랑군의 예하에서 철저한 군현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과정에서 토착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군현지배에 참여하여 제한적이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군치 지역으로 이주되기도 하였는데, ‘부조예군’이 대표적이다.

후한 광무제가 변경의 통치 방침을 수정하면서 낙랑군에도 변화가 있었다. 영동 7현을 관할하는 군사기구였던 동부도위를 폐지하였고, 토착의 거수를 현후로 봉하여 후국으로 삼았다. 영동지역에 대한 후한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점차 이 지역으로 진출해 왔고, 더 이상 후한 정부에서의 장리 파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늦어도 140년 무렵이면 영동지역은 낙랑군의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동옥저를 복속시킨 고구려는 점차 남하하여 후한 말에는 옛 영동 7현의 대부분을 자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옥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공납을 매개로 한 간접지배로 파악하고, 고구려가 복속지를 지배하는 전형적 방식으로 이해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사료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고구려는 동옥저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토착 지배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지배에 참여시킨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 시기 한의 지배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다.

한편 이렇게 고구려가 동옥저를 지배한 방식을 영동지역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3세기 동옥저와 불내예의 존재 양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두 지역이 고구려에 복속된 시점은

100년여의 시차가 있었고, 고구려에 복속되기 직전의 상황에도 차이가 있었다. 후한이 영동지역의 통치를 포기한 이후 불내예의 경우에는 불내후가 현정 체계를 장악하고, 예하의 읍락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고구려 역시 이러한 지배구조를 용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간접지배의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동옥저와 비하여 높은 독립성을 보장 받았음은 분명하다. 관구검의 침공 당시 동옥저와 불내예의 대응이 달랐던 것은 고구려의 지배방식,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예측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오중 외, 2010,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金翰奎, 1982, 『古代中國の世界秩序研究』, 一潮閣.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리순진, 2001, 『평양일대 락랑무덤에 대한 연구』, 도서출판 중심.  
朴眞奭·姜孟山 外, 1995, 『中國境內 高句麗遺蹟 研究』, 예하.  
손영중, 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과학백과출판사.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이성규 외, 2006,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하일식, 2006,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和田清, 1955, 『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 權五重, 2002, 「漢과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기수연, 2007, 「현도군과 고구려의 건국에 대한 연구」, 『高句麗研究』 29.  
金基興, 1985, 「夫組葦君에 대한 고찰-漢의 對土着勢力 施策의 一例-」,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金基興, 1987,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 『韓國史論』 1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남중, 2013, 「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 『韓國古代史探究』 14.  
김남중, 2017, 『說文解字』의 고조선·낙랑 기록과 典據, 『先史와 古代』 51.  
김미경, 1996,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 『學林』 17.  
金美昞, 2000, 「高句麗의 沃沮服屬과 그 性格」, 『(河炫綱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金美昞, 2002,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 24.  
김병준, 2013,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部都尉 및 屬國都尉에 대한 재검토-」, 『歷史學報』 217.  
김병준, 2013, 「진한제국의 변경 이민족 지배와 부도위」,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외교와

- 변경기구, 『동북아역사재단』.
- 김병준, 2015,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근현지배」, 『한국고대사연구』 78.
-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리순진, 1983, 「우리 나라 서북 지방의 나무곽무덤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문집』 8.
- 문안식, 2009, 「옥저의 기원과 대외관계의 변화」,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박경철,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狀」, 『韓國史學報』 15.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3, 「락랑구역일대의 고분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의식, 2010, 「中古期 六部の 部役動員과 地方支配」,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해안.
- 余昊奎, 2005, 「高句麗 國內 遷都의 시기와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8.
- 여호규, 2007, 「3세기 전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정책」, 『歷史學報』 194.
- 余昊奎, 2008, 「鴨綠江 중상류 연안의 高句麗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29.
- 윤용구, 2006, 「高句麗의 흥기와 幟溝淩」,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 李成珪, 1977, 「前漢 列侯의 性格－郡縣支配下에서 封建制의 一變貌－」, 『東亞文化』 14.
- 李丞鎬, 2014, 「漢의 沃沮 지배와 토착 지배층의 동향－夫租蕤君 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국사학』 57.
- 이옥, 1981, 「高句麗의 征服과 爵位(試論)」, 『東方學志』 27.
- 李龍範, 1987, 「高句麗의 膨脹主義와 中國과의 關係」,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 이중목, 2016, 「高句麗의 東沃沮 정벌과 樂浪郡」, 『先史와 古代』 49.
- 이현혜, 2010,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 林起煥,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慶熙史學』 14.
-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 장병진, 2015,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 『한국고대사연구』 77.
- 鄭勉, 2009, 「漢代 列侯爵制의 변화와 侯國制의 변모」, 『西江人文論叢』 25.

- 崔熙洙, 2009, 『高句麗 地方統治 運營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일식, 1990, 「서평: 국가성립사연구와 방법론」, 『역사와 현실』 4.
- 홍승현, 2015, 「後漢時期 邊郡 통치의 변화와 樂浪郡-王調 반란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61.
- 岡崎敬, 1968, 「「夫租蕨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 『朝鮮學報』 46.
- 武田幸男, 1967, 「魏志東夷伝にみえる下戸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
- 肥後政紀, 1998, 「『漢書』地理支記載の戸口統計の年代について」, 『明大アジア史論集』 3.
- 野口優, 2012, 「前漢邊郡都尉府の職掌と邊郡統治制度」, 『東洋史研究』 71-1.
- 田中俊明, 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東京大學文學部 朝鮮文化研究室.
- 田村晃一, 1979, 「樂浪郡地域の木槨墓」, 『(三上次男博士頌壽記念) 東洋史・考古學論集』, 朋友書店.
- 和田清, 1951, 「玄菟郡考」, 『東方學』 1.
- Dae-Jae Park, 2017, "A New Approach to the Household Register of Lelang(樂浪) Commande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2-2.

## 고구려의 영동지역 진출과 관할 방식

장병진

영동에 지역은 고조선, 한 군현 그리고 고구려의 지배를 차례로 경험하였다. 영동지역의 정치 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현도군이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퇴축된 이후 동옥저의 읍락들은 부조현으로 편제되어 낙랑군의 통치를 받았다. 옥저를 제외한 영동지역의 다른 현들의 경우에도 임둔군이 폐치된 이후 현도군과 낙랑군의 지배를 차례로 받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낙랑군으로 이속된 영동지역은 동부도위가 설치되어 토착 사회의 독자성이 크게 용인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오히려 낙랑군의 예하에서 철저한 군현 통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과정에서 토착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군현지배에 참여하여 제한적이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일부는 군치 지역으로 이주되기도 하였는데, ‘부조예군’이 대표적이다.

후한 광무제가 변경의 통치 방침을 수정하면서 낙랑군에도 변화가 있었다. 영동 7현을 관할하는 군사기구였던 동부도위를 폐지하였고, 토착의 거수를 현후로 봉하여 후국으로 삼았다. 영동지역에 대한 후한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한편으로는 고구려가 점차 이 지역으로 진출해 왔고, 더 이상 후한 정부에서

의 장리 파견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늦어도 140년 무렵에는 영동지역이 낙랑군의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동옥저를 복속시킨 고구려는 점차 남하하여 후한 말에는 옛 영동 7현의 대부분을 자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옥저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공납을 매개로 한 간접지배로 파악하고, 고구려가 복속지를 지배하는 전형적 방식으로 이해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사료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고구려는 동옥저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지배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서로 토착 지배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지배에 참여시킨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배방식은 이전 시기 한의 지배방식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고구려가 동옥저를 지배한 방식을 영동지역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3세기 동옥저와 불내예의 존재 양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두 지역이 고구려에 복속된 시점은 100년여의 시차가 있었던 만큼, 고구려에 복속되기 이전의 상황도 차이가 있었다. 후한이 영동지역의 통치를 포기한 이후 불내예의 경우에는 불내후가 현정 체계를 장악하고, 예하의 읍락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고구려 역시 이러한 지배구조를 대체로 용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간접지배의 형태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동옥저와 비하여 비교적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다. 관구검의 침공 당시 동옥저와 불내예의 대응이 달랐던 것은 고구려의 지배방식,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예측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된다.

**주제어:** 고구려, 낙랑군, 영동에, 동옥저, 불내예, 지배방식

## ABSTRACT

# Koguryo's Entry into the Yongdong Area and Its Jurisdiction

Jang Byungjin

Yongdong Ye (嶺東濊) was ruled by Old Joseon, the Han (漢) counties and prefectures, and subsequently by Koguryo. Therefore, political changes in the Yongdong area are significant for the study of ancient Korean history.

After the Hyundo (Xuantu) Commandery retreated to the northwest of Koguryo, towns in East Okcho (東沃沮) became subject to Bujo (夫租) Prefecture under the Nangnang (Lelang) Commandery. Other prefectures were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Hyundo Commandery and Nangnang Commandery with the withdrawal of the Imdoon (Lintun) Commandery. After the creation of Dongbudowie (the eastern sub-district of Nangnang), the Yongdong area was subject to Nangnang Commandery and was guaranteed its independence. However, the county and prefecture ruling system was well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Nangnang Commandery. In the process, by participating in

the governing system of counties and prefectures the ruling power in the aboriginal community retained its position, albeit in a limited manner. Some communities were moved to the center of the county. Bujo Ye Gun (夫租歲君) is a case in point.

The Late Han Emperor Gwangwu's changing of its governance of frontiers affected Nangnang Commandery. Dongbudowie, the military unit responsible for seven regions in the Yongdong area, was removed. The Late Han lost its influence over the Yongdong area while Koguryo advanc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 Late Han to dispatch administrators. In late 140 CE, the Yongdong area was completely removed from the jurisdiction of Nangnang Commandery.

After gaining control over East Okcho, Koguryo advanced south and ruled seven regions of the old Yongdong area by the Late Han period. In previous studies, the method by which Koguryo controlled East Okcho was considered to have been indirect control based upon tribute payment, which was Koguryo's traditional method. However, after in-depth reviews of inscriptions, it has been found that Koguryo directly controlled East Okcho by dispatching regional officers. At the same time, Koguryo did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ruling power in the aboriginal community and allow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governing system. This indicates that Koguryo embraced much of Han's governing system.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method by which Koguryo ruled East Okcho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Yongdong area. This is because in the third century East Okcho and Bulnae Ye (不耐歲) clearly differed in their forms of governance. There was a gap of 100 years between the periods of subordination to Koguryo, thus there was a different

governing system before their subordination. After the Later Han abandoned its rule over the Yongdong area, Bulnae Hu (不耐侯) gained control over Bulnae Ye and placed Bulnae Ye's towns under its rule. Koguryo is considered to have accepted such a governing structure from that time.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is can be seen as indirect control. However, it is clear that Koguryo gain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independence compared to East Okcho. East Okcho and Bulnae Ye showed different reactions to the Guanqiu Jian attack because of Koguryo's ruling system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respective subordination to Koguryo.

**Keywords:** Koguryo, Nangnang (Lelang) Commandery, Yongdong Ye, East Okcho, Bulnae Ye, Ruling System



# 조선 전기 요동에서 사행(使行) 호송군(護送軍)의 역할과 국제무역의 경계

구도영 |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호송군 운영과 사행무역
- III. 호송군, 이주와 비사행무역(불법무역)을 견인하다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 연구는 15~16세기 조선의 의주(義州)와 요동(遼東)의 요양(遼陽)을 오간 조선 호송군(護送軍)에 주목하여, 호송군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조선 전기 변경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 전기 조명외교 상에서 호송군이란 명(明)의 북경(北京)으로 파견되는 조선 사행단을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를 일컫는다. 호송군의 임무는 군역(軍役)의 일부지만 이들의 존재는 한반도와 중국 간 사행외교를 유지하는 한 존속했으며, 더욱이 그들의 활동무대가 조선 국내 영역이 아닌 요동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5세기, 의주에서 연산관(連山關)에 이르렀던 요동 지역 일대는 명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과 명 사이의 국경 완충지대로 존재하였다. 즉 명이 요동팔참(遼東八站)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여 넓은 요동 일대가 공한지대로 존재했던 것이다. 만약 명이 이 지역을 확고하게 명의 영토로 삼았다면, 조선이 굳이 조선 사행단을 보호할 호송인력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선 사행단은 요양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명의 군사(軍士)로부터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요동팔참 지역은 거주인이 드문 국경 완충지대였는데, 그러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왕래했던 조선인은 다름 아닌 수백 명의 호송군이였다.

우선 호송군의 존재는 주목할 점이 적지 않다. 조선시대 한중외교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행단의 신변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한중외교에서 그 중요성은 작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을 수차례 왕래하며 조선인의 활동무대를 넓혔다. 그리고 이들은 권세가(權勢家)와 결탁한 중앙 권력 측 인사들이 아니라 평안

---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3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도 등의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로서 소위 역사적 ‘주변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인들이 당시 한중무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구성원들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따라서 호송군에 대한 연구는 국가 중심주의적 시선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경(邊境)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연구 소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명사행의 호송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선행연구로는 의주민(義州民)에 중점을 두어 의주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사행의 접대와 호송군을 함께 검토한 연구가 있다.<sup>1</sup> 호송군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중관계에서 호송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분석되지 않았다. 이 외에는 조선 전기 사행단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서 호송군의 역할과 대동하는 인원수 규정 정도를 부수적으로 언급한 연구가 있으며,<sup>2</sup> 호송군의 제도적 측면을 군사(軍事)에 한정하여 고찰한 연구가 있다.<sup>3</sup>

이렇듯 조선의 대명사행 호송군에 대한 연구성과는 희소한 편이다. 이는 첫째, 기존 한중관계 연구가 주로 조선(조정)-북경이라는 양 주체의 중심과 중심부에서 전개되는 외교현안에 경주하다보니, 정작 외교수행의 인력구성이나 구체적인 역할 등 실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입체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적 동선이었던 요동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간 요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연산관 동쪽에서 의주까지의 지역이 명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이다.<sup>4</sup>

- 
- 1 장희홍, 2006, 「조선시대 대명 사행의 접대와 호송군-의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 2 박성주, 2005, 「고려·조선 遣明使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도영, 2013, 「조선 전기 對明 陸路使行的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117.
  - 3 구도영, 2016, 「조선 전기 對明 使行 護送軍 제도와 운영」, 『인문과학연구』 50.
  - 4 유재춘, 2001, 「15세기 명의 동팔참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 남의현, 2004, 「명 전기 요동도사와 요동팔참 점거」, 『명청사연구』 21; 유재춘, 2006, 「15세기 前後 朝鮮의 北邊 兩江地帶 인식과 영토 문제」, 『조선시대사

최근에 조선 전기 요동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을 검토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었는데, 조선과 요동 지역과의 연구방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sup>5</sup> 이제 는 요동 지역을 왕래하는 자들, 즉 조선인 호송군이 조명관계와 요동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중관계를 좀 더 다양한 문맥에서 살펴보아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둘째, 호송군은 사행단의 직접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아닌 까닭에 연구대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행연구가 주로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다보니, 사행의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의 실상은 깊이 있게 다루어질 기회가 없었다. 결국 요동 지역을 무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한 수많은 조선인 호송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에 접근하는 노력이 미흡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중관계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 요동에서의 다양한 맥락과 역사적 주체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한중관계에 대한 더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해석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호송군의 역할과 요동 지역에서 호송군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15세기 호송군 운영에 따른 업무강도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정의 해결책이 낳은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호송군은 일차적으로 사행단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졌지만, 이로 인해 조선과 명의 국경을 왕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양국의 경계를 오가면서 파장되는 다양한 사회상을 경험했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행단을 보호하는 본연의 군사적 역할 외에 경계인으로서의 또 다른 모습 역시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송군의

학보』 39; 유재춘, 2011,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 - 14세기~15세기를 중심으로 -」, 『한일관계사연구』 39; 남의현, 2011, 「15세기 북방정세와 明의 邊境政策의 再檢討 - 明의 대몽골 정책과 조선·여진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9; 남의현, 2012, 「元末明初 朝鮮·明의 요동쟁탈전과 국경분쟁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42; 구도영, 2015,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島嶼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역사와 현실』 97.

5 남의현, 2015, 「명대 위소제도의 형성과 성격-변경지역의 東寧衛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3.

활동이 대명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보여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호송군이 조명외교의 보조적인 지원 기능을 넘어 요동과 한 중국경에 걸쳐 전개되었던 사회경제적 변화에 어떠한 역할로 자리매김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한중외교에 대한 연구 시각을 다각화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경지대를 넘나들던 경계인의 활동을 엿봄으로써 변경사(邊境史) 연구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호송군 운영과 사행무역

### 1. 호송군의 주요 임무와 동원 규모<sup>6</sup>

#### 1) 호송군의 임무와 동선

조선 전기 조선의 대명외교와 무역(貿易)의 중추를 담당했던 사행단은 명이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이래 의주-요양-광녕-산해관-북경에 이르는 육로를 경유했다.<sup>7</sup> 그런데 이 사행구간 중 의주에서 연산관 동쪽 사이의 요동 일대는 국초 조선과 명의 행정력 모두가 미치지 않는, 이른바 국경 완충지대였다. 명이 동팔참 지역에 보(堡)를 만들고 한인(漢人, 이하 ‘중국인’) 군사를 주둔시킨 것도 15세기 말의 일이었다.<sup>8</sup> 따라서 조선은 의주에서 요동도사(遼東都司)가 있는 요양까지 420리 구간에서 조선 사행단을 보호할 군인을 파견해야 했는데, 이들이 호송군이다. 호송군의 임무를 동선 왕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6 호송군의 주요 임무와 동원 규모는 다음 논문에서 이미 자세히 연구된 바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구도영, 2016, 앞의 글).

7 『大明會典』卷105, 禮部63, 朝貢1, 東南夷上, 朝鮮國.

8 유재춘, 2001, 앞의 글; 남의현, 2004, 앞의 글; 유재춘, 2006, 앞의 글; 유재춘, 2011, 앞의 글; 남의현, 2008, 『명대요동지배정책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첫째, 북경행 조선 사행단을 의주에서 요양까지 호송하는 경우다. 조선 측 호송군은 사행단이 동팔참 지역을 지나는 동안 호위하고, 요양에 도착하면 명군에게 사행단을 인계한 후 의주로 복귀하였다. 조선 호송군이 요양까지만 호위하는 이유는 요양에 요동도사의 치소(治所)가 있고,<sup>9</sup> 도지휘사사(都指揮使司)가 이 지역의 군정을 관장하므로<sup>10</sup> 요양부터 사행단의 짐바리를 운송하는 수레와 군마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양부터 북경까지 조선 사행단의 신변안전과 짐바리 운송은 오로지 명군(明軍)이 책임을 졌다.

둘째, 귀국하는 조선 사행단을 호송하는 경우다. 임무를 마친 사행단이 북경에서 출발하여 요양에 도착하면, 호송군은 다시 요양에 나아가 이들을 맞이해 돌아왔다. 호송군은 사행단의 ‘출국’과 ‘귀국’을 위해 요양을 두 번 왕래했던 것이다.

셋째, 조선은 국초 만산군(漫散軍) 송환이나 세종대 이후 피로(被擄) 중국인 송환 등 요동도사와의 외교업무로 인해 요양까지 가는 사행을 별도 파견해야 했는데, 호송군은 이와 같은 요동사행 호위에도 동원되었다. 만산군은 고려 말 요동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 유민이었는데, 조선 초 명의 ‘정난(靖難)의 역(役)’을 피해 다시 조선에 돌아온 자들을 말한다. 명은 이들의 쇄환을 요구했고, 조선은 이들을 수차례에 걸쳐 명으로 다시 돌려보냈다.<sup>11</sup> 세종대 이후에는 요동 지역을 침입했던 여진이 이 지역 중국인들을 사로잡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여진에게 잡혀갔던 중국인들 중 일부가 탈출하여 조선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은 이들 중국인들을 다시 요동으로 송환해야 했다.<sup>12</sup> 이에 따라 세종대 이후에는 압해관이 연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양에 파견되었고, 이때

9 『全遼志』卷1, 圖考志, 都司治.

10 『明史』卷76, 職官志 5.

11 강성문, 1997, 「조선초기 만산군 유입과 송환문제」, 『죽당 이현희교수화갑기념한 국사학논총』, 동방도서; 김경록, 2012, 「朝鮮初期 軍人送還問題와 朝明間 軍事外交」, 『군사』 83; 유재춘, 2012, 「麗末鮮初 朝明간 女眞 귀속 경쟁과 그 意義」, 『한일관계사연구』 42.

12 『明 世宗實錄』卷145, 嘉靖 11年 12月 戊戌; 『明 世宗實錄』卷161, 嘉靖 13年 3月 癸酉.

호송군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요동을 왕래해야 하는 호송군은 주로 평안도민에서 선발하였다.<sup>13</sup> 다만 평안도 지역 중에서 강계·위원·이산·벽동·창성·삭주·의주·용천·철산 지역에서는 호송군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14</sup> 이들 지역은 평안도 최북단 강변 지역으로 적과 마주하는 요해지였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에 국방 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호송군 차출을 금지시켰던 것으로 파악된다.<sup>15</sup>

## 2) 호송군 동원 기간과 규모

호송군 동원 기간과 규모는 호송군으로 동원된 조선 백성이 요양을 얼마나 자주 왕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다. 호송군 동원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송군에 차정된 장정(壯丁)이 거주지에서 의주로 소집되기까지 시간, 사행단에 합류하여 의주에서 대기하는 시간, 압록강을 건너 요양에 이르는 시간, 요양에서 명군 측에 사행단을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요양에서 의주로 되돌아오는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은 조선 사행단이 의주에서 요양으로 출발할 때 소요되는 편도 시간만을 고려한 것이다. 사행단이 북경에서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다시 요양으로 돌아오면 호송군은 다시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요양으로 나아가 사행단을 맞이해야 했고, 이때 호송군은 사전에 요동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송군으로 차출된 장정들이 거주지에서 의주로 집결하고, 의주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각각 있었다. 집결하는 데에는 지역마다 1~8일 정도 소요되었다.<sup>16</sup> 중종 34년 동지사 임권

13 『經國大典』卷4, 兵典, 迎送.

14 『世祖實錄』권38, 12년 1월 21일 갑자; 『睿宗實錄』권6, 1년 7월 28일 기유; 『經國大典』卷4, 兵典, 迎送.

15 『太宗實錄』권35, 18년 3월 8일 무오; 『世宗實錄』권21, 5년 8월 29일 정축; 『世宗實錄』권100, 25년 6월 5일 무자.

16 『世宗實錄』권66, 16년 10월 14일 정사; 『中宗實錄』권1, 원년 12월 12일 병진.

(任權)과 주청사 권별(權機)은 의주에서 11일을 머물렀고,<sup>17</sup> 선조 5년 하등극사,<sup>18</sup> 선조 7년 성절사 모두 의주에 6일 정도 대기하였다.<sup>19</sup> 이를 미루어 살펴본다면 호송군이 각자 집에서 출발하여 의주로 모이고 대기하는 데 필요한 예상 소요시간은 약 6~20여 일 정도 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신분상 호송군은 의주에 사신보다 먼저 도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거주지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호송군역에 착출된 평안도 장정들은 각기 집에서 출발, 의주에 도착 및 대기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10여 일 남짓 걸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행단이 의주에서 출발, 요양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관련 연구와 사료를 확인해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을 경우 약 7일 정도면 요양에 다다를 수 있었다.<sup>20</sup> 그러나 압록강을 건넌 이후 요동을 지나는 동안 각종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호송군 동원 기간은 산술적인 거리 계산 이외에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감안해야 했다. 동팔참 지역의 하수(河水)는 강 물줄기가 급하고 아래에는 돌이 많아 조금만 비가 와도 통행하기 어려워, 사행 일정이 18일 이상 지체된 적도 있었다.<sup>21</sup>

셋째, 사행단이 요동도사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북경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호송군은 요양에 함께 머물러야 했다. 사행단은 요동 도착 후 요동도사에 자문을 바치고, 차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행단과 요동도사의

17 『冲齋集』卷7, 朝天錄, 嘉靖 18年 中宗大王 34年 8月 22日~9月 3日.

18 『東湘集』卷7, 朝天錄, 隆慶 6年 壬申 9月 12日~9月 18日.

19 『荷谷集』朝天記 上, 萬曆 2年 甲戌 6月 10日~16日.

20 『檜山集』卷2, 朝天錄, 丁酉 嘉靖 十六年 7月 初1日~初7日; 『荷谷集』朝天記 上, 甲戌年 6月 16日~23日; 『鶴峯逸稿』卷3, 朝天日記, 丁丑年 2月 20日~26日; 구도영, 2013, 앞의 글, 77~79쪽; 『成宗實錄』권226, 20년 3월 25일 계미; 『中宗實錄』권1, 원년 12월 12일 병진.

21 『荷谷集』朝天記 上, 萬曆 2年 甲戌 6月 22日. 요동에는 하수가 여럿 있는데, 가령 八渡河는 물 하나를 여덟 번을 건넌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물살이 깊고 맹렬하여 평상시에도 건너기가 매우 어려웠다(『甲寅燕行別錄』卷1, 甲寅年 8月 1日 庚戌).

현관례와 연회 등 공식행사가 진행되었다.<sup>22</sup> 사행단이 이러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호송군 역시 5~10일 간 함께 요양에서 머물렀으며,<sup>23</sup> 호송군은 사행단이 북경으로 출발하면 의주로 복귀하였다.

요컨대 북경행 사행단을 호송하는 경우 의주에 집결하여 대기하는 데에 약 10일 남짓 소요되고, 도강 후 요양까지 약 7일 내외가 걸렸다. 요양에서 5~10일 정도 머물러야 했으며, 사행단이 요양에서 북경으로 출발하면 호송군은 약 7일 만에 의주로 되돌아왔다. 호송군은 사행단의 편도 여정(의주→요양)을 호위하기 위해 약 한 달 남짓 동원되었던 것이다.

넷째, 사행단이 북경에서 임무를 마치고 요양으로 돌아오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호송군이 다시 요양으로 출발하는데, 호송군은 사행단보다 먼저 요양에 도착해야 했다. 예컨대 호송군은 사행단의 요양 도착 60리 전 안산역(鞍山驛)까지 미리 마중나와 있었다. 호송군은 조선 사행단을 안산역에서 상봉한 후 10일 만에 의주로 돌아왔다.<sup>24</sup> 호송군과 사행단이 요양에서 의주로 돌아와 의주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사행단 출발할 때(의주→요양)보다 약 2일 정도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호송군이 귀국하는 사행단을 맞이할 때에는 의주에 집결하여 대기하는 데 약 8일, 도강 후 요양까지 다다르는 데 약 6일, 사행단과 함께 의주로 돌아오는 길은 약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따라서 사행단을 맞이하는 호송군은 약 25일 내외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사행단의 출발시(약 30~35일)가 귀국시(약 25일 내외)보다 며칠 더 소요되었으며, 하나의 사행단 일행을 위해 호송군이 약 두 달 정도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북경행 사행을 위한 연간 호송군 동원 총 시간을 가늠해보자. 이를 위해

---

22 『通文館志』卷3, 事大 上, 中路宴享; 『通文館志』卷3, 事大 上, 瀋陽交付分納.

23 『檜山集』卷2, 朝天錄, 嘉靖 16年 丁酉 7月 初7日~14日; 『冲齋集』卷7, 朝天錄, 嘉靖 18年 中宗大王 34年 9月 9日~9月 18日; 『陽谷赴京日記』嘉靖 13年 甲午 正月 27日~2月 3日; 『鶴峯逸稿』卷3, 朝天日記, 丁丑年 2月 26日~3月 7日; 구도영, 2013, 앞의 글, 77~79쪽; 『中宗實錄』권56, 21년 1월 17일 경자.

24 『荷谷集』朝天記 下, 萬曆 2年 甲戌 10月 1日~10日.

서는 조선의 사행 파견 횟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조선은 국초부터 성종대 이전까지 1년에 약 7~10번의 사행을 파견하였으며, 성종대 이후부터 16세기 동안은 1년에 총 4~5회 파견하였다.<sup>25</sup> 북경행 사행단의 편도 호위 동원 시간에는 15~16세기 사행 파견 횟수를 함께 계산하면, 조선은 15세기 북경으로 가는 대명사행을 위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420~600여 일의 시간 동안 호송군을 동원했으며, 성종대 이후부터 16세기 동안은 사행 파견 횟수가 감소하여 연간 약 280~350일 정도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의 사행단에 동원된 호송군 인원을 살펴보면, 국초에는 30명 혹은 40명 정도가 원칙이었으나,<sup>26</sup> 세종 중엽부터 추진된 강력한 북방정책으로 여진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sup>27</sup> 호송군 동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경국대전』에 사행단이 의주를 출발하여 요양까지 갈 때에는 호송군 1백 명을, 사행단이 북경에서 돌아와 요양에서 압록강까지 영송할 때에는 호송군 50명을 보내기로 규정하였으나,<sup>28</sup> 지켜지지 않은 적이 많았다. 장정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이 호송군역으로 차출되기도 하였다.<sup>29</sup> 호송군 동원 인력 수는 북방 성식(聲息)의 상황과 사신의 품계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호송군 동원 기간은 북경 사행단이 특별한 변고 없이 돌아왔을 때의 기준에서 가능한 것이며, 요동 사행단에 대한 호송군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한 해에 수차례 비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압해관(押解官) 등의 요동 사행에도 호송군이 동원되었다.<sup>30</sup>

25 박성주, 2005, 앞의 글.

26 『太宗實錄』 권31, 16년 5월 8일 기해; 『世宗實錄』 권79, 19년 12월 25일 임오.

27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259쪽.

28 『經國大典』 권4, 兵典, 迎送.

29 『世宗實錄』 권81, 20년 6월 1일 계축; 『世宗實錄』 권81, 20년 6월 27일 기묘; 『世祖實錄』 권44, 13년 12월 22일 갑인; 『睿宗實錄』 권1, 즉위년 9월 10일 병인; 『睿宗實錄』 권3, 1년 2월 12일 정유; 『成宗實錄』 권51, 6년 1월 13일 계해.

30 요동 사행단은 비정기적으로 파견되어 파견 총 횟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도 요동 사행단의 호송군 동원 기간은 가능하지 못하였다. 다만 요동 사

## 2. 호송군 생계 보조책과 요동무역 허가

위에서 호송군 운영과 동원 규모를 살펴보았다. 상술한 호송군 동원 기간은 북경 사행단에 한정할 수치라는 점에서 동원 일수가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농번기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비정기 사행의 경우는 백성들이 호송군 동원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징발되어 폐해가 더욱 컸다. 시기를 가리지 않은 호송군 동원은 백성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해당지역 백성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초 정부는 호송군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호송군에게 요동에서의 국제무역을 용인한 일이었다. 호송군은 정부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명과의 사무역을 강력히 통제하였던 조선 조정의 대외무역 정책 기초를 참고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조선은 국초부터 공무역을 제외한 명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차단하였다. 양국의 민간인들이 서로의 국경을 넘어 행하는 월경무역·해상무역(越境貿易·海上貿易: 비사행무역, 조·명 양국에서 불법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사행단의 일원이 행하는 사무역(私貿易: 사행무역, 명에서는 합법)까지 통제하였다. 조선의 사무역은 명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선이 사무역을 통제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sup>31</sup>

행단 중 하나인 押解官을 위한 호송군 동원 인력은 예종대에 50명을 차출하게 하였다가(『睿宗實錄』 권3, 1년 1월 1일 병진), 『經國大典』에는 15명으로 결정되었다(『經國大典』 卷4, 兵典, 迎送). 북경 사행단의 호송군이 『經國大典』에서 100명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해보면, 압해관을 위한 호송군 동원 인력도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 31 사행무역의 하나인 사무역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은 사행단원이 출국할 때 명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 양을 지극히 제한하여 사실상 사무역으로 이익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행무역과 불법무역(非使行貿易)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한다. 구도영, 2013, 「조선 초기 對明貿易體制의 성립과 운영」, 『사학연구』 109; 구도영, 2015, 「16세기 조선의 대명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 170.

조선 조정은 사무역을 일부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허가하였는데 이들이 재상·사신·호송군이였다. 재상들에게 사무역을 허가해준 것은 이들이 왕실과 더불어 사라능단을 의복으로 입을 수 있는 계층이었기 때문이다. 사라능단은 중국 산 물품이였다. 따라서 재상의 품위유지에 필요한 의복을 갖출 수 있도록 사라능단 수입을 허가한 것인데, 그 분량을 수출포(布) 기준 5필에 한정하였다.<sup>32</sup> 즉 재상들의 사무역은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품위유지에 필요한 의상을 구입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사행단을 총지휘하는 정사·부사는 출국시에 각각 포 15필 · 차(茶) · 인삼(蔘)을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sup>33</sup> 그나마도 세종 12년(1430)에 이르면 포를 10필로 더욱 줄였다.<sup>34</sup> 이것은 『경국대전』으로 체계화되어 사신은 포 10필, 인삼 10근을 사행 파견시에 가져갈 수 있었다.<sup>35</sup> 그런데 이 물량을 조선이 사신에게 허용한 무역 가능 수량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는 북경까지 먼 여정을 떠나는 사신들의 노잣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행 여행 경비를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 수량 대부분을 무역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조선 조정에서 이 규정을 정한 의도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자면 ‘무역량’이라기보다 사신이 출국 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상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초 호송군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역의 규모를 지정하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명하여 조정 사신의 護送軍에게 牛馬를 제외한 10升 이하의 苧布·麻布와 人蔘·皮物의 무역을 행하도록 許可하니, 서북면 도순문사의 보고를 따른 것이었다.<sup>36</sup>

32 『成宗實錄』 권82, 8년 7월 21일 병술.

33 『太宗實錄』 권33, 17년 5월 13일 무술.

34 『世宗實錄』 권48, 12년 4월 23일 임신.

35 『經國大典』 권5, 刑典, 禁制.

36 『太宗實錄』 권25, 13년 3월 23일 임신.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태종 13년(1413) 조선 조정은 호송군에게 10승(升) 이하의 저포·마포와 인삼·가죽의 무역을 허가하였다. 4년 뒤인 태종 17년(1417)에는 ‘전의 숫자대로 포 10필, 인삼 5근(斤)으로 하되 입모(笠帽)도 금하지 말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아 포 10필, 인삼 5근이라는 수출포의 구체적인 수량 확인이 가능하며, 입모도 무역품으로 가져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송군에게 용인된 포 10필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축소되지 않았다.<sup>37</sup>

그러던 것이 성종대 사행단 출국 시 물품 소지 규정이 『경국대전』 체제로 확립되면서, 호송군의 무역 규정 역시 사신과 같은 체계 안에서 정립된다.

使는 布 10匹, 書狀官 이하의 正官은 각 5필, 打角夫는 각 3필을, 인삼은 使 이하 각 10斤이다. 요동에 가는 자는 포 각 10필, 인삼은 각 3근이며 迎逢軍도 같다.<sup>38</sup>

위의 『경국대전』에서 2품직에 해당하는 고위관료 정사는 포 10필, 인삼 10근을 가져갈 수 있었고, 호송군은 포 10필, 인삼 3근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sup>39</sup> 정사와 호송군 간 현저한 계급과 신분 차를 감안했을 때, 또한 15세기 초반 조선의 공무역 수량과 비교해도 호송군의 물품소지 규모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종 5년(1423, 永樂 21) 사은사의 행차에 약재를 공무역해올 값으로 책정된 가포(價布)는 흑마포 5필이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조선 조정이 대명무역을 엄금하는 국가 기조 속에서도 대명외교의 측면(護送)과 국경 중심의 국방[防戍]을 맡고 있는 평안도민의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太宗實錄』 권33, 17년 윤5월 11일 병인; 『世宗實錄』 권22, 5년 11월 9일 병술.

38 『經國大典』 卷5, 刑典, 禁制.

39 『經國大典』 卷5, 刑典, 禁制.

40 『世宗實錄』 권20, 5년 4월 6일 병신.

그러나 호송군의 생계 보완책으로 마련된 국제무역 허용은 당시 평안도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호송군으로 차정되는 평안도 군민들 중 일부는 궁핍하여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sup>41</sup> 국초 평안도에는 포를 재배하는 가정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호송군이 포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포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요동에서 판매해야 할 텐데, 15세기에는 억말책으로 국내 상업이 강력히 통제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호송군은 국제무역이 허용되어 있어도 합법적 수출품으로 허가된 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포를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고급 물품인 인삼·가죽·입모 등의 물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호송군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사행무역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호송군이 요동에서 사무역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었다.

첫째, 호송군은 서울과 개성의 부상대고와 연계하여 무역을 행하였다.

右司諫 朴冠 등이 소를 올려 말하기를, …… 신들이 또 듣자오니, 平安道 護送軍에게는 한 사람마다 私布 10필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나, 그 지방의 習俗이 베를 짜는데 능하지 못하므로, 서울의 부상대고들이 麻布와 禁物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사신보다 먼저 그곳에 내려가서, 혹은 호송군과 더불어 나누어 쓸 것을 약속하고는 많이 위탁하여 보내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사칭하고 대신 들어가서 모리를 마음껏 행하니, 이도 또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사신과 그의 僚佐와 호송군에게 준다고 상정한 布貨는 일절 禁斷하고, 書狀官에게 항상 監察하는 책임을 주어서 파견해야 합니다. […] <sup>42</sup>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호송군과 부상대고는 협업하여 무역하였다. 다만 그 방식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부상대고가 호송군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직접

41 『成宗實錄』 권270, 23년 10월 21일 무오.

42 『世宗實錄』 권22, 5년 11월 9일 병술.

요동에 들어가서 무역을 행하는 경우였다. 상인들은 호송군역을 대체해줄 평안도민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호송군 입장에서는 고된 요동 왕래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할 수 있고, 상인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호송군에 대한 생계유지 보완책이 애초의 의도와 다르게 상인들의 무역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일부 신료들은 호송군에게 허가된 무역의 권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sup>43</sup> 그러나 정부는 호송군에게 허가한 요동무역을 폐기하지 않았다. 다만 호송군을 사칭하여 사행에 가는 자가 없도록 강력한 금제법안을 세웠다. 범법자들을 강력 처벌하게 하였다.<sup>44</sup>

또 다른 방식은 호송군이 부상대고에게서 무역 자금을 지원받아 무역을 행한 뒤,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다. 국초에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나타나다가 15세기 말 이후에는 주로 부상대고가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 수행은 호송군이 직접 행하는 방법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sup>45</sup> 수출품 조달과 중국산 수입품의 국내 판매 등 원활한 시장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송군이 부상대고와 연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정정도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무역을 행할 수 있으니 무역행위에 부담이 적어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A-1) 兵曹에 전교하기를, “遼東護送軍이 義州에 이르러 연고가 있는 자는 모두 의주 사람으로 충당하여 보내며, 의주에서는 또한 물건 매매에 이익을 탐하여 혹 모람되게 보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주 사람의 내왕이 가장 잦다. 이제부터는 의주·麟山·龍川·鐵山·宣川·郭山·龜城 사람은 江邊 여러 고을의 예에 따라서 호송군에 충당하지 말고 다른 연고가 있는 자에게도 충

43 『太宗實錄』 권11, 6년 1월 28일 기미; 『世宗實錄』 권22, 5년 11월 9일 병술.

44 『世宗實錄』 권22, 5년 11월 22일 기해.

45 『成宗實錄』 권270, 23년 10월 21일 무오;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당하여 보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sup>46</sup>

A-2) 의정부가 서계하기를, [...] 또 의주의 官奴와 軍民 등은 서울과 開城府 富商들의 포목 등물을 많이 받고 명나라 서울에 가는 행차가 있을 때마다 정한 수효 외에 牽連되어 남몰래 요동으로 가서 중국 물품을 바꾸는 자가 서로 잇따릅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謀利하는 무리가 분분하게 왕래하며 欺詐·爭鬪하여 중국에서 일을 일으키는 자도 반드시 있을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sup>47</sup>

A-1) 기사와 같이, 실상 평안도민 중 의주인이 호송군으로 가장 자주 파견되고 있었다. 의주에서 호송군을 차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용이하였고, 일부 의주인은 무역의 이익을 탐하여 호송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서로 조응하면서 의주인이 호송군으로 가장 자주 선택된 것이다. 요동무역의 경험이 축적되어 이에 익숙해지는 자들이 배출되면서 의주인 중 일부는 호송군에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부상대고에게 포를 받아 사행단에 암암리에 끼어 요동에서 무역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A-2)와 같이 의주의 군민은 호송군으로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사행무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의주인들이 호송군으로 가장 자주 동원되었기 때문에 자기 순번이 돌아오지 않고 호송군에 임의적으로 참여해도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상대고가 직접 요동무역을 수행하지 않고 자금만 투자하며, 의주인들이 사행무역을 수행한 이유도 이들이 호송군에 포함되어야 서장관의 감찰과 의혹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호송군이 요동을 자주 왕래하면서 요동무역에 능숙해졌던 것도 주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의주인은 요동에서 사무역을 수행하는 데에

46 『世祖實錄』 권38, 12년 1월 21일 갑자.

47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냈던 것이다.

관노들은 호송군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기사를 보면 일부 관노들이 호송군에 몰래 참여하여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官)의 통제를 받는 관노들이 호송군에 몰래 참여하는 것은 의주 관리의 비호 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종대에 의주 목사가 호송군 자격이 없는 반인(倅人)을 호송군으로 보냈다가 처벌받은 바가 있었다.<sup>48</sup> 의주 목사가 호송군을 점검하므로 권신(權臣)의 반인이나 관노(官奴) 등을 호송군에 참여시켜 사적 이익을 도모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의정부가 의주 군민과 관노의 호송군 참여가 금단되지 않으면 의주 관리와 단련사를 모두 죄 주겠다는 데에서도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호송군의 무역이 범람해지면서 16세기에는 사신을 경호해야 하는 호송군들이 자신의 무역품을 말에 과도하게 적재하는 바람에 정작 말에 군기를 신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렀다. 이는 신료들의 우려에도 쉽게 개선되지 못하였다.<sup>50</sup>

둘째, 호송군은 부상대고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역품을 마련하였다. 평안도 지역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물품을 택하였는데, 그것은 말이었다. 말 무역은 조선 호송군과 요동 지역 군민들, 또는 명 사신을 호송하는 명 호송군과 의주 지역 군민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sup>51</sup> 당시 조선과 명의 일반 백성들이 양국을 오갈 수 있는 길은 사행 호송군이 유일했으므로 이들 간에 말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B-1) 戶曹에서 아뢰기를, “[...] 신들이 상세히 살펴보건대 義州牧使는 赴京하는 使臣이 왕래할 때를 당하여 迎護送軍이 모두 온 뒤에 말의 털빛을 書狀

48 『世宗實錄』 권3, 1년 1월 2일 정미.

49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50 『中宗實錄』 권12, 5년 9월 26일 기묘; 『中宗實錄』 권36, 14년 8월 29일 경인.

51 『成宗實錄』 권276, 24년 4월 13일 정미.

에 적고 烙印하여 團練使에게 넘겨주고, 단련사는 거느리고 요동에 가서 點考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越江하여 되돌아온 뒤에 의주 목사가 그 서장으로 날날이 점고하되 죽은 말은 가죽을 맞추어 점고하고, 중국 군사가 義順館에 온 뒤에도 의주 목사를 시켜 엄하게 금지하여 매매하지 못하게 하되 禁頒을 범한 자는 勿揀赦前하고 『大典』에 따라서 杖 1백, 徒 3년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한 자는 絞刑에 처하고, 매매한 잡물은 관가에서 몰수할 것이며, 관리와 단련사·旅帥·隊正과 알고도 고하지 않은 切隣·里正도 모두 勿揀赦前하고 制書有違律로 論斷할 것입니다.<sup>52</sup>

B-2) 평안도 관찰사 李則에게 下書하기를, “本道の 의주 백성과 여러 고을에서 호송군으로 요동에 가는 자가 이익을 얻으려 힘쓰고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아 다투어 말을 紗羅綾緞과 바꾸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지 않다. [...]”<sup>53</sup>

위의 B-1) 기사는 조선의 호송군이 요동 지역에 가서 말을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호조에서 방책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말은 호송군이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품 목록도 아닐 뿐더러 말은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경국대전』에 ‘몰래 마소를 상국 및 이웃나라에 파는 자는 교형(絞刑)한다’는<sup>54</sup> 법금이 세워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호송군 신분을 이용하여 국가에서 사형으로 처벌할 정도로 엄금하는 말 무역을 감행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을 면밀하게 서술한 것이다. B-2)는 조정의 논의를 통해 국왕이 평안도 관찰사에게 하서하는 내용이다. 이 시기 명으로 가던 호송군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호송군들의 말 무역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의 암말 두 필을 팔아 요동

52 『成宗實錄』 권278, 24년 윤5월 17일 경술.

53 『成宗實錄』 권278, 24년 윤5월 17일 경술.

54 『經國大典』 卷5, 刑典, 禁制.

의 수말 한 필을 사거나, 또는 말을 수출하고 사라능단을 수입하고 있었다.<sup>55</sup> 조선의 말은 대부분 과하(果下)의 둔한 말이었으므로 조선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요동의 호마(胡馬)를 수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요동 지역에서는 요동의 말이 이미 준마(駿馬)이므로 조선의 암말을 교배해도 좋은 말을 얻을 수 있어서, 말의 생산량 확대 측면에서 조선의 암말을 수입하였다. 결국 수입품은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부상대고와 협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요동무역을 행하는 조선 호송군의 수출품은 모두 조선의 말이었다. 말은 평안도민들이 보다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요동 지역에서 수요가 있었으므로 이들의 주요 수출품이 된 것이다. 이때문에 기마군이었던 호송군이 호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끌고 갔던 말을 귀국 시에 요동에서 몰래 팔고는, 도난당했다고 핑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sup>56</sup> 16세기로 이행할수록 호송군들은 조선의 말을 팔아서 준마를 구해오는 대신 사라능단을 주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에서 긴요한 말들이 국외로 반출되고 사치품들이 수입되자 이를 우려한 조선 정부는 말 수출을 막고자 호송군의 말에 모두 낙인(烙印)하여 조선의 말임을 영구히 표시하도록 하였다.<sup>57</sup>

조선 전기 요동에서 사무역(요동 사행무역)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법적으로 고시된 자들은 호송군이 유일하였다. 호송군은 중앙 권력에 접근하지 않아도 요동에서 국제무역의 가능성이 부여된 유일한 조선 백성이었다. 호송군으로 가장 많이 선발되었던 의주인들은 호송군에 배정되지 않아도 점차

55 요동의 말은 몸집이 크고 건강하여 駿馬로 불리며, 몸집이 작은 조선의 말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조선 조정 내에서는 호송군의 요동 駿馬 수입이 조선에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호송군의 말 무역을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文宗實錄』 권8, 1년 7월 29일 을축; 『成宗實錄』 권278, 24년 윤5월 17일 경술).

56 『中宗實錄』 권6, 3년 8월 16일 신사.

57 조선은 호송군의 말 무역을 방지하고자 조선 말에 낙인하여 말을 팔 수 없게 하였는데, 16세기 중반에 들어서자 호송군의 짐이 무거워 사행길을 한번 다녀온 말들이 죽어 재산 손실이 발생하자, 조선 조정은 호송군의 말 중 죽어가는 말은 서장관에게 고하여 진위를 살핀 뒤 팔아도 무방하도록 조치하였다(『中宗實錄』 권101, 38년 12월 27일 정유).

사행단에 몰래 끼어 요동으로 갔다. 부상대고와 협업하여 무역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부상대고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말을 팔아 무역을 행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정부에서 수출을 금지한 품목인 말을 수출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조선 정부가 공인한 요동 사행무역 구조 안에서 행해졌다. 이들은 요동무역을 통해 조선 백성들 중 누구보다 국제무역에 관대하고 익숙해져 갔다.

### Ⅲ. 호송군, 이주와 비사행무역(불법무역)을 견인하다

#### 1. 요동으로 평안도민 이주의 매개

호송군은 한중외교를 담당하는 사행의 안전을 위해 차정되었지만, 외국을 왕래하는 임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첫째, 의주와 요동 간의 왕래는 지난한 여정이었다. 육로 교통수단이라고는 말을 타고 가거나, 수레를 끄는 것, 그리고 도보에 의존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당시, 사행 여정은 기한서우(祁寒署雨)에 풍찬노숙(風餐露宿)하는지라 이미 그 자체가 고되었다.<sup>58</sup> 중종 29년(1534)에는 사행단이 여정 중에 갑자기 악천후를 만나 인마(人馬)가 모두 뒤집어지는 사고를 겪었으며,<sup>59</sup> 명종 3년(1548)에도 삼차하(三叉河)에서 수레가 뒤집히는 바람에 황제에 바칠 표문이 젖어 문서를 다시 써서 보낸 일도 있었다.<sup>60</sup> 특히 겨울에 요동 지역을 왕래하려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했다. 예종 1년(1469) 동팔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호송군이 굶주린 가운데 눈 위에서 밤을 지새면서 동상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

58 『成宗實錄』 권14, 3년 1월 15일 임자.

59 『陽谷集』卷4, 詩, 十八日發永平 風雨大作 咫尺不辨 人馬皆仆 西來行李之苦 此日最甚.

60 『明宗實錄』 권7, 3년 3월 28일 계묘.

다. 단련사가 일처리에 어두워 호송군과 말들은 양식 지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여러 날 굶주리기도 하였다.<sup>61</sup> 성종 6년(1475)에도 호송군 중에 동상을 입거나 죽은 자가 적지 않았으며,<sup>62</sup> 같은 해 말 47필이 동팔참에서 죽었다.<sup>63</sup> 요동의 겨울은 털옷을 입어도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으며,<sup>64</sup> 여름의 장마와 겨울의 풍설로 사행 여정이 지체될 때에는 사람과 말이 굶주리거나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sup>65</sup>

따라서 호송군은 여진의 침입을 받아 전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행길을 다녀오는 자체만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요동 지역의 역 청사는 낙후하였고, 사행단을 충지휘하는 2품 사신조차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곳에서 숙박하기도 하였으니,<sup>66</sup> 호송군의 처지는 더 말할 것이 못 되었다. 더욱이 평안도민들은 호송군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 얼마 안 있어 평안도를 방어하는 군인으로 또다시 차출되어야 했다.<sup>67</sup>

둘째, 사행의 짐бар리가 증가하면서 호송군역이 더 고단해졌다. 호송군은 기마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에게는 원래 짐을 싣는 직무가 없었다. 사행단의 짐바리 운반은 이를 담당하는 기재지(騎載持) 역(役)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행단의 짐이 증가하여 기재지 역만으로 이 짐들을 수송할 수 없자, 세종대에 이미 호송군에게 짐바리 운반을 전가시키고 있었다.<sup>68</sup>

국초부터 사행단의 짐이 문제시된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우선 한양에서 의

61 『睿宗實錄』 권3, 1년 2월 25일 경술; 『睿宗實錄』 권4, 1년 윤2월 10일 을축; 『睿宗實錄』 권5권, 1년 5월 14일 정유.

62 『成宗實錄』 권53, 6년 3월 20일 기사.

63 『成宗實錄』 권54, 6년 4월 11일 기축.

64 『中宗實錄』 권69, 25년 10월 9일 을축.

65 『荷谷集』 朝天記 下, 萬曆 2年 甲戌 10月 5日.

66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 2年 甲戌 7月 13日; 7月 17日.

67 『成宗實錄』 권6, 1년 6월 13일 경신.

68 『世宗實錄』 권97, 24년 7월 13일 신미.

주에 이르기까지 사행단이 지나가는 각 도의 감사·수령이 각각 인정이라 하여 여러 물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의정부와 예조에서는 호송군이 군장을 버리고 짐을 운반하는 폐단을 개선하고자 각 도의 감사·수령이 사사로이 증유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평안도 감사가 쌀과 어육을 적당하게 장만하여 정사·부사에게는 각각 쌀 40두, 건어 1백 미, 포 20속을 주고, 도자(刀子) 10부를 지급하고, 기재지 말 각 3필을 주며, 정사·부사·서장관에게 기마·복마 각 1필, 종사관·종인에게 기마 각 1필과 2인을 아울러서 복마 1필을 주도록 하였다.<sup>69</sup> 그러나 수령의 증유는 16세기를 지나는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다.<sup>70</sup>

그리고 국초에는 명에 바치는 별헌(別獻)이 많았던 점도 문제였다. 별헌은 보통 조선 출신으로 명에서 활동하는 환관이나 영락제의 비(妃)가 된 한씨 등에게 주로 바쳐졌다. 이들은 대국 명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조선 조정에 각종 물품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별헌 요구는 거의 횡포라 이를 정도였으나, 조선 출신 환관들이 조선과 명의 외교적 난제에 개입하여 해결을 도와주기도 하였으므로 조선 조정은 이들의 과도한 요구를 묵과할 수밖에 없었다.<sup>71</sup> 성종대 대사헌 박건(朴健)은 황제에게 바치는 공물보다 조선인 환관에게 보내는 별헌이 더 많으며 별헌의 과다에 대해 비판하였다.<sup>72</sup>

짐바리가 증가한 데에는 국가에서 행하는 공무역도 한몫하였다. 공무역 규모에 비해 이를 운반하는 데에 책정된 말이 적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호송군마도 함께 짐을 실어 나르느라 피곤하여 죽는 경우도 있었다.<sup>73</sup> 여진이나 도적의

69 『文宗實錄』 권5, 즉위년 12월 20일 경인; 『文宗實錄』 권7, 1년 4월 26일 갑오; 『文宗實錄』 권7, 1년 4월 29일 정유.

70 『中宗實錄』 권11, 5년 6월 16일 경자; 『中宗實錄』 권54, 20년 5월 21일 기묘; 『中宗實錄』 권56, 21년 3월 22일 을사; 『重峯集』 卷11, 朝天日記, 萬曆 2年 甲戌 5月 11日~6月 15日.

71 조영록,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 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국사관논총』 14.

72 『成宗實錄』 권198, 17년 12월 11일 임오.

73 『世祖實錄』 권36, 11년 8월 15일 경인.

습격에 대비하여 무비를 갖추는 호송군의 본연의 임무가 짐바리 증가로 인해 와 해되고 있었다. 신료들은 공무역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무역량은 감소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여진의 습격을 받았을 때 전투에 임해야 할 호송군이 기재지처럼 수송임무를 맡는 일이 점차 관행화되고 있었다.<sup>74</sup>

특히 사신이나 통사 등 사행단이 수행하는 사무역 역시 점차 증가하면서 호송군들은 공무역품 외에 사무역품까지 운반하고 있었다.<sup>75</sup> 이러한 상황은 16세기 사무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사신으로 선정된 자들은 호송군을 부족하게 여겨 더 거느리고 갈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들에게 결국 사무역품을 실어 나르게 하였던 것이다.<sup>76</sup> 여진족의 사행 습격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접수되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호송군을 임시로 추가하였는데, 이후에 변란 가능성이 없어져도 임시 증강된 호송군을 다시 예전처럼 줄이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호송군에게 짐을 수송시키기 위함이었다.<sup>77</sup>

15세기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비교적 적었지만, 사행 파견이 잦아서 호송군을 자주 차출해야 했고, 별헌이 많았다. 16세기에는 사행 파견 횟수가 크게 줄고 별헌도 없어졌지만, 공무역과 사무역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호송군은 기재지역까지 부가적으로 수행하느라 임무가 더욱 고되게 되었다. 한 번의 사행길을 다녀오면 가져갔던 말이 병들거나 죽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sup>78</sup> 결국 시기마다 그 사유는 달랐지만, 호송군역의

74 『成宗實錄』 권14, 3년 1월 15일 임자;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75 『睿宗實錄』 권4, 1년 윤2월 24일 기묘; 『成宗實錄』 권54, 6년 4월 18일 병신; 『成宗實錄』 권70, 7년 8월 24일 갑오; 『中宗實錄』 권78, 29년 11월 5일 정묘.  
 76 『燕山君日記』 권28, 3년 10월 9일 정축.  
 77 『中宗實錄』 권38, 15년 3월 6일 갑오; 『中宗實錄』 권82, 31년 10월 30일 임자.  
 78 『世宗實錄』 권27, 7년 2월 1일 신축; 『世祖實錄』 권21, 8년 1월 29일 계해; 『成宗實錄』 권6, 1년 6월 13일 경신; 『成宗實錄』 권14, 3년 1월 15일 임자; 『成宗實錄』 권54, 6년 4월 18일 병신; 『成宗實錄』 권166, 15년 5월 29일 을묘; 『中宗實錄』 권54, 20년 5월 21일 기묘; 『中宗實錄』 권56, 21년 3월 22일 을사; 『中宗實錄』 권60, 23년 2월 8일 경술; 『中宗實錄』 권78, 29년 11월 5일 정묘; 『中宗實錄』

고됨은 계속되었다. 이는 호송에 대한 책임이 가장 컸던 평안도민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게다가 세종대 이래 압록강 국경 중심의 국방체계가 강화되면서 평안도민은 호송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된 국경 방어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송군으로 징발되는 평안도 군사의 피로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커지고 있었다.<sup>79</sup>

C-1) 同知中樞院事 梁誠之가 上書하였다. “[...]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에 頭畜이 죽고 재상의 말 뼈가 길에 잇달아 버려지고, 혹은 중이 아버지와 형을 대신하여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산하며, 요동으로 도망하여 들어 가는데 대개 그 숫자가 몇 천만 명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臣이 『遼東志』를 보건대, 東寧衛에 소속된 高麗人이 洪武 연간에 3만여 명이 되었으며, 永樂 세대에 이르러서 漫散軍이 또한 4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동 戶口에서 고려 사람이 10분의 3이 살고 있어 서쪽 지방 遼陽에서 동쪽 지방 開州에 이르기까지 남쪽 지방 海州·蓋州의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聚落이 서로 연속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국가에서 汲汲히 軫慮할 것입니다.”<sup>80</sup>

C-2) 大司憲 梁誠之가 上疏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 평안도의 백성들은 다만 防戍에만 시달릴 뿐 아니라 또한 중국에 入朝하는 사신의 영접과 전송을 하는 데에도 매우 시달리게 되어, 태반이 東八站과 海州·蓋州 등 여러 州에 流入하게 되므로, 한편으로는 土兵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저들이 우리의 虛實을 알게 되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sup>81</sup>

錄』 권91, 34년 6월 8일 갑진.

79 『世宗實錄』 권84, 21년 2월 10일 기미.

80 『世祖實錄』 권34, 10년 8월 1일 임오.

81 『世祖實錄』 권40, 12년 11월 2일 경오.

세조대 양성지는 평안도민이 국경을 넘어 요동으로 이탈해가는 상황을 우려하며 위와 같이 상서하고 있다. 호송군 중 일부가 요동에 이르러 도망하였다가 발각되어 참형에 처해지는 일이 세종대에도 있었지만,<sup>82</sup> 세조대에 이르면 C-1)과 C-2) 사례와 같이 호송군 이탈은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게 이룬 것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호송군의 이탈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보완해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무엇보다 사행을 적게 파견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므로 가급적 겸행을 시행하지는 의견이 줄을 잇게 된다.<sup>83</sup> 그리고 평안도민의 인구수를 증강시키기 위해 사민정책을 실시하였으며,<sup>84</sup> 성종대에는 평안도 공물의 상당 부분을 감해주었다.<sup>85</sup> 심지어 평안도민만 수행하던 호송군역도 분담시켜 주었다. 정기사절단인 정조사행만큼은 황해도민이 수행하게 하였던 것이다.<sup>86</sup> 조선 조정은 평안도의 인민이 호송군으로 인해 조잔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책제까지 내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하였다.<sup>87</sup> 그럼에도 백성들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평안도 백성들 중 일부는 요동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D-1) 執義 玄碩圭가 아뢰기를, “평안도는 경계가 중국과 연하여 있어 赴京하는 사신의 길이 반드시 여기를 거치므로, 迎送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

82 『世宗實錄』 권120, 30년 4월 25일 경진; 『世宗實錄』 권120, 30년 5월 30일 갑인.

83 『世祖實錄』 권40, 12년 11월 2일 경오; 『成宗實錄』 권56, 6년 6월 2일 기묘; 『中宗實錄』 권28, 12년 7월 12일 병술; 『中宗實錄』 권28, 12년 7월 14일 무자; 『中宗實錄』 권63, 23년 9월 28일 정유; 『中宗實錄』 권91, 34년 윤7월 4일 기해.

84 『世宗實錄』 권95, 24년 2월 6일 정유; 『燕山君日記』 권35, 5년 9월 19일 병자; 『燕山君日記』 권36, 6년 1월 26일 신사.

85 『成宗實錄』 권166, 15년 5월 29일 을묘; 『成宗實錄』 권229, 20년 6월 29일 병진.

86 『成宗實錄』 권51, 6년 1월 17일 정묘; 『成宗實錄』 권52, 6년 2월 2일 신사; 『成宗實錄』 권52, 6년 2월 8일 정해; 『成宗實錄』 권166, 15년 5월 29일 을묘; 『成宗實錄』 권174, 16년 1월 10일 계사.

87 『成宗實錄』 권131, 12년 7월 29일 임인; 『成宗實錄』 권212, 19년 윤1월 28일 계사.

다. [...] 聖節使·正朝使·謝恩使가 해마다 가니, 짐 신는 말을 사는 데 재산을 털어 없애어 백성이 지탱할 수가 없어서, 遼東 지방에 몰래 投歸하는 자 또한 많이 있어서 백성이 날로 줄어들는데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sup>88</sup>

D-2) 의정부가 書啓하기를, “신 등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도 연변 各鎭의 겨울·여름 防戍가 진실로 백성의 힘을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1년에 세 번씩 명나라 서울로 가는 행차가 있어 보내고 맞이하는 말 바리에 수고로움이 막심한데, 일행 중 通事 등의 여러 官公 무역품, 포목 외에 사사roi 가져가는 물화가 많으면 7~8천여 필에 이르며, 금·은 등속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고 금법에 실려 있는 것이지만 역시 몰래 가지고 가는 것이 많으며, 기타 함부로 가져가는 잡물은 이루 세일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모두 護送軍에게 책임지워 실어가게 합니다. 이래서 백성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고 苦役을 면하려고 요동 동팔참으로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잇달아 있습니다.<sup>89</sup>

위의 기사를 보면, 평안도민 중 요동으로 몰래 이탈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안도의 군인이 부방과 호송으로 피곤하여 몰래 요동으로 도주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15세기 말 성종대 이후 기사에서 빈번하게 확인된다.<sup>90</sup> 상술한 바와 같이, 성종대 신료들이 호송군 폐해를 보완할 각종 정책을 만들고, 책제까지 내어 그 해결 방법론을 고민하는 배경에는 평안도민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당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88 『成宗實錄』 권39, 5년 2월 7일 임술.

89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90 『成宗實錄』 권55, 6년 5월 15일 계해; 『成宗實錄』 권238, 21년 3월 4일 병진; 『成宗實錄』 권276, 24년 4월 13일 정미; 『燕山君日記』 권37, 6년 3월 22일 병자.

그런데 평안도민들이 이렇게 ‘경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단순히 평안도가 요동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만으로 간주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sup>91</sup> 요동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조선보다 윤택할 것이라는 기대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요동으로의 도주는 쉽게 감행할 수 없는 ‘모험’이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인이 명 지역으로 이탈해 들어가는 것은 불법적인 도주에 가까운 일이므로 심사숙고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평안도민의 요동 이탈을 가능케 하는 정보원이 존재해야 했다.

당시 평안도의 일반 백성들이 압록강 너머 요동의 북방 소식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호송군과 관련이 깊다. 본인이 사행단의 호송군으로 직접 참여해서 요동을 가본 경험이 있거나, 호송군으로 다녀온 자들에게서 요동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었다. 호송군은 당시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조선의 일반 백성이 외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것이다. 호송군역에 참여했던 평안도의 장정들은 요동 지역을 오가며 지리·경제 등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검토를 수반했을 것이며, 귀국에서 요동의 사정을 지역민들과 공유했을 것이다.

실제 이들이 외국인 요동 지역에 대한 정보 파악은 신속했다. 평안도민이 요동으로 이탈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조정의 우려가 성종대에 특히 증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때는 명이 국경 완충지대였던 동팔참에 보를 축조해나갔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국초 이래 요동팔참은 명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상 무인지대에 가까웠으나, 15세기 중후반 명은 점차적으로 이 지역에 보(堡)를 축조하고 보마다 군사를 배치하였다. 명이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요동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자, 요동팔참 지역에 중국인 거주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16세기 초반에 이르면 요동 지역은 중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조선민의 입거

91 ‘경계인’은 두 중심의 어느 쪽에서도 변경인 장소, 즉 경계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느 쪽의 중심에서도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양자를 매개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村井章介, 이영 譯, 2003, 『중세왜인의 세계』, 도서출판 소화, 51쪽).

(入居)가 가속화되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혼거하는 이른바 ‘경계’ 지역이 되고 있었다. 조선 사행단은 사행 여정 가운데 조선을 이탈하여 요동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 조선인들은 중국이 조선보다 신역(身役)이 가볍다는 이유로 도주를 선택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 신료들은 ‘동팔참 사람들이 평안도인과 다름없다’며 평안도 황해 일대 백성들이 요동으로 이탈해가는 것을 염려하였다.<sup>92</sup>

15세기 말 이래 요동 동팔참 지역은 조선에서 월경한 평안도민과 새로 이주해온 중국인이 한데 뒤섞여 거주하는 지역이 되어갔다. 요동 지역으로 이탈해가는 평안도민이 많아진 배경에는 당시 요동팔참 지역의 형세 변화도 한몫하였는데, 평안도민이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요동의 정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호송군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 2. 16세기 불법무역 성장의 매개

의주는 한반도 서북의 중요한 방위 거점지역이어서 호송군 선발을 제도적으로 금지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송군을 차출하기에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의주에서 호송군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이는 다음의 기사로도 확인된다.

E-1) 兵曹에 전교하기를, “요동 호송군이 의주에 이르러 연고가 있는 자는 모두 의주 사람으로 충당하여 보내며, 의주에서는 또한 물건 매매에 이익을 탐하여 혹 모람되게 보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의주 사람의 내왕이 가장 잦다. 이제부터는 의주·麟山·龍川·鐵山·宣川·郭山·龜城 사람은 江邊 여러

92 『成宗實錄』 권187, 17년 1월 3일 경술; 『成宗實錄』 권219, 19년 8월 24일 을묘;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中宗實錄』 권7, 3년 10월 17일 신사; 『中宗實錄』 권12, 5년 10월 12일 을미; 『中宗實錄』 권21, 9년 10월 13일 임인.

고을의 예에 따라서 호송군에 충당하지 말고 다른 연고가 있는 자에게도 충당하여 보내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sup>93</sup>

E-2)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京師로 가는 一路에 평안·황해 각 고을의 수령이 人情雜物을 다투어 뇌물하여 짐바리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軍馬는 뜻밖의 일을 대비하는 것인데, 경사에 가는 卜物을 실어 나르는 것이 만약 부족하면 의주의 人馬를 징발하여 폐해를 끼치는 일이 적지 않으니 일체 금단하고, 또 경사에 가는 사신에게 신칙하여 인마 抄發하는 것을 검속하게 하소서” 하였다.<sup>94</sup>

E-3) 謝恩使 尹殷輔가 와서 아뢰기를, “京師로 들어가는 諸路에 東八站만 賊變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되풀이 생각해보도 사세가 매우 난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아뢰입니다. 또 풀이 자랄 시기이므로 적변이 더욱 두려우니, 義州의 土兵 50명을 호송군의 숫자에 넣어 데리고 가게 해주소서. 의주 사람은 늘 내왕하였으므로 형세를 잘 알 것이고 따라서 事變에 대비할 줄도 알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sup>95</sup>

의주는 사행단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르며 사행 일정과 공물·짐·일행 등을 최종 점검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E-1)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이 부득이 의주 거주민에게 전가되었다. 이 때문에 의주는 호송군 임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지만, 한편으로는 국경 너머로 오고 가는 가운데 요동 지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 요동 무역의 이익을 원하는 자들에게 기회의 지역일 수 있었다. E-2)와 E-3)

93 『世祖實錄』 권38, 12년 1월 21일 갑자.

94 『中宗實錄』 권11, 5년 6월 16일 경자.

95 『中宗實錄』 권41, 16년 1월 28일 신사.

은 16세기 중종대의 기사다. E-2)를 보면, 당시 사행단의 짐바리가 증가하면서 짐바리를 실어나르는 인마가 부족할 경우 의주의 인마를 추가 선발하여 데리고 가는 일이 자행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군마는 사행단의 왕래 과정에서 뜻밖의 일을 대비하기 위함인데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일로 의주에서 인마를 징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E-3)에서 사은사 윤은보는 ‘의주인은 늘 호송군으로 요동을 왕래하여 형세를 잘 알고 사변에 대비할 줄 안다’고 아뢰고 있다. 16세기에 신료들은 의주인이 요동의 사정을 잘 알아서 호송군으로서의 자질이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의주인들은 호송군역을 통해 요동의 여러 형세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戶曹에서 아뢰기를, “ [...] 鳳凰城과 의주는 서로 멀지 않아 몰래 매매하는 일이 없지 않으니, 常時에 금방하는 절목을 그 道の 觀察使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sup>96</sup>

위의 기사를 통해 봉황성의 거주인과 의주 백성이 몰래 왕래하며 무역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 사행단이 행하는 사행 무역을 말함이 아니라, 평상시에 의주와 봉황성의 민간인 사이에 전개되는 무역, 즉 불법무역(비사행무역)을 말함이었다. 명은 국초부터 ‘외국’과의 국제무역을 외국 국왕의 명의로 파견하는 사행단에게만 허가하였고, 이 외에 양국 민간인들 간의 독자적인 상거래는 모두 불법으로 지정하여 강력히 처벌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 사행단에 의지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민간인들끼리 무역을 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졌다.<sup>97</sup> 위의 성종 24년(1493)의 기

96 『成宗實錄』 권278, 24년 윤5월 17일 경술.

97 불법무역은 越境貿易과 海上貿易으로 구분된다. 월경무역은 평안도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지역을 오가며 무역하는, 국경 인근에서 벌어지는 陸路무역의 형태를 말하며, 해상무역은 조선에서 배를 타고 중국 해안으로 가서 무역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들 불법무역은 朝明 양국 모두에게 저축을 받았으며, 정부의 원칙과

사는 불법무역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불법무역의 형태와 양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은 16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불법무역 역시 단순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불법무역을 용이하게 한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불법무역이 전개되지 않는다. 만약 그러했다면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법무역이 대두하였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16세기 무렵 불법무역이 대두, 확대되었던 사회경제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조선과 명 모두 이 시기 유통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조선에서 사치풍조가 확대되면서 큰 수익을 담보하는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압록강과 요양 사이의 공한지대였던 요동팔참에 명이 점차 성보를 쌓고 군사도 주둔시키면서 중국인의 거주가 확대되었고, 16세기 조선인과 중국인의 왕래가 용이해졌다는 점이다.<sup>98</sup>

불법무역 발생과 관련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다룬 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경제가 발달하고 요양 지역에 중국인의 거주가 확대되었다고 해도 이것을 조선 영내의 백성이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들 간의 교역활동은 애초부터 생기기 힘들다. 불법무역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이들 ‘주체’에 대한 활동상과 그 계기를 설명해야 한다.

의주가 국경 인근 지역에 있다고 의주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경계인이 되지는 않는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왕래하는 것은 - 발각되면 사형으로 처벌되는 -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요동의 사정에 밝지 않으면 그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될 수 있었다. 압록강을 넘으면 불특정 다수의 도적에게서 스스로 안위를 지켜야 했고, 조선과 명 어느 정부 관인(官人)에게도 발각되지 않아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요동의 여러 사정에 익숙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법무역의 출현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통제에서 모두 벗어나는 일이었다(구도영, 2015, 앞의 글).

98 구도영, 2015, 앞의 글.

의주를 중심으로 한 평안도의 백성들은 사행단 호송을 통해 요동 지역을 수십여 년을 왕래하였다. 이 와중에 이들은 요동 지역의 도로와 지리, 경제 사정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여진의 습격 등에 누구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대응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1년에 약 네 번 파견되는 사행무역을 기다리지 않고, 요동을 직접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의주와 요동의 지리적 근접성, 16세기 조명 양국 간의 국경지대 및 유통경제 변화, 그리고 호송군 활동으로 이러한 변화의 정황을 빠르게 습득하고 수십여 년 요동에서 국제무역 경험의 축적이 맞물리면서, 이제 이들은 점차 국가가 운영하는 사행단에 기대지 않고, 직접 국경을 넘어 명으로 들어가 주체적으로 무역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의주인은 호송군역에 가장 많이 차출되는 부당한 처우를 겪었지만, 그중 누군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행무역을 적극적으로 행하였고, 요동의 지리정보에 밝아지면서 불법무역의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다. 심지어 의주의 관노들도 몰래 호송군 행렬에 참여하였고,<sup>99</sup> 16세기에 이르면 불법무역에 적극 가담하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sup>100</sup>

불법무역의 수출품은 호송군의 사행무역 수출품과 비슷하다. 평안도민이 구할 수 있는 말을 주로 파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계속되었다. 조선에서 말 수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중국인은 조선으로 월경하여 강변 인근에서 말을 훔쳐가기도 하였다.<sup>101</sup> 16세기 중반 일본 은이 대거 유입되어 은값이 저렴해지자, 부상대고가 은(銀) 등의 자본을 투자하고 의주인은 무역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호흡을 맞추어 조직적으로 불법무역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제 중국인과 무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평안도민은 1년에 네 번만 허용되는 사행무역에 얽매

99 『燕山君日記』 권36, 6년 2월 12일 병신.

100 호송군을 지휘하는 단련사는 관노를 시켜 女眞과 明의 정기 시장인 廣寧 馬市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中宗實錄』 권15, 중종 7년 1월 戊辰). 광녕 馬市는 강남 상인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매월 초 1일부터 초 5일까지 한 번의 개시와 16일부터 21일까지 또 한 번의 개시가 있었다(『遼東志』 卷3, 邊略, 馬市).

101 『荷谷集』 朝天記 上, 萬曆 2年 甲戌 6月 20日.

이지 않고, 평상시에 요동을 왕래하며 무역하였다.

16세기 월경무역의 공간은 요동이었다. 월경무역은 이 시기 양국의 유통경제 발달, 동팔참 지역을 명이 점거하면서 조명 양국민의 접촉이 용이해진 국경지대 변화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조용 발전할 수 있었는데, 호송군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추동하였다. 의주인이 월경무역을 기회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호송군으로서 요동무역을 경험하고, 외국인 명에 대한 정보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16세기 조명무역의 영역을 확장시킨 계기를 제공한 주체는 다름 아닌 사행단을 호위하기 위해 요동을 왕래했던 평안도민 중심의 호송군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요동으로 이주해간 평안도민은 조선의 의주인과 더불어 조명 간 불법무역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다. 요동으로 이주한 조선인이 여러 중국인들과 함께 세력을 만들어 조명 간 불법 해상무역을 도모하였던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가령 명종 1년 요동으로 이주한 의주인 고지종(高之宗)은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였고, 그 뒤 중국인과 함께 조선 연안에서 해적행위를 벌였다.<sup>102</sup> 경계인이었던 이들은 양국의 불법무역을 전개하는 데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요동 일대는 새롭게 이주해온 조선인과 중국인이 뒤섞여 살았으며, 압록강을 넘나들며 조명 간 불법무역을 주도한 조선인이 더해지면서 불법무역은 16세기 들어 증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주체가 요동의 왕래자 호송군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근래 ‘변경사’ 연구가 관심을 받으면서 경계인으로서의 의주인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의주라는 지정학적 공간이 주는 ‘접근성’에 관심을

---

102 『明宗實錄』 권4, 1년 12월 15일 무술.

두고 있다. 그러나 의주인이 그 어떤 정보나 뚜렷한 목적 없이 - 월경이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지는데 - 조선의 국경 밖을 나갈 수는 없다. 즉 단순히 국경 인접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경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명은 15세기 연산관 동쪽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요동 팔참 지역을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장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의주에서 요동도사가 있는 요양까지 420리 구간에서 조선 사행단을 보호할 군인을 파견해야 했는데, 이들이 호송군이다. 본 연구는 한중관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행외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왔던 실체이자, 조선 전기 요동과 조선을 오간 조선 백성 '호송군'의 의미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호송군은 조선 대명 사행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인력이었으며, 북방 성식과 사신의 품계에 따라 동원된 규모 역시 상당하였다. 호송군은 평안도민에서 선발하였는데, 한번의 사행단을 호송하기 위하여 호송군은 평균적으로 대략 2개월 남짓한 시간을 보내야 했으므로 15세기에는 호송군 인력을 거의 1년 내내 동원해야 했다. 16세기에는 사행 파견 수가 감소하여 동원 기간이 줄었지만, 짐바리 수가 증가하여 호송군에 짐바리 운반이 전가되어 이들의 곤폐는 계속되었다. 조선 조정은 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동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송군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이들에게 특별히 요동에서의 국제무역을 허가하였다. 조선 전기 요동에서 사무역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법적으로 고시된 자들은 호송군이 유일하였다. 이는 명과의 사무역을 강력히 통제 하였던 조선 조정의 대명무역정책 기조를 참고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는 조선 조정이 대명무역을 엄금하는 국가 기조 속에서도 대명외교(호송)와 북방의 국방(방어)을 맡고 있는 평안도민의 안정을 매우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동에서 중국인과 합법적으로 무역할 수 있었던 경험의 오래된 축적은 호송군이 조선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 국제무역에 익숙하게 하였을 것이다.

국경 완충지대로서 비어 있던 이 요동 지역을 가장 자주 왕래한 자들은 조선의 평안도 백성들, 호송군이었다. 그중에서 호송군 선발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의주 지역 백성은 가장 자주 호송군으로 선발되었고, 이를 통해 요동 지역을 수시로 왕래하며 요동의 지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했으며, 달적의 습격에 대한 대처 역시 누구보다 능란해졌다.

호송군이라는 임무를 통해 요동의 정보와 지리에 익숙해진 자들은 15세기 말 조선과 요동 지역의 유통경제 발달과 명의 요동팔참 장악 확대라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자 요동으로의 이주와 불법무역을 견인하는 세력이 되었다. 당시 호송의 고역을 참지 못한 평안도 군민 중 일부는 요동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또는 1년에 네 번 파견되는 사행을 기다리지 않고, 평상시에 직접 중국 민간인과 거래를 하는 불법무역을 시도하였다. 15세기 말 명이 요동팔참을 점거하고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요동 지역에 중국인 거주자가 증가하였고, 불법무역을 더욱 용이해졌다. 결국 15세기 한 해에 몇 차례씩 조선과 명을 합법적으로 오갔던 호송군의 존재가 16세기 불법무역의 출현과 성장에 매개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송군역은 그 고됨으로 평안도민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이 피폐함에서 벗어나고자 요동 이주라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고 불법무역을 선택하게 만든 동인 역시 호송군역이 제공하였다. 국경지대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도 호송군역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도 호송군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명외교를 위해 반드시 운영해야 했던 사행단 호송군 제도는 실제 운영하면서 해당지역 수행주체의 피로도를 가중시켜 사실상 지속가능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과 괴리를 발생시켰다. 더불어 결과적으로는 대명무역 역시도 호송군에 불법무역 조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발생시켰던 것이다. 호송군 중 일부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을 꿈꾸었고, 그것이 조선과 명 모두가 국초부터 절대 불가의 영역으로 지정하였던 불법무역의 금단을 해제하게 하였으며, 16세기 조선의 국제무역을 성장시킨 하나의 물꼬가 되었다. 이들은 중앙과 중앙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변경인으로서 조선의 또 다른 변화를 재생하였다.

## 참고문헌

### 1. 사료

『甲寅燕行別錄』  
『經國大典』  
『大明律』  
『大明會典』  
『大典後續錄』  
『東湘集』  
『明史』  
『明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陽谷赴京日記』  
『陽谷集』  
『禮部志稿』  
『遼東志』  
『全遼志』  
『朝鮮王朝實錄』  
『冲齋集』  
『通文館志』  
『荷谷集』  
『鶴峯逸稿』  
『檜山集』

### 2. 저서

남의현, 2008,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 출판부.  
오종록, 2014, 『조선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 국학자료원.  
王興亞, 1999, 『明代行政管理制度』, 中州古籍出版社.

### 3. 논문

- 구도영, 2013, 「조선 전기 對明 陸路使行的 형태와 실상」, 『진단학보』 117.
- 구도영, 2015, 「16세기 조선 對明 불법무역의 확대와 그 의의」, 『한국사연구』 170.
- 구도영, 2015, 「16세기 조선의 압록강 하구 島嶼에 대한 영토인식과 외교전략」, 『역사와 현실』 97.
- 구도영, 2016, 「조선 전기 對明 使行 護送軍 제도와 운영」, 『인문과학연구』 50.
- 김경록, 2012, 「朝鮮初期 軍人送還問題와 朝明間 軍事外交」, 『군사』 83.
- 김선민, 2013, 「한중관계사에서 변경사로」, 『만주연구』 15.
- 남의현, 2004, 「명 전기 요동도사와 요동팔참 점거」, 『명청사연구』 21.
- 남의현, 2009, 「중국의 명대 동북강역 연구성과와 문제점 분석」, 『인문과학연구』 22.
- 남의현, 2011, 「15세기 북방정세와 明의 邊境政策의 再檢討－명의 대몽골 정책과 조선·여진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9.
- 남의현, 2011, 「16~17세기 여진의 성장과 요동 변경지대 성격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34.
- 남의현, 2012, 「고지도를 통해서 본 15~17세기의 변경지대－압록강, 두만강 변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4.
- 남의현, 2015, 「명대 위소제도의 형성과 성격－변경지역의 東寧衛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3.
- 박성주, 2005, 「고려·조선 遣明使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인범, 2005, 「명대의 遼東都司와 東寧衛」, 『명청사연구』 23.
- 서인범, 2006, 「명대 진수요동태감의 설치와 그 실체」, 『동국사학』 42.
- 유재춘, 2001, 「15세기 명의 동팔참 지역 점거와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18.
- 유재춘, 2006, 「15세기 前後 朝鮮의 北邊 兩江地帶 인식과 영토 문제」, 『조선시대사학보』 39.
- 유재춘, 2011, 「중·근세 韓·中間 국경완충지대의 형성과 경계인식－14세기~15세기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9.
- 유재춘, 2012, 「麗末鮮初 朝明간 女眞 귀속 경쟁과 그 意義」, 『한일관계사연구』 42.
- 장희홍, 2006, 「조선시대 대명 사행의 접대와 호송군－의주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75.
- 조영록, 1990, 「鮮初의 朝鮮出身 明使考：成宗朝의 對明交涉과 明使 鄭同」, 『국사

관논총』 14.

王羽喆, 2014, 「明代遼東邊軍軍人素質研究」, 哈爾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魏清彩, 2009, 「明前期的遼東邊政及其社會效應」, 『商丘師範學院學報』 第25卷 第2期.

劉春麗, 2012, 「明代朝鮮使臣與遼東百姓交往研究」, 『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 第29卷 第1期.

劉春麗, 2012, 「明代朝鮮使臣與遼東貿易研究」, 『白城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1期.

劉春麗, 2012, 「明代朝鮮使臣與中國遼東」, 吉林大壑 博士學位論文.

張景波, 2009, 「明代遼東總兵研究」, 黑龍江大學 碩士學位論文.

## 조선 전기 요동에서 사행(使行) 호송군(護送軍)의 역할과 국제무역의 경계

구도영

본 연구는 조선 전기 조선 의주와 요동의 요양을 오간 조선 호송군에 주목하여, 호송군의 활동을 파악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조선 전기 변경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선 전기 조명외교에서 호송군이란 명(明)의 북경(北京)으로 떠나는 조선 사행단을 의주에서 요양까지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군부대를 일컫는다. 15세기 의주에서 연산관에 이르렀던 요동 지역 일대는 명의 영토가 아니라 조선과 명 사이의 국경 완충지대로 존재하였으므로 도적의 습격에서 조선 사행단을 보호할 군인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다.

호송군은 조선 대명 사행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인력이었으며, 동원된 규모 역시 상당하였다. 호송군은 평안도민에서 선발하였다. 하나의 사행마다 호송군을 50~100여 명 정도만 동원해야 했지만, 실제로 많게는 1,000여 명까지 동원하는 등 호송군 수는 북방 성식의 상황과 사신의 품계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동원 기간을 살펴보면, 하나의 사행단을 호송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대략 2개월 남짓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15세기에는 호송군 인력을 거의

일 년 내내 동원해야 했다. 시기를 가리지 않은 호송군 동원은 백성들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이는 해당지역 백성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조선 조정은 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동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송군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이들에게 요동에서의 국제무역을 허가하였다. 명과의 사무역을 강력히 통제하였던 조선 조정의 대외무역 정책을 참고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조선 전기 요동에서 사무역으로 경제적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법적으로 고시된 자들은 호송군이 유일하였다. 호송군은 중앙 권력에 접근하지 않아도 요동에서 국제무역의 가능성이 부여된 유일한 조선 백성이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 조정이 명과의 무역을 엄금하는 국가 기조 속에서도 대명외교와 국방을 맡고 있는 평안도민의 안정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동에서 중국인과 합법적으로 무역할 수 있었던 경험의 오래된 축적은 호송군이 조선의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 국제무역에 익숙하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호송군은 요동 지역을 수시로 왕래하며 요동의 지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경험했으며, 달적의 습격에 대한 대처 역시 누구보다 능숙해졌다. 호송군 임무로 요동의 정보와 지리에 익숙해진 이들은 15세기 말 조선과 요동 지역의 유통경제 발달과 명의 요동팔참 장악 확대로 거주지의 안정성이 확보되자, 요동으로의 이주와 불법무역을 추동하는 세력이 되었다. 의주인이 요동에서의 불법무역을 기회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호송군으로서 요동무역을 경험하고, 외국인 명에 대한 정보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호송군 중 일부는 그들이 가진 요동 정보를 이용하여 더 나은 삶을 꿈꾸었다. 그것이 요동으로 이주를 선택하게 하거나, 조선과 명 모두가 국초부터 절대 불가의 영역으로 지정하였던 불법무역의 금단을 허물게 하였으며, 16세기 조선의 국제무역을 성장시킨 하나의 물꼬가 되었다. 조선 전기 중앙과 중앙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변경인으로서 조선 사회의 또 다른 변화를 재생한 주체가 요동의 왕래자 호송군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조선, 명, 조선 전기, 호송군(護送軍), 요동, 무역, 불법무역, 사행

## ABSTRACT

# The Role of Soldiers Escorting Envoys and the Boundary of International Trade in the Liaodong Area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Koo Doyoung

The escort soldiers in diplomacy between the Ming Dynasty and the Joseon Dynasty were sent to protect the Joseon government envoys traveling to Beijing from Uiju to Liaoyang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These soldiers were required for securing the safety of the Joseon Dynasty envoys traveling to Ming, and the scale of an embassy was large. The soldiers were recruited from residents in Pyeongan Province. As many as from fifty to 100 soldiers had to be mobilized for each envoy. However, in actuality, more than 1,000 soldiers were mobilized, and that number differ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the northern areas. In addition, it typically took more than two months to escort the embassy to Beijing. Soldiers were mobilized regardless of the busy farming season.

The Joseon government permitted trade in the Liaoyang area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the soldiers. Considering that the Joseon government's policy toward foreign trade strongly controlled private trade with Ming, these were exceptional measures.

These soldiers were the only Joseon people authorized to engage in international trade in the Liaodong area despite their not having approached the central government.

The consistent accumulation of experience through which they could legally trade with Chinese in Liaodong led these soldiers to become more accustomed to international trade than any other Joseon people. Furthermore, the soldiers frequently visited the Liaodong area and obtained more information, such as the geography and the life environment in Liaodong, than other Koreans, which made them skilled in coping with attacks by bandits. Some soldiers who became acquainted with information and geography in the Liaodong area sought a better life by utilizing their own knowledge of the region. They chose to emigrate to Liaodong or broke the prohibition against illegal trade with the Ming Dynasty that had been enforced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period.

They opened the gate for developing Joseon's international trade in the sixteenth century. Thus it should be noted that subjects who made changes as marginal people included these soldiers who visited Liaodong.

**Keywords:** Joseon Dynasty, Ming Dynasty, the early Joseon Dynasty, escort soldier, Liaodong, trade, illegal trade, envoy

#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검토

유미림 |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II.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의 계보와 하치에몬상의 확립
- III. ‘덴포 다케시마일건’의 쟁점
- IV. 맺음말



## I. 머리말

전 근대 시기에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함으로써 발생한 조일(朝日) 양국 간의 분규는 주지하듯이 1696년의 도해금지령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른바 ‘다케시마일건’(=울릉도 쟁계)이다. 이 도해금지령은 에도막부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령한 것이다. 조선은 본래 울릉도를 포함한 낙도(落島)의 입도를 금지했으므로 따로 도해금지령을 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sup>1</sup>을 보내 주민을 쇄환(刷還)하는 정책으로 관리했다.

그런데 1830년대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도해한 일이 발각되면서 다시 한번 이 섬이 일본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국내문제로서 다뤄졌을 뿐 조선과의 외교분쟁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개척자로서의 ‘하치에몬상’이 구축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1950년대에 양국이 독도 영유권을 두고 다툰 때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이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대부분의 연구가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소개하고 당시의 마쓰시마(독도) 인식을 고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다케시마고증[竹島考證]』(1881)의 요약본인 「다케시마

---

\* 투고: 2017년 8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1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1차 사료는 물론 1세대 연구자에게서도 보이지 않던 ‘수토사’라는 용어가 최근 등장했다(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5, 『울진 대풍현과 조선시대 울릉도독도의 수토사』, 선인). 1711년 울릉도를 수토한 박석창이 「울릉도도형」에 기입한 직함은 ‘수토관절충장군삼척영장 겸 수군첨절제사 박석창’이다. ‘수토사’가 처음 보인 시기는 일제강점기(『조선중앙일보』, 1934. 2. 17)이고, 연구서에서는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처음 사용했다(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82쪽). 그러나 按撫使(安撫使), 순심경차관과 마찬가지로 사료대로 搜討官으로 칭하는 것이 옳바르다.

판도소속고[竹島版図所屬考]에 의거하여 알아보자.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기록한 문헌이 많은데 「다케시마판도소속고」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 문서가 사건을 함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다 일본 외무성의 인식을 최초로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겐로쿠 12년 다케시마일건이 정해진 후 139년이 지난 뒤 세키슈(石州) 하마다(濱田) 사람 하치에몬(八右衛門)이라는 자가 다케시마(竹島)에 도해하여 엄벌에 처해졌다. 하치에몬은 하마다 회선 운송업자 아이즈야(會津屋) 아무개의 아들이다. 에도(江戸)에 가서 하마다번의 가로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와 도시요리역(年寄役) 마쓰이 즈쇼(松井圖書) 등을 설득하여 묵인받아 어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몰래 외국과 무역하였다. 이 일이 즉시 막부 관료에게 발각 나서 엄벌에 처해졌는데, 연루된 자가 수십 명이며, 다노모와 즈쇼 등은 할복하여 막부에 사죄했다(天保八年 竹島渡海一件에 따름)

위의 기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치에몬이 다케시마 도해를 처음 청원한 시기는 1831년이고, 도해는 1833년에 했으며, 발각되어 처벌받은 시기는 1836년이다. 사건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연루된 사람과 사건의 복잡성에 비하면, 위 기술은 매우 간략한 편이다.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의 기술대로라면, 하치에몬이 어업을 명분으로 울릉도에 가서 외국과 밀무역을 했으며 그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된다. 그래서인지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밀무역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마쓰시마[松島] 도해를 명분으로 해서 다케시마에 도해한 하치에몬의 행적이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과연 하치에몬은 밀무역을 했으며,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는가? 이 글은 이런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일컫는 호칭은 매우 다양하다. 당대의 사료에는 ‘다케시마일건’,<sup>2</sup>

---

2 『通航一覽續編』.

‘마쓰다이라 보슈일건[松平防州一件]<sup>3</sup>으로, 『나카군지[那賀郡誌』(1916)와 『시마네현지[島根縣誌』(1923)·『시마네현사[島根縣史』(1930)·『하마다정사[濱田町史』(1935)는 ‘다케시마사건[竹島事件]’으로, 다무라 세이자부로[田村清三郎, 1955]는 ‘하마다번 다케시마사건’·‘다케시마 밀무역사건’으로 칭했다. 1956년에 일본 정부도 ‘다케시마 밀무역사건’<sup>4</sup>으로 칭했다. ‘다케시마일건’<sup>5</sup>으로도 칭하다가 최근에는 ‘겐로쿠 다케시마일건[元祿竹島一件]’과 구분하기 위해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sup>6</sup>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것이 점차 정착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마다번 다케시마 밀무역사건[濱田藩竹島密貿易事件]’,<sup>8</sup> ‘하마다번 하치에몬사건’<sup>9</sup> 외에 ‘하치에몽 사건’,<sup>10</sup> ‘죽도사건’, ‘죽도일건’, ‘덴포 죽도일건’ 등으로도 불린다.<sup>11</sup> 필자는 ‘덴포 다케시마일건’으로 칭하되, 문맥에

3 『天保雜記』.

4 고지마 슌페이(1986)와 나이토 세이츄(2007)는 ‘다케시마 밀무역사건’으로 칭했다.

5 모리스는 1987년 글과 2002년 저서에서 ‘다케시마일건’으로 칭했다.

6 이케우치는 2005년에는 ‘아이즈야 하치에몬일건(池内敏, 「近世から近代に至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 『日本海域歴史大系』 4, 60쪽)으로 칭했다가, 2006년 저서에서는 ‘이마즈야 하치에몬사건’, ‘하치에몬 일건’으로 칭했고(81쪽), 2007년부터 ‘덴포 다케시마일건’으로 칭했다(池内敏,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卷 1号, 131쪽).

7 朴炳涉, 2015a, 「元祿・天保竹島一件と竹島=獨島の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0号, 鳥取短期大学.

8 『독도사건』(20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정판에서 수정 중이다.

9 윤유숙, 2012,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상상」, 『동양사학연구』 제118집.

10 송휘영, 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日本文化學報』 제68집.

11 송휘영, 2014,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덴포’와 ‘죽도’를 함께 표기하는 것은 기형의 언어조합이다. 일부에서 여전히 ‘다케시마 일건’을 ‘죽도 일건’으로 ‘다케시마’를 ‘죽도’로 표기하고 있다. 일부 독도 관련 연구소와 연구자들이 ‘다케시마’를 ‘죽도’로 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케시마, 영어로는 ‘Takeshima’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독도 정책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국책기관이 이와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따라 ‘하치에몬사건’<sup>12</sup>으로도 칭한다.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sup>13</sup>

## II.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의 계보와 하치에몬상의 확립

### 1. 왜곡의 시작과 전개

막부 관계자가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처음 알게 되는 시기는 1836년이다. 이 사건의 주모자이자 당사자인 하치에몬은 진술서를 남겼고, 막부의 최고사법기관인 평정소도 사건에 관한 최종 기록을 남겼다. 이 사건은 번의 상급가신이 연루되고 막부가 개입한 일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당대에 큰 파장을 미쳤고, 그 때문에 사건에 관한 풍문은 대를 이어 전승되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 1798~1836]이 개척자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초기에 걸쳐 전개된 신도(新島) 개척의 붐이 있었다고 보인다.

하치에몬의 행적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것은 1872년 7월 14일자 『東京日日新聞』<sup>14</sup> 제130호였다.<sup>15</sup> 이 신문은 하치에몬이 세키슈(石州)의 관리와 도모

12 이런 명명방식은 ‘울릉도 쟁계’를 ‘안용복사건’으로 칭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조선 사료에는 ‘울릉도 쟁계’지만,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는 ‘울릉도 사건’으로 칭했고,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1931년에 ‘안용복사건’으로 칭했다. 오늘날 ‘안용복사건’으로 칭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13 이 글은 하치에몬을 주체로 하고 일본 측 사료를 인용한 것이 많아 그럴 경우 울릉도·독도로 표기하면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아 다케시마·마쓰시마로 표기했다. 문헌이나 인명의 경우, 한글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경우 한자로만 표기했다.

14 1872년 2월에 창간된 도쿄 최초의 일간지다. 『毎日新聞』의 전신이다.

15 森須和男, 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森須和男 저, 김수희 역, 2016, 『하치에몬(八右衛門)과 죽도도해금지령: 이마즈야 하치에몬의 죽도사건과 근세해운』, 지성인, 19쪽.

하여 다케시마를 개척하려 했던 사실이 발각되어 처형당한 사실을 보도하며, “특히 하치에몬이 외국선박과 사사로이 교역하려는 뜻을 숨기기 어려워 결국 구 정부의 규율인 밀상의 형벌에 처해졌지만……”이라고 했다. 처형의 이유가 외국선박과 밀무역한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얼마 되지 않아 외무성 관리가 자세히 기술하였다. 외무성의 기타자와 마사나리[北澤正誠]는 『다케시마고증』(1881)<sup>16</sup>과 「다케시마판도 소속고」[竹島版図所属考]에서 사건을 기술했는데, 『다케시마고증』은 「다케시마판도 소속고」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물론 관련된 보고서와 처벌 상황, 1837년 2월 21일의 도해금지 포고도 인용·기술했다. 기타자와는 「다케시마판도 소속고」에서 “덴포팔년 다케시마도해일건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다케시마도해일건기』(이하 『도해일건기』로 약칭)를 참고했다는 것인지 1836년의 ‘도해 일건’을 가리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하치에몬이 어업을 명목으로 몰래 각 지방의 물품을 사들여 하마다의 회부(繪符)<sup>17</sup>를 붙여 어용 물품으로 속인 뒤 어선에 싣고는 다케시마에 간다는 명목으로 (가서) 몰래 외국인과 무역했다고 기술한 부분이다. 각 지방의 물품을 사들여 “다케시마에 간다는 명목으로” 갔다고 했으므로 별목이나 어로가 목적이 아니라 교역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난다. 다만 『다케시마고증』은 39세인 하치에몬의 나이를 ‘申년 29세’로, 가호를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으로 표기했다.

오쿠하라 헤키운은 『다케시마 및 울릉도』[竹島及鬱陵島]에서 하치에몬의 행적을 모험 정신과 연계시켜 기술했다. 그런데 그는 “가토[加藤] 모씨가 기록

16 기타자와 마사나리 저, 정영미 역, 2006, 『독도자료집 2-「竹島考證」』,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이하 『竹島考證』으로 약칭).

17 ‘繪符’는 에도시대에 조정·막부·公家·武家·寺社 등이 필요한 물자를 운송할 때, 해당 화물의 소속을 명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화물 증표다(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6,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 참조).

한 『관청수필(觀聽隨筆)』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므로 이에 의거했음을 알 수 있다. 오쿠하라가 인용한 『관청수필』의 내용이 『하마다정사』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하치에몬은 하마다 마쓰바라우라(松原浦)에서 회선으로 운송업을 하던 아이즈야 세이스케(會津屋清介)<sup>18</sup>의 아들로서 하마다번의 강철과 반지(半紙) 등을 싣고 자주 오사카로 갔던 아버지를 닮아 항해에 익숙했고 모험 정신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케시마 도해를 허가받지 못하자 밀항을 도모하다가 1835년 5월 오사카마치봉행에게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오쿠하라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다만 오쿠하라는 『관청수필』과는 달리 하치에몬의 도항 횟수를 여러 번이라고 했다.

오쿠하라는 “1835년 5월 하치에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sup>19</sup>이라고 했고, “다케시마를 하마다령의 바다 안에 있는 섬으로 무인도라고 주장한 데다 일본 도검류와 기타 물건을 어선에 싣고 건너가 이국인과 교역”한 사실을 인용했다. 그런데 사형 선고문이라고 한 것은 1836년 6월의 오사카마치봉행의 보고이지 사형 판결문은 아니다. 1835년 5월로 오기한 것은 『관청수필』을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쿠하라는 사건에 대한 총평을 “세상이 모두 무사태평에 길들여져 평범한 자들만 날뛰고 있는 시절에, 막부는 더 나아가 전국에 명령을 내려 대외적으로 일을 해보려는 자들의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기도한 것이다”<sup>20</sup>라고 했다. 이 총평이 그의 의도를 말해준다. 오쿠하라는 사건 자체보다 하치에몬과 관리들의 개척정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sup>21</sup> 오쿠하라는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 개명하여 시모쓰케노카미(松平周防守 改下野守)가 된 번주 앞으로 내려진 달서(達書) 및 1837년 2월의 포고도 인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일차 자료와 『덴포잡

18 ‘아이즈야 신스케’로 읽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거를 확인할 수 없어 통례대로 ‘세이스케’로 읽었다.

19 사형 선고문은 1836년 12월 23일자 평정소의 선고문을 가리킨다.

20 奥原碧雲, 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53쪽.

21 奥原碧雲, 1907, 위의 책, 53쪽.

기』 등을 전부 조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오쿠하라는 하치에몬의 가호를 아이즈야 세이스케[會津屋清介]로, 하치에몬 부친을 세이스케[清助]와 세이스케[清介] 두 가지로 적었고, 하치에몬의 이명이 가네세이[金清]인데 가이세이[會清]로 적었다. ‘가이세이[會清]’는 하치에몬 부친의 이명이다.

1930년에 지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히바타 셋코[樋畑雪湖]가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매우 간략하다.<sup>22</sup> 히바타는 ‘竹島(리앙코루도 島)’를 조선 강원도 소속으로 보았고<sup>23</sup> 그가 새로 발견한 ‘도해금지령’을 소개하면서 하치에몬을 언급했다.<sup>24</sup> 『東海道宿宿村觸』도 거론했다. 히바타가 언급한 “일본해중 최동단” 운운은 1954년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때 다시 언급되었다.

개척자 하치에몬을 부각시켜 이른바 ‘하치에몬상’<sup>25</sup>을 확립해가는 것은 그의 출신지 하마다 지역에서다. 1911년 12월 17일 오시마 이쿠타로[大島幾太郎]가 하마다지단회[濱田支團會]에서 마쓰다이라 스오노카미 시대의 다케시마행을 자세히 연설했고<sup>26</sup> ‘향토 하마다를 위해 노력한 사람’, ‘대외무역의 선구자’ 등으로 평가했고, 이어 『나카군지』와 『시마네현지』, 『시마네현사』를 거쳐 『하마다정사』에 와서 개척자 ‘하치에몬상’이 확립되었다.<sup>27</sup>

『나카군지』는 ‘다케시마사건’으로 칭하며 아이즈야 세이스케[會津屋清助]의

- 
- 22 樋畑雪湖는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1930)에서 1837년의 高札 내용을 인용했다.
  - 23 “竹島(리앙코루도 島)는 울릉도와 함께 지금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며 조선의 領分으로서 일본해 중 가장 동쪽에 속해 있다.”(奥原碧雲, 1907, 앞의 책, 62쪽)
  - 24 그는 우연히 東海道 宿宿村觸 안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인용했다.
  - 25 森須和男 저, 김수희 역, 2016, 앞의 책, 19~27쪽.
  - 26 1912년, 『濱田會誌』 제42호(1912. 6. 15) 기사로 실림(森須和男 저, 김수희 역, 2016, 위의 책, 20쪽).
  - 27 1935년 12월 하마다시 마쓰바라자치협회는 하치에몬 死去 100주년을 기념하여 마쓰바라만[松平灣] 입구에 ‘會津屋八右衛門氏頌德碑’를 건립했다(윤유숙, 2012, 앞의 글, 311쪽).

아들 하치에몬의 사건을 기술했다. 이 사건에서 다케시마 도항은 표면적인 일이고 실은 대만과 남만 등으로 가서 외국인과 무역을 하고 종종 열대산 목재를 가지고 온 것으로 기술했다. 아버지 세이스케의 대답함과 아호호[阿房丸]의 난파, 하치에몬의 분발과 다케시마 및 남만 도항, 그리고 발각과 처벌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데 오쿠하라를 인용했다. 다만 『나카군지』의 기술보다 『시마네현사』의 기술이 하치에몬의 동기나 경위가 좀 더 자세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시마네현사』는 「마쓰다이아 가문」 부분에서 하치에몬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케시마사건’으로 칭했다. 로주 야스사다[康定]가 분세이[文政] 말기부터 덴포 6년(1835)까지 밀무역을 수행하여 수입이 풍부해졌다고 하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다케시마사건’이 발각되고 보니 율릉도 도해는 표면적인 일일 뿐 남양지방으로 가서 외국인과 무역을 하고 돌아온 실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지역민의 소장품을 들었다. 하치에몬에 대해서는 아버지 아이즈야 세이스케가 2,300석 규모의 공용선 아호호로 번의 종이와 철(鐵)<sup>28</sup>을 적재하고 오사카와 에도로 왕래하다 표류하여 무인도에서 작은 배를 만들어 표류하다 네덜란드 선박에게 구조되어 동남아를 돌아 나가사키로 들어왔으나 취조당할 것이 두려워 바다에 빠져 헤엄쳐서 하마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1822년이다. 하치에몬은 와타나베 가잔[渡邊華山]의 지리서를 보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어 다케시마 도해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왕성한 남양 무역의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마다번의 원조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당시 로주의 명성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번의 감정방(勘定方)<sup>29</sup>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에게 접근했고, 다케시마 소속을 알기 위해 가로 마쓰다이아 와타리[松平亄]의 소개를 받아 쓰시마번 가신 마쓰무라 다지마[松村但馬]에게 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옛 기록을 조사했지만 결국 다

28 『나카군지』에는 銅鐵로 되어 있다.

29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에 따르면, 하시모토 산베는 가로 오카다 다노모의 수하[家來]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시마네현사』는 번주에게 미칠 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마로부터 다케시마 소속에 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으므로 산베와 함께 다케시마 무역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하치에몬은 산베, 가로와 번주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번주는 허가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가로(오카다 다노모)는 도시요리역[年寄役] 마쓰이 즈쇼[松井圖書]와 상의하여 표면적으로는 번주의 뜻을 전하되 번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전했다는 것이다. 밀항을 묵인받았다고 생각한 하치에몬은 이로부터 남양 무역을 6년에 걸쳐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하마다에 온 마미야 린조에게 발각되었고 그가 오사카마치봉행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일본 물품은 도검과 식품, 잡화고 수입품은 자단과 흑단, 야자열매 즉 남양산이었다. 대만산이 포함되어 있다. 후일 기술되는 하치에몬 관련 행적의 대부분은 이를 답습하고 있다. 『시마네현사』에 막부 판결문이 거론되어 있으므로 사건 관련 일차 사료에 의거 편찬한 것으로 보이지만 풍문에 따른 것도 많다. 『시마네현지』<sup>30</sup>와 『시마네현사』는 하치에몬의 아버지를 ‘會清·會津屋清助’ 등으로 기술했다. 이는 오쿠하라의 기술과도 다르다.

『하마다정사』<sup>31</sup>는 『시마네현사』에 비해 더 자세하다. 이는 『시마네현사』가 『하마다정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하마다정사』는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으로 칭했고 하치에몬 아버지의 배가 2,500석으로 되어 있다. 하치에몬이 처음 다케시마로 간 해가 1824년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는 다케시마로 가서 대나무와 나무, 전복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점차 대담해져 산베의 동의 아래 일본도를 가지고 가서 조선인이나 중국인과 교역을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양의 섬에도 가서 일본도와 교역하여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몰래 팔아 거대한 이익을 얻어 번에도 막대한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하마다정사』는 하치에몬의 다케시마행과 남양의 섬은 물론 『시마네현사』에서는 없던 중국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다만 『하마다정사』는 교역상대가 조선인인지 중

30 “會津屋清助(세상에서는 會清이라고도 한다)”라고 적었다.

31 岩見史談會 編, 1935, 『濱田町史』, 139~145쪽.

국인인지 확정하지 않았고, 일본의 교역 물품은 일본도로만 되어 있다.

한국에서 하치에몬의 존재를 처음 거론한 자는 신석호다. 신석호는 1948년 논문에서 “憲宗三年에 日本은 竹島 즉 鬱陵島에 密貿易한 石見國濱田 松原 浦無宿八右衛門을 死刑에 處하여 우리나라에 對한 約束은 遵守한 것도 日本 側史料인 外交誌稿<sup>32</sup> 日本財政經濟史料와 歷史地理 第五十五卷 第六號 樋畑雪湖의 論文에 인용한 文書「東海道宿村觸」에 明記한 바로서 日本은 江戸幕府末期까지 竹島를 朝鮮領土로 承認하고 日本漁民의 往來를 嚴禁하였다”<sup>33</sup>라고 기술했다. 이런 기술은 1960년 논문<sup>34</sup>에 그대로 이어졌다. 신석호는 일본이 거상 하치에몬을 처형한 사실이 바로 일본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승인한 증거라고 인식했지만 마쓰시마 즉 독도와 연관시키지는 않았다.

## 2. 일본 정부의 ‘덴포 다케시마일건’ 논리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 데 대하여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1952년 1월 28일자 구술서를 보내오는 것을 시작으로 양국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반박논리를 전개해왔다. 1953년 7월 13일 일본 측 구술서(1)를 시작으로 1965년 12월 17일자 한국의 4차 반박 구술서에 이르는 동안 8차에 걸친 치열한 비판과 검토가 있었는데,<sup>35</sup> 이 가운데 하치에몬사건이 처음 언급된 것은

---

32 외무성이 1884년에 발간했다. 원제는 『外交志稿』다. 권30에 간단히 기술되어 있는데, 아이즈야 세이스케의 아들 하치에몬이 도검·활·총기 등을 가지고 가서 밀매한 것으로 기술했다.

33 신석호, 1948, 「독도의 소속에 대하여」 94쪽. 이하에서는 현대문으로 고쳐 인용했다.

34 無宿八右衛門인데 無宿八衛門으로 오기했다(신석호, 1960, 8, 「독도의 내력」, 『사상계』[『독도』, 1965, 29쪽에 수록).

35 김병렬, 2017, 「광복 후 독도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대적 전환과 영토 인식」,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23쪽.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의 반박서<sup>36</sup>에서다. 거기에는 “이 사건 이후 140년 되는 현종 3년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영유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준수하여 ‘한국의 竹島’(鬱陵島)와의 밀무역에 종사한 ‘이와미국 하마다번 하치에몬’을 처형했다”<sup>37</sup>고 되어 있다. 이 구술서에는 신석호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가 “憲宗三年에 日本은 竹島 즉 鬱陵島에 密貿易한 石見國濱田 松原浦 無宿 八右衛門을 死刑에 處하여 우리나라에 對한 約束은 遵守한 것도”라고 한 논조가 한국 정부의 논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54년 2월 10일자 구술서에서 “히바타 셋코의 논문에서 다케시마(독도)는 한국 영토의 최동단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한 한국 측 주장에 반론하여 히바타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지만 하치에몬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자 구상서에서 다시 한번 하치에몬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 조약국 제1과의 가와카미 겐조가 작성한 『竹島の領有』(1953. 8)가 먼저 참고자료로서 인쇄되었다.<sup>38</sup> 이 자료에서 가와카미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의 도항금지 후에도 밀무역사건 등이 있으며……”라고 하여 하치에몬사건을 ‘밀무역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아이즈야 하치에몬으로 칭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다케시마가 일본인의 도항이 금지된 섬으로 비교적 그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가와카미 역시 1953년 단계에서는 하치에몬사건을 마쓰시마와 연관짓지는 않았다.

36 [1954년 2월 10일부 일본 외무성 구상서 제15호匪二에 보이는 독도(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한국정부의 견해](『독도문제개론』, 구상서 출전은 이하 같음).

37 이 부분이 한국 외교통상부가 2012년에 펴낸 『독도문제개론』(1955)에는 “한국의 ‘竹島’(鬱陵島)에 밀무역한 ‘이와미국 하마다번 하치에몬’을 사형에 처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한편 양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어와 영어에는 ‘마쓰시마’가 거론되어 있지 않다.

38 가와카미가 시마네현에 독도 역사나 어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1951년 9월, 외무성이 독도 관련 자료를 만드는 것은 1952년에 들어와서다.

일본 외무성이 하치에몬사건을 마쓰시마와 연관짓게 되는 것은 1956년 9월 20일자 구상서<sup>39</sup>에서다. 여기서 “덴포 8년(1837)에 이와미국 하마다번 회선 운송업자 아이즈야 하치에몬[會津屋八右衛門]의 竹島(울릉도) 밀무역사건이 발각되어 하치에몬은 책형에 처해졌지만, 이에 연루된 하마다번 가로 오카다 다노모의 수하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는 하치에몬에 대한 울릉도 도해를 마쓰시마로의 도해 명목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음을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는 竹島(울릉도) 도해금지 후에도 松島(오늘날의 竹島)로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하치에몬사건을 마쓰시마 도해와 연관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무성은 하치에몬사건을 ‘竹島(울릉도) 밀무역사건’<sup>40</sup>으로 명명했다.

이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1956년에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竹島 밀무역사건’으로 명명했을 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해와 연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밀무역 사건으로 규정하되 마쓰시마도해와 연계지는 자가 가와카미가 처음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1955년 5월 다무라 세이자부로는 『竹島問題の研究』<sup>41</sup>를 작성한 적이 있다. 다무라는 이 보고서에서 “덴포 연간에 발생하여 각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준 하마다의 무숙(無宿) 하치에몬과 아이즈야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밀무역사건’은 울릉도 내지는 남양에 간 것”<sup>42</sup>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그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첫째는 판결문에 보였듯이 조선의 다케시마는 도해가 금지되었으므로 마쓰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간 것으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를 덴포 연간에도 일본 영토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외무성 가와카미 겐조 사무관이 도쿄에서 발견한 「다케시마방각도」에 기입된 하치에몬사건의 조서의 일부인 ‘마쓰시마’ 기

39 [竹島에 관한 1954년 9월 25일부 대한민국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국정부의 견해].

40 다무라는 1953년 저술에서 하마다의 ‘다케시마 사건’으로 칭했다.

41 다무라는 시마네현 총부부 홍보문서과 헌정자료 주임으로서 이 작업에 관계했다.

42 田村清三郎, 1955, 『竹島問題の研究』, 시마네현, 23쪽.

사를 제시했다.

이로써 다무라와 가와카미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시마네현이 작성한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에 따르면, 외무성은 1951년 8월 30일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로 재확인되도록 진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현으로부터 받고 8월 31일 신문기자단과 회견하여 다케시마(독도)가 완전히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어 시마네현은 9월 1일 외무성을 방문하여 강화조약에 다케시마(독도)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언급하고 다케시마(독도) 영토 확인을 위한 외무성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때 가와카미가 사무관으로서 참석한 바 있다.

이때부터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인 근거나 논리를 마련하게 된다. 가와카미가 시마네현에 소장 자료를 요청하면, 시마네현은 다시 오키지청에 자료를 요청하여 가와카미에게 송부했다. 가와카미는 “최근 한국은 빈번히 독도(獨島, ドク)와 파랑도(破浪島, パラン)를 한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아마도 다케시마에 해당하는 듯합니다”<sup>43</sup>라고 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았다. 외무성이 「일본해의 다케시마에 관하여」를 쓰게 되는 시기는 1952년 2월경이고 이전까지 가와카미는 어업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다.<sup>44</sup>

한일 양국 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외무성은 시마네현이 작성한 보고서<sup>45</sup>에 의거하여 역사적 경위를 주장했다. 앞서 시마네현 지사는 「오키지청[隱岐支廳] 관내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에 대해」를 의뢰받아 작성한 보고서를<sup>46</sup> 1952년

43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 1951. 9. 27.

44 박병섭, 2015b,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독도연구』 제 19호, 251~274쪽.

45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 「관내 다케시마의 조사자료에 대하여」.

46 지방자치청은 1951년 12월 18일 「오키지청 관내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에 대해」 부탁했다가 강화조약이 발효함에 따라 다시 재조사를 시마네현 지사에게 의뢰했다.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 「다케시마(舊松島) 관한 제 문제」.

5월 12일 외무성으로 송부했는데,<sup>47</sup> 그 안에 하치에몬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이 문서에 “특히 주의할 것은, 다케시마무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국, 남방(南方)과 무역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다케시마<울릉도> 도항은 엄금되었지만, 마쓰시마 도항을 금지한 고문서는 한 통도 없고 역사적으로 물론 일본의 영토다. 아니 오히려 원래 다케시마<울릉도>조차 일본 영토의 일부였는데, 막부의 퇴보된 정책으로 (다케시마의) 통치를 조선에 위임한 결과 그렇게 조선 영토가 되었다. 그런데 마쓰시마의 존재가치는 당시 다케시마 도항을 위한 기항지일 뿐이었고, 다케시마 도항이 금지되면 당연히 마쓰시마 도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쉽게 상상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1955년 다무라의 보고서<sup>48</sup>에 보인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1952년 보고서는 당시 시마네현 홍보문서과에 근무 중이던 다무라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무라의 보고서는 1952년 5월 이전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1953년 8월에 인쇄된 가와카미의 『竹島の領有』는 다무라 보고서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다만 가와카미가 발견했다는 「竹島方角圖」에 대해 다무라는 1952년 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1955년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했다. 지도는 그 사이에 발견되었던 것이다. 다무라와 가와카미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다무라는 1953년 10월 ‘다케시마 및 울릉도 방면의 메이지 연간과 그 이전 일본인의 도항 등에 관한 자료를 하마다도서관에 의뢰했다.’<sup>49</sup> 다무라는 “이 사건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쓰시마, 하마다, 막부 3자가 다케시마는 겐로쿠 연간에 조선에 넘겨졌지만 마쓰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하치에몬의 사죄명령서에 ‘다케시마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에 간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에 갔다’는 기술이 그 증거다”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47 위의 문서.

48 다무라, 1955, 앞의 글, 25쪽, 다무라는 ‘시마네현 향토사료 1205호 『朝鮮竹島渡航始末記』에 의거했으며, ‘無宿狩込一件’에 대한 사사봉행의 판결문은 『島根縣誌』(1923)에서 인용했음을 밝혔다.

49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

해서 다무라가 “다케시마 도항이 금지되면 당연히 마쓰시마 도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쉽게 상상된다”라고 기술한 것을 외무성이 1956년에 “竹島(울릉도) 도해금지 후에도 松島(오늘날의 竹島)로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바꾼 것이다.

1954년 2월, 외무성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 견해 2」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시마네현뿐만 아니라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참여했다. ‘하치에몬사건’에 관한 한, 1962년의 「일본정부견해 4」(1962. 7. 13)<sup>50</sup>는 1956년 9월 25일자 구상서와 거의 같다. 이는 하치에몬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논리가 1956년 단계에 일단 구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와카미는 『竹島の領有』(1953)를 발전시켜 1966년에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를 간행했다. 그는 이 저서에서 “竹島로의 도항이 금지된 후에도 松島에의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음은 元祿 9년 1월 18일자 竹島 도항금지에 관한 봉서에서 ‘향후 竹島 도항금지를 지시한다’고 했을 뿐 松島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이즈야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밀무역사건이다. …… 이는 사건 당시에도 松島에의 도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松島가 지금의 竹島에 해당한다는 것은 하치에몬을 문초했을 때 그의 진술에 기초하여 그린 「竹島方角圖」<sup>51</sup>를 보아도 확실하다”<sup>52</sup>라고 했다. 가와카미는 다무라의 의견에 자신이 발견한 「竹島方角圖」를 덧붙여 마쓰시마가 한국어 말하는 독도며 마쓰시마 도해는 하치에몬 당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1952년 시마네현의 보고서에서 1966년 가와카미의 저술에 이르기까지 ‘마쓰시마’ 관련 기술을 발췌하면 <표 1>과 같다.

50 [竹島에 관한 1959년 1월 7일부 한국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국정부의 견해].

51 가와카미가 밝힌 「다케시마방각도」의 소장처는 도쿄 八幡神社 宮司 齋藤直成이다. 모리소도 1986년에 같은 소장처의 지도를 언급한 바 있다.

52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1쪽.

〈표 1〉 일본의 마쓰시마 관련 기술

| 작성자<br>(기관) | 출전                        | 내용   |
|-------------|---------------------------|--|
| 시마네현        | 보고서(1952, 5. 12.)         | 다케시마 도항은 엄금되었지만, 마쓰시마 도항을 금지한 고 문서는 한 통도 없고 역사적으로 물론 일본의 영토이다. …… 마쓰시마의 존재가치는 당시 다케시마 도항을 위한 기항지일 뿐이었고, 다케시마 도항이 금지되면 당연히 마쓰시마 도항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쉬 상상된다. |
| 가와카미        | 『竹島の領有』(1953)             | 겐로쿠의 도항금지 후에도 밀무역사건 등이 있었으며 ……   |
| 다무라         | 『竹島問題の研究』<br>(1955)       | 松島 도항을 명목으로 간 것으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를 덴포 연간에도 일본 영토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   |
| 외무성         | 「일본정부견해」<br>(1956, 9. 20) | 이는 竹島(울릉도) 도해금지 후에도 松島(오늘날의 竹島)로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외무성         | 「일본정부견해」<br>(1962, 7. 13) | 이는 竹島(오늘날의 울릉도)에의 도항은 금지되었어도 松島(오늘날의 竹島)에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 가와카미        | 『竹島の歴史地理學的<br>研究』(1966)   | 이는 사건 당시에도 松島 도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이렇듯 하치에몬사건을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논리 구축을 위해 이용한 자는 다무라고, 겐로쿠 연간의 도해금지령을 하치에몬사건과 결부시켜 마쓰시마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해석한 자는 가와카미다. 가와카미의 논리는 다무라의 논리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다만 다무라는 1955년에는 ‘일본령 마쓰시마’라고 했지만, 1965년에 오면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했다. 이렇듯 ‘하치에몬사건’은 기타자와·다무라·가와카미를 거치면서 ‘다케시마 밀무역사건’으로 고착되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198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의 연구경향

#### 1) 일본의 연구경향

일본에서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재조명한 자는 1980년대 중반 고지마 순페이

[兒島俊平]에 와서다.<sup>53</sup> 그는 이 사건을 ‘다케시마 밀무역사건’으로 칭했다. 그는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밀무역사건’에 대한 『하마다정사』의 기술이 『하마다시지[濱田市誌]』(1973)에 그대로 인용된 채 『하마다정사』의 설이 정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의문을 제기한 점은 ① 하치에몬의 부친 세이스케[清助]가 2,500석의 배를 건조했다는 것은 사실인가?<sup>54</sup> ② 세이스케가 조난당했다가 4년 만에 나가사키로 왔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sup>55</sup> ③ 하치에몬이 남방에서 무역을 했다는 이야기도 말이 안 된다.<sup>56</sup> ④ 하치에몬의 밀무역 사실은 1836년 봄 마미야 린조[閩宮林藏]에게 발각되었다지만,<sup>57</sup> 이와초[岩町] 씨에 따르면, 마미야는 1835년 6월부터 1836년 6월까지 에도에 있었으므로 마미야가 1836년 봄에 하마다번에서 적발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고지마는 밀무역 사건은 하마다번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음모였고 주모자를 오카다 다노모라고 보았다.<sup>58</sup> 사사봉행 등 막부의 요직을 거쳐 로주가 된 하마다 번주 야스토[康任]가 계속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필요한 뇌물 즉

---

53 兒島俊平, 1986, 10, 「會津屋八右衛門 竹島密貿易事件の真相」, 『龜山』 제13호, 濱田市文化財愛護會.

54 고지마의 조사에 따르면, 덴포 1년(1830) 하마다 영내의 선박 가운데 회선은 87척인데 대부분 400석 적에서 100석 적의 배가 27척이고 기타는 100석 적 이하의 회선이었다.

55 清助는 1819년에 아호호가 조난당해 56명이 사망했는데 清助만 살아남아 네덜란드 선박에 구조되었다. 河田竹夫는 하치에몬 세이스케가 분세이 5년(1822)에 정말로 귀국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분카 2년(1805)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過去帳』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龜山』 제14호, 105쪽).

56 하치에몬은 어선의 모습으로 밀무역을 했다고 하는데, 어선은 기껏해야 100석 적 이하의 선박인데 어떻게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지를 제기했다.

57 『濱田町史』에 따르면, 1836년 사쓰마번의 밀무역을 조사하러 가던 마미야 린조가 하마다에서 마쓰바라의 선원에게서 샀다는 목재를 발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미야는 오사카봉행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이어 오사카마치봉행의 조사가 이어졌다.

58 兒島俊平, 1986, 앞의 글, 69쪽.

정치자금의 보급 임무를 맡은 다노모가 백성을 착취하여 정치자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케시마 밀무역’을 고안해냈다는 것이다.<sup>59</sup> 이를 위해 하시모토 산베가 선발한 최적의 인물이 바로 ‘아이즈야 세이스케’의 장남 하치에몬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치에몬은 홋카이도 항해나 다케시마에는 가본 적이 없으므로 다노모가 가로 마쓰다이라 와타리의 친구인 쓰시마번의 마쓰무라 다지마[松村但馬]<sup>60</sup>에게 부탁하여 산베와 하치에몬, 다지마 등 3명을 쓰시마로 출장 보내 쓰시마번이 소장한 조선 울릉도 관계 비밀자료 중 다케시마행 그림지도(해도)를 손에 넣게 했다는 것이다.<sup>61</sup> 고지마는 하치에몬이 산베가 수배해준 밀무역용 도검류를 50~60석 적의 회선 밀바닥에 적재하고 어선 모습으로 다케시마에 가보니, 조선의 밀무역선 외에도 외국 상선이나 포경선이 수 척 정박해 있다고 했다.

고지마는 『하마다정사』의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고증 내용에 대해서는 전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고지마는 다노모가 산베와 하치에몬, 스키무라 3인을 쓰시마로 보냈다는 사실을 『하마다정사』를 인용하여 기술했으나 이런 내용은 『시마네현사』에 보인다.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여러 사료에 의거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한 자는 모리스 가즈오[森須和男]다.<sup>62</sup> 모리스는 『村川家文書』, 1872년의 『東京日日新聞』·『濱田町史』·『竹島渡海一件記』·『朝鮮竹島渡航始末記』·『天保雜記』·

59 兒島俊平, 1986, 위의 글, 70쪽.

60 『나카군지』·『시마네현지』·『하마다정사』 등 대부분에 ‘松村但馬’로 적었다. 고지마 스페이는 스키무라 다지마[杉村但馬]가 맞다고 바로잡았다(『龜山』, 14호). 그런데 『竹島渡海一件記』에는 松村但馬로 보이고, 『天保雜記』에는 杉浦但馬와 杉村但馬로, 『甲子夜話』에는 松村但馬와 杉村但馬가 보인다.

61 兒島俊平, 1986, 앞의 글, 72쪽.

62 森須和男, 1987, 「竹島一件について」, 『龜山』 제14호; 森須和男, 1996, 「竹嶋一件考-今津屋八右衛門」, 『龜山』 제23호; 森須和男, 2002, 『石見学ブックレット3 八右衛門とその時代-今津屋八右衛門の竹嶋一件と近世海運』, 濱田市教育委員会.

『甲子夜話』·『竹島圖說』 등의 사료를 분석하여 사건의 전모를 다루었다. 그의 연구성과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치에몬의 아버지 세이스케[清助]의 가호가 아이즈야[會津屋]로 칭해지지만 이마즈야[今津屋]가 맞다면서 그 배경을 구명했다.<sup>63</sup> 그러나 『도해일건기』와 『텐포잡기』에 ‘이마즈야’로 되어 있었으므로 바로 잡았다기보다는 본래의 호칭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리스는 ‘아이즈야’로 칭하게 된 원인이 1935년 12월 내각총리대신 해군대장 오카다 게이스케[岡田啓介]의 「會津屋八右衛門氏頌德碑」 때문이라고 했다. 즉 오카다가 1935년 1월에 발간한 『하마다정사』에서는 ‘今津屋(會津屋)八右衛門’으로 애매하게 표기했었는데 송덕비에 ‘會津屋’으로 표기한 것이 그대로 고정되었다는 것이다. 『하마다정사』에 두 가지가 병기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하치에몬의 선조가 하마다의 마쓰우라[松浦]에 살 때는 ‘今津屋’으로 칭하다가 세이스케[清助]의 시대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會津屋’으로 개명했는데 오래도록 ‘今津屋’으로 통해온 것이 가호가 된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會津屋’이나 ‘會清’으로 통했다는 것이다.<sup>64</sup>

『시마네현사』에서는 하치에몬의 아버지 가호에 대하여 “아이즈야(지금은 이마즈야로 개명)”라고 했다. 하치에몬에 대해서는 『도해일건기』와 『텐포잡기』에서는 ‘이마즈야’였으나,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이하 『도항시말기』로 약칭)에서는 ‘아이즈야[會津屋]’, 『하마다정사』에서는 두 호칭을 병기하다가 송덕비에 서는 ‘아이즈야’로 기재했다. 이 호칭이 굳어져 1953년 가와카미가 ‘아이즈야’로 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든 저술이 모리스가 바로잡기 전까지는 ‘아이즈야’로 칭했다.

모리스는 하치에몬이 다케시마를 조선 소유가 아닌 무인도로 생각하고 있었

63 河田竹夫는 고문서에는 今津屋이 많고 활자 기록에는 會津屋으로 되어 있지만, 今津屋과 會津屋은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龜山』 제14호, 105쪽).

64 『濱田町史』, 139쪽.

다고 보았다. 그는 『덴포잡기』와 『다케시마기사략[竹嶋紀事略]』<sup>65</sup> 『도항시말기』<sup>66</sup> 등의 문헌에서 다케시마에서의 밀무역 정황이 기술되어 있지만, ‘다케시마 일건 판결문’에는 다케시마 도해 및 다케시마에서 가져온 물건만 언급할 뿐 이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밀무역의 형태를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다케시마를 중계지로 한 중국과의 중계무역, 조선·중국·동남아시아와의 교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까지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케시마를 목표로 한 주변과의 교역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sup>67</sup>고 하여 이국과의 교역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sup>68</sup>

모리스는 『도해일건기』에 하치에몬이 1833년 다케시마에 있을 때 섬의 형상을 그렸다고 진술한 내용이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회도의 소재를 뒤졌다.<sup>69</sup> 후에 「竹島之圖」<sup>70</sup>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하치에몬 회도의 복사본이다. 본래 1836년의 『도해일건기』에 부속된 지도명은 「竹島方角圖」다. 「竹島方角圖」는 하치에몬의 진술에 근거하여 그를 조사한 오사카마치봉행소에서 작성한 회도다.<sup>71</sup> 그런데 하치에몬이 직접 그린 회도의 사본인 「竹島之圖」에는 가나야 세이에몬[金屋清右衛門]이 기입했다는 내용과 메모<sup>72</sup>가 있다. 모리스는 가나모

65 저자 미상인데, 자료 중에 松浦弘의 『竹島雜誌』가 인용되고 있으므로 메이지 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 대한 통설을 답습하고 있다.

66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는 『다케시마도해일건기』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말기에 밀무역 정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67 森須和男, 김수희 역, 2016, 앞의 책, 71쪽.

68 森須和男, 김수희 역, 2016, 위의 책, 60~61쪽.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濱田町史』에 보인다.

69 사사키 소장 회도를 찾았지만 이는 하치에몬 회도의 모사본(1835)이다.

70 지도명은 스키하라가 붙인 명칭이다(森原隆, 2007, 「八右衛門·金森建築·松浦武四郎の「竹嶋之圖」について」).

71 오사카마치봉행소에서 작성된 것이 「竹島方角圖」이고,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에 첨부된 지도는 평정소에서 조사 후 작성된 것이다.

72 1835년 1월 3일 오키 도젠 사키무라[崎村]에서 와타나베[渡部]가 옮겨 적었다는

리 겐사쿠[金森建策]의 『다케시마도설[竹島圖說]』에 부속된 회도와 이 「竹島之圖」를 대조해보니 『竹島圖說』의 내용과는 지명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모리스는 『다케시마도설』에 첨부된 회도가 실제로는 하치에몬의 회도를 베끼 「竹島之圖」(사사키 소장)일 것으로 보았다. 모리스는 하치에몬의 도해 횡수를 「竹島之圖」에 근거하여 1833년과 1834년, 1835년 모두 세 번으로 보았다. 회도와 관련된 쟁점은 3장에서 다시 다룬다.

시마네현 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의 스키하라 다카시[杉原隆]는 하치에몬의 도해 청원에 대하여 에도번저에서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기 어려우니 인정할 수 없지만, 마쓰시마(다케시마)라면 좋다”<sup>73</sup>는 회답을 내렸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에도번저의 회답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도 결정하기 어려우니 도해 계획은 중지해야 할 것”<sup>74</sup>이라는 것이었다. 시험삼아 마쓰시마(독도)도 도해할 것을 권유한 자는 에도번저의 하마다번주(마쓰다이라스오노가미 야스토)가 아니라 하마다번 가로 오카다 다노모의 수하 하시모토 산베였다. 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는 “마쓰시마가 일본령이라는 인식은 하치에몬의 재판 기록에도 기술되어 있어 …… 마쓰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1950년대 외무성의 주장을 답습한 것이다. 외무성은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에 이어 개정판(2014)에서도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 2) 한국의 연구경향

한국 학계에서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자는 윤유숙(2012)이라고 할 수 있다. 윤유숙은 19세기 전반 조일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을 밝히는

---

메모다.

73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4, 『「竹島問題 100問100答」에 대한 비판』(68 ‘덴포 다케시마일건’은 오늘날의 다케시마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74 『竹島渡海一件記』.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토했지만,<sup>75</sup> 1차 사료와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하마다번 하치에몬사건’의 배경과 전모, 처리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다만 그는 막부의 판결문에 “외국인과의 밀무역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이국도해금령을 어긴 점만이 죄목으로 거론되어 있다”<sup>76</sup>고 하여 밀무역 행위를 부인한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발각되기까지 수년의 세월 동안 울릉도에 여러 번 도항하여 울릉도 산물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일본제 무기류를 이국인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사실로 전승되어 근대 이후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정착되었다”<sup>77</sup>고 하고 있어 밀무역에 대한 저자의 입장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 박병섭(2015a)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과와 쟁점을 기술하고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두 섬의 소속에 대한 일본의 인식에 주목했다.<sup>78</sup> 그는 과거 일본 외무성이 일본 정부 견해(3)에서 ‘덴포 다케시마일건’을 언급한 것이 가와카미의 견해<sup>79</sup>를 취한 것이며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이런 견해는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논파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에 간다는 명목을 세워 갔다면 다케시마 도해를 해도 좋다는 시사를 받고 도해했다가 체포된 하치에몬이 과연 위와 같은 발뺌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치에몬이 처형되었다는 사실은 하시모토 산베의 교시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sup>80</sup>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병섭은 이케우치의 논리에 의거, 막부가 마쓰

75 윤유숙, 2012,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東洋史學研究』 제118집.

76 윤유숙, 2012, 위의 글, 307쪽, 이 내용은 『天保雜記』에 보인다.

77 윤유숙, 2012, 위의 글, 311쪽.

78 박炳涉, 2015a, 앞의 글.

79 박병섭은 가와카미 책(1966)의 191쪽을 전거로 밝혔다(박병섭, 2015a, 위의 글, 39쪽).

80 이케우치, 2001, 「17-19世紀 鬱陵島海域の生成と交流」, 『歴史學研究』 756호, 34쪽(박병섭, 2015a, 위의 글, 45쪽에서 재인용).

시마를 도해금제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지만, ‘밀무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송휘영(2016)은 ‘덴포 다케시마일건’의 전말과 성격을 고찰하되, 울릉도·독도 인식에 대한 고찰을 덧붙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밀무역 사건의 관점에서 접근했다.<sup>81</sup> 송휘영은 1836년의 하치에몬의 진술서를 근거로 “도해할 때는 도검 종류 등을 신고 가서 돌아올 때는 어신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조선 및 중국과의 교역을 했다는 것이고, 도검은 에도에서 가져와서 섬으로 신고 갔는데 가는 길은 하마다번의 지도<sup>82</sup>를 이용하고 있었다”<sup>83</sup>는 내용을 인용했다. 1837년에 전국적으로 다케시마도해금지령이 내려지게 된 원인이 “밀무역 내용에 남국의 산물뿐만 아니라 도검류 등의 무기까지 거래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하마다정사』에서 이미 보였다.

이계황(2017)은 ‘하치에몬의 울릉도 도해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힌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내세운 만큼 『다케시마도해일건기』를 거의 전재했다. 그는 사건 관련자들이 중형을 받게 된 데는 충포의 유출 및 밀무역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므로 그 역시 밀무역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4</sup>

이렇듯 한국의 연구는 ‘덴포 다케시마일건’에 대한 치밀한 검증보다는 사건의 전모를 소개하고 독도 인식을 고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대부분 ‘밀무역 사건’임을 전제하고 있지만, 밀무역이라고 해도 상대국이 조선인인지 중국인인지, 다케시마는 중계지에 불과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밀무역이 존재했는지도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었다. 하치에몬의 도해 경위와 횡수, 운

81 송휘영, 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日本文化學報』 제68집, 韓國日本文化學會.

82 진술서에는 繪符로 되어 있다.

83 송휘영, 2016, 앞의 글, 18쪽.

84 “이마즈야 하치에몬의 울릉도 도해에 관해 하치에몬의 供述書(竹島渡海一件記 28)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133쪽)고 했듯이, 이를 따라 기술했다(이계황, 2017,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 도해사건』, 『學林』 제39집).

송 물품과 교역 여부, 지도, 쓰시마번의 대응 등도 마찬가지다. 인명이나 연대, 용어에서도 오기가 보이는데, 이는 사소한 문제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관점의 차이인데, 1차 사료와 2차 문헌 간의 기술상의 차이를 고증하지 않은 채 편리한 대로 취사하여 서술하다보니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있다. 최근에 관련 사료가 번역되었으므로<sup>85</sup> 문헌을 교차 분석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래서는 이런 시각에서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Ⅲ. ‘덴포 다케시마일건’의 쟁점

#### 1. 자료의 문제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관련된 쟁점을 ① 밀무역의 문제 ② 마쓰시마 인식 ③ 지도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쟁점을 검토하려면 우선 사건과 관계된 문헌 검토가 필수적인데, 1차 사료로는 당사자의 진술(『도해일건기』)과 막부의 기록(『도항시말기』) 및 포고, 2차 문헌으로는 『갑자야화(甲子夜話)』(1821~1841), 『덴포잡기』(1844 이후), 『통항일람 속편』(1853~1856)·『오카치가타 만년기[御徒方萬年記]』 등이 있다.<sup>86</sup> 『도해일건기』는 오사카마치봉행이 직접 하치에몬을 취조한 것이므로 증거력이 크지만 그만큼 진술의 진위 여부가 문제시될 수도 있다. 『도항시말기』는 에도막부의 최고사법기관인 평정소가 작성한 것인데, 오사카마치봉행과 사사봉행, 하마다번주 사이에 오고간 서신과 보고, 선고 및 처리

8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가 관련 사료를 번역했다(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6,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

86 이들 문헌에 대한 해제와 내용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6),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을 참조했다.

사항, 1837년 2월 고찰장에 게시된 포고(「天保八年二月御觸」)<sup>87</sup> 그리고 포상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시말기는 번과 막부 중신들이 왕래한 문서와 최종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이므로 신뢰할 만하다.

2차 문헌은 1차 사료에 의거하여 편찬한 것으로 1차 사료에 없는 내용을 수록하기도 했지만 오기한 경우도 있다. 특히 『통향일람 속편』은 『통향일람』과 함께 에도막부가 막부 소장의 사료 가운데 외국과의 통향관계를 발취·정리한 것이므로 막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하치에몬사건은 「朝鮮國部」 ‘潛商刑罰’에 실려 있는데, 1836년 6월 오사카마치봉행이 사사봉행에게 관련자를 인도하여 재판을 거쳐 판결받기까지의 경위, 도해금지령 그리고 포상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하치에몬사건을 ‘잠상 형벌’로 분류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교역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향일람 속편』은 『덴포연록(天保年錄)』<sup>88</sup>·『다케시마교역 일건(竹嶋交易一件)』·『오카치가타 만년기』·『다케시마 일건』 등에서 발췌했음을 밝히고 있다. 『도항시말기』<sup>89</sup>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덴포잡기』는 누마다번의 검사(劍士) 후지카와 세이사이(藤川整齋)가 1831년에서 1844년까지의 기록을 수록하면서 하치에몬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하치에몬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 『통향일람 속편』에는 없는 내용을 신고 있기도 하다. 『덴포잡기』는 관련자 조사와 처우사항 등이 자세하며 특히 12월 23일의 선고 내용이 자세한 반면, 『도항시말기』는 관련자

87 이 포고를 도해금지령, ‘竹島渡海禁止御觸’, ‘天保竹島渡海禁止’ 등으로 칭하지만, 『덴포잡기』에는 ‘天保八年二月御觸’으로 되어 있다.

88 『年錄』(458)(卷444-481: 天保)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서지사항은 나와 있지 않다(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원문 제공). 하치에몬 사건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89 『도항시말기』에는 관직 몰수와 연금에 처해진 사람이 松村但馬·松平亘이고, 연금에 처해진 자에 大谷作兵衛가 보이는데, 『통향일람 속편』에는 관직 몰수와 연금에 처해진 사람이 松村但馬·大谷作兵衛·松平亘로 되어 있다. 大谷作兵衛에 대한 처분이 다른 것이다.

처벌 사항이 간략하다. 『갑자야화』는 히라도[平戶] 번주 마쓰우라 세잔[松浦靜山]이 기술한, 사건 당시의 기록이지만 풍문에 의존한 바가 많아 검증이 필요하다.

이들 문헌은 기타자와에서 시작해서 오쿠하라의 저술, 『시마네현사』와 『하마다정사』에 이르면서 사실이 왜곡되었고, 1950년대에 독도 영유권과 결부되면서는 논의의 초점이 다케시마에서 마쓰시마로 옮겨갔다. 따라서 이들 문헌을 검토할 때는 이런 추이를 염두에 두면서 교차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밀무역의 문제

하치에몬이 다케시마에서 밀무역을 했는가를 그의 진술서와 취조자들의 기록에 의거하여 검증해보자. 이 사건에는 주모자 하치에몬의 출신지인 하마다번은 물론 선원을 고용한 오사카, 에도막부 그리고 하마다번과 쓰시마번의 에도번저까지 개입되어 있어 전개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다케시마도해 자체가 금지된 상태에서 교역한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중되므로 설령 교역을 했다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쉽게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역과 연관지를 만한 사실이 수록된 문장을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이국인과의 교역을 처음 운운한 것은 하치에몬을 조사한 오사카마치봉행의 보고다. “다케시마는 조선국에 가까운 섬인데 무인도이므로 하마다령에서 이 섬으로 건너가 일본의 도검류를 그 밖의 고기잡이배에 함께 실어 어선의 모습으로 이국인과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검은 에도와 여러 영지에서 사 모았고……”<sup>①</sup>라고 했듯이, 하치에몬의 진술에서 교역한 정상을 들었음을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정작 하치에몬의 진술서인 『도해일건기』에는 실려 있지 않다. 『도항시말기』에 실린 내용은 오사카마치봉행이 하치에몬을 사사봉행에게 인도할 때 보고한 내용으로 오사카에서 체포했을 때 조사한 내용인 듯이 보고했다. 하치에몬 일행은 사사봉행에게 인도되어 조사받았고 에도막부 평정소는 ④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 결과 『시말기』에서는 교역 운운한 내용이

〈표 2〉 문헌에 기술된 하치에몬 교역 관련 내용

| 번호 | 연도(출전)                              | 내용  |
|----|-------------------------------------|---|
| ①  | 1836. 6. 오사카<br>마치봉행의 보고<br>(도항시말기) | 다케시마는 조선국에 가까운 섬인데 무인도이므로 하마다령에서 이 섬으로 건너가 일본의 도검류를 그 밖의 고기잡이배에 함께 실어 어선의 모습으로 이국인과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검은 에도와 여러 영지에서 사 모았고, 주요 도로의 역참에서는 하마다번의 어용 물건의 회부(會符)를 사용하였습니다. |
| ②  | 1836. 6<br>(통항일람 속편)                | 다케시마는 조선국에 가까운 섬인데 무인도이므로 하마다령에서 이 섬으로 건너가 일본의 도검류를 그 밖의 고기잡이배에 함께 실어 어선의 모습으로 이국인과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검은 에도와 여러 영지에서 사 모았고, 주요 도로의 역참에서는 하마다번의 어용 물건의 회부(會符)를 사용하였습니다. |
| ③  | 1836. 6 사사봉행<br>가신의 보고<br>(텐포잡기)    | …… 오사카에서 선장 3~4명을 체포하였는데, …… 오사카마치봉행소에서 한 차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키슈 하마다에서 조선 땅 다케시마라는 북해에 있는 섬에 가서 교역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
| ④  | 1836. 12. 24.<br>(텐포잡기)             | …… 다케시마로 도해하여 회도를 작성하고, 나무 벌채와 인삼과 비슷한 풀뿌리 등을 지니고 돌아왔다. 이국인과 만나서 교통한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나라의 경계가 불분명한 땅이라고 알고 있었다. ……   |

삭제되었으므로 결국 교역한 사실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하치에몬은 오사카마치봉행의 취조에서는 다케시마에서 교역했다고 진술했을까?

『갑자야화』를 보면, 하치에몬은 하마다번주의 가신 두 사람이 하치에몬에게 철포 5정을 주었고, 출항 비용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사사봉행이 가신 두 사람을 호출하여 조사하자 두 사람은 부인했다. 봉행이 두 사람을 하치에몬과 대면시키자, 하치에몬은 한마디도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하치에몬은 “오사카에서 조사받았을 때 다케시마 도해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인과 약간 교역한 것까지 숨김없이 자백했으나- 또 그 외에도 은닉한 것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고문을 해서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허언으로 증거도 없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오사카마치봉행에게 교역을 자백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술서인 『도해일건기』에는 실려 있지 않다면,

『갑자야화』의 기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도해일건기』에는 1833년 6월 이후 하치에몬이 번주의 가신 나라자키 모모하치로[檜崎百八郎]에게 요청하여 첩포 1정과 화약을 받은 사실이 보이지만, 첩포는 교역품이 아니었다.

『도해일건기』에 “다케시마를 하마다번령에서는 멀고 조선국에서는 가까운 섬이라”고 했으므로 오사카마치봉행은 다케시마를 조선국 소속의 섬으로 보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도해일건기』의 소재목은 ‘朝鮮持地竹嶋渡海一件大略(조선국의 땅 다케시마에 도해한 일건에 대한 대략)’이다. 이 역시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치에몬도 진술 서두에서 “제가 조선 땅인 다케시마에 도해한 전말에 관해 조사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sup>90</sup> 그런데 그는 다케시마를 “공도”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 이국인과 도검류를 교역했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그가 이국인을 만났다면 그런 정황이 조금이나마 언급되어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교역품으로 도검을 언급했고 에도와 여러 영지에서 사 모았다고 했으니 그 양이 적지 않을 터인데 교역 대상과 상대의 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정황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도항시말기』는 하치에몬의 도해 연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도해일건기』에 따르면 1833년이다. 선장 하치에몬은 1833년 7명의 일행을 데리고 6월 15일 하마다를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날씨 때문에 연기하다가 오키의 후쿠우라를 거쳐 다케시마에 7월 21일 착선했다. 다케시마에 오는 도중에 있는 마쓰시마(독도)는 “작은 섬으로 수목 등도 없고 또한 돈벌이 가망성도 없는 장소였으므로 상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북서쪽 다케시마로 향했다고 했다. 그가 선박을 준비해서 대기하던 중 선원이 영지의 산에서 벌목을 하는 일이 생겨 추방당했음에도 모험적으로 도해를 감행했다. 그는 몰래 번주의 가신(나라자키 모모하치로)에게 첩포와 화약을 요청했고 그 외에 창과 낫, 손도끼 등을 만들어 출범했다.”<sup>91</sup> 가로

90 『竹島渡海一件記』.

91 『竹島渡海一件記』.

오카다 다노모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해상에서 다른 배와 만나더라도 하마다번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세키슈 배라는 것도 밝히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치에몬의 모험은 이렇듯 번 중신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치에몬이 다케시마에서 별목을 하고 하마다로 떠난 날은 8월 9일이다. 그가 다케시마에서 신고 온 것은 초목과 인삼, 기타 목재 50~60그루였으나 도중에 반은 버리고 돌아왔다. 그 사이에 조선인을 만나 교역한 정황이 진술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함께 간 일행에게서도 이런 진술은 없다. 그는 1833년에는 도해에 성공했지만, 1836년 도해 준비 중에 체포되었다. 그가 1834년과 1835년에 도해했는지는 진술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

1836년의 사형 판결문에 “벌채한 나무와 인삼 비슷한 풀뿌리 등을 지니고 돌아왔다. 이국인과 만나서 교통한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나라의 경계가 불분명한 땅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 벌채한 나무와 인삼 비슷한 풀뿌리를 가지고 왔다고 한 것은 『도해일건기』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외에 하치에몬은 첩포로 쏘아 잡은 강치(원문은 胡獮)와 새도 배에 실었다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도중에 버렸다. 1830년대에 울릉도에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인과 교역할 만한 물품이 있었을까? 있다면 목재와 전복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들이 굳이 교역이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물품이다. 일본인들이 교역한 물품은 도검류와 종이였을까? 하치에몬은 다케시마 도해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으로 벌채와 어업을 제시했고, 실제로도 풀뿌리(인삼-역자)와 목재를 가져와 관리들에게 증정했다. 하치에몬과 동행했던 선원 겐조[源藏] 역시 목재와 풀뿌리를 가져와 판매했고, 이 때문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sup>92</sup>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 목적은 이렇듯 목재에 있었지 교역이 아니었다.

『덴포잡기』는 형벌을 기술했는데, 겐조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케시마에서 가져온 목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도와준 정황으로 인해 추방이나 중질책을 받

92 『天保雜記』.

았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오사카 사람이다. 이들이 다케시마 목재를 오사카에서 판매한 정황은 보이지만 다케시마에서 교역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덴포잡기』에는 교역을 운운한 정황이 보인다. 그것은 오사카마치 봉행소가 오사카에서 체포한 선장 3~4명을 조사해보니, 그들이 하마다에서 다케시마로 가서 교역했다고 진술했으므로 다시 에도로 보내 조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선장 3~4명이 오사카에서 체포되었다고 했으므로 하치에몬 일행을 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치에몬 선박의 선장은 하치에몬이다. 따라서 뒷날 팽배해진 ‘다케시마 교역’ 운운은 이 사건이 와전되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위의 내용이 『도항시말기』나 『통항일람 속편』에는 없다. 이 역시 하치에몬이 아닌 다른 운송업자들이 오사카 지역에서 다케시마를 왕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교역 정황은 위 기록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선장 3~4인의 교역 정황이 사실이라면 에도에서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야 하는데, 위 기술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오사카마치봉행이 하치에몬이 “어선의 모습으로 이국인(異國人)과 교역을 했다는 것”을 밝혀 사사봉행에게 보고한 사실은 평정소의 재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하치에몬의 아버지 세이스케의 회선 신토쿠호[神徳丸]는 16인승으로 하마다번령에서 가장 큰 배였다. 이에 비해 하치에몬의 배는 80석 적<sup>93</sup>이고 8인이 탑승했다.<sup>94</sup> 당시 하마다에서 서쪽으로 가는 배는 2~3인승이 60%, 4~6인승이 40%였다는 모리스의 조사에 의거하면, 하치에몬의 배를 작다고 할 수는 없다.<sup>95</sup> 그렇더라도 하치에몬이 교역을 했다면 종이나 철·소금·면·도자기 등을 운송하여 교역했다는 말인데, 당시 울릉도에서 이런 물품을 교역할 정

93 고지마 슌페이는 50~60석 적이라고 했다.

94 『竹島渡海一件記』.

95 모리스는 9인승에서 16인승을 대형선의 범주에 넣었다.

도의 경제규모, 즉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30년대, 즉 순조 연간의 수토기록에는 전라도 어민의 울릉도 밀어가 보이지만 이들은 주로 어로기에 왕래하던 자들이다. 교역이 있었다면 이들과 이루어졌을 것이다. 조선 측 기록에서 울릉도 잠상(潛商)이 보이는 것은 수토관과 연계된 사람들로써 울릉도 주민이 아니었으며 이들 간 거래는 조선 본토에서 이루어졌다.

모리스는 『竹島紀事略』(單)을 인용하여 “하치에몬은 어업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상은 밀상을 하고 도검과 활, 총을 시작으로 그 밖에 황국에서 나는 여러 물품을 에도 및 여러 지역에서 사 모으고 ……”라고 했다. 이는 교역 물품이 도검류에 그치지 않고 활과 총,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교역이 있었다면 일본의 물품만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리스는 하치에몬 밀무역선 교역의 가능성을 언급한 문헌으로 『갑자야화』와 『하마다정사』를 들었고, 앞에서 기술했듯이 동남아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케시마에서 주변국과의 교역 가능성은 인정했다.

『갑자야화』에는 교역 사실이 여러 형태로 보인다.<sup>96</sup> 소문 형식이지만, 다케시마에 가옥과 창고를 많이 짓고 일본 물품을 가지고 가서 이국과 교역을 한다고 했고, 다케시마에서 “조선인과 약간 교역을 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소문에는 “다케시마 교역은 조선이 아니라 그 섬(다케시마)을 중간기항지로 삼아 청나라로 배를 보내 중국 물건을 교역한 것이다”는 것도 있다. 심지어 “이전 하마다 번주의 행위는 다케시마를 출장소로 삼아 물건들을 준비하여 큰 배에 싣고 직접 청국으로 건너가서 교역했으며, ……”라는 내용도 있다. 교역 물품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일본 물품은 ‘갑옷·도검·쌀·종이·금판·철포’다. 그런데 조선이나 중국의 물품은 보이지 않는다. 에도에서 종이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다케시마로 빠져나가 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마다에서 울릉도로 가져간 종이 가 다시 외국으로 갔다면 이때의 외국은 조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하치에몬은 다케시마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으로 칭하는 것은

96 아래 내용은 전부 『甲子夜話』에서 인용한 것이다.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첩포가 제시되어 있지만, 『도해일건기』에는 창과 첩포를 향해 도중에 팔아 비용으로 썼다고 했으므로 판매품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첩포는 조수를 잡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팔았다면 돌아올 때 지참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갑자야화』에 실린 내용의 대부분이 ‘……라고 한다’는 식의 풍문에 의거한 것이므로 신빙성은 약하다. “다케시마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가 그곳에서 만나 이것을 실행했다”고 한 사실이나 “이번 사건이 재빨리 다케시마에 전해졌는지, 그 섬에 출장 중인 가신 2명이 자살했다”는 사실은 더욱 근거가 없다. 가신 2명의 자살은 오카다 다노모와 마쓰이 즈쇼를 가리키는 듯한데, 이들이 다케시마에 출장 간 사실은 없으며 그럴 리도 없기 때문이다. 『갑자야화』는 다케시마와 하마다번, 오사카 간의 교역 가능성을 기술했지만, 사실이어서 기술했다기보다는 하마다번주와 가신이 번의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막부가 조사하고 최종 판단한 결과가 선고문에 언급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하치에몬이 이국인과 만나서 교통한 일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교역 물품과 중국과의 중계 등이 여러 문헌에 언급된 정황으로 보건대, 오사카 지역의 다른 운송업자들이 조선을 중계지로 하여 중국과 교역을 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sup>97</sup>

### 3. 마쓰시마 인식과 쓰시마번

1956년 9월 20일자 일본 외무성 구상서<sup>98</sup>는 앞에서 기술했듯이, 울릉도 도해가 금지된 후에도 독도 도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하마다번 사람들은 다케시마가 도해 금지의 섬임을 알고 있었을까? 하치에몬은

97 오사카에서 선장을 체포하여 조사했을 때 다른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天保雜記』, 『甲子夜話』).

98 [竹島에 관한 1954년 9월 25일부 대한민국정부의 견해에 대한 일본국정부의 견해].

진술의 서두에서 “조선국 땅인 다케시마에 도해한 전말”이라고 했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케시마는 조선 땅으로 도해가 금지된 곳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듣고 많이 두려워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했다. 그런데 그는 한편으로 이와미국 해안 북쪽 100리쯤 떨어진 곳에 울릉도라는 공도(空島)에 초목이 무성하고 전복 외에도 물고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다.<sup>99</sup> 그 자신이 다케시마 외에 ‘울릉도(鬱陵島)’를 언급했으므로 ‘다케시마’가 조선이 칭하는 ‘울릉도’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그와 함께 1833년에 도해했던 일행들도 다케시마가 조선국 부속의 땅인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도해금지 땅을 침범한 데 따르는 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1836년 12월 23일 하치에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문<sup>100</sup>에는 “(하치에몬은) 원래부터 나라의 경계가 불분명한 땅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그가 조선의 땅으로 인식했음을 방증한다.

1831년 하치에몬이 도해를 청원했을 초기 하마다번 에도번저는 막부에 다케시마의 소속을 물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에도번저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결정하기 어려우니 도해계획을 중지해야 한다”<sup>101</sup>고 회답했다. 에도번저의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다노모의 수하 하시모토 산베는 마쓰시마에 도해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에 도해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획책했다. 이런 뜻이 가로 오카다 다노모와 마쓰이 즈쇼의 뜻이기도 함을 산베는 넌지시 비쳤다.<sup>102</sup> 막부가 이들을 소환한 것도 이들의 연루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치에몬이 다케시마를 조선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도 마쓰시마에 대해서

99 『竹島渡海一件記』.

100 『朝鮮竹島渡航始末記』와 『竹島渡海一件記』에는 보이지 않고 『통항일람 속편』과 『甲子夜話』에 보인다. 『天保雜記』에는 이시카와 휴가노카미[石川日向守]가 산베가 23일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24일에 로주에게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1 1832년 1월 18일에 하마다번 에도번저의 감정역 무라이 오기에몬이 보낸 서장(『竹島渡海一件記』).

102 『天保雜記』.

는 상대적으로 조선 경계라는 인식이 미약했을 수 있다. 산베가 하치에몬에게 “다케시마는 그만두고 시험 삼아 마쓰시마로 도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권유한 것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분리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하치에몬 역시 “마쓰시마는 작은 섬이므로 돈벌이 가능성도 없지만 에도에는 마쓰시마를 명목으로 삼아 다케시마에 도해하되, 만일 다른 곳에 누설될 경우 표착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sup>103</sup>이라고 응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들이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와 분리 인식했다고 해서 마쓰시마(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을까?

우선 다케시마의 소속에 대한 인식을 보면, 논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송휘영은 하치에몬이 쓰시마번의 가신에게 다케시마의 소속을 문의했으나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해 산베를 설득하여 다케시마행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았다.<sup>104</sup> 이는 『시마네현사』에 기술된 내용으로 고지마 순페이도 마찬가지로 보았다. 『하마다정사』에 따르면, 다케시마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세 사람을 쓰시마<sup>105</sup>로 보냈는데, 조선 서적에 우산도·무인도<sup>106</sup>·울릉도 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이름 없이 지도에 기재한 것이 있지만 섬에 가까운 도(道)와 같은 색을 칠한 것은 없었으므로 하치에몬의 말 그대로였다고 한다. 이에 다시 오카다 다노모가 에도에 있는 번주를 찾아갔더니, 잘 조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국의 물건을 오사카 동쪽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이를 하치에몬에게 전했다. 하치에몬은 산베 등과 의논한 결과 밀항이 묵허(默許)된 것으로 알고 도항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선 서적을 운운한 부분은 『시마네현사』에는 없다.

박병섭(2015a)에 따르면, 오카다 다노모가 에도번저에 다케시마의 국제(國

103 『竹島渡海一件記』.

104 송휘영, 2016, 앞의 글, 9쪽.

105 쓰시마번 에도번저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도번저로 갔다고 하더라도 하치에몬이 직접 쓰시마번의 가신에게 문의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음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닐 듯하다.

106 무릉도의 오기인 듯하다.

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줄 것을 부탁했고, 그 결과 쓰시마번에서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기록을 얻어 다케시마는 조선령이며 도해가 금지된 섬임을 확인했다고 한다.<sup>107</sup> 이는 하마다번이 에도번저에 문의하여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확인한 것을 의미한다. 『하마다정사』에는 쓰시마번의 회답 부분이 간략한데, 이를 1차 사료와 2차 문헌에 의거하여 고찰해보자. 『덴포잡기』에 따르면, 하마다번의 가로 마쓰다이와 와타리는 하치에몬의 에도 청원에 대해 막부의 담당 관리로부터 도해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하마다번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단속 방법을 강구하기는커녕 계속 조사를 했으며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와타리는 “소 쓰시마노카미 가신 스키무라 다지마를 만나 예전에 그 섬을 조선국으로 넘겨주게 되었을 때의 쓰시마번의 기록을 발췌한 것을 받았지만, 번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연금에 처해졌다. 스키무라 역시 와타리가 자신에게 조선국과 관련된 문서를 요청했을 때 바로 로주(쓰시마번주)에게 보고해야 했음에도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기록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연금에 처해졌다.<sup>108</sup>

후일 막부가 쓰시마번의 문서를 와타리에게 빌려준 경위를 묻자, 쓰시마번은 당시 스오노카미가 로주직에 있었으므로 무언가 내밀히 필요해서라고 여겨서라고 답했다.<sup>109</sup> 와타리는 “원래부터 주군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중요한 문서를 자기만 보려고 빌렸다”고 진술하기도 어렵고, 지금으로서는 답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 때문에 예탁되어 있다<sup>110</sup>고 답했다고 한다. 이 기술만으로는 와타리가 쓰시마번의 문서를 주군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하마다에 있는 다노모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도항시말기』를 보면, 하마다번주가 와타리에게서 문서를 제출받았

107 오카다 다노모가 에도의 마쓰다이와 와타리에게 요청하도록 했고, 이에 와타리가 쓰시마번의 스키무라 다지마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

108 『天保雜記』.

109 모리스의 논문(『龜山』 제14호, 35쪽)과 『甲子夜話』에도 보인다.

110 『甲子夜話』.

음을 알 수 있다. 막부가 하마다번주에게 영구침거를 명하는 달서(達書) 안에 “마쓰다이와 와타리가 소 쓰시마노카미[宗對馬守]의 기록을 발췌하여 일람하도록 제출했을 때, 왜 위의 섬을 살피고 있었는지 따질 마음가짐도 없었다는 것이 영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소군께서 생각하십니다”<sup>111</sup>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 막부는 번주가 와타리에게서 문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따지지 않았음을 힐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기술에서 하마다번주가 다케시마를 이국 땅 즉 조선 땅으로 알고 있었다고 막부가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렇지 않았다면 막부가 하마다번주가 와타리에게 따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영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힐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야화』에는 와타리가 문서를 요청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에도에서의 서화회에서 와타리가 쓰시마번의 가로와 이야기하던 중 다케시마를 조선에 넘겨준 내막을 물었고, 쓰시마번 가로는 관련 문서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와타리는 쓰시마번에서 다케시마가 조선에 넘겨준 영토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 사실을 번주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황은 모두 하치에몬이 도해하기(1833) 전의 일이다. 쓰시마번의 문서가 하마다번의 가로 다노모에게 전달되었지만 다노모는 다케시마 도해를 원하고 있었고, 산베는 그런 의중을 간파했으므로 “몰래 도해한 후에 발각되면 표류한 것으로 얘기하겠다”는 뜻을 다노모의 뜻인 것처럼 운색해서 하치에몬에게 전달했던 것이다.<sup>112</sup> 이렇듯 산베가 하치에몬의 도해를 부추긴 데는 하마다번주와 가로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와타리가 받아서 필사해두었다는 쓰시마번의 문서는 기록이 없어 내용을 모르겠지만, 후일 도해가 발각되어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부가 쓰시마번 에도번저에 문의한 기록(對馬藩宗家記錄 「답신서」<sup>113</sup>)이 있으므로 마쓰시마 인

111 『朝鮮竹島渡航始末記』.

112 『天保雜記』.

113 古文書 No.4013. 윤유숙(2012, 315쪽)에서 재인용.

식을 짐작할 수 있다. 막부는 “근년 세키슈의 주민이 오키를 거쳐 다케시마에 건너가 물품 교환을 했다고 들어 엄중하게 조사하는 중”이라면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 질문 가운데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모두 조선의 울릉도(蔚陵嶋)인가, 아니면 다케시마는 울릉도이고 마쓰시마는 조선 외의 땅인가”라는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쓰시마번은 “조선국 강원도 울진현의 동해 중에 울릉도(蔚陵嶋)라는 이도(離島)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 마쓰시마에 관해 겐로쿠 연간 로주 아베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 님이 물어보셨을 때,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어 이곳에 일본인이 도해하여 어로활동을 했다고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답변이 문서에 있기는 합니다.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도해하여 어로하는 것이 금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확정지어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 답신서에는 “조선의 지도로 보건대 울릉(蔚陵)·우산(于山) 두 섬이 있는데, 다케시마에 조선 어민들이 건너가며 목재가 많아 조선(造船)을 위해 건너간다고 합니다. 주민은 없으며 조선의 관리가 때때로 조사를 하러 도해한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sup>114</sup>

이 답변은 쓰시마번이 1836년경 확보한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번은 『다케시마기사[竹嶋紀事]』(1726)를 편찬할 무렵만 해도 『여지승람』을 인용하여 울릉·우산을 언급하는 정도였는데, 위의 답변에는 그 이상의 사실, 즉 조선 어민의 도해와 조선(造船)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울릉도에 조선 어민 특히 전라도 어민들의 왕래가 일본인에게도 자주 목격

114 윤유숙은 이 답변서를 막부가 1836년 7월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쓰시마번에 문의한 것으로 보았다(2012, 315쪽). 또한 윤유숙은 이케우치가 지적한, 막부가 쓰시마번에는 문의했으나 돗토리번에는 문의한 형적은 보이지 않으며 쓰시마번 에도번저의 루스이[留守居]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사실을 밝혔다. 막부가 돗토리번에 문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가 이미 타결된 문제고 그 최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쓰시마번이기 때문이다.

되었음을 이로써도 알 수 있다. 물품 교환이라고 한 것은 조선인의 목재를 일본인이 도검류와 교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앞서 기술했듯이 쓰시마번은 다케시마는 어로가 금지된 섬이 확실하지만 마쓰시마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막부는 쓰시마번의 애매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1837년 2월 21일의 포고에서 “…… (다케시마는) 겐로쿠[元祿] 때 조선국에 건너 주신 이후로 도해를 정지하도록 명하신 장소다. …… 이후는 되도록 먼 바다로 향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만일 막부가 다케시마는 도해금지된 곳이지만 마쓰시마는 제외된 곳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면 “되도록 먼 바다로 향해하지 말라”고 부연하는 대신 마쓰시마 도해를 어떤 식으로든 언급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막부가 겐로쿠 연간의 ‘다케시마 일건’ 이래 줄곧 두 섬을 모두 조선국 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하치에몬이 지나쳐버린 섬 마쓰시마(독도)는 그의 말대로 돈벌이 가망성이 전혀 없는 섬이었다. 따라서 이 섬은 다케시마가 도해 금지되면 도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막부가 겐로쿠 연간에 이미 도해금지령을 내린 이상 덴포 연간에 다시 도해금지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 적어도 하치에몬의 도해가 사건으로 비화하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막부는 덴포 연간 도해금지령을 다시 전국적으로 내리면서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그 외 먼 바다로의 도해를 금했다. 이런 정황이 덴포 연간 일본의 ‘마쓰시마’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마쓰시마 도해를 금지한 문서가 한 통도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일본 영토라는 다무라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한다. 이런 주장은 이케우치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이케우치는 겐로쿠 도해금지령 이후도 마쓰시마 도해만은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마즈야 하치에몬이 다케시마로 가다가 마쓰시마 가까이 지날 때 선상에서 보기만 하고 상륙조차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마쓰시마는 단독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섬, 따라서 마쓰시마는 단독으로는 ‘국경’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115</sup> 한편 이케우치는 가로를 처벌하는 판결문에 “저 섬(울릉도)을 조선국에

넘겼다는 문구가 보이지만, 막부의 질문에 대한 쓰시마번의 답변서에 그런 문구는 없으므로 쓰시마번에서 유래한 의식은 아니라고 했다.<sup>116</sup> 그러나 이미 쓰시마번은 울릉도가 조선국 땅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다시 막부에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더구나 쓰시마번의 답변서에 그런 문구가 없다는 것이 쓰시마번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 「竹寫方角圖」와 모사 지도, 도해 횡수

하치에몬사건과 관련된 지도는 하치에몬이 직접 그린 회도(竹島圖 또는 竹嶋之圖, 1833),<sup>117</sup> 하치에몬 회도의 사본 계열(1833, 1835), 그리고 『도해일건기』 부속지도 「竹寫方角圖」(1836)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회도 자체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竹寫方角圖」뿐이다. 다른 회도들은 논자에 따라 「竹嶋圖」나 「竹嶋之圖」로 불린다. 여기서는 하치에몬의 회도를 「竹島圖」로, 사본 계열을 「竹嶋之圖」로 부르겠다.

『도해일건기』에 첨부된 「竹寫方角圖」에는 “앞의 진술서의 진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시험 삼아 지도를 그렸음”이라는 메모가 있는 한편, 『수서』를 인용한 내용(按隋書曰 ……)이 다른 필체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이는 회도 작성자와 『수서』 인용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竹寫方角圖」는 『도해일건기』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하치에몬이 체포된 1836년에 그려진 것이다. 회도에는 조선국과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동일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고, 일본 지역과 오키가 동일하게 채색되어 있지 않아 채색만으로도 소속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15 池內敏, 2015, 「「國境」未滿」, 『日本史研究』 630호, 17~18쪽.

116 池內敏, 2016, 앞의 책, 143쪽.

117 스키하라 다카시는 웨다케시마문제연구소가 탑재한 글(2007)에서는 竹嶋之圖로, 『竹島問題百問百答』(2014)에서는 竹嶋圖로 표기했다.

그런데 다무라는 1955년도 보고서에서 「竹島方角圖」<sup>118</sup>와 기재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다케시마방각도」로 칭했지만 지도를 보면 『도해일건기』에 첨부된 「竹島方角圖」와 동일한 지도로 보이지 않는다. 다무라의 「竹島方角圖」에 기재된 내용이 『도해일건기』에 첨부된 「竹島方角圖」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竹島方角圖」에 기재된 주기가 더 긴데, 일부는 『도해일건기』 안에 있는 내용이고<sup>119</sup> 일부는 『도해일건기』에 없는 내용이다.<sup>120</sup> 『도해일건기』 첨부지도의 주기와 다무라 「竹島方角圖」의 주기가 다르다는 것은 다무라의 회도가 하치에몬의 진술에 의거해 그린 회도와는 다른 종류임을 의미한다.

하치에몬 회도 계열의 사본 지도에 대해서는 스키하라 다카시[杉原隆]가 조사하여 밝힌 바 있다. 그는 「八右衛門 金森建策 松浦武四郎の「竹嶋之図」について」에서 하치에몬의 「竹嶋図」 계열의 사본으로 덴포 4년(1833)의 「竹嶋之図」(A), 덴포 6년(1835)의 「竹嶋之図」(B)와 다른 회도들을 소개했다. 이 가

118 여기에 지도는 없고 「竹島方角圖」의 주기를 언급했지만, 1965년 저서에서는 지도를 실었다. 다무라 저, 김선희 역, 2010, 『다무라 세이자부로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신연구』 번역 및 해제』, 45쪽 각주 111에 지도가 실려 있다. 『竹島渡海一件記』에는 「竹島方角圖」로 되어 있는데 다무라는 「竹島方角圖」로 썼다. 통용하는 한자라서 이렇게 쓴 것인지, 다른 지도이므로 이렇게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19 “오키국(隱岐國) 후쿠우라(福浦)에서 순풍을 기다려 정북방향으로 먼 바다를 달려 마쓰시마 앞바다를 통과할 때 배 안에서 보니, 매우 작은 섬으로 수목 등도 없고 다른 무엇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일부러 상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북서쪽 방향으로 항해하였습니다”는 내용이다(다무라 저, 김선희 역, 2010, 위의 책, 45쪽). 이 내용은 『竹島渡海一件記』에 실린, 하치에몬의 진술과 거의 유사하다.

120 대략 “원래 이 섬은 이와미국 해안에서 서북쪽 방향에 해당되며 해상 100兩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울릉도라고도 불리는 空島이다. 초목이 무성하고 전복 외에도 어류가 풍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 외에 마쓰시마로 불리는 곳은 이와미국 해안에서 북쪽에 해당하며 70~80량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다. 오키국 후쿠우라에서 순풍으로 북쪽으로 가다가 마쓰시마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배 안에서 보니 매우 작은 섬으로 나무도 없고 다른 무엇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일부러 상륙하지 않고 그대로 북서 방향으로 배를 돌려 다케시마에 도착했다(兩은 리 혹은 漚의 오기일 것이다-역자).

운데 「竹嶋之図」(A)<sup>121</sup>는 1833년 11월 19일 밤 하치에몬의 「竹嶋図」<sup>122</sup>를 입수하여 겐키치[権吉]가 모사한 지도다.

그런데 「竹嶋之図」(B)는 모리스가 그의 저서에서 “하치에몬의 「竹嶋図」(鷗鷁修一씨 소장)”라고 한 회도와 매우 유사하다. 게다가 스키하라가 소개한 「竹嶋之図」(B)의 소장자도 ‘사사키 슈이치’, 덴포 6년(1835) 1월로 되어 있다. 모리스는 하치에몬의 「竹嶋図」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치에몬의 「竹嶋図」를 모사한 회도인 것이다. 모리스는 회도의 메모를 보고 모사자를 오키 도젠의 와타베 엔다유[渡部円太夫]라고 했다.

스키하라는 1833년 하마다로 돌아온 직후 겐키치가 그린 회도〈「竹嶋之図」(A)〉와 1835년 하치에몬의 회도를 보고 모사했다는 와타베가[渡部家]의 회도〈「竹嶋之図」(B)〉가 다르다는 사실이 하치에몬이 소지한 본도가 따로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스키하라는 「竹嶋之図」(B)에 적힌 내용, 즉 “덴포 4년 石州 浜田町人 金屋清右衛門(하치에몬의 아버지를 金屋清助라고 하며 金清<sup>123</sup>이라고도 속칭하는데, 하치에몬도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이 도해했다가 돌아온 다음 해인 덴포 5년(1834)과 6년(1835)에도 다케시마에 갔으므로 그때 이 지도를 그렸다”라고 한 기술에 의거하여 하치에몬이 1834년과 1835년에도 도해한 증거로 삼았다. 이는 金屋清右衛門과 하치에몬이 동일인이라야 성립한다. 문헌에는 하치에몬의 아버지가 金清, 하치에몬은 會清으로 되어 있다. 설령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논리대로라면 와타베가 모사한 회도는 하치에몬의 1833년 회도가 아니라 1835년 회도여야 한다.

121 이 지도는 2006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후나스기가 공문서관 외무성 관계 자료에서 찾아냈다고 한다.

122 “天保4年7月隱岐国島後の福浦で順風を待ち同月17日出船, 21日竹島へ入津したこと, 8月23日竹島を出船し同月27日に石州浜田浦へ入津したこと”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

123 『朝鮮竹島渡航始末記』에 따르면 하치에몬의 아버지가 清助고, 『竹島渡海一件記』에 따르면 하치에몬이 金清이다.

한편 스기하라의 「竹嶋之図」(A)에 대하여 추정하기를, 이 회도가 하치에몬 회도를 모사한 것이라면 石州를 생략하고 浜田으로 썼을 것인데, 石州로 썼으므로 하치에몬의 회도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스기하라의 논리대로라면, 「竹嶋之図」(B)에서 “石州 浜田町人 金屋清右衛門……”이라고 한 경우도 金屋清右衛門을 하치에몬으로 보기는 어렵다. 金屋清右衛門이 하치에몬이라면 石州를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竹嶋之図」(B)가 하치에몬 회도의 모사본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로써 하치에몬의 3년 연속 도해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치에몬 자신도 1833년에만 도해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하치에몬이 직접 그린 지도가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현존하는 「竹寫方角圖」와 그 모사 지도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치에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을 기입한 지도가 1835년의 「竹嶋之図」(B)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 이는 다무라가 「竹島方角圖」라고 명칭한 지도에 기입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竹嶋之図」(B)의 기재에 의거하면 金屋清右衛門이 돌아온 다음 해인 1835년경에 이 지도를 그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무라가 말한 「竹島方角圖」는 하치에몬이 초기에 그렸던 「竹嶋之図」와 거의 같은 형태로 1835년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스기하라의 ‘石州’ 표기 때문에 하치에몬의 지도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지도의 주기에 “다케시마 외에 마쓰시마로 불리는 곳은 이와미국 해안에서 북쪽에 해당하며 70~80량 정도 떨어진 작은 섬이다”라고 기재된 것은 1831년에 하치에몬이 낸 의견서에 “다케시마 외에 이와미 해안에서 북방으로 70~80리 떨어진 곳에 마쓰시마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는데 ……”라고 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다무라가 제시한 「竹島方角圖」는 하치에몬이 직접 그린 회도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회도가 1835년에 그려졌다는 것은 1833년에서 1835년까지 도해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아울러 시사한다.

「竹寫方角圖」가 하치에몬 개인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 『도항시말기』에 첨부된 지도는 에도막부의 인식을 드러낸다. 「竹寫方角圖」는 조선국과 부

속 도서를 채색하여 영토 소속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데 머물렀지만, 『도항시 말기』 부도는 이뿐만이 아니라 거리관계까지 표시했다. 조선에서 다케시마까지는 36리(里)인데 비해 이와미[石見]에서 다케시마까지는 89리(り),<sup>124</sup> 부산에서 쓰시마까지의 거리를 48리로 표시하여 다케시마가 조선 소속임을 거리로 나타냈다. 그리고 ‘마쓰시마[松シマ]’를 함께 그려 넣고 ‘다케시마’와 동일하게 채색하여 조선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전 회도에서 오키나 호키에서 다케시마 혹은 마쓰시마까지의 거리를 명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와미를 명기한 것은 이 회도가 처음이다. 이런 인식의 변천은 겐로쿠 연간에서 하치에몬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지리적 지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덴포 다케시마일건’은 하마다번주와 가신이 다수 개입된 일대 사건이었다. 1836년 6월 10일 오사카마치봉행은 사사봉행에게 사건 관련자 명단과 처리 등을 인도했고 그로부터 7개월에 걸쳐 관련자 호출과 입감, 조사가 이뤄진 뒤 1836년 12월 23일 최종 선고문이 나왔다. 막부가 최종 판결한 사항을 보면, 사형(2명), 무기징역(2명)과 ‘오사카 3향(郷) 구류 및 에도 밖 추방’,<sup>125</sup> 물건 몰수와 중추방(2명), 경추방(2명), 직책 박탈과 연금(2명), 연금(6명), 주대은(酒代銀) 몰수<sup>126</sup>와 중질책(2명), 수수료 압수와 중질책(2명), 중질책(2명), 벌금 3관문(1명), 무죄(12명) 등의 형태였다.<sup>127</sup> 선고는 사사봉행 가와치노카미가 했다. 하마다번주에게는 오메쓰케를 통해 따로 영구칩거의 명이 내려졌다.

124 조선과의 거리는 리로 표기했는데 이와미에서 다케시마까지는 ‘り’로 표기했다.

125 『甲子夜話』에만 보인다.

126 『통항일람 속편』에는 ‘助代銀’으로 되어 있다. 오기다.

127 처벌 관련 내용은 문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이 글은 평정소의 판결을 수록한 『朝鮮竹島渡航始末記』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풍문은 과장되어갔고, 후대의 기술은 단순한 다케시마 불법 도해사건이 ‘밀무역 사건’으로 변질되어갔다. 이에 하치에몬을 밀무역자로 기술하다가 개척자로 변모시켰고, 하마다 지역에서는 개척자 ‘하치에몬상’을 확립시켰다. 다만 일본 기록에서도 밀무역의 대상이나 교역 물품에서는 기록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마쓰시마 즉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양국이 독도 영유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 1950년대 초반에 와서야 비로소 하치에몬사건에서의 마쓰시마가 주목받았다. 다무라가 처음으로 이를 제시하여, 다케시마는 도해가 금지되었으므로 마쓰시마 도항을 명목으로 간 것이고 그 때문에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외무성의 가와카미가 계승했고, 급기야 일본 정부는 1956년에 “竹島(울릉도) 도해 금지 후에도 松島(오늘날의 竹島)로의 도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논리적 변화와 사실 왜곡의 계보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동안 한일 양국에서는 사건을 ‘밀무역 사건’으로 단편적으로만 규정해왔고, 특히 일본은 도해 명분으로 삼았다는 ‘마쓰시마’를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유리하게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1차 사료 특히 평정소의 최종 판결문에 주목해보면, 적어도 다케시마에서 밀무역이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치에몬 일행이 다케시마 즉 울릉도에서 목재와 인삼 등을 싣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조선인과 교역하거나 울릉도를 중계지로 하여 중국인과 무역한 정황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마다번의 문의를 접한 막부가 바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바로 확인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쓰시마번 에도번저에 겐로쿠기의 외교문서가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쓰시마번이 막부와 조선 간의 외교 분쟁에서의 실무자였으므로 막부가 dots리번이 아닌 쓰시마번에 다케시마 소속을 문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쓰시마번의 이런 역할 때문에 막부는 덴포기에도 쓰시마번 가신이 번주와 막부에의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하마다번과 직접 교류한 사실을 문책한 것이다. 덴포기 막부의 질의에 대

하여 쓰시마번은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된 것인지 확정짓기 어렵다고 회답했지만, 막부가 이를 참조하여 도달한 최종 결론이 바로 1837년 2월의 포고다. 이는 막부가 겐로쿠 연간의 분규를 겪은 뒤 줄곧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덴포기에 이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임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甲子夜話』(동양문고)
-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시마네현 소장)
- 『朝鮮竹島渡航始末記』(하마다도서관 소장)
- 『竹島渡海一件記』(도쿄대학도서관 소장)
- 『天保雜記』(국립공문서관 소장)
- 『通航一覽續編』(淸文堂出版)
- 岩見史談會 編, 1935, 『濱田町史』.
- 奥原碧雲, 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 田村清三郎, 1955, 『竹島問題の研究』, 島根縣.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4, 『「竹島問題 100問100答」에 대한 비판』, 경상북도.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6, 『독도관계 일본 고문서 3』, 경상북도.
- 송휘영, 2014,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독도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北澤正誠 著, 정영미 역, 2006, 『독도자료집 2-「竹島考證」』,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 森須和男, 김수희 역, 2016, 『하치에몽(八右衛門)과 죽도도해금지령: 이마즈야 하치에몽의 죽도사건과 근세해운』, 지성인.
- 內藤正中·김병렬, 『史的檢證 竹島·獨島』, 岩波書店, 2007.
- 森須和男, 2002, 『石見学ブックレット3 八右衛門とその時代-今津屋八右衛門の竹嶋一件と近世海運』, 濱田市教育委員会.
- 池内敏, 2006,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 朴柄涉, 2015a, 「元祿・天保竹島一件と竹島=獨島の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0号, 鳥取短期大学.

- 박병섭, 2015b,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독도연구』 제19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송취영, 2016, 「『天保竹島一件』을 통해 본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日本文化學報』 제68집, 韓國日本文化學會.
- 신석호, 1960, 「독도의 내력」, 『사상계』(『독도』, 1965 수록).
- 윤유숙, 2012, 「18~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 제118집.
- 이계황, 2017,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과 이마즈야 하치에몽(今津屋八右衛門)의 울릉도·독도도해사건」, 『學林』 제39집, 인하대학교.
- 森須和男, 1987, 「竹島一件について」, 『龜山』 제14호, 濱田市文化財愛護會.
- 森須和男, 1996, 「竹嶋一件考－今津屋八右衛門」, 『龜山』 제23호, 濱田市文化財愛護會.
- 森原隆, 2007, 「八右衛門・金森建築・松浦武四郎の「竹嶋之圖」について」, 웹다케시마문제연구소.
- 兒島俊平, 1986. 10, 「會津屋八右衛門 竹島密貿易事件の真相」, 『龜山』 제13호, 濱田市文化財愛護會.
- 池內敏, 2005, 「近世から近代に至る竹島(鬱陵島)認識について」, 『日本海域歴史大系』 4.
- 池內敏, 2007, 「近世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卷 1号.
- 池內敏, 2015, 「「國境」未滿」, 『日本史研究』 630호, 日本史研究會.
- 樋畑雪湖, 1930, 「日本海に於ける竹島の日鮮關係に就いて」, 『歴史地理』 55-6, 日本歴史地理學會.
- 河田竹夫, 1987, 「竹島事件の受難者 橋本三平と今津屋八右衛門」, 『龜山』 제14호, 濱田市文化財愛護會.

## ‘덴포 다케시마일건’ 연구와 쟁점에 대한 고찰

유미림

1833년에 울릉도에 불법 도해한 일이 발각되어 사형에 처해진 이른바 ‘하치에몬사건’은 밀무역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에도막부의 최고사법기관 평정소는 조사한 후 울릉도에서 밀무역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일본에 비해 부진하다. 다만 한국은 하치에몬의 처형이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승인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하치에몬사건’ 당시 마쓰시마 도항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도해금지령이 내려진 후에도 마쓰시마 도항은 문제 없었고, 따라서 이는 마쓰시마 즉 독도가 일본 영토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 이에 막부는 도해금지령에서 “되도록 먼 바다로 나아가지 않도록” 했고, 지도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즉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동일한 색으로 채색했던 것이다. 막부의 1837년 2월의 도해금지령은 일본이 17세기 이래 줄곧 두 섬을 조선의 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재확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주제어:** ‘덴포 다케시마일건’, 이마즈야 하치에몬, 마쓰시마, 밀무역 사건, 다케시마방각도

## ABSTRACT

# A Review of Research and Issues on the “Tenpō Takeshima Ikken”

Yoo Mirim

The so-called Hachiemon Incident, in which a Japanese man called Hachiemon illegally crossed to Ulleungdo in 1833 and was executed in 1836, has been regarded as a smuggling incident. However, the supreme judicial organization of the Edo Bakufu concluded that smuggling had not been conducted in Ulleungdo. Research in Korea on this theme is not comparable to that by scholars in Japan. However, Korean scholars claim that the execution of Hachiemon meant that Japan had accepted Ulleungdo and Dokdo as being Joseo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Japan insisted that there was no problem in crossing to Matsushima after the ban was issued because there was no problem in crossing to Matsushima at the time of the Hachiemon Incident. Thus, Japan claimed that Matsushima, that is,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However, the Edo Bakufu, as with Takeshima, recognized Matsushima as Joseon territory. In the meantime, the Edo

Bakufu stated, “Do not go far into the sea.” On maps, Takeshima and Matsushima, Ulleungdo and Dokdo, were depicted in the same colors as Joseon. The Edo Bakufu’s prohibition in the second lunar month of 1837 indicates that the bakufu had recognized the two islands as belonging to Joseon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and had reaffirmed that possession by Joseon.

**Keywords:** “Tenpō Takeshima Ikken,” Imazuya Hachiemon, Matsushima, smuggling incident, Takeshima map



#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와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홍선표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1917년 소약국민동맹회의의 개최와 박용만의 참가활동
- III. 1918년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와 재미 한인의 선전·외교활동
- IV. 맺음말

## I. 머리말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함과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희망의 기대치를 고조시킨 격동의 시기였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윌슨 대통령이 내건 14개조의 평화조건과 민주주의의 이념 때문에 전쟁 후 개최될 평화회의가 제국주의 시대의 것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예고할 것이라는 점이 그러한 기대치를 더욱 높여주었다. 뉴욕에서 두 차례나 개최한 소약국민동맹회의는 비록 전후(戰後) 평화회의와 같은 관심을 받을 만큼의 국제회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약소국 민족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대변해 향후 평화회의의 때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약소 민족들에게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이런 사정으로 미주 한인들은 처음으로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해 식민지 한국의 입장을 호소하고 국제회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그동안 우리 학계는 파리평화회의에서의 외교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온 까닭에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다.<sup>1</sup> 소약국민동맹회의를 둘러싼 활동에 대해선 뉴욕에서 활동한 김현식의 활동을 고찰한 방선주의 글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3·1운동 전후 이승만의 활동을 언급한 고정휴의 글에서, 민족자결과 2·8독립운동을 언급한 송지혜의 글 등에서 소략히 다루었다. 나가타 아키히미의 글에는 정한경의 독립청원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신한회의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것은 파리평

\* 투고: 2017년 8월 9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5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소약국민동맹회의를 둘러싼 활동을 언급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방선주, 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고정휴, 2004,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나가타 아키히미 저, 박환무 역, 2008,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송지혜, 2012, 「민족자결의 수용과 2·8독립운동」, 『동양정치사상사』 11권 1호.

화회의에만 주목한 나머지 소약국민동맹회의의 참가활동을 둘러싼 역사적인 실체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인 대표들이 참가했던 소약국민동맹회의는 미주 한인들이 1910년대 들어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회의다. 소약국민동맹회의의 원명은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인데 번역 과정에서 ‘소약국동맹회’, ‘약소국동맹회’, ‘소약속국동맹회’ 등으로 소개되었다. 본 글에서 ‘소약국민동맹회’로 한 것은 1918년 미주의 한인들이 사용한 때문이다. 소약국민동맹회가 주최한 대회는 소약국민동맹회의(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로 부른다. 미주의 한인들은 이 같은 국제회의에 참가함으로써 그동안 한인 내부분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미주한인사회에 한국 독립문제를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대비하는데 소중한 역사적인 경험을 가졌다.

본 글은 소약국민동맹회가 어떤 단체고 이 단체가 추진한 대회가 어떤 성격이었던지를 살펴 소약국민동맹회의의 모습을 조명할 것이다.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두 차례나 참가한 한인 대표들이 거기서 어떤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미주한인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대전 종결을 앞두고 예상되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향후 2·8독립운동과 3·1운동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열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소약국민동맹회의를 통한 미주 한인들의 활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은 물론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데 적절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1917년 소약국민동맹회의의 개최와 박용만의 참가활동

### 1. 소약국민동맹회의의 개최

미주 한인들이 소약국민동맹회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아메리칸 리더

(*American Leader*)』 1917년 6월 28일자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서다. 이 기사를 본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는 7월 7일자로 본 잡지사 총무 칼드웰에게 소약국민동맹회 서기 잔코브스키(Vincent F. Jankovski)에게 문의하는 아래의 서신을 보냈다.

『아메리칸 리더』 금년 6월 28일자를 본즉 소약국동맹회가 있다 하였는데 당신이 그 회 총무 중의 한 사람이라 하기로 나는 지금 당신에게 편지하여 그 회의 목적과 중지를 알고자 하오니 이 회가 만일 미국 정부 정치상에 저축이 없으면 알려주기를 바라나이다.<sup>2</sup>

칼드웰은 7월 14일자로 북미총회에 “소약국동맹회 총무 잔코브스키의 거처는 우리가 알 수 없나이다. 당신이 그 거처를 알려거든 뉴욕 폴란드 사람의 신문사에 알아보시오” 하고 회신하였다.<sup>3</sup>

회신을 받은 이대위는 잔코브스키의 종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약국민동맹회와 교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소약국민동맹회의가 열릴 경우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것인데 그럴 때 우리 한인들이 대표자를 보내되 일 개인 혹은 일부분의 명의로 보내지 않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우리 재외 한인 최고기관의 조사 발표와 전체 활동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북미지방총회가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을 때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장 안현경은 동년 10월 11일자로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다음의 공문을 보냈다.

경계자 금번 뉴욕에서 소약국동맹회로 회집한다는 공함을 급속히 接承하고 미처 귀 총회와 상의치 못하고 특히 본 지방 총회에서 박학사 용만군을 선정하여 대표

2 “소약국동맹회에 한인 대표자 보낸 사”, 『신한민보』, 1917. 10. 24.

3 위와 같음.

로 금월 17일 발하는 맛소니아 선편에 금 29일 該 會席에 참여케 하오니 조량하  
심을 무망함.<sup>4</sup>

북미지방총회는 소약국민동맹회의 결성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내 문의하고  
향후 대표자 선발을 기관 전체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  
이 하와이지방총회에서 박용만을 대표자로 선정해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한  
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북미지방총회의 입장은 내심 난감하고 하와이  
지방총회에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표자로 선정된  
박용만이 이미 선편으로 출발하였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아메리칸 리더』는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계 미국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뉴욕에 본부를 둔 외국어신문 미국인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Newspapers: 회장 Louis N. Hammerling, 부회장 Don S.  
Momand)가 매월 두 차례씩 발행하는 잡지다. 이 잡지의 1917년 6월 28일자 사  
설 “Small Nations Leagued Together(약소 민족들이 함께 연맹을 결성하다)”에  
서 동년 6월 뉴욕에서 약소 민족의 동맹회가 새로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처음으  
로 알렸다.

6월 28일자 사설에서 처음으로 밝힌 소약국민동맹회는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라는 미국 독립운동의 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단체라 하였다. 그리  
고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훼손하는 편견과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으로  
피난했던 각 민족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과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단체  
로 소개하였다.

소약국민동맹회가 결성된 직접적인 배경은 1917년 들어서 윌슨 미 대통령이  
이 행한 두 차례의 연설 때문이었다. 1916년 대통령 선거 때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비교적 성공적인 중립을 지켰다는 여론에 힘입어 재선한 윌슨은 1917년

---

4 위와 같음. 미정리 대한민국민회자료(LA 대한민국민회총회관 소장자료), 36권-  
B3-427, 「안현경이 북미지방총회장에게 보낸 서신」(1917. 10. 11).

1월 22일 미 상원에서 ‘승리 없는 평화(peace without victory)’로 잘 알려진 연설을 했다.

승리란 패자에게 강요된 평화이며 승자의 조건이 패자에게 강요된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며, 굴욕을 감수하며, 협박을 강요당하는 것이며, 그것은 고통과 분노와 모진 기억을 남길 것이며, 그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평화조건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동등한 조건에서 맺어진 평화만이 지속될 수 있다. …… 그것이 영토나 인종적 국가적 충성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sup>5</sup>

그의 연설은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기 전까지 제국주의적 전쟁을 종식시키고 향후 전쟁이 없는 공정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월슨의 연설 직후 1월 31일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작전을 개시하자 미국의 참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월슨은 4월 2일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전쟁 선포를 요청하는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국가들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질투와 의심과 비밀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유일한 제도라고 역설하였다.<sup>6</sup> 즉, 민주주의를 민족자결주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 간의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였다.<sup>7</sup> 그의 연설로 미국은 4월 6일 참전을 선포하고 연합국의 편에서 전쟁에 돌입했다.

월슨의 두 연설은 미국 내 약소 민족과 피압박 민족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그가 언급한 영원한 평화의 기반인 민족의 평등-영토나 자원의 평등

5 박현숙, 2010, 「월슨 평화주의의 모순: 1차 세계대전의 참전 결정과 베르사유 평화 회담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98, 11쪽.

6 “The President Address,” *The American Leader*, April 26, 1917.

7 같은 글, 30~31쪽.

이 아닌 권리의 평등-주장은 소약국민동맹회를 결성하는 데 주요 자극제가 되었다.<sup>8</sup>

소약국민동맹회의는 25개국 대표들이 참가하여 1917년 10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뉴욕 맥알핀(McAlpin) 호텔에서 개최되었다.<sup>9</sup> 첫째 날 개회식에 55명, 둘째 날 회의에 55명이 참석한 것을 보아 3일 동안 총 160명 내외의 사람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소약국민동맹회의 조직은 결성 당시 회장 하우(Dr. Frederic C. Howe),<sup>10</sup> 재무 듀톤(Dr. Samuel T. Dutton),<sup>11</sup> 서기 쟌코브스키(Vincent F. Jankovski)<sup>12</sup>와 스미스(Marion A. Smith)로 구성되었으나 회의를 마칠 무렵 쟌코브스키만 제외하고 모두 재선되었다.<sup>13</sup> 임원진 외 각국(또는 각 민족)의 대표자로 구성된 1년 임기의 위원회를 두었고 위원회는 헌장 제정, 규정

8 “Small Nations Leagued Together,” *The American Leader*, June 28, 1917.

9 25개국 약속 민족 대표가 참가했다고 보도하거나 기록한 곳은 *The American Jewish Chronicle*(Vol. 3, 1917, “Small Nationalities to Voice Their Demands”)과 나가타 아키후미의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일조각, 2008, 103쪽)이다. 그런데 직접 대회에 참가했던 박용만은 24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것으로 전했다(“상항지방회에서 박용만씨를 환영”, 『신한민보』, 1917. 12. 13). 실제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벨기에인·덴마크인·핀란드인·리투아니아인·라트비아인·한국인·유대인·중국인·알바니아인·인도인·폴란드인·그리스인·아일랜드인·노르웨이인·아프리카인·보아인·스위스인·스코틀랜드인·스웨덴인·시리아인 등 20개국이다(“Through Liberty to World Peace,” *The Survey*, November 10, 1917).

10 회장 하우는 독일에서 공부하였고 뉴욕 엘리스섬에 있는 미국 이민국장이자 미국인 중립대회(American Neutral Conference) 위원으로 이번 소약국민동맹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이끈 인물이다.

11 재무 듀톤은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사법연맹(The Worlds Court League) 서기며 이번 대회 연사로도 활동했다.

12 서기 쟌코브스키는 리투아니아인 전쟁구제위원회(The Lithuanian War Relief Committee) 부회장으로 이번 대회에서 리투아니아인을 대변하였다.

13 “Small Nations Leagued Together,” *The American Leader*, June 28, 1917; “Economic Rights of Small Nations,” *The Norwich Bulletin*, November 1, 1917.

개정, 회원 가입, 그리고 기타 조직의 목적에 따른 사무 등을 처리하게 했다.<sup>14</sup>

대회는 1917년 10월 29일 오후 2시 맥알핀 호텔에서 회장 하우가 「대회의 원칙과 목적」이란 연설을 시작으로 개막되었다. 대회 진행은 초청 연사의 연설과 각 약소국 민족 대표들의 연설, 그리고 주요 안건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박용만은 개막 첫날인 저녁 회의 때 덴마크인·핀란드인·벨기에인·리투아니아인의 연설 다음으로 한국 문제에 대해 연설했다.<sup>15</sup> 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안건들은 모두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결되었고,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소약국 민동맹회의 규정과 강령, 그리고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다.<sup>16</sup>

규정·강령·결의안의 내용은 『신한민보』 1918년 11월 28일자부터 12월 26일까지 네 차례 연속 게재되면서 한인들에게 알려졌다. 이것은 1917년 제1차 소약국민동맹회 회의에 참가했던 박용만이 동년 11월 29일자로 북미지방총회 앞으로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박용만이 준 것을 여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1918년 11월에 와서야 공개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재개될 예정인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민찬호와 정한경이 참가를 앞둔 마당에 미주 한인들에게 소약국민동맹회가 무엇인지를 알려 관심을 촉구하고 두 대표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소약국민동맹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약소하고 압박받는 민족들의 항구적인 의회를 설립한다
2. 국제회의에 약소 민족의 독자적인 발언권을 주장한다.
3. 약소 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전 세계에 알린다.
4. 약소 민족에게 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계 평화의 필수 조건임을

14 “소약국동맹회규정”, 『신한민보』, 1918. 11. 28.

15 “Attack on Small Nations League,” *The Sun*, October 29, 1917.

16 “Economic Rights of Small Nations,” *The Norwich Bulletin*, November 1, 1917.

17 “박용만씨의 회정”, 『신한민보』, 1917. 11. 29.

강조한다.

5. 미국 내 각 민족들 간에 우호를 증진하여 미국 문화의 기반을 확대한다.<sup>18</sup>

강령은 설립 목적 1항에서 언급한 소약국 민족을 위한 항구적인 ‘의회’ 설립에서 ‘소약국민동맹회’ 설립으로 바뀐 것 외에 약간 부연 설명을 더했을 뿐 전체 내용은 설립 목적과 거의 같다.<sup>19</sup>

3일 동안 열린 소약국민동맹회의에서 채택된 9개 결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소 민족의 정치·경제적 자유권의 회복과 이러한 권한이 또다시 침범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할 것을 강조한다.
2. 어떤 특정 국가가 이익이나 특권을 독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과 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모든 나라에게 동등한 조건과 자유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의 조건이다.
3. 평화회의에서 약소 민족의 대표자에게 발언권을 줄 것과 이들의 사정을 공개 석상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 이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와 약소 민족의 자유를

---

18 소약국민동맹회가 발표한 설립 목적은 아래와 같다.

First, to establish a permanent congress of small, subject and oppressed nationalities.

Second, to assert their right to separate re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nference.

Third, to present their case to the world.

Fourth,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granting their rights a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world peace.

Fifth,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among all nationalities in America and thus broaden the basis of American culture.

(“Small Nations Leagued Together,” *The American Leader*, June 28, 1917; “Small Nationalities to Voice Their Demands,” *The American Jewish Chronicle*, Vol. 3, 1917)

19 “소약국민동맹회 강령과 결의”, 『신한민보』, 1918. 12. 5.

옹호하는 모든 국민에게 호소하며 특별히 약소 민족의 완전한 발인권 확보를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4. 각국의 정치와 경제 문제 등을 공정하게 다룰 국제사법재판소의 설치를 요구한다.
5. 어떤 민족이든지 언어나 종교의 차이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압제받지 않을 것이며 누구든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어와 행복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6. 전쟁 기간 동안 행해진 비난받을 야만적인 행동과 잔혹한 행위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7. 무슨 이유든 간에 본국에서 강제 추방되었거나 망명한 모든 사람들을 본국으로 복귀시켜 주는 것과 강대국에 의해 당한 개인의 재산 피해를 배상하고 복구할 책임은 강대국에게 있으며 이 모든 궁극적인 책임 소재의 문제는 모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제사법소에서 결정한다.
8. 압박하고 착취하는 것을 폭로하는 일에 모든 약소국과 약소국 민중들이 소약국 민동맹회와 함께 활동하기를 바라고 당장 세계 모든 피압박 약소 민족을 위한 국제회의를 준비하여 현재의 부당성을 알리고,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서로 소통할 것을 주장한다.
9. 약소국의 정치·경제·사회의 사정들을 서로 공유하고 경제상의 문제는 공동의 이익을 피하도록 상호 간에 단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미국 정부의 동정과 협력을 얻도록 힘쓴다.<sup>20</sup>

---

20 결의안의 주요 원문은 *The Survey* (November 10, 1917)에서 “Major Resolutions Adopted by the First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결의안에는 8조까지만 있고 9조는 생략되어 있다. 나머지 9조는 『신한민보』, 1918년 12월 26일자 「소약국민동맹회 강령과 결안」에 있다. 『신한민보』에 게재된 결의안의 내용은 *The Survey*에 게재된 영문 결의안과 비교할 때 번역상의 문제 때문인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본 글은 두 자료를 비교해 결의안을 재정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 의원, 그리고 해당 정부에 전달되도록 각국의 공사에게 보내는 것으로 정했다.

소약국민동맹회의는 전 세계 피압박 약소국과 약소 민족의 입장을 대변할 목적으로 야심차게 첫 출발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특히 주요 언론의 경우 이번 대회 of 존립 가치와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하거나 폄하하는데 더 열을 올렸다. 가장 큰 요인은 소약국민동맹회의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규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친독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번 회의 개최식 날부터 종결 직후까지 4일 연속 보도했다. 10월 29일자 『뉴욕 타임스』는 독일에 우호적인 소약국민동맹회를 비난하며 대표자들이 철수하였다라는 부제를 담은 “Quit Convention For Small Nations(약소국을 위한 회의를 중단하다)”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8명의 대회 반대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집중 보도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하우 회장과 스미스 서기의 해명은 간략하게 실었다. 10월 30일자 『뉴욕 타임스』는 “Denies Help For Germany(독일을 돕는 것을 부인하다)” 기사에서 이번 회의가 독일과 터키의 입장을 은근히 대변하고 있다는 것과 연사들의 연설 내용을 검열하고 있다는 비난, 그리고 하우 회장의 반박 내용 등을 게재하였다. 하우는 윌슨 대통령의 연설을 상세히 인용하며 항구적인 평화는 약소 민족 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 투자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관리를 촉구하였다. 10월 31일자 『뉴욕 타임스』는 “Greek Wary of Germans(독일인을 경계하는 그리스인)”라는 기사에서 그리스의 작가이자 편집장인 폴리조이디스(Adamantios Polyzoidis)가 친독일주의로 의심되는 소약국민동맹회의에서 그리스의 사정을 연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연설을 철회했다는 내용을 중점 보도하였다. 또 연합국 영국을 비난하며 아일랜드의 독립을 강조한 아일랜드 대표 스케핑톤(Mrs. Sheehy Skeffington)의 연설을 열렬히 지지한 청중들의 반응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전쟁을 일으킨 독일보다 미국과 같은 연합국인 영

국을 더 비난한 것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었다. 11월 1일자 『뉴욕 타임스』 “Silent To Wilson Praise(윌슨 찬양에 침묵하다)” 기사에는 *The Persian Courier*과 *The New Assyria*의 편집장으로 시리아인을 대표한 베르다(Joel E. Werda)가 10월 31일 마지막 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자결권을 주지 않으면 평화가 없다고 주장한 윌슨을 세계의 구원자로 찬양하자 청중들이 일제히 침묵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대신 스코틀랜드의 입장을 옹호하며 영국을 공격한 한 연설자의 연설에 대해선 크게 박수를 보낸 사실을 비교 보도하였다. 이처럼 『뉴욕 타임스』는 4일 동안 연합국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오히려 친독주의로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한 대회 반대자들의 주장 쪽에 서서 연속 보도함으로써 이번 대회를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 외 *The Sun*과 *The New York Tribune*, *The Evening Star*, *The Daily Ardmoreite*, *The Brattleboro Daily Reformer*도 『뉴욕 타임스』와 비슷한 논조로 이번 대회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sup>21</sup> *The Daily Ardmoreite*와 *The Brattleboro Daily Reformer*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내 유력 신문들이다. 대회 개최 사실과 주최 측의 입장 위주로 간단히 보도한 신문은 필라델피아에서 발행한 *The Public Ledger*와 군소 언론인 *The Grand Forks Herald*, *The Norwich Bulletin* 등이다.<sup>22</sup>

21 여기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Attack On Small Nations League,” *The Sun*, October 29, 1917; “Greek Author Says Hosts Pro-German,” *The Sun*, October 31, 1917; “Ex-Leaders Call League for Small Nations Pro-Teuton,” *The New York Tribune*, October 29, 1917; “Disloyalty Charge Stirs Convention,” *The New York Tribune*, October 31, 1917; “Plan To Assert Rights at Conclusion of War,” *The Evening Star*, October 29, 1917; “League of Small Nations Opens Congress in Gotham,” *The Daily Ardmoreite*, October 29, 1917; “Objected to Purposes,” *The Brattleboro Daily Reformer*, October 29, 1917.

22 “Todays Events,” *The Public Ledger*, October 1917; “Small Nations Must Be Assured of All Rights, Says League,” *The Grand Forks Herald*, November 1, 1917; “Economic Rights of Small Nations,” *The Norwich Bulletin*, November 1, 1917.

미국 내 언론 가운데 소약국민동맹회의의 목적과 의미를 가장 잘 정리해 보도한 곳은 *The American Jewish Chronicle*과 *The Survey*이다. 알파 오메가(Alpha Omega)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유대인 잡지 *The American Jewish Chronicle*은 이번 회의의 목적과 향후 평화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약소 민족들의 열망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sup>23</sup>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유대 민족도 자신들의 열망을 강조할 것이라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뉴욕에 본부를 둔 조사협회사(The Survey Association Inc.)가 발행한 미국 사회 현상 조사 전문 주간 잡지 *The Survey*는 11월 10일자 “Through Liberty to World Peace(자유를 지나 세계 평화로)”의 기사에서 상세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로 이번 대회를 정리하였다. *The Survey*는 소약국민동맹회의를 역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한 사건으로 간주하고 긴급하고 실제적인 새로운 목적을 위해 국제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친독 감정을 일으켰다거나, 대형 언론들이 대회 목적을 축소하고 폄하한 사실, 오해로 빚어진 대회 참석자들 간의 내부 갈등, 각 민족 대표자들에 대한 과소평가의 시각 등으로 일반 미국인들이 이 대회를 적대적인 태도로 보게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위원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다양한 민족 대표들이 참가하여 대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혼란스럽게 끝났다고 했다. *The Survey*는 만약 아일랜드인·한국인·핀란드인·인도인·리투아니아인·러시아계 폴란드인 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배제되었더라면 본 대회는 완전히 그 목적에서 실패했을 것이라 했다. 그렇다면 소약국민동맹회가 약소 민족의 일반 감정과 여론을 대표한다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수세기 동안 아일랜드를 압박한 것은 영국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축적하고 있는 소수 집단이며, 약한 이웃 민족을 통제하는 것은 제국이 아니라 이 제국 안에 있는 소수의 경제 계급이라는 소약국민동맹회장 하우의 말을 빌려 전

23 “Small Nationalities to Voice Their Demands,” *The American Jewish Chronicle*, Vol. 3, 1917.

쟁의 대상은 그들의 국가가 아니라 적은 숫자의 착취 계급이라 했다. 미국을 피압박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실한 친구로 간주한 것에 대해 일부 반론도 있었지만 결의안을 통해 미국 정부의 도움과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전했다. 소약국민동맹회는 약소 민족들 간 상호보호를 위한 조합과 같은 조직의 첫발이지만 이를 뛰어넘은 세계적인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고 나아가 서로 계속 단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발전과 행복은 정치적인 해방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경제적인 해방을 수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 관계를 보장할 것과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설치 주장을 옹호하였다. 끝으로 *The Survey*는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게재하고 본 대회의 보도를 마무리하였다.<sup>24</sup>

*The Survey*는 이번 대회의 진행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난 결의안을 세밀히 분석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 볼 수 없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까지 소개하여 소약국민동맹회의의 목적과 의도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해주었다.

## 2. 박용만의 대회 참가와 활동

박용만은 예정대로 1917년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바로 신한민보사를 들러 방문 목적을 설명하였다.

나는 하와이 총회의 명령을 받아 본월 29일 뉴욕에 모이는 소약국민동맹회에 출석하러 가노라. 동맹회의의 이번 모임은 다만 임원 조직을 위함이라. 나는 이 모임에 소식을 가져 귀사에 통지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이 동맹회에 관한 모든 일을 하와이 지방총회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겠노라.<sup>25</sup>

24 “Major Resolutions Adopted by the First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The Survey*, November 10, 1917.

25 “박용만씨 내상”, 『신한민보』, 1917. 10. 24.

약소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처음 뉴욕에서 열린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전체 대한인국민회의 대표가 아닌 하와이지방총회를 대표해 활동한다는 입장이었다.

박용만이 하와이지방총회의 입장을 대변해 참가한다는 입장 발표는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1915년부터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를 장악해온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은 박용만과 그 지지자들을 점차 국민회의 활동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용만이 심혈을 기울여 운영했던 대조선국민군단이 1917년 들어 완전히 폐쇄되어 하와이 내 그의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런 중에 1916년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신 임원(회장 홍한식, 부회장 정인수)이 1916년 6월 12일 박용만을 『국민보』 주필로 채용하기로 의결하자 박용만은 이를 수용하였다.<sup>26</sup> 그 결과 잠시 정간되었던 『국민보』가 동년 7월 2일자부터 속간되었고, 하와이지방총회와 박용만의 관계, 나아가 이승만과 박용만의 관계는 1918년 1월 하와이지방총회에 내분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체로 원만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박용만은 자신을 소약국민동맹회 한인 대표로 선정해준 이승만과 이승만 지지자들로 구성된 하와이지방총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승만과 하와이지방총회가 박용만을 무슨 이유로 외교 대표로 선정하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승만 스스로 하와이 한인을 대표해 참가할 수 있었는데 굳이 박용만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기 어렵다. 1917년 당시 이승만은 하와이지방총회의 새 총회장으로 당선된 안현경과 함께 서기 겸 재무로 있으면서 한인여학원 운영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적인 비중과 달리 이 시기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다. 예컨대 하와이 파할나마울라지방회는 의무금을 총회로 보내지 말고 고명한 신사(이승만-필자)에게 맡기자 하였고 마위공동회는 교육기관을 하와이지방총회 학무부에 부속하되 그 운영은 고명한 신사에게 위탁하고 행정임원은 일체 간섭하지 못

26 “하와이”, 『신한민보』, 1916. 6. 29.

하게 하자고 결의하였다.<sup>27</sup> 그 외 힐로 지역 10개 지방 연합회는 재정 고문으로 이승만을 선정하였고, 고나 지역은 교육기관을 하와이지방총회 학무부가 아닌 이승만에게 위탁하기로 의결하는 등 이승만에 대한 권력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상이었다.<sup>28</sup> 따라서 이승만이 처한 위상을 볼 때 그는 충분히 소약국민동맹회의 한인 대표로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박용만을 굳이 외교활동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동안 소원했던 박용만과 박용만의 지지자들을 적극 포용해 하와이 내 이승만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소약국민동맹회의의 한인 대표로 박용만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승만은 이를 통해 자신의 위상과 입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하는 박용만의 외교활동비 마련을 위해 전 하와이 한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의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불과 2년 전인 1915년만 해도 하와이지방총회의 내홍으로 한인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분란을 딛고 포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와이 한인들은 이승만의 의연금 모금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였다. 예컨대 함호용이 작성한 1917년 10월 3일자 마우이섬 푸우네네 사람들의 의연금 모금장부를 보면 함호용·홍한식 등 15명의 한인들이 각 1달러씩 납부하였다.<sup>29</sup> 이렇게 하와이 각지의 한인들이 적극 호응한 결과 당초 계획한 500달러의 모금 계획을 훨씬 넘어 2,000여 달러를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30</sup> 의연금 모금운동이 한인들로부터 이렇게 큰 호응을 받은 것은 박용만을 외교대표로 뽑아 밀어준 이승만이나 하와이지방총회에

27 “누가 국민회를 없이 코저 하느냐”, 『신한민보』, 1917. 5. 3.

28 “하와이 국민회 정국의 암담한 정형”, 『신한민보』, 1917. 5. 3.

29 국외소재문화재단 편, 2013, 『미국 UCLA리서치도서관 스페셜 컬렉션 소장 함호용 자료』, 92쪽.

30 이렇게 모은 금액을 박용만의 외교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1,119.50달러를 남겼고 파리강화회의의 한인 대표로 선정된 이승만이 미국 본토로 갔을 때 이 잔액을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계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였다.

박용만은 10월 23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10월 27일 토요일 오후 뉴욕에 도착했다. 28일 소약국민동맹회 서기를 찾아가 출석 절차를 밟고 29일 오후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박용만은 『신한민보』에서 밝혔듯이 대한인국민회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하와이지방총회의 명을 받들어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sup>31</sup> 그런데 실상 대회 연설 때는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해 활동했다. 대한인국민회는 하와이 5천 명과 북미 2천 명의 한인들을 대표하지만 정치적으로 만주와 시베리아의 2백만 한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 자신은 전체 한인 2천만 중 10%인 2백만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것이라 하였다.

호놀룰루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박용만은 북미 한인들에게 소약국민동맹회의에 가는 것은 단지 임원 조직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대회 참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나 북미지방총회와 아무 상의 없이 하와이지방총회의 대표로 선정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묻어 있는 다분히 수사적인 말에 불과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위해 장문의 연설문을 준비하였고 10월 29일 개회식 첫날 저녁 회의 때 다섯 번째로 연설했다.<sup>32</sup>

지금부터 100년 전에 행했던 그의 연설문은 다행히 방선주 선생이 수집하여 학계에 알렸으나 지금까지도 그 내용의 면면을 상세히 분석하여 드러내놓지 못했다.<sup>33</sup> 이에 본 글을 통해 그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박용만은 연설 서두에서 자유의 나라이자 민주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는 모든 행복과

31 “박용만씨의 내상”, 『신한민보』, 1917. 10. 24.

32 “Attack On Small Nations League,” *The Sun*, October 29, 1917.

33 방선주 선생이 수집한 연설문은 박용만기념사업추진회 한애라 사무처장을 통해 학계에 널리 공개되었다.

자유를 무자비한 일본의 정복자들에게 빼앗긴 고국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일본 식민통치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일부 아프리카에서 목격할 만큼 무자비하고, 문화적 전통과 정신의 파괴, 종교, 특히 한국인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행위는 계속되고 있음을 낱낱이 고발하였다. 그러면서도 다음과 같이 한국인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한국인의 것이며, 일본과 같은 다른 어느 인종에게도 통치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한국은 끝나지도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술실 침대 위에 놓인 마취된 환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새로 건설되기 위해 낡은 것들을 부숴버리기 전까지의 짧은 휴식 시간입니다. 일본은 옛 군주주의 체제의 국가를 전복시켜주었는데, 이것은 어쩌면 한국인들이 준비되었을 때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미래의 일들을 예석하게도 일부 일본이 해주었을 뿐이라는 심정을 전합니다.

과거 낡고 병든 군주주의의 체제를 단지 일본이 전복시켜 주었을 뿐, 한국은 여전히 끝나지도 망하지 않았음을 전하고 향후 준비된 한국인들이 민주적이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 했다.

망국 이후 일본은 한국인을 무지하고 독립이 불가능한 민족으로 선전하였으나 한국인은 과거 우리 유산을 항상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미국에게서 자유와 평등, 정의와 민주의 새 사상도 받아들여 새롭게 다듬어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윌슨 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정의로운 권력은 피치자의 허락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자주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새 사상을 알고 이를 위해 살고 있다고 했다. 윌슨의 이 말은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민족자결의 원칙을 의미한다. 윌슨이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공식화한 것은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1918년 1월 8일 14개조 평화조건의 발표와 이어서 행한 1918년 2월 11일 연설 때였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그는 일관되게 민족자결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었다. 즉, 1915년 11월 4일 맨해튼 클럽에서, 1916년 5월 27일 미국인동맹(American League) 만찬회에서, 1917년 1월 22일 상원 회의에서 일관되게 표명하였다.<sup>34</sup> 이런 연유로 박용만은 자신의 연설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러한 원칙이 한국 민족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랐다.

박용만은 일본제국은 프로이센 군주국만큼이나 세계 민주주의에 위험한 나라임을 알리고 ‘제국주의는 독일·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모두 자유 국가의 적이다’라는 한 스위스 작가의 말에 동감한다고 했다. 일본은 진정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나라가 아니므로 한국은 그런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우리를 정복한 자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열등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강력한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민족의 영원히 통치를 받아야 합당한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라면 저는 전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자 스스로를 다스리고 독자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확신합니다. 이런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이 한 국가로서 인정받고 한국인들은 정치적인 자유와 상업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오후, 어느 기자는 “일본은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더 한국이 필요합니다.

박용만은 자유 없는 평화의 실상을 언급하며 약소 민족의 정당한 생존권을 호소하였다.

---

34 박현숙, 2011,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세계 평화」, 『미국사연구』 33, 155~160쪽.

오늘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열강들은 영구적인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래 전쟁의 숨겨진 요소들과 명백한 징후들을 지금 평화롭게 사라지게 하지 않는 한 평화는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소 민족들에게 민족적이고 경제적인 권리를 줄 때까지 세상의 얼굴에는 그들의 눈물과 피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권리를 되찾을 시기이니 단결된 힘으로 새로 진수한 거대한 배를 운영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But the most important idea I suggest to this congress is that we must forget all the different ideas of our own old glories and must build up our hopes with the new freedom and the new democracy of the American ideals.

요컨대 과거 낡은 영광에 사로잡힌 모든 관념들을 잊어버리고 미국인의 이상인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소약국민동맹회는 전후 평화회의나 국제회의 때 약소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설립 배경으로는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자유와 평등, 이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민족 자결의 원칙 기반 위에서 출발했다. 소약국민동맹회는 미국의 이상과 정신을 존중하여 미국을 약소 민족들의 진정한 친구로 간주하였고 미국의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설립 목적 중 하나로 삼았다. 하지만 1917년 4월 이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 뒤 전쟁의 승리가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약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취지하에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동맹국에 대한 규탄 외에 미국과 함께 싸우는 영국·일본 같은 연합국까지 규탄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와도 통용하기 어려웠다. 즉, 독

일·오스트리아·터키·불가리아 등 동맹국에 부속된 약소 민족들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자결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겠지만 아일랜드인·스코틀랜드인·한국인 등과 같은 약소 민족이 동맹국과 전쟁하는 연합국 영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자기 민족의 입장을 주장하며 규탄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윌슨이 제안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족자결의 원칙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상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에게만 해당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정부 내에서도 미국인들 사이에 이미 처음부터 인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18년 11월 전쟁 종결 직후 가진 파리평화회의에서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의 원칙이 연합국을 배제한 동맹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질한 것은 당시 국제연맹 창설을 위한 명분 때문이라는 외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1917년 소약국민동맹회의를 개최하기 전부터 연합국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고 있던 미국인들의 일반 정서 속에서도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을 대표한 박용만의 연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곳은 *The Survey*였다. *The Survey*는 연사로 참석한 박용만에 대해 진심으로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그가 연설에서 제시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폭정 사례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에서 실제 모든 피압박 영토에서 발견되는 아주 유사한 사례로 인정하고 동감하였다.<sup>35</sup>

박용만은 대회를 마친 후 각지의 한인 동포들을 순방하고 1917년 12월 8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를 위해 50여 명의 한인들은 도착 당일 저녁에 환영식을 베풀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대회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나뉘는 성과이자 소감을 밝혔다.

우리가 이 동맹회에 참여함으로 갑자기 한국의 독립을 얻어 올 것이 아니로되, 어느 날이든지 한국이 독립하려면 실력은 있다 치더라도 외교, 군사의 활동을 진행

35 “Through Liberty to World Peace,” *The Survey*, November 10, 1917.

합이 필요하다.<sup>36</sup>

독립을 위해선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그동안 평소 군사활동에만 중점을 두어왔던 그의 예전 모습과 비교할 때 상당히 진전된 의식이다. 이번 대회 참가가 아니었더라도 그는 독립을 위한 군사활동을 결코 소홀히 할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회 참가 이후 그가 외교의 중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향후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있을 평화회의와 같은 큰 국제회의를 한인들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Ⅲ. 1918년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와 재미 한인의 선전·외교활동

#### 1.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대표 파견 추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국제사회는 향후 있을 파리평화회의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14개조 평화조건이 어떻게 이행되고 적용될 것인가는 승전국 연합국이나 패전국은 물론 전 세계 약소 민족 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미 14개조 평화조건에 따라 폴란드의 독립은 확정되었고 1918년 6월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체코 슬로바키아는 연합국의 승인을 받았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정부를 건설하였고 아일랜드·인도 등 약소 민족들은 독립국가 수립을 요구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파리평화회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을 때 미주 한인들은 분주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36 “상항지방회에서 박용만씨를 환영”, 『신한민보』, 1917. 12. 13.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가 1918년 11월 12일자로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품청서」를 보면 그러한 움직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금에 뉴욕 金憲植의 來函을 接准한즉 그 辭意가 소약국동맹회에 한인 대표자 파견을 詢議인바 대저 동맹회 대표자 파견은 북미총회의 踴躍할 사건이 아님으로 來書를 동봉해 드리오니 조치하심을 위요.<sup>37</sup>

「품청서」에서 밝힌 대로 김헌식은 뉴욕 한인인을 대표하여 북미지방총회장에게 향후 있을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자 파견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였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전부터 뉴욕의 한인들이 국제정세의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자 파견계획을 세우고 대한인국민회와 협의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자를 파견하자는 김헌식의 제안에 대해 북미지방총회는 자신들이 담당할 본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총회로 위임한 후 11월 14일 특별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윌슨 미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승리를 치하하는 전보를 보낼 것, 중앙총회에 시국문제를 주관해 나갈 것을 건의할 것, 북미지방총회는 중앙총회의 지휘 하에 재정 원조를 담당하고 의연금 모금활동에 착수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북미지방총회는 “이번 대전쟁에 연합군국과 미국의 승리는 곧 윌슨 통령의 민주주의 승리니 세계 각 민족은 모두 자기 의향에 의지하여 그 운명을 결단하는 동시 자유를 얻는 민족이 많을 것이라” 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이 좋은 때를 이용하여 소약국민동맹회의와 장래 평화회의까지 우리의 활동을 시험해볼 것을 제안하였다.<sup>38</sup> 특별 임원회의 의결 내

37 북미지방총회장 → 중앙총회장 안창호(1918. 11. 15), 도산기념사업회·도산학회 편, 2005, 『미주국민회자료집』 11(대한인국민회북미지방총회 5), 경인문화사, 471쪽.

38 이대위 → 각 지방회장(통첩, 1918. 11. 15), 『미주국민회자료집』 11, 473쪽; “북미총회보”, 『신한민보』, 1918. 11. 21.

용은 11월 15일자 「통첩」으로 각 지방회장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이대위는 11월 15일자로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품청서」를 보내 소약속국동맹회의와 평화회의를 대비하여 중앙총회에서 대표자를 공식 파견해줄 것을 제안하였다.<sup>39</sup> 그다음 날인 11월 16일에는 북미지방총회장의 이름으로 윌슨 대통령에게 승전 축하 전보를 보냈다.

미국과 동맹국의 대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국의 개입으로 승리하여 모든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민주주의의 신시대를 열게 해준 것을 크게 기뻐합니다.<sup>40</sup>

북미지방총회장의 전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잘 받았다는 회신을 보내주었다.<sup>41</sup>

11월 20일 북미지방총회는 소약국동맹회장에게 서신을 보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대표를 보낼 것이니 대회의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sup>42</sup>

이로 보면 북미지방총회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을 앞두고 국제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때 뉴욕 한인들을 대표한 김현식에게서 소약국민동맹회의 대표자 파견건을 제안받고 즉각 중앙총회를 움직여 행동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1917년 제1차 소약국민동맹회의 때 하와이지방총회의 선점으로 온전한 미주 한인의 대표자를 보내지 못한 것을 내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뉴욕의 한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39 북미지방총회장 → 중앙총회장 안창호(1918. 11. 15), 『미주국민회자료집』 11, 474쪽.

40 이대위 → Woodrow Wilson(1918. 11. 16), 『미주국민회자료집』 11, 476쪽.

41 미국 백악관에서 보낸 회신은 현재 내용은 없고 11월 25일자 소인이 찍힌 겉봉투만 남아 있다.

42 북미지방총회장 → 소약국민동맹회장(1918. 11. 20), 『미주국민회자료집』 11, 480쪽.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북미지방총회의 공문(1918. 11. 15)을 받은 직후인 11월 18일 정한경에게 편지해 시국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안창호는 미국이 역사적인 파나마운하의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 19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파나마 만국박람회(Panama Pacific Expo) 때에 처음 정한경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간간히 그의 소식만 듣고 있다 모처럼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고할 말씀은 지금 구라파 전쟁이 그치고 장차 강화담판이 열릴 터이라. 미주와 하와이 재류하는 동포들 중에서 이 때에 우리도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 정부에 교섭하자는 이가 많습니다. 형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윌슨 대통령에게 교섭을 함으로 오늘 무슨 호험이 없을 줄 아오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말하는 이 때에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독립을 원치 아니하는 이와 같을 지라. 우리의 뜻을 발표하는 것은 가하는 듯 하오이다. 형께서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소서.

이 일을 미주와 하와이의 한인 전체가 합하여 대한인국민회 명의로 대표자를 택하여 진행하게 되겠소이다. 형께서 이 일에 몸을 내어놓으사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아 일 하실 수가 있을는지요. 알게 하여 주소서. 소약국동맹회는 어떠한 것이오니까.

안창호는 첫째, 강화회의가 열릴 때 미국 정부와 교섭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윌슨 대통령과 교섭하는 것에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가만히 있으면 독립을 원치 않는 것처럼 비치니 우리의 독립문제를 거론하지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셋째, 대한인국민회에서 미주 한인 전체 대표자를 선정할 때 동참할 수 있겠는지, 넷째, 소약국민동맹회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 물었다.

편지 내용을 볼 때 안창호는 장차 다가올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정한경을 한

인 대표자로 파견하기로 잠정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국문제를 협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창호가 정한경을 한인 대표자로 염두에 두고 편지한 것은 그가 이전에 보여준 특별한 활동 때문이었다. 당시 에반스톤의 노스웨스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정한경은 1918년 11월 11일 대전 종결이 선언된 이날을 기해 재미 한인 동포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대전 종결 이후 열릴 평화회의가 월슨의 민족 자결원칙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때를 당하여 한인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대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대표자의 자격으로 첫째, 신용 있는 한인 애국자여야 하고, 둘째,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하며, 셋째,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적합한 인물은 이승만이라 하여 그를 사실상 추천하였다.<sup>43</sup>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는 중국 유학생 잡지인 *The Chinese Students Monthly* (1918, 5)에 기고한 “Korea Under Japan”이란 글을 발표해 한인 사회에 알린 적이 있었다.<sup>44</sup>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을 이와 잇몸처럼 서로 떼 수 없는 관계인데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는 한국의 고통이 바로 중국의 아픔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정한경의 이러한 활동은 안창호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한인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안창호는 그를 한인 대표자로 추천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기꺼이 시국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의 편지에 대해 정한경이 어떻게 답신했는지는 자료를 찾지 못해 내용을 알 수 없으나 11월 28일자로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바로 회신하였다고 했다. 11월 28일자 회신에는 안창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소약국민동맹회

43 정한경의 편지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일본 외무성 외교 문서,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歐美(3)』, 「재미 조선인 독립운동에 관한 건」(1918, 12, 12)에 수록되어 있다.

44 위와 같음.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설립 목적을 알려주었다.<sup>45</sup> 또 소약국민동맹회 서기 스미스에게서 받은 11월 27일자 편지 내용을 안창호에게 소개하였다. 스미스의 편지는 정한경이 소약국민동맹회 회장 하우에게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인데 오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뉴욕 맥알핀 호텔에서 대회가 개최될 것이며 대회 목적은 평화회의에서 약소 민족 국가들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라 했다.

정한경에게 보낸 안창호의 편지에서 볼 때 중앙총회는 대전 종결 직후까지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세워놓지 못하였던 것 같다. 중앙총회는 예산과 인력도 없이 구성된 허명뿐인 조직이어서 실질적인 지도기관으로서 활약하지 못했고 설립된 이래 단 한번도 국제적인 대외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안창호가 1915년 4월 중앙총회장에 당선된 이후 한 주요 활동은 하와이 순방(1915. 8. 25~12. 21)을 통한 한인사회의 분쟁 조정, 멕시코 순방(1917. 10. 12~8. 29)을 통한 한인생활 개선활동이었다.

1917년 4월 2일 윌슨 대통령이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참전 선언 연설을 한 직후 『신한민보』에 나타난 재미 한인사회의 반응은 전쟁과 무관한 태도였다.

오직 우리 한인은 전쟁에 무슨 관계가 없나니 실로 태도의 표명여부가 없거나와 마땅히 재류국의 국기를 공경하여 성의를 보일 것이며, 언론과 교제를 조심할 것이요, 전쟁생활에 대하여는 스스로 예비할 자가 있나니 농산물 요구에 노동은 많을 지나 모든 물가가 고등할 것은 밝히 알 일이라, 일반 동포는 더욱 경제하여 이 전쟁을 곱게 지내기를 바라노라.<sup>46</sup>

1918년 1월 8일 윌슨 대통령이 14개 평화조건을 발표했을 때도 재미 한인들

45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8-265,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1. 28).

46 논설, “미국 선전 후의 한인”, 『신한민보』, 1917. 4. 12.

은 “재미 한인의 실업을 어떻게 발전할까” 하여 전쟁 후 예상되는 경제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sup>47</sup>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주의 한인들은 대체로 전쟁과 무관한 채 생활하였고 미국의 참전 선언과 윌슨의 14개조 평화조건, 그리고 그가 주창한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한국의 독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질 형편이 못 되었다. 왜냐하면 중앙총회는 1915년과 1918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하와이 한인들 간의 분쟁 때문에 1918년 11월 초까지도 한인사회 문제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1918년 11월 1일자로 하와이지방총회, 연합중앙회, 하와이 전체 동포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한인들의 단결을 해치는 망동을 규탄하고 대한인국민회로 재결집할 것을 호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sup>48</sup>

이처럼 하와이 한인사회 문제에 골몰하고 있던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북미지방총회의 요청에 따라 11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미지방총회 임원과 유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문제 논의를 위한 중앙총회 임시협의회를 가졌다. 임시협의회는 “파리평화회의와 및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자 파견은 아 대한인 전체 민족의 대사건이라. 미·하·묵 재류 한인은 중앙총회 지휘 하에 진행을 일치할 사”로 의결한 후<sup>49</sup> 다음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평화회와 소약국민동맹회에 한인 대표자 3인을 파견할 일.
2. 한인 대표자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3씨를 택정할 일.

47 예컨대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종결된 직후에도 『신한민보』 11월 14일자 논설 “재미 동포의 전란 이후의 계획”을 보면, 평화가 되는 날 농산물의 시세 변동이 염려되므로 더욱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할 것을 당부하였다.

48 「중앙총회장께서 하와이에 보낸 공문」: “총회 당국에 권고한 글”, “연합회 당국에 권고한 글”, “전체 동포에게 권고”, 『신한민보』, 1918. 11. 7.

49 「중앙총회협회록」, 『미주국민회자료집』 6, 186쪽.

3.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에 참여한 각 국민이 각기 평화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한인 대표자 1인을 파리스 평화회까지 파견하기로 함.
4. 파리스 평화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정한경 씨를 파견하기로 한 일.
5. 제2조 결의는 중앙총회 대표원에 묻기로 한 일.
6. 피선된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중앙총회장이 자백하여 대충하기로 한 일.
7. 이에 대한 경비는 북미, 하와이 양 지방총회로서 담부 판비케 한 일.<sup>50</sup>

요컨대 중앙총회의 총지휘 하에 이번 일을 추진하되 한인 대표자로 이승만·민찬호·정한경 3명을 선택하여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시키고 그중 정한경은 파리평화회의의 대표자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11월 26일 중앙총회는 위 결정사항을 담은 「훈시」를 북미와 하와이의 지방총회장에게 보내고 한인 대표자 파견에 필요한 구국특별의연금 모금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sup>51</sup> 동시에 하와이지방총회 대표원 정인수·홍한식·박원걸에게 전보를 보냈고,<sup>52</sup> 소약국민동맹회에도 이승만·민찬호·정한경이 미주와 원동의 한국인을 대표한 대한인국민회의 공식 대표임을 인준하는 서신을 보냈다.<sup>53</sup> 같은 날 이승만·정한경·민찬호에게도 한인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렸다. 정한경은 11월 26일자 전보로 명령에 따르겠다고 회신하였고,<sup>54</sup> 민찬호는 중요한 책임을 받아 심히 영화롭게 생각하며 시기가 급박하여 감히 사양할 겨를이 없으므로 명일 뉴욕을 향해 떠나 위탁한 임무를 수행하겠노라고 회신했다.<sup>55</sup>

50 「호외」: “중앙총회협의회 사건 초록”, 『신한민보』, 1918. 11. 28.

51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3-449, 「중앙총회장이 미·하 지방총회장에게 보낸 훈시」(1918. 11. 26).

52 「호외」: “중앙총회의 공전”, 『신한민보』, 1918. 12. 5.

53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 소약국민동맹회(1918. 11. 26), 『미주국민회자료집』 11, 485~487쪽.

54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9-307,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1. 26).

55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8-271, 「민찬호가 국민회중앙총회협의회에 보낸 편지」(1918. 11. 29).

이승만은 안창호에게 보낸 2월 2일자 전보에서 미국 본토로 갈 계획을 세워서 찾아 뵈는 것이지만 만날 때까지 내 이름을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sup>56</sup>

하와이지방총회 대표원 정인수가 11월 28일자로 안창호에게 보낸 답신을 보면 이승만의 전보에서 나타난 하와이지방총회의 분위기를 대강 짐작하게 한다.

귀 전보를 받고 하와이지방총회장 안현경씨를 심방한 후 중앙총회장 명령을 의준하여 지방총회장 명하로 회전하였사오며, 대표원 정인수는 회전으로 자세한 사건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서간으로 대강 상달하오니 용서하심을 경요하나이다. 전보 받은 一夜 전에 무슨 부분 무론하고 지방총회관에 모모 인이 모여 몇 가지 사안을 말하다가 균일치 못한 형세가 있어 퇴한 후 다행히 명일 오전에 귀 전보를 받고 몇몇 분이 또 모여 상의한 결과로 중앙총회장 지위를 복중.

- 중앙총회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자기들도 할 수 없어 응중하는 모양.
- 이승만씨는 본래 미주를 가겠다 하던 차 아마 사행(私行)을 할 듯하다고 안현경씨 말.
- 이씨 주견은 공명으로는 갈 수 없고 사행할 의향이라고 자기 동 지인에게 말한 모양, 은근히 가장 수군수군.
- 부비는 하와이지방총회도 속히 주선하여 중앙총회로 기부하겠다고 안현경씨 단언.
- 하와이지방회에 돈이라고 있는 것이 동맹회 돈 천여 원, 군비저축금 천여 원.

안씨 말은 곧 주선하겠다 하면서 하와이 동포에게 아무 말도 없고 간혹 말하기를 세상에 광포할 것 없고 비밀하게 할 일이라 하며 아직껏 아무 주선 없소이다. 차차

56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9-306, 「이승만이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2). 『신한민보』, 1918년 12월 5일자 「호외」의 “이승만 박사의 답전”에는 “나는 장차 각하를 회견하겠나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전보의 원 내용 “Have been planning trip to coast will see you then dont publish my name until I see you”와 약간 차이가 있다.

형편을 상고하고자 하나이다.<sup>57</sup>

정인수의 편지를 보면 중앙총회의 결정 통보에 한때 반발하다가 결국 그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 이승만은 당초 개인 일정으로 미국 본토에 갈 예정이었다는 것, 소요 경비는 지방총회도 부담할 것이고, 하와이지방총회에 남아 있는 돈은 1917년 소약국민동맹회의 때 박용만을 대표로 보내고 남은 돈 1천여 달러와 군비저축금 1천여 달러라는 것, 안현경은 이번 일을 공개적인 것보다 비밀리 추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다. 이 같은 보고를 볼 때 하와이지방총회는 중앙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는 했으나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이었고 경비 조달을 약속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 비밀리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현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12월 5일자 공첩에는 하와이지방총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11월 28일에 보내신 전보를 거함은 소약국동맹회에 대표 파송할 사건을 중앙총회에서 착수하심을 공무에 정리로 알아 찬성하오나 경비 등사에 대하여는 여하히 조치하시는지 속히 통지하여 주심을 경요함.<sup>58</sup>

즉, 중앙총회가 추진하는 대표 파송건을 공무로서 찬성하며 경비 조달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서 안현경은 이승만은 하와이 이민국장과 미국 정부의 허락을 얻어야 하므로 10일 후 미국 본토로 출발할 예정이라 한 후 “뉴욕 소약국동맹회에서 대표를 보내라는 편지가 하와이에 와온즉 각하께옵서 정한경씨나 민찬호씨를 위선 뉴욕으로 파송하시와 상론케 하시옵기를 경요”라 했다.<sup>59</sup>

57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3-425, 「정인수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1. 30).

58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3-426, 「안현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공첩」(1918. 12. 5).

59 위와 같음.

이로 보면 하와이지방총회는 이미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에서 대표 파견을 요청받았지만 과거 1917년의 경우처럼 단독 행동하지 않고 중앙총회의 결정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18년 하와이 한인사회의 상황이 1917년의 것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1918년 1월 안현경의 불분명한 재정처리를 둘러싸고 하와이지방총회 내에서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까지 가자 13개 국민회지방회 대의원들은 1918년 3월 3일 하와이국민회임시연합중앙회(이하 '연합중앙회')를 설립하고 하와이지방총회와 분립하였다.<sup>60</sup> 이런 연유로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시점에는 하와이지방총회와 연합중앙회가 서로 완전히 별개로 활동하고 있어서 1917년의 경우처럼 하와이지방총회가 하와이 한인사회를 주도해 독단적으로 한인 대표를 파견할 형편이 못 되었다.

북미지방총회는 중앙총회의 의결사항을 11월 26일 「특별포고문」으로 만들어 『신한민보』 1918년 11월 28일자 「호외」에 실어 미주 한인들에게 알렸다. 「특별포고문」에서 북미지방총회는,

이번 평화회는 세계 각 소약국 민족이 일손 [대]통령의 전쟁 목적의 성공에 의지하여 자유 회복을 도모하는 때니 이것이 실로 우리 민족의 만나기 어려운 큰 기회라. 그런 고로 일반 동포는 평화회와 소약국민동맹회에 한인 대표자 파견을 창도하는 바 나중 성공은 공리와 운명에 붙이려니와 오늘 진행은 우리 민족의 성력의 통일 에 있는 것이라.

60 『공고서』 제8호(1918. 3. 6). 『공고서』는 연합중앙회에서 1918년 2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제35호까지 주1회 또는 주2회씩 등사판으로 발행한 소식지다. 7월 15일부터 『연합회보』로 바뀌어 발행되다 11월 28일 『태평양시사』로 다시 변경되었다. 연합중앙회의 초대 회장은 김진호며 이어서 유진영, 이종홍이 회장을 역임했다. 연합중앙회는 한시적인 임시 단체로 출발했으나 이승만 측과의 타협이 불가능해지자 3·1운동 발발 직후인 3월 3일 박용만이 설립한 대조선독립단에 흡수되었다.

하고, 자유 회복을 도모할 큰 기회이므로 평화회의와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는 것이니 일의 성패 여부를 떠나 우리의 성력을 통일해 경비를 지원하자고 호소했다.

중앙총회는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하는 두 대표의 교섭 범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안창호는 “뉴욕에 가는 제군은 응당 모든 일을 신중히 하려니와 보내는 나도 또한 부탁을 신중히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이 아래 몇 가지 조건을 기록하여 교섭의 범위를 정하여 주나니 뉴욕에 가서 이 대로 행하고 만일 사세가 특히 변통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중앙총회에 제출하여 승낙을 얻은 후에 비로소 행할 것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교섭 범위를 제정했다.

1. 뉴욕에 모인 소약국민동맹회에 출석하여 전체 소약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얻을 만한 일에 좋은 방침을 확정하여 이를 실행할 일.
2. 합중국 대통령 윌슨씨에게는 우리 민족이 독립 자유를 회복함에 동정을 구하는 뜻으로 장서를 올리되 한미조약과 한일관계를 자세히 전달하여 동양의 민주주의 실현에 동정을 구할 일.
3. 미국 각 정계에 교섭하여 우리 일에 동정하도록 운동할 일.
4. 우리 민족의 억원한 사정과 일본의 불의한 강제주의로 원동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잔학한 일을 들어 각 신문 잡지에 공포할 일.
5. 우리 민족의 대표자가 파리에 건너가는 경우에는 대표자 한 사람만 파견하되 정한경씨를 파견할 일. (단 한 사람이상을 파견하여야 될 경우에는 중앙총회의 지정을 기다릴 일)
6. 대표자가 각처로 보내는 공문의 원고와 각처에서 연설하는 초본을 중앙총회에 보내며 진행하는 사건을 일일이 보고하여 중앙총회로 하여금 대표자의 활동을 밝히 알고 있게 할 일.
7. 각 대표자는 전항에 기록 진행 사항은 크나 적으나 반드시 일지하였다가 중앙총회로 보내어 역사의 재료로 삼게 할 일.

8. 뉴욕, 시카고에 재류하는 동포를 화동하며 권유하여 이번 일에 각각 분립하지 말고 대한인국민회 범위 안에서 합동 일치케 할 일.<sup>61</sup>

중앙총회는 한인 대표자의 파견이 단지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의 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를 비롯해 각 언론과 잡지에 한국 문제를 거론하여 지지를 얻는 것에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번 일이 민족의 대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교섭 범위와 내용은 한인 대표자에게만 전달하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가 1919년 1월 4일 개최한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 임시국민대회 때에 밝혀졌다. 이것을 제정한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파리강화회의의 대표자로 정한 경만 선정한 것을 보면 1918년 11월 25일 임시협의회 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미지방총회는 12월 9일 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각 지방회의의 대의원은 흩어져 있고 중앙총회의 임원 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의사진행에 장애가 많으니 미·포 재류 유지 인사들을 망라한 임시위원회를 조직해 시국문제를 충실히 협의할 것을 중앙총회장에게 현의하였다.<sup>62</sup> 이렇게 요구한 것은 파리평화회의의 대표자로 왜 정한경이 선정되었으며 그것도 1인만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한경 외 이승만을 대표자로 더 추가해달라는 요구와 문의들이 각 지역 한인들에게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총회장은 소약국민동맹회의가 끝난 뒤인 12월 23일 제2차 임시협의회를 개최해 서면으로 제출한 민찬호·정한경의 소약국민동맹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고 임시위원 7인(임정구·황사선·최진하·최응선·이건영·송창균·홍언)을 선정하였다.<sup>63</sup> 그리고 이들 임시위원들을 중심으로 그다음 날인

61 「호외」: 「동맹회에 파견한 양 대표자의 교섭의 범위」, 『신한민보』, 1919. 1. 23.

62 북미지방총회회장 → 안창호(「현의서」: 1918. 12. 10), 『미주국민회자료집』 11, 496쪽.

63 「제2차 협의회록」, 『미주국민회자료집』 6, 191~193쪽.

24일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승만을 파리평화회의의 한인 대표자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미 소약국동맹회의가 끝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평화회의의 참석 문제인데 중앙총회가 정한경 외 추가로 이승만을 대표자로 선정함으로써 계속 논란이 되어온 파리평화회의의 대표자 선정 문제를 매듭지은 것이었다. 회의의 주요 의결 내용은 『신한민보』 1918년 12월 28일자 「호외」로 공표되었다.

## 2. 뉴욕 한인의 신한회 결성과 외교활동

1910년대 말까지 뉴욕의 한인수는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해 30~40명 정도였다. 주요 인물로는 1896년 도미한 김헌식을 비롯해 1900년 이강공 의화군의 미국 유학시 수행원으로 도미한 신성구, 1907년부터 뉴욕에 정착해 대한인국민회 회원이자 흥사단원으로 활동한 천세헌, 그 밖에 안정수·이원익·황용성·서필순·김승제·차두환·안규선·이봉수·장수영·박호빈·조병옥·임초 등이 있었다. 뉴욕은 1907년 9월 한인공제회가 설립되어 활동했던 곳이고 1919년 3월 29일 한인공동회를 통해 처음으로 대한인국민회 뉴욕지방회(회장 천세헌)가 설립되기까지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다. 특히 초창기 뉴욕 정착자인 김헌식은 기존 세력인 대한인국민회를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뉴욕 한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부터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1917년 뉴욕에서 결성된 소약국민동맹회가 대전 종결 직후 제2차 대회를 개최하리라는 것과 그 뒤를 이어서 평화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다. 때문에 이대위가 1918년 11월 12일자로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품청서」에서 뉴욕의 김헌식이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자 파견문제를 협의하자고 북미지방총회에 먼저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대위는 중앙총회 중심으로 대표 파견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그의 제안을 무시하였다.

김헌식·신성구를 비롯한 18명의 뉴욕 한인들은 한국 독립을 호소하고 추진

하기 위해 1918년 11월 중순경 신한회(The New Korea Association)를 결성하였다. 신한회의 조직은 회장 신성구, 서기 조병옥, 외무원 김헌식·이원익으로 구성하였다. 신한회는 의연금 모금활동에 착수하였는데 동년 12월까지 모금한 금액이 약 900달러였다 하니 뉴욕 한인들의 열성은 대단한 것이었다.<sup>64</sup>

신한회는 11월 30일 특별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12개항의 독립청원서를 채택하였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국의 국토가 일본에 강압적으로 병합되어 한국인이 피정복의 인종으로 전락된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다. 둘째, 탐욕 때문에 약한 이웃 나라를 파멸시키는 주의를 연합국의 승리로 파괴되었다. 셋째, 미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연합국은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약소 민족에 대한 민족자결의 대원칙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정부와 평화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 지도를 그리는 당국자들에게 강한 이웃 나라인 일본에 의해 축적된 상처와 부정함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며, 한국의 현 상황과 한국인의 분노에 대한 간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이를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외교위원회, 그리고 평화회의 미국 대표단에게 제출한다고 했다.

신한회의 독립청원서는 회장 신성구와 서기 조병옥이 서명한 후 김헌식·신성구·이원익의 이름으로 작성한 12월 2일자 공문에 첨부되었다.<sup>65</sup> 신성구와 김헌식은 12월 3일 이 문서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로지(Henry C. Lodge)를 만나 전달하려 했으나 로지는 국무성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도 이 건을 받아줄 수 없다는 구실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미 국무부를 찾아갔으나 또한 접수를 거절당하자 두 사람은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리평화회의에 참가하고 있던 랜싱(Robert Lansing)에게 우송하였다.<sup>66</sup>

64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8-274, 「민찬호·정한경이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2. 11).

65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3-3861-193, 「신한회의 결의안」.

66 방선주, 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321쪽; 나가타 아키우미 저, 박환무 역, 2008,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105~106쪽.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청원서를 전달한 사실은 12월 4일 연합통신에서 즉각 보도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은 미국 정부를 향하여 이왕 한미조약을 의지하여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며 일본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 있다 하더라”고 했다.<sup>67</sup> 『워싱턴 타임스』는 12월 6일자 기사에서 재미 한인들이 평화회의에서 일본 지배하의 한국 독립을 요청하기 위해 윌슨 대통령과 상원 외교위원회에 호소하였다고 보도했다.<sup>68</sup> 그리고 1882년 미국과 한국이 맺은 한미조약을 상기시키고 미국은 도덕적으로 한국의 독립 주권을 보호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어야 한다는 한국인의 입장을 실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일인 신문 『일미보』는 12월 5일자 기사에서 한인들의 독립 청원활동을 경거망동한 것으로 비판하였다.

신한회의 독립 청원활동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자 흥언은 『신한민보』 1918년 12월 12일자 논설에서 “마른 하늘에 벽력이 떨어졌다. 재미 한인의 독립 제창이 와싱턴 연합통신의 전보로부터 세계를 진동하는도다”하여 놀라운 심정을 드러냈다.<sup>69</sup> 이어서 그는 재미 한인의 독립청원활동을 비판한 『일미보』의 논조를 2회 연속의 논설로 세세하게 반박하였다. 그는 이번 재미 한인의 활동을 “8년간 받아온 천고의 대치욕을 씻으려고 일본에 대하여 선전서를 걸어놓은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sup>70</sup>

신한회의 독립청원활동은 일본의 영자신문과 일본 신문에 그대로 보도되었다. 먼저 『재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는 1918년 12월 15일자 “Koreans Agitate for Independence(한국인들 독립을 선동하다)”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미주 한인들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이어서 1919년 1월 18일자 “Korean Independence”에서도 미국 내 한인 단체

67 “한국 독립 보장 청원 미정부에 제출”, 『신한민보』, 1918. 12. 12.

68 “Want Demand Made for Independence of Korea,” *The Washington Times*, December 6, 1918.

69 “일미보의 ‘한국 독립 제창’을 비평한 것을 논박함”, 『신한민보』, 1918. 12. 12.

70 “일미보의 ‘한국 독립 제창’을 비평한 것을 논박함”, 『신한민보』, 1918. 12. 19.

가 민족자결권의 원칙을 한국인에게 적용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해 윌슨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의 미국 대표단, 그리고 미 의회 외교위원회에 발송하였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 한인 단체는 신한회를 의미한다.

독립청원활동 외 신한회는 소약국민동맹회의에서 한인 대표로 참가하며 활동했다. 신한회를 대표해 외무원으로 활동한 김헌식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한 인도·폴란드·러시아·아일랜드·체코슬로바키아·라트비아의 대표와 함께 소약국민동맹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sup>71</sup> 이것은 대한민국민회에서 파견한 민찬호·정한경보다 한발 앞서 활동하였음을 의미한다.<sup>72</sup>

### 3.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의 개최와 한인 대표의 참가활동

제2차 소약국민동맹회의는 24개국 민족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1918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1차 대회 때와 똑같이 뉴욕 맥알핀 호텔에서 열렸다. 두 번째 날인 15일 밤 회의는 자유극장(Liberty Theatre)에서 가졌다. 소약국민동맹회는 “What will the Peace Conference do for Us?”란 표제어를 담은 대회 초청장을 만들어 윌슨 대통령, 강대국 수상, 소약국 정부, 그리고 노동 단체들에게 보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렸다. 대회 초청장을 볼 때 이번 대회의 주목적이 평화회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회에 참가한 주요 외빈은 범미조합(Pan American Union) 총재 바레트(John Barret), 아이다호주의 보라(William E. Borah) 상원 의원, 몬태나주의 란킨(Jeannette Rankin) 하원의

71 “Small Nations Congress Indorses Presidents Stand,” *The New York Herald*, December 16, 1918; “Small Nations, After Row, are Sure-fire Democrats,” *The New York World*, December 16, 1918.

72 이런 김헌식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국민회 대표로 온 민찬호와 정한경을 정식 한인 대표가 아니라 주장하였고 한인 단체의 대표자로 자칭하여 중국인들에게 의연금을 거두었다가 뉴욕의 한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김헌식의 활동에 대해선 방선주의 앞의 책, 「김헌식과 3·1운동」과 『신한민보』, 1919년 2월 13일자 “뉴욕한인공동회의 보고” 참조.

원 정도였다.<sup>73</sup>

대회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해 아일랜드·인도·폴란드·이집트 등 약소국 대표들은 평화조약의 조건으로 민족자결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대회의 전반적 내용은 *The Survey*의 12월 21일자 “Constant Association and Cooperation of Friends”에서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The Survey*는 대회 결의안 서두에 윌슨이 프랑스에 가서 한 첫 연설 중 “미래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군비나 해군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국제연맹의 설립이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이번 대회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다. 채택된 결의안은 1차 대회 때와 달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이는 1차 대회 때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가올 평화회의에 민족자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새로 창립할 국제연맹에 약소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권한, 평화회의의 모든 회의의 기록은 가감 없이 공개되고 그대로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 등이었다. *The Survey*는 특정 민족 대표의 분노와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도 많았지만 토론은 잘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연사들이 고통당하는 민족들의 편에 서서 연설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1차 대회 때도 그랬듯이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1918년 12월 20일자 “A League Against England”란 글에서 이번 대회 연사로 초청받은 『런던 데일리 뉴스(*London Daily News*)』의 뉴욕통신원 윌슨(P. W. Wilson)의 예를 들어 영국인인 그가 영미 간의 우호 관계를 희망하는 연설을 하자 청중들로부터 많은 야유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이번 대회를 친독 성향의 분위기인데다 영국에 적대적인 아일랜드·이집트·인도에 대한 언급이 많은 반영적(反英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 개최된 소약국민동맹회의는 대체로 1차 대회 때보다 미국 내 언론들의 주목을 덜 받았다. 소약국민동맹회 회장 하우가 소약국을 위해 평화회의를

---

73 “Small Nations League Meets in New York,” *The Evening Star*, December 14, 1918.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먼저 파리로 건너가 행사를 주관하지 않은데다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곧 다가올 파리평화회의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인국민회에서 한인 대표로 선정된 민찬호는 11월 29일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시카고와 애크론을 거쳐 뉴욕에 들어가 활동을 전개하였고 12월 19일 다시 뉴욕을 떠나 워싱턴-시카고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다. 정한경은 11월 26일 시카고에서 안창호의 전보를 받은 날부터 행장을 준비한 후 애크론을 거쳐 뉴욕에 들어갔고 민찬호가 뉴욕을 떠난 뒤에도 계속 남아서 활동했다. 하와이에서 건너올 이승만을 기다려 파리평화회의의 한인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서였다. 민찬호와 정한경 두 사람이 뉴욕에 합류해서 공동 활동한 기간은 12월 10~19일까지 10일간이었다.

대한인국민회의의 한인 대표자는 3명이었지만 이승만의 하와이 출발이 늦어서 소약국민동맹회의를 둘러싼 활동은 민찬호와 정한경이 전담했다. 두 사람 중 민찬호가 연장자여서 정한경은 그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대외활동을 주도한 사람은 정한경이었다. 그는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1918. 11. 25), 미국 상원에 보내는 청원서(1918. 12. 10)를 작성하였고, 소약국동맹회의가 끝난 뒤 평화회의의 대표자로 합류한 이승만과 함께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1919. 2. 25)도 작성하였다. 물론 이들 세 청원서의 내용은 최초의 청원서인 11월 25일자 것과 동일하고 1919년의 것에도 위임통치의 내용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정한경이 소약국민동맹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Korea under Japan*이라는 소책자를 만드는데 47.50달러를 썼다고 한 것으로 보아 주로 이 글을 중심으로 연설하고 선전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sup>74</sup>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대한 결과는 민찬호와 정한경이 12월 17일자로 중앙총회에 보낸 서면 보고에서 드러난다.

74 미정리 대한인국민회자료, B3-633,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재정보고」(1918.12.19). “Korea under Japan”의 글은 정한경이 중국 유학생 잡지 *The Chinese Students Monthly* (1918. 5)에 기고한 글이다.

1. 소약국민동맹회는 월슨 대통령에게 소약국민의 공동한 자치권과 권리를 얻도록 주선하여 달라고 전보를 보낸 일.
2. 행정위원 7, 8인을 두어 모든 일을 협의 진행케 한 일.
3. 각 소약국민 단체로서 제출한 원청서를 거두어 책을 만들어 파리 평화회에 파견한 소약국민동맹회 대표자 하우스(‘하우’의 오기) 박사에게 보낸 일.<sup>75</sup>

이를 볼 때 대회 주 목적은 파리평화회의에 약소 국민의 정당한 자치권과 권리 확보에 있었다.

소약국민동맹회장 하우스는 대회 개최 전에 먼저 파리로 건너가 약소국 대표의 평화회의 출석권 교섭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만일 그가 출석권을 얻을 경우 약소 국민 대표자들이 모두 파리로 건너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찬호와 정한경은 “미국 정부는 적민(嫡民)이 아니면 집조를 주지 않을 터이라 하며, 영·일 양국이 이 일에 대하여 극히 주의하는 모양”이라 하고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이들 국가에 부속된 약소국 대표자가 파리행 여권을 얻는 것은 지금으로선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두 사람은 “본원 등은 한국 사정을 미국 신문에 게재하기를 운동하나이다” 하여 선전활동에도 주력하였음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대한인국민회 대표나 신한회 대표가 이번 대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전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신한회 대표 김헌식이 7인 집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외 크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에서 한인 대표들의 활동 근황이 간간히 소개되고 있었다. 『재팬 애드버타이즈』는 1918년 12월 18일 “Small Nations Ask to be Recognized(약소 국가들의 승인을 요구하다)”의 글에서 한인 대표들이 리투아니아·폴란드·알바니아·앗시리아·그리스·인도·아일랜드·페르시아 등 대표들과 대회에 참가하였다고 짚맞히 보도하였다. 『大阪朝日新聞』은 1918년 12월 18일자 “民族自決を認めと一小國及隸屬國民聯盟の決議”와 12월 25일자 “希臘人自由得要請”

75 「호외」: “대표자의 보고”, 『신한민보』, 1918. 12. 28.

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의 참가 사실을 보도하였다. 교토제국대학 법과대학 민법 교수 나가지마 다마키치(中島玉吉)가 미국을 시찰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직후 기고한 『大阪朝日新聞』 1919년 1월 6일자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민족자결주의에 의거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가 일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글을 실었다.<sup>76</sup> 이러한 보도는 혹 일본 내 한인 유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sup>77</sup>

한인 대표자들의 뉴욕 활동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대한 것보다 대한인국민회와 신한회의 대표들이 외교활동을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한 점이다. 신한회 회장 신성구와 서기 조병옥은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12월 7일자 전보에서 뉴욕 한인들이 결속해 미국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평화회의 미국 대표단에 청원서를 보낸 사실을 알리고 이번을 기회로 한인 전체가 합심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민찬호와 정한경이 뉴욕에 합류한 12월 10일 당일에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에 따르면 신한회 사람들과 현 상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동의하였고 뉴욕에 지부를 설치하여 외교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up>78</sup> 또 12월 11일자로 안창호에게 보낸 서신에는 이곳 신한회와 합동하려면 위치와 외교의 편리함 때문에 뉴욕지회에 외교권을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외교원 3인이나 5인을 택해 뉴욕에 두고 시기를 따라 무슨 긴급한 외교 사건이 있을 경우 총회로 전보 혹은 서보(書報)한 후 5인의 공결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전했다.<sup>79</sup> 두 사람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독립청원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18명가량의 한인들이 8, 9백 달러의 거액

76 “米國を視察して-中島玉吉博士談”, 『大阪朝日新聞』, 1919. 1. 6.

77 제일유학생을 비롯해 국내 한인들에게는 짧은 기간 열렸던 소약국민동맹회의 자체보다 파리평화회의의 참가를 앞두고 활동한 한인들의 동향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78 미정리 대한인국민회자료, B9-299, 「민찬호·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10).

79 미정리 대한인국민회자료, B8-274, 「민찬호·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2. 11).

을 모아 열심히 활동하는 신한회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두 사람은 신한회의 관계자들을 잘 인도하여 서로 합동해 일하는 편이 좋겠다는 뜻으로 중앙총회에 보고하였다. 별도로 신성구도 안창호에게 전보(12월 11일자)를 보내 신한회 위원 신성구·천세현·조병옥이 국민회 대표들과 상호 협력하고 있음을 알렸다.<sup>80</sup>

민찬호는 12월 14일자로 중앙총회협의회에 편지를 보내 그동안 신한회 대표(신성구·조병옥·천세현)들과 협의해 도출한 4개항의 합의 결과를 보고했다.<sup>81</sup> 첫째, 양측 대표원 총부를 뉴욕에 설치한다. 둘째, 총부 임원인 회장·서기·재무는 뉴욕에 있는 사람으로 택한다. 셋째, 재정과 문부는 뉴욕 총부에 둔다. 넷째, 외교 사무는 양측에서 주최한다. 이 같은 보고 외도 신성구와 조병옥은 국민회와 합동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그 원인은 국민회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일을 다 해놓으니 그 명의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 때문이라 했다. 그런데 신한회의 천세현은 자기네 대표들과 다투고 자신이 준 의연금을 환부해주면 신한회에서 출회하겠다는 것과 신한회가 925달러를 모금했다고 했으나 현재 400달러가량 지출하였고 남은 돈이 60여 달러에 불과해 재정적으로 국민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한편 신한회 회장 신성구는 안창호에게 보낸 12월 14일자 전보에서 양측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합동(union)하기보다 협력(cooperation)하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sup>82</sup> 민찬호가 중앙총회협의회에 보냈던 내용처럼 신한회와 대한인국민회가 서로 분립한 상태에서 연합해 일하자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민찬호·정한경에게 보낸 12월 15일자 편지에서 신한회가 국민회

80 미정리 대한인국민회자료, B9-298, 「신성구가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11).

81 미정리 대한인국민회자료, B8-271, 「민찬호가 국민회중앙총회협의회에 보낸 편지」(1918. 12. 14).

82 미정리 대한인국민회자료, B9-296, 「신성구가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14).

지방회로 성립되더라도 현장 때문에 지방회 명의 하에 외교권을 줄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중앙총회 외교부에서 뉴욕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뉴욕의 사람을 외교원으로 택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sup>83</sup> 사실상 협의의 결과를 거부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 정한경은 12월 20일 전후경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한회와 협력하기 위한 시도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해 그만두었다고 보고했다. 이로써 그간의 추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 IV. 맺음말

소약국민동맹회의는 일손의 민족자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신시대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24~25개 약소국 민족대표들이 참가한 대회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예상되는 평화회의 때 약소국의 권리와 입장을 단결된 힘으로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917년과 19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에 한인 대표자들은 빠짐없이 참가해 활동하였다. 1917년의 경우 대한민국민회 하와지방총회가 추진하여 박용만이 한인 대표로 참가하였다. 1918년의 경우 미주 한인 전체를 대표한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가 민찬호와 정한경을 대표로 파견하였고 뉴욕 한인들이 별도로 조직한 신한회는 김헌식을 한인 대표로 참가시켰다.

1917년 첫 번째 대회에서 박용만은 각국의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국 독립문제를 동정하고 지지하도록 이끌어낸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그가 남긴 연설문은 오늘날까지 명연설로 기억될 만하다. 하지만 대한민국민회 하와지방총회가 단독으로 추진한 영향 때문인지 박용만 개인의 명성을 크게 제고시킨 것 외에 미주 한인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다.

83 미정리 대한민국민회자료, B8-269, 「안창호가 민찬호·정한경에게 보낸 편지」(1918. 12. 15).

1918년의 경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직접 나서 전 미주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민찬호·정한경의 활약으로 대회 참가자들에게서 한국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인상이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뉴욕 한인들이 결성한 신한회가 적극적인 독립청원활동을 전개한 것이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미주 한인들은 물론 해외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열기를 크게 불러일으켰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소약국민동맹회의를 다가올 파리평화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간주했다. 주 관심은 소약국민동맹회의보다 파리평화회의에서의 활동이었다. 그렇다고 소약국민동맹회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앙총회는 두 대표의 활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였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특별한 관심 속에서 소약국민동맹회의를 대비하고 추진하였다. 다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한인 대표들의 활동성과가 그리 뚜렷하지 못했을 뿐이다.

소약국민동맹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시기 식민지 한국 민족과 같은 약소국 민족들에게 이상적인 국제회의였다. 이런 국제회의에 한인 대표자들이 빠짐없이 참가해 활동한 것은 1910년대 들어 한인사회 내부 문제에만 치중하며 생존을 위한 삶에 주력하였던 미주 한인들에게 처음 있는 국제경험이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떠나 두 차례에 걸친 국제활동의 새로운 경험은 미주 한인들에게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 독립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과 식견, 그리고 능력을 배양시켰다. 나아가 일본 도쿄의 한인 유학생들에게 국제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데 적지 않은 자극을 줄 수 있었다. 이처럼 소약국민동맹회의 참가활동은 미주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열기를 새로 불러일으키고 추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동시에 향후 2·8독립운동과 3·1운동의 전 단계로서 한국 독립운동의 지평을 국내외로 확장시키는 데 좋은 기반을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 참고문헌

『신한민보』, 『공고서』, 『大阪朝日新聞』

*The American Jewish Chronicle, The American Leader*

*The Brattleboro Daily Reformer, The Daily Ardmoreite, The Evening Star*

*The Grand Forks Herald, The Japan Advertiser, The New York Herald*

*The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ribune, The New York World*

*The Norwich Bulletin, The Public Ledger, The Sun, The Survey*

*The Washington Times*

도산기념사업회 · 도산학회 편, 2005, 『미주국민회자료집』 6; 『미주국민회자료집』 11.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3-3861-193, 「신한회의 결의안」

[LA 대한인국민회총회관 소장 미정리 대한인국민회 자료]

B3-427, 「안현경이 북미지방총회장에게 보낸 서신」(1917. 10. 1)

B9-307,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1. 26).

B3-449, 「중앙총회장이 미·하 지방총회장에게 보낸 훈시」(1918. 11. 26)

B8-265,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1. 28)

B8-271, 「민찬호가 국민회 중앙총회협의회에 보낸 편지」(1918. 11. 2)

B3-425, 「정인수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1. 30)

B9-306, 「이승만이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2)

B3-426, 「안현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공첩」(1918. 12. 5)

B9-299, 「민찬호 ·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10)

B8-274, 「민찬호 ·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2. 11)

B9-298, 「신성구가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11)

B8-271, 「민찬호가 국민회 중앙총회협의회에 보낸 편지」(1918. 12. 14)

B9-296, 「신성구가 안창호에게 보낸 전보」(1918. 12. 14)

B8-269, 「안창호가 민찬호 · 정한경에게 보낸 편지」(1918. 12. 15)

B8-274, 「민찬호 · 정한경이 중앙총회장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1918. 12. 1)

B3-633, 「정한경이 안창호에게 보낸 재정보고」(1918. 12. 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편, 2013, 『미국 UCLA리서치도서관 스페셜 컬렉션 소장 함호용 자료』.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문서,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歐美(3)』, 「재미 조선인 독립운동에 관한 건」(1918. 12.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수록.

박현숙, 2010, 「월슨 평화주의의 모순: 1차 세계대전의 참전 결정과 베르사유 평화회담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98.

박현숙, 2011, 「월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세계 평화」, 『미국사연구』 33.

방선주, 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나가타 아키우미 저, 박환무 역, 2008,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관계』, 일조각.

##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와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홍선표

소약국민동맹회의는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신시대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 24~25개 약소국 민족대표들이 참가한 대회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예상되는 평화회의 때 약소국의 권리와 입장을 단결된 힘으로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고는 1917년과 191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뉴욕 소약국민동맹회의에 참가한 한인 대표들의 활동을 고찰한 글이다. 1917년의 경우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가 추진하여 박용만을 한인 대표로 참가시켰다. 1918년의 경우 미주 한인 전체를 대표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민찬호와 정한경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뉴욕 한인들이 별도로 조직한 신한회는 김헌식을 한인 대표로 참가시켰다.

1917년 첫 번째 대회에서 박용만은 각국의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국 독립문제를 동정하고 지지하도록 이끌어낸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1918년의 경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파견한 한인 대표들의 활동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 보도된 신한회의 독립청원활동은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열기를 크게 불러일으켰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소약국민동맹회의를 다가올 파리평화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간주했다. 그렇다고 소약국민동맹회의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앙총회는 한인 대표의 활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였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특별한 관심 속에서 소약국민동맹회의의 참가활동을 추진하였다. 다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한인 대표들의 활동성과가 그리 뚜렷하지 못했을 뿐이다.

소약국민동맹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시기 식민지 한국 민족과 같은 약소국 민족들에게 이상적인 국제회의였다. 이런 국제회의에 한인 대표들이 참가해 활동한 것은 1910년대 미주 한인들에게 처음 있는 국제경험이었다. 가시적인 성과를 떠나 두 차례에 걸친 국제활동의 새로운 경험은 미주 한인들에게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 독립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안목과 능력을 배양시켰다. 나아가 일본 도쿄의 한인 유학생들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새로운 독립운동을 모색하는 데 적지 않은 자극을 줄 수 있었다. 이처럼 소약국민동맹회의의 참가활동은 미주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열기를 새로 불러일으키고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 동시에 향후 2·8독립운동과 3·1운동의 전 단계로서 한국독립운동의 지평을 국내외로 확장시키는 데 좋은 기반을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소약국민동맹회, 소약국민동맹회의, 파리평화회의, 대한인국민회, 신한회, 박용만, 안창호, 이대위,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김헌식, 신성구, 조병옥

## ABSTRACT

#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in New York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Americans

Hong Sunpyo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was the meeting in which representatives from twenty-four to twenty-five nations affected by President Woodrow Wilson's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new era of democracy participated. The meeting was held to insist upon and achieve rights and contexts for the small and subject nations at the peace conference expected to be hel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World War 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Korean representatives who participated in the New York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on two separate occasions in 1917 and 1918. In 1917, Park Yong-man was sent as a Korean representative by the Hawaii Branch of the National Association. In 1918,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hich represented all Korean-Americans, dispatched Min Chan-ho and Henry Chung as delegates. The New Korea Association which Koreans-Americans in New York separately organized dispatched Kim Hun-seek as a representative of Korean-Americans.

In the first meeting in 1917, Park Yong-man delivered a touching address that made the delegations from around the world sympathize with and support Korean independence matters. In 1918, the activities of the delegations dispatched by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were not particularly noticeable, however. The independence petition activity of the New Korea Association reported by American and Japanese media, however, raised interest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mong overseas Koreans, including those in the United States.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regarded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as a stepping stone in preparation for the Paris Peace Conference. However,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did not neglect preparation of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The Congress outlined the activity guidelines of the Korean delegations and propelled their participation in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including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he result of the Korean delegations' activities was not particularly remarkable compared to such efforts.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was an ideal international meeting for small and weak nations such as the colonial Korean nation before and after World War I. It was the first experience in an international meeting for Korean-Americans in the

1910s where delegations of Korean-Americans participated. Whatever the result, these two new international experiences cultured the discerning eye and the ability of Korean-Americans to deal with and prepare Korean independence issues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Furthermore, these experiences could provide stimulation for Korean students in Tokyo to seek a new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In this way, the activities for participation in the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were the driving force that brought about and propelled the hea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or Korean-Americans. It can be said that the Congress provided a good basis for expanding the prospect of a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steps toward the February Eighth an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s at the same time.

**Keywords:**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Congress of 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Paris Peace Conferenc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The New Korea Association, Park Yong-man, Ahn Chang-ho, David Lee, Syngman Rhee, Min Chan-ho, Henry Chung, Kim Hun-seek, Shin Sung-ku, Cho Pyung-oak

# 한국 변혁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담론 1988~1992

유진숙 |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이론적 접근: 구성주의와 비판적 담론분석
- III. 한국의 변혁운동과 페레스트로이카 번역
- IV. 한국 변혁운동의 지형 변화와 페레스트로이카 담론
- V. 맺음말



## I. 머리말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세계 역사와 동북아시아 역사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 하였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한국 변혁운동의 담론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1985년도에 시작되었던 소비에트연방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비에트연방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주창하였던 고르바초프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 시대 이후로 누적되었던 경제침체와 왜곡의 시정 및 보다 인간적인 사회주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정책을 시작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소비에트연방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변동을 야기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특히 사회주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과 비판적 논쟁을 촉발시킴으로써 각 국가 내부의 이념적 지형과 논쟁 구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역시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념적 논쟁구도의 변화를 초래하였던 중요한 외적 자극이었다. 195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좌파이데올로기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국시로 하였던 군사정부 하에서 강력하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좌파 이념은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을 기점으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한국 학생운동세력과 사회운동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비에트연방은 사회주의 이념과 실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연방의 사회주의 개혁운동과 그에 잇따른 소비에트연방의

---

\* 투고: 2017년 5월 8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1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 본 논문은 2016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익명의 3인 심사자들의 건설적이고 유익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붕괴 및 러시아연방의 민주주의 이행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변혁운동세력에 상당한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변혁운동세력 내부의 페레스트로이카 해석과 평가 역시 다양하고 논쟁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럼에도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한국 내부의 정치담론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는 김영수<sup>1</sup>·조희연<sup>2</sup> 외에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위의 연구들도 이론적 틀에 근거한 담론분석이기보다는 서술적으로 당시의 논의를 분류·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어떻게 한국 변혁운동 내부에서 상이하고 논쟁적으로 해석, 평가되었으며 어떻게 변혁운동세력의 담론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변혁운동’을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론적·실천적 지향점으로서 내세웠던 비합법 사회운동세력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한국 변혁운동 담론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 변혁운동의 담론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배경으로 비판적 담론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담론분석은 크게 상황, 가치와 목표, 수단-목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수용에서 한국 변혁운동 내부에 이념적 차별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이념적 지형과 전략노선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여 편의 논문과 40여 권의 저서가 분석대상으로 고려되었다.<sup>3</sup>

- 1 김영수, 1991, 「말과 정치, 페레스트로이카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 『문화과사회』 4(1), 2, 28~59쪽.
- 2 조희연, 1992, 「소련 및 동유럽사태와 우리사회 변혁론논쟁」, 박현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 3 1980년대 중반 대다수의 변혁운동조직이 비합법적 영역에 존재하였으며 다수의 문건들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아 자료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은 본 논

## II. 이론적 접근: 구성주의와 비판적 담론분석

본 연구는 한국 변혁운동세력 내부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수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략적 변화의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관점이나 지성사적 관점보다는 행위자의 표상과 인지적 차원에 주목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구성주의는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존재론적 가정에 의문을 던지는 메타이론으로서 1980년대 이후 안보·경제·사회 및 국제정치 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sup>4</sup> 구성주의적 관점은 기존의 구조주의적 또는 행위자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의 강점에도 어떻게 행위자의 간주관적 이해를 포착하는가라는 방법론적 문제의 해결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관점에서 ‘담론’ 개념은 구성주의적 관점과 언어, 표상, 문화라는 구체적 표현의 영역을 연계하는 효율적 개념이 될 수 있다.

담론연구 동향 중에서도 특히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언어와 사회적 구성 간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때 ‘담론’은 실천의 관점에서 언술을 포착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이데올로기’ 개념과 차별성을 갖는다.<sup>6</sup> 즉, ‘이데올로기’ 개념은 의미의 내면화와 실천으로의 연계라는 두 차원이 분리된 것으로 전제하지만 ‘담론’ 개념은 언어적 차원에서의 담론 그 자체를 물질적이며 실천적인 것으로 포착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푸코

---

문의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4 전재성, 2010,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호 2권, 37쪽.

5 Norman Fairclough, 1995, *Media Discourse*, London, New York, Sydney, Auckland: Edward Arnold, p.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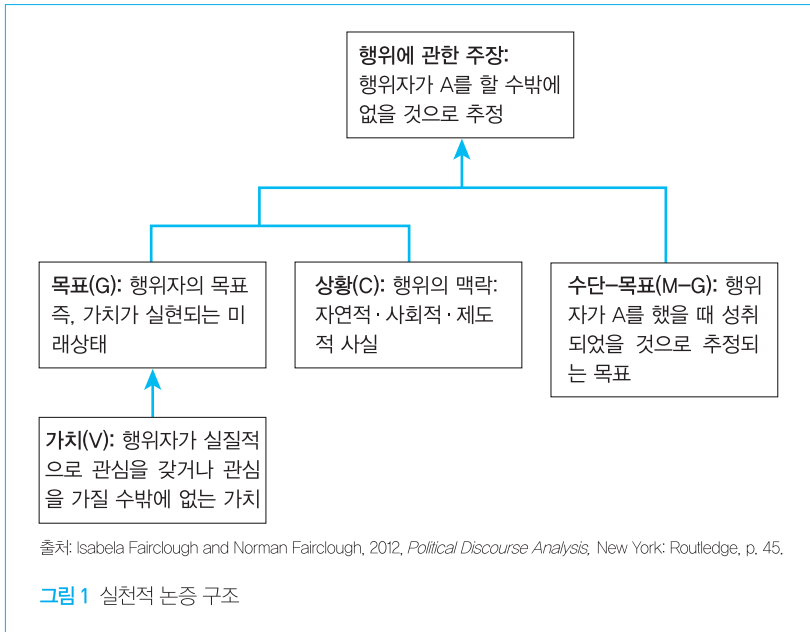
6 서덕희, 2011, 「담론분석방법」, 『교육비평』 28호, 221쪽.

(Michel Foucault)의 포스트구조주의에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로, 그리고 그람시(Antonio Gramsci)에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이어지는 서구 마르크시스트 전통의 다양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sup>7</sup> 즉, 힘의 관계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담론의 형성, 힘, 이데올로기, 사회적 관계들이 언어에 반영되고 언어로 실천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sup>8</sup>

비판적 담론분석은 따라서 기존의 담론분석과 세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sup>9</sup> 첫 번째는 일상적 상호작용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정치적 담론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때 ‘정치(Politics)’는 특정 상황에 대응한 행위, 즉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정으로 규정된다.<sup>10</sup> 즉, 어떤 상황에 대한 표상·해석·설명, 특정한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표상 등에 대한 정치담론은 인간의 행위주체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담론은 잠재적으로 행위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규범적 분석보다는 담론권력이 작동하는 현실적 기제에서의 담론의 사회적 작용에 주목한다. 세 번째, 담론의 사회적 환경,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 등을 중시한다.

페어클롭은 실천적 논증의 분석을 크게 상황(Circumstances), 목표(Goals), 수단(Means-Goal), 가치(Values) 등 상호 연결된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1</sup>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다. 행위자는

- 
- 7 Caterina Carta and Ruth Wodak, 2015, “Discourse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the borders of EU identity,”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14:1, p. 6.
  - 8 김학실, 2015,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9권 3호, 191쪽.
  - 9 홍정화, 2013,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권 1호, 227쪽.
  - 10 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2,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p. 26.
  - 11 Isabela Fairclough and Norman Fairclough, 2012, 위의 책, p. 44.



주어진 특정한 상황과 목표에 대한 지식을 가능한 수단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는 미래 상태로 가고자 한다. 이 상호 연계된 실천적 논증구조는 그림 1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큰 틀에서 페어클럽의 분석틀을 적용하되 가치와 목표를 한 영역으로 묶어 가치-목표, 상황, 수단-목표의 세 가지 범주로 담론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III. 한국의 변혁운동과 페레스트로이카 변역

#### 1. 1980년대 중반 한국의 변혁운동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학술적·정치적 논의가 1958년 진보당사건 이후 중단되었다. 1970년대 미약하나마 다시 사회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지만 이들은 마르크스주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부정하였다.<sup>12</sup>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던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역설적으로 해방 이후 약 30~40년간 명맥이 단절되었던 급진적 변혁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을 기본적인 이념적 맥락으로 하는 본격적인 변혁운동은 무엇보다도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광주 민주화항쟁 실패의 경험은 기존의 낭만주의적 사회운동에 대한 자기반성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운동 급진화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광주 민주화항쟁 당시 미국의 개입은 변혁운동 내부에 강한 반미주의와 민족주의를 촉발시켰다. 1984년을 전후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의 원전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유물변증법과 정치경제학 방법론이 진보적 학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3</sup>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사회주의를 이념적 모델로 하며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었던 변혁운동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1980년대 진행되었던 일명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당시 변혁운동 내부의 이념적 지형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성격에 대한 좌파 내부의 논쟁은 크게 1단계: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의 도입, 2단계: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논쟁, 3단계: 마르크스주의 탈피와 새로운

12 김동춘, 1997,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창작과비평사, 198쪽.

13 이민호, 1991, 「식민지반자본주의론/NL'적 시각 I, 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몇 가지 문제」,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48쪽.

패러다임 도입의 3단계로 분류된다.<sup>14</sup> 이 중 2단계 논쟁은 특히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하는 주체사상파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회구성체논쟁’을 지칭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주장하는 민중민주파(PD: People’s Democracy)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주장하는 민족해방파(NL: National Liberation) 간의 논쟁이 학계뿐만 아니라 학생운동과 사회운동권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NL파의 기원은 1985년 하반기에 발간되었던 두 팸플릿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사회의 당면문제를 제국주의와 봉건적 지배계급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규정하며 AIPDR(반제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소개한 두 팸플릿은 학생운동의 ‘자민투(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 조직과 그 기관지 『해방선언』에 기초이념을 제공하였다.<sup>15</sup>

1986년 ‘자민투’는 조직이념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라고 공식 선포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면화하고 민족모순을 사구체논쟁의 핵심적 주제로 끌어들었다.<sup>16</sup> NL파는 첫째,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라고 규정하였다. 둘째, 한국 사회의 분석에서 ‘일국전체적 시각’을 견지해야 하며 북한을 남한혁명을 주도하는 민주기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구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넷째, 한국 사회의 성격을 반봉건성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주체사상을 조직적·사상적 통일성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2단계 혁명론을 부정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과 근본변혁이 동시에 수행된다고 보았다.<sup>17</sup>

14 조현연, 2000,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역사적 성찰을 통한 희망의 부활, 『정치비평』 7권, 130쪽.

15 편집부 지음, 1988, 『학생운동 논쟁사』, 일송정, 115쪽.

16 박현채·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321쪽.

17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 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27쪽.

이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을 ‘사대주의’로 비판하였으며 통일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반국가적·반민족적 사고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변혁운동이 아니라 “혁명전통을 가진 북한 ‘민주기지’의 지도를 받으며 남조선 민족해방투쟁을 주요하게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8</sup> 민족해방투쟁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 사회의 변혁운동은 북한의 선진 혁명역량과 상호침투과정을 통하여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9</sup> 이들은 또한 주적을 외세와 국내독점자본으로 상정함으로써 노동자·농민·빈민 등 기층민중집단 외에도 중소상공업자 등 중간계급과의 연대를 주장하였다.<sup>20</sup>

NL파는 학생운동 내부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NL파의 급속한 확산은 학생운동 내부의 ‘민족주의 정서(반봉건=분단)’와 ‘사회운동 주체의 뿌리부르주아적 속성(학생)’, ‘북한의 존재’,<sup>21</sup> 분단현실에 기초한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sup>22</sup> 서클주의적 운동방식의 한계에 대한 당시 학생운동권 내부의 공감대,<sup>23</sup> 개량투쟁 노선과 대중화 전략의 현실성<sup>24</sup> 등 다양한 요소로 설명된다.

1987년도부터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NL파의 ‘반봉건론’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윤소영·이진경 등의 신진학자들을

- 
- 18 정성기, 2005,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 또 하나의 성찰적 재론」, 『역사비평』 여름호(통권 71호), 56쪽.
  - 19 윤석인, 1989, 「1986년 상반기 학생운동 내부논쟁 개관, 자민투, 민민투의 등장과 그 논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350쪽.
  - 20 「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박현채·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79쪽.
  - 21 안현효, 2011, 「한국 사회성격논쟁의 현재성」, 『현대사상』 (9), 5쪽.
  - 22 정근식, 2013,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39쪽.
  - 23 허은, 2013,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192쪽.
  - 24 이창언, 2013,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227쪽.

중심으로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정형화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새길 출판사가 1988~1991년까지 발행하였던 무크지 『현실과과학』은 당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입장을 피력하였던 PD그룹의 본거지였으며 주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논쟁과 소련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연구동향 등을 실었다. 특히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소속의 젊은 연구진들은 주체사상 비판을 목적으로 한 논문들을 『현실과과학』에 발표하였다. 노동운동권에서도 통일된 조직은 아니지만 소장학자들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이론적 영향을 받은 다수의 소규모 집단들이 형성되었다. 『우리의 현실과 계획』이라는 소책자와 『노동자의 깃발』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했던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그룹)’<sup>25</sup>을 비롯하여 『노동자의 길』, 『노동자의 함성』, 『여명』 등의 기관지로 대변되던 이른바 ‘범 PD진영’ 현장그룹이 그들이다.<sup>26</sup>

이들은 소련과 남미의 국제변혁론 논쟁성과를 수용하면서 ‘독점강화/종속 심화테제’, ‘국독자론의 특성론적 이해’, ‘표지이해론’ 등의 이론에 근거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반제반독점(NL)PDR’론을 정식화하였다.<sup>27</sup>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성격에 주목하였던 PDR은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대결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중간계급과의 제휴, 연대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았다. PD파는 내부적으로 한국의 자본주의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분파와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CA로 분류되기도 한다.<sup>28</sup>

25 이정로, 1991, 「‘PD’파의 오류와 ‘NDR’론의 복권」,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175쪽.

26 최형익, 2003, 「1980년대 이후 한국 마르크스주의 지식 형성의 계보학: 사회구성체논쟁과 민중민주주의(PD)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34권, 202쪽.

27 조희연, 1991, 「현시기 논쟁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연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19쪽.

28 김동춘, 1997, 앞의 책, 200쪽.

## 2.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작업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과 수용은 한국 변혁운동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한국의 변혁운동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변혁노선을 둘러싼 이론적 제 문제를 정립하는 데 핵심적 사안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론적 과제로 지적되었다.<sup>29</sup>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는 “전 세계 진보진영의 위기”이자 “민중의 정치적 진출과 평등한 사회 그리고 통일조국을 희구하는 한국사회의 민주진영에게 있어서 숨길 수 없는 대단한 시련”이라는 것이다.<sup>30</sup>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은 기존의 ‘사회주의의 이론적 인식’의 지평을 훨씬 뛰어넘는 ‘현존사회주의의 놀라운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이러한 외적 상황변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남한민중운동의 이념에 대해 심대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개혁의 사상이론적 파장은 개혁사회주의에 대한 일반적 성격규정을 넘어서서 남한변혁운동의 전략적 전망이나 전략전술적 기초 등 변혁론의 핵심적 문제에도 파급되는 것이었다.<sup>31</sup>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작업은 1990~1991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주로 PD 진영에서 이루어졌다. PD 진영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를 이념적 모델로 삼았으며 따라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NL 진영보다는 PD 진영에 보다 더 강한 지적·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29 김영수, 1991, 앞의 글, 33쪽.

30 최성, 1991, 『소련공산당의 해체와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 한울, 4쪽.

31 조희연, 1991, 앞의 글, 22쪽.

32 고원, 2013,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과 메커니즘」,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291~293쪽.

특히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을 주도하였던 조직은 PD론 확산의 산실, 『현실과과학』을 주도한 서울사회과학연구소였다. 서울사회과학연구소는 1990~1991년도에 중원문화, 민맥 등 사회과학출판사와 핵심적인 페레스트로이카 이론가들의 저술을 번역 출판하였다. 특히 신현준(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은 페레스트로이카 저술 번역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외에 비교적 NL 진영에 근접한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 번역작업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진보적 철학의 추구를 표방하며 1989년 창립된 학술단체다.<sup>33</sup> 한국철학사상연구회는 1994년 5권 2호 특집호에서 주체사상을 비롯하여 북한 철학의 동향을 다루는 등, “맑스주의와 인간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강점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주체사상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계를 고민”하였던 학술운동단체다.<sup>34</sup>

변혁운동세력의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과 출판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 학생운동 출신 제적학생들이 출판계로 이동하면서 대거 등장하였던 사회과학 출판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출판사들은 마르크스·엥겔스의 고전저작과 소련식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재의 번역 출판에 집중했으며 대부분 PD 진영에 근접한 이론적 지향성을 보여준다. 가장 PD적 입장이 명확하였던 중원문화, 새길출판사는 『반두링론』,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 등의 사회주의 이론 고전 외에도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논쟁 I』,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연구』, 『주체사상비판1』, 『주체사상비판2』 등 ‘한국사회구성체논쟁’ 관련 저서를 출판한 바 있다.

33 [http://www.hanphil.or.kr/board\\_intro/view.asp?key=1](http://www.hanphil.or.kr/board_intro/view.asp?key=1)(검색일: 2017. 10. 18).

34 이정은, 2009, 「사회변혁을 위한 철학적 논의들, 시대와 철학(제20권 1호)의 서양 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20권 3호.

〈표 1〉 주요한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 출판물

| 저자                    | 제목                                  | 역·편자                  | 출판사   | 출판연도 | 비고                         |
|-----------------------|-------------------------------------|-----------------------|-------|------|----------------------------|
| R. 에케르트 외             |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서독                      | 송주명                   | 중원문화  | 1990 | 사회주의 이론 및 역사의 제문제 시리즈: 3-2 |
| K. 모르겐슈테른 외           |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동독                      | 신현준                   |       | 1990 | 사회주의 이론 및 역사의 제문제 시리즈: 3-1 |
| A. N. 야코블레프 외         |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소련                      | 신현준                   |       | 1990 | 사회주의 이론 및 역사의 제문제 시리즈: 2-1 |
| 프랑시스 코엥 외             |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프랑스                     | 신현준                   |       | 1990 | 사회주의 이론 및 역사의 제문제 시리즈: 2-2 |
| 미하일 고르바초프             | 페레스트로이카: 전세계를 향한 새로운 사상의 호소         | 이봉철                   |       | 1988 | 중원문화신서 인문·사회과학시리즈: 43      |
| 야코블레프 외               | 페레스트로이카의 전개와 수용(소련)                 | 신현준 편역                | 새길    | 1990 | 새길신서 23                    |
| 로이 메드베제프 외            | 논쟁, 1: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경제학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 민맥    | 1991 | 민맥신서: 8                    |
| 프리마코프 외               |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경제학, II-1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br>윤소영 해설 |       | 1991 | 민맥신서: 9                    |
| 로이 메드베제프              | 역사가 판단하게 하라 2                       | 안광국                   | 새물결   | 1991 | 새물결신서 09                   |
| 로이 메드베제프              | 레닌주의와 현대사회주의의 제문제: 페레스트로이카의 이해, 정치편 | 김철수                   |       | 1990 |                            |
| M. 바글라이               | 사회주의국가의 노동운동론: 페레스트로이카와 관련하여        | 프로그래스출판사              | 이성과현실 | 1990 |                            |
|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 프로그레스출판사 편 | 페레스트로이카의 기본전략: 소련공산당 제27차당대회토론자료집   | 김정민 옮김                |       | 1990 |                            |
| P. N. 페도시에프 외         |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사분과       | 녹진    | 1990 | 녹진글방: 8                    |

|               |                                     |                     |    |      |                 |
|---------------|-------------------------------------|---------------------|----|------|-----------------|
| E. M. 프리마코프 외 | 현대소련의 변혁이론:<br>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제이론 | 솔밭편집부               | 솔밭 | 1989 | 솔밭신서: 4         |
| 야 페브즈넬        | '자본론'과 페레스트로이카                      | 고정일                 | 참한 | 1989 |                 |
| 코뮤니스트 지 편집부 외 | 페레스트로이카 정론 - 보수와 혁신의 도전을 넘어-        |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논쟁사분과 편역 | 새날 | 1990 | 새날 새책 6         |
| 에르네스트 만델      | 페레스트로이카를 넘어                         | 차혁                  | 태백 | 1990 | 태백총서: 10        |
| 고르바초프 외       |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 사상문에운동              | 풀빛 | 1990 | 계간『사상문에운동』 집중기획 |

#### IV. 한국 변혁운동의 지형 변화와 페레스트로이카 담론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논쟁은 1988~1992년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위에 언급한 출판사 발행 단행본 외에도 『현상과인식』, 『사상문에운동』, 『사회와사상』, 『경제와사회』, 『시대와철학』, 『창작과비평』, 『사회경제평론』, 『노동해방문학』 등 변혁운동 지향적인 사회·인문과학 학술지, 『한신논문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간물, 『고대문화』 등의 대학 발행 논문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진보적 학계에서는 학술단체협의회가<sup>35</sup> 연합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에 참여하였다.<sup>36</sup>

본 논문에서는 한국 변혁운동의 담론구조가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과정에서

35 학술단체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단체가 소속되어 있었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한국사회인문연구회, 한국여성연구소, 문학예술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보건과 사회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36 학술단체협의회 편, 1990,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 제3회 학술단체연합심포지엄, 한울.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가치와 목표, 상황, 수단-목표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치와 목표에서는 변혁운동세력의 가치와 목표 속에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상황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향방에 대한 담론이 분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단-목표 영역에서는 한국 변혁운동세력이 어떤 다양한 대안적 전략노선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행한다.

## 1. 가치와 목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변혁운동세력 내부에 형성된 페레스트로이카 담론은 당시 한국 변혁운동의 가치와 목표를 보여준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공히 사회주의 실현이었으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변수에 대응하는 이들의 다양한 담론은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지 유추하게 한다.

이들 담론구조는 크게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비판론’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PD 진영이 전체 네 가지 범주로 분화된 반면 NL 진영에서는 주로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 관점이 관찰된다.

### 1)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자들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주로 NL 진영과 일부 PD 진영에 분포되어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NL 진영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원인을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과업의 하나인 인간개조사업이 홀시되었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공산주의는 생산력만 발전된다 하여 실현될 수 없으며 더 중요하게는 사회의 주인인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를 옳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주체사상의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sup>37)</sup>

이정로·오세철 등 PD 진영 인사들의 경우 페레스트로이카의 스탈린 비판에 일정 정도 동의함에도 소비에트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점에서 이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홍명은 스탈린체제의 중앙집중경제는 ‘급속한 외연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스탈린체제 하 관료제 문제는 ‘개인으로서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개인승배, 권력남용, 관료적 지시 역시 ‘단순히 운영상 부수되었던 비본질적인 부문들’로 치부된다.<sup>38</sup>

스탈린의 장기간에 걸친 권력장악, 내외적인 후진과 간난, 전쟁의 시기에 그를 정점으로 하는 소련 지도층이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안전과 조국 방위의 기본 목표가 필연코 그에 부수되는 여러 부작용-희생과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조치들-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 그렇다고 스탈린의 위업들-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소련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력한 독일군의 공세를 무력화하면서 마침내는 제2차 대전을 사회주의의 존재 및 발전의 계기로 역사에서 현실화했으며 세계의 민족해방 운동을 사회주의와 연결시켜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 사회주의 운동의 본질과 전략을 올바르게 정식화할 수 있었던-이 이와 같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권력 행사의 필연적인 부대 상황, 어려운 시대가 빛은 운명의 작란, 필수적인 운동의 어두운 부산물에 대한 비난의 극대화를 통해 가리워질 수 있는가?<sup>39</sup>

스탈린체제의 문제는 단순한 ‘부작용’이나 ‘어두운 부산물’로서 ‘사회주의의 존재를 현실화’하였으며 ‘사회주의운동의 본질과 전략을 올바르게 정식화’한 ‘스탈린의 위업’과 명료히 대비된다. 그 외에도 ‘페레스트로이카의 우편향, 급진개

37 「소련공산당체제 붕괴를 둘러싼 학생운동권의 논의들(I) 소련사회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현채·조희연 편, 1992,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405쪽.

38 김영수, 1991, 앞의 글, 41쪽.

39 김홍명, 1993, 『사회주의의 제문제』, 도서출판 나남, 35쪽.

혁파와 소련 대중의 청산주의적 사고 및 마르크스주의 재해석' 등을 소련 사회주의의 위기로 지적하는 최성의 입장 역시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40</sup>

## 2)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주도세력의 스탈린 비판과 레닌주의 회귀 입장에 동조했던 입장으로서 PD 진영에 가까운 황태연·김호균 등 독일 유학파와 김세균·박형준·조희연 등의 입장이 그에 분류된다.<sup>41</sup>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왜곡의 책임을 스탈린에게 묻고 있으며 스탈린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간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은 소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체제 내적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스탈린체제에 대한 비판은 정치·국제정치·경제 등 세부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스탈린 관료체제의 권력독점은 핵심적인 오류로 비판되었다. 스탈린 시기의 지나친 중앙집권적 운영체제, 급진적 사회주의 이행과 명령적 지령체제, 스탈린의 테러통치 역시 ‘기형적 사회주의 태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sup>42</sup> 경제영역에서는 계획경제체제와 명령적 행정체제가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스탈린체제는 생산규모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했으나 경제메커니즘의 효율성이 전혀 고려될 수 없는 행정적 명령체제를 공고히 하고 전 인민 소유의 다양한 형태의 독자적 발전의 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진단이다.<sup>43</sup> 또한 스탈린 비판은 그의 사회주의체

40 최성, 1991, 앞의 책, 21~45쪽.

41 문용식, 1990, 「사회주의개혁의 논리와 쟁점」,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풀빛, 405쪽.

42 최성, 1991, 앞의 책, 19쪽.

43 오세철, 1992a,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전망」, 『현상과인식』 16(1·2), 110쪽.

제에 대한 이해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적용의 오류에 대한 비판으로 모아진다.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서의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형해화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전위로서의 당이 관료주의적인 상급지령자로 전락하여 프롤레타리아독재가 당독재로, 다시 그것은 관료독재로, 다시 그것은 일인독재로 전락하였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오류는 대중의 창발성과 창조성을 억압하고 대중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크나큰 생산력적 정체로 귀결되어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기에 이르게 되었다.<sup>44</sup>

스탈린체제는 ‘창발성과 창조성을 억압’하고 ‘생산력적 정체’를 초래한 ‘일인독재’로 묘사된다. 황태연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전 인류적 가치우위론과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론을 고전의 본래 입장으로 복원하고 출발’한 것으로 평가한다.<sup>45</sup>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금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소련·동구의 교과서적 마르크스주의 서적이나 서구의 스탈린주의 서적 등을 정통 이론서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 3)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 입장은 스탈린뿐만 아니라 레닌과 스탈린을 포괄하는 소련식 사회주의 전반을 비판한다. 이들에게 진정한 목표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실현이다. 이들은 따라서 현실사회주의체제와 마르크스주의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실천적 유효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를 ‘현실사회주의체제’, ‘국가자본주의’, ‘소비에트국가사회주의’ 등으로 칭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였던 원론적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개념화한다.

44 조희연, 1991, 앞의 글, 23쪽.

45 김영수, 1991, 앞의 글, 37쪽.

박영호는 일례로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이 ‘반봉건적 상태와 반식민지적 상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은 ‘볼셰비키 당원들이 위로부터 강요한 사회주의적 정치혁명’이었다고 규정한다.<sup>46</sup>

소련의 사회주의혁명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된 생산력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미숙하고 저급한 생산력 발전수준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산주의건설은 불가능했고 사회주의건설조차도 제대로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소련을 포함한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운동의 근본원인은 자체의 저급한 생산력발전수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사회체계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혁시켰다는 데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폭력적으로 강요되어질 수 없는 것이며 강요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적 사상과 이념의 몰락인 것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성모독인 것이다.<sup>47</sup>

#### 4) 마르크스주의 비판

네 번째 입장은 마르크스주의 자체에서 위기의 근원을 찾는 ‘마르크스주의 비판론’이며 PD 진영의 일부가 이에 속한다. 이병천은 ‘스탈린주의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순수한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과연 존재하는가?’ 반문하며 ‘마르크스주의는 실천의 위기이며 필연적으로 이론적 위기를 수반’한다고 주장하였다.<sup>48</sup> 손호철 역시 ‘문제의 뿌리로 돌아가 그 동안 당연시되어 온 기본 전제들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주의 고전의 자기모순성을 과감히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49</sup> 이들 ‘마르크스주의 비판’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46 박영호, 1991,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경제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상논총』 9, 98쪽.

47 박영호, 1991, 위의 글, 98~99쪽.

48 김영수, 1991, 앞의 글, 40쪽.

49 김영수, 1991, 위의 글, 40쪽.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며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등 다른 사회주의적 대안에 더 개방적인 입장을 가졌다.

## 2. 상황: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주의적 가치 지향 속에서 변혁운동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핵심적인 질문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적 가치로의 회귀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사회주의체제의 파괴와 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전반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NL 진영에서는 일관되게 ‘사회주의 후퇴’론이 우세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PD 진영 내부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초기 단계에 크게 ‘사회주의 발전’과 ‘사회주의 후퇴’의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이 상호 경쟁하였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가 자본주의 이행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해지기 시작하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PD 진영 내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후퇴’론이 확산되었다.

### 1) 사회주의 발전

초기에 PD 진영 일부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현실사회주의의 오류에 대한 시정과 발전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우세하였다. 스탈린의 오류와 편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출발점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입장은 대다수가 ‘사회주의 발전’으로 귀결되었다. 스탈린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복원함으로써 사회주의 미래 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국가독점적 사회주의를 지양하여 복수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상품과 시장이 존재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시도로서 환영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sup>50</sup> 김세균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스탈린주의

50 박영호, 1991, 앞의 글, 103쪽.

적 사회주의의 청산과정”으로 보았으며 페레스트로이카가 “현존의 사회주의체제를 더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로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스탈린체제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왜곡시키고 후퇴시킨 “국가사회주의체제”며 당은 스탈린체제 하에서 “노동대중 위에 군림하는 관료적 권력으로 변질”하였다는 것이다.<sup>51</sup>

황태연 역시 페레스트로이카를 더 많은 사회주의를 향한 시도로서 보았다. 그에 따르면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 경제의 딜레마, 즉 발전된 외연적 생산력과 자본제적 유제에 따라 왜곡된 생산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사회주의” 혁명전략이다. 황태연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자본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하는 좌파세력을 “극좌 기회주의세력 및 기타 사이비혁명세력”의 “반역사적인 왜곡”이자 “반소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sup>52</sup>

## 2) 사회주의 후퇴

스탈린체제를 포함하여 소련 사회주의를 옹호하였던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자’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후퇴’ 입장을 제기하였으며 이들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자본주의로의 이행으로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들은 NL 진영 전반, 그리고 PD 진영 일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를 ‘레닌주의에 반하는 고르바초프주의’, ‘지극히 낮은 수준의 포드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우경화와 역사의 후퇴’ 등으로 비판하였다.<sup>53</sup> PD 진영의 오세철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사회주의 발전으로 평가하였던 황태연을 지목하며 “소박한 감상주의적 인간주의로 추상화됨으로써 관념적 표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sup>54</sup> 이정로 역시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

51 김영수, 1991, 앞의 글, 38쪽.

52 황태연, 1988, 「더 많은 사회주의’로서의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창작과비평』 16(3), 275쪽.

53 김영수, 1991, 앞의 글, 33쪽.

54 오세철, 1992b, 「개혁사회주의에 대한 환상과 회의와 좌절을 넘어서서」, 박현채·

위에서 나온 대안이라기보다는 …… 제국주의의 잠재력에 굴복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였다.<sup>55</sup> ‘사회주의적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소련 철학의 글라스노스찌가 “서구철학의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주관주의의 무정부성을 추종하면서 […] 서구철학적 관념들이 들어앉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56</sup>

결국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수정주의적 시장사회주의론과 더불어 상품, 화폐관계에 대한 맑스 이래 계승된 관념을 버리고, 동시에 볼셰비키의 70년의 현실적 경험을 포기하면서 자본제 사회의 가치법칙에 대해 타협하려는 시도 이상은 아니다. […] 보수주의의 강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방기, 세계사회의 약화는 ‘새로운 사고’가 서고 있는 이념적 변질의 필연적 결과이다. 시대의 변화를 현상적으로 추구한 ‘전지구적 위기’의 명령은 세계 자본제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적, 민족적 투쟁 역량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제국주의와의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개막하려는 시도이다.<sup>57</sup>

김홍명은 ‘포기’, ‘방기’, ‘약화’, ‘변질’, ‘무장해제’, ‘타협’ 등의 부정적 어휘들을 활용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도래를 예고한다. 다만 페레스트로이카 실패의 구체적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가? 라는 점에서는 저자들마다 약간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일부 논자들이 페레스트로이카의 근본적 전제와 출발점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반면 일부 논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정치적 역학 등 보다 미시적인 원인에 주

---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349쪽.

55 이정로, 1992, 「고르바초프 개혁노선의 총괄적 체계와 문제점」,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382쪽.

56 안상현, 1991,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소련철학의 개혁과 최근 동향」, 『실천문학』, 319쪽.

57 김홍명, 1993, 앞의 책, 73~79쪽.

목하였다. 예를 들어 급진개혁파와 중앙파 간 권력투쟁의 역학,<sup>58</sup> 소련공산당의 권력독점의 폐기<sup>59</sup> 등이 전형적인 미시적·정책적 오류로 지적되었다.

반면 페레스트로이카의 ‘새로운 사고’ 자체가 비마르크스주의사상에 기초하였다는 옹과 김성구,<sup>60</sup> 소련 개혁파가 자본주의를 지속적인 적응과 발전의 체제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하였다는 황진성<sup>61</sup> 등은 보다 구조적인 비판을 제기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다.

### 3. 수단-목표: 한국 변혁운동의 대안적 전략노선은?

한국 변혁운동세력 내부의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제는 소련 제3세계 정책의 변동과 연계된 대안적 전략노선에 대한 주제였다. 즉, 한국 변혁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손호철은 “특히 제3세계 정치경제학의 경우 한국사회의 사회성격, 발전 및 변혁전망에 대한 이해방식 등 우리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제들”이라고 강조하며 페레스트로이카 제3세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62</sup> 고르바초프는 ‘평화공존’을 내세우며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에 대한 기존의 개입정책에서 불개입정책으로 선화하였으며 기존의 종속국가 독점자본주의론은 프리마코프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세력의 비판 하에 기각되었다.

58 윤소영, 1990, 「해설: 페레스트로이카의 발본화?—두 개의 쟁점」,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 『논쟁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경제학』, 도서출판 민맥, 178쪽.

59 오세철, 1992b, 앞의 글, 102~123쪽.

60 하인츠 옹, 김성구, 1992, 「페레스트로이카의 자기비판을 위하여」, 『이론』 2권, 205~227쪽.

61 황진성, 1992, 「과학적 사회주의의 왜곡-사회민주주의」,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 IV』, 죽산.

62 손호철, 1991, 「페레스트로이카의 제3세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비평』 19(1), 348쪽.

이러한 제3세계정책의 변동은 한국 변혁운동세력 내부에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련의 제3세계 불개입정책은 “사회주의적 국제관계의 전면적 붕괴”,<sup>63</sup> “제국주의에 대한 카우츠키류의 수정주의적 관점”이자 “제3세계 국가 민중들의 현실과 투쟁을 모독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평가되었다.<sup>64</sup>

특히 제3세계 종속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소련에서 기각된 이후 한국 변혁운동세력의 전략적 대안담론은 크게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주체사상’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졌다. PD 진영은 ‘사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두 가지 방향으로 분화·해체된 반면 NL진영은 ‘주체사상’을 전략적 대안으로서 내세웠다.

#### 1) 사회민주주의

PD 진영 일부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이동하였는데 이 노선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인식틀의 수정 또는 발전적 변화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혁명적 노선을 포기하고 ‘비혁명적 노선’을 강조하는 다양한 입장들을 포괄한다.<sup>65</sup> 김수길·이병천·장기표·안병직 등의 입장이 이 노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자본주의 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자각에서 출발하였으며<sup>66</sup>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폐기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안병직으로 대표되었던 ‘중진자본주의론’과 ‘의회를 통한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던 전민련의 입장,<sup>67</sup>

63 반형광, 1991,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현대 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33쪽.

64 김영수, 1991, 앞의 글, 44쪽.

65 조희연, 1991, 앞의 글, 23쪽.

66 이병천, 2005, 「전환 시대의 한국 자본주의론-‘61년 체제’와 ‘87년 체제’의 시험대」, 『역사비평』 여름호 (통권 71호), 76쪽.

67 김영수, 1991, 앞의 글, 45쪽.

사회민주주의적 대안 등이 이에 속한다.<sup>68</sup> 중진자본주의론은 1984년도에 학계에서 처음 제기되었다가 1988년 초 노동운동권에서 다시 등장하였으며 인민노련 일부와 민중당에 영향을 미쳤다.<sup>69</sup> 중진자본주의론은 페레스트로이카 이론가들의 종속국가독점자본주의론 비판 및 종속약화론과 상당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sup>70</sup> 이병천은 중진자본주의론이 “파국론적 국독자 단계론과 종속심화론, 외인 중심의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대해, 민족경제론을 비롯하여 남북한 전체에 뿌리 깊은 민족해방파에 혁명적인 전복”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71</sup>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제3세계론을 비판하는 일이 동시에 오랫동안 ‘정통’과 ‘정통’의 이름으로 그것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 자신의 이론적 영위에 대한 자기비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구성체론은 PD의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NL의 식민지반자본주의론 양자 모두 결국, 소비에트 제3세계론,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음을 자기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PD는 물론 NL의 주체적 정통주의도 알고 보면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의 한국판에 불과한 것이며 오히려 PD의 정통주의보다도 훨씬 넓은 고물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sup>72</sup>

68 황진성, 1992, 앞의 글, 95쪽.

69 이민호, 1991, 앞의 글, 51쪽.

70 채만수, 1991, 「중진자본주의론 비판, 안병직 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306쪽; 김명환, 1991, 「‘종속약화, 종속심화’논쟁의 오류와 사회구성체논쟁의 새로운 방향, 민족민주변혁론의 입장에서」,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360쪽.

71 이병천, 2005, 앞의 글, 75쪽.

72 이병천, 1991, 「소비에트 제3세계론의 재검토, 새로운 한국사회론의 모색을 위하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353~359쪽.

안병직의 중진자본주의론이 부르주아적 근대화론의 관점을 대변하는 반면 이병천과 다양한 논자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진자본주의론을 피력하였다. 인민노련은 국제수지 흑자와 외채 감소를 배경으로 한국 자본주의 발전전망을 종속약화와 개량화로 전망하였으며 한국 변혁운동의 전망을 부르주아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보았다.<sup>73</sup>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는 민중당 강령으로서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내세웠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며 기존의 부르주아적 대의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조치, 예를 들면 의원이거나 고위관리에 대한 소환권 보장, 민중의 발언권 보장, 각종 대중조직의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 생산민주주의의 구현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sup>74</sup>

## 2) 마르크스주의

PD 진영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의 유지를 강조하며 다른 PD 진영 일부의 사민주의적 대안에 대하여 상당히 강경한 비판을 개진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를 추수적으로 인정하고 그 변화된 사회주의를 우리 사회의 전망으로 직접 대입하려는 경향’이라는 것이다.<sup>75</sup>

소련 및 동유럽의 그간의 사회주의는 크게 보면 국가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관료적 왜곡형태로서의 관료적 국가사회주의의 붕괴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탈린시대 이후 소련의 국가사회주의의 역사는 사회주의사상의 교조주의적 왜곡

73 양원태, 1991, 「한국사회성격논쟁의 경과」,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97쪽.

74 장기표, 1992, 「교조적 해방논리로부터의 해방, 이 땅의 마르크스-레닌주의운동론에 대한 전면적 비판」,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122쪽.

75 P. N. 페도시예프 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사분과 옮김, 1990,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 편역자 서문, 도서출판 녹진, 9쪽.

곡, 현실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 왜곡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필자는 최근의 사태를 소련 및 동유럽에서 '실험'된 사회주의의 붕괴로 한정하고자 하며 그것을 사회주의사상 일반의 유효성의 상실, 사회주의적 실험 일반의 붕괴로 규정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sup>76</sup>

이수훈 역시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파악하는 세계체제론을 통하여 소련과 페레스트로이카에 이론적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현존 사회주의국가 소련은 실질적으로 국가자본주의체제며 국가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국가권력이 관료계급을 통하여 소비에트 근로자를 착취하는 가운데 세계적 경쟁에 개입한다는 것이다.<sup>77</sup>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현존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일정 정도의 지위 상승을 구가하는 반주변부국가와 비교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역시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이 아니라 본격적인 자본주의체제 편입을 의미한다.<sup>78</sup> 즉,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대안인 것이다.

### 3) 주체사상

NL 진영은 “한국에 수용된 마르크스주의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교과서에 의존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일색”이라는 반성 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고 회상한다.<sup>79</sup> 따라서 NL 진영은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체계가 현실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위기는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혁명과 주체사상체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76 조희연, 1991, 앞의 글, 16쪽.

77 이수훈, 1991, 「현대세계체제의 전변: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65쪽.

78 이수훈, 1991, 위의 글, 77쪽.

79 방인혁, 2009,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NL, PD 그리고 뉴라이트까지』, 소나무, 298쪽.

주장하였다.<sup>80</sup> 이 입장은 당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개혁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발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sup>81</sup>

이들은 사회주의적 실험이 현실에서 좌절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인간론 논쟁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sup>82</sup>

맑스주의나 소련식 맑스주의는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가 결핍되며 그것은 인간론 부재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형성하는 사회와 문화적 변화에 대한 몰이해를 야기한다고 본다. [...] 비판이든 옹호든 간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변혁이론의 동향은 인간론 재구축으로 나아가는데 인간론을 중심으로 맑스주의를 변형하는 주체사상을 그 복안으로 도입하게 된다. 맑스주의와 인간론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강점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 주체사상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 필자).<sup>83</sup>

〈표 2〉 한국 변혁운동 담론구조와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이후의 변동

| 1986~1988 | 1989년 이후      |         |        |       |
|-----------|---------------|---------|--------|-------|
|           | 가치-목표         | 상황      | 수단     | 논쟁 참여 |
| PD        |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 | 사회주의 후퇴 | 마르크스주의 | 적극적   |
|           | 마르크스-레닌주의     |         |        |       |
|           | 마르크스주의        | 사회주의 발전 |        |       |
|           | 마르크스주의 비판     |         | 사회민주주의 |       |
| NL        | 마르크스-레닌-스탈린주의 | 사회주의 후퇴 | 주체사상   | 소극적   |

80 방인혁, 2009, 위의 책, 547쪽.

81 최성, 1991, 앞의 글, 207쪽.

82 이정은, 2009, 앞의 글, 73쪽.

83 이정은, 2009, 위의 글, 74쪽.

〈표 2〉는 도식적이거나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이후 한국 변혁운동 담론구조의 변동을 보여준다.

## V. 맺음말

본 논문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었던 한국 변혁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담론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페레스트로이카는 한국 변혁운동 담론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영향을 미쳤다면, 한국 변혁운동의 담론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 문제의식은 정치현상에 대한 해석과 수용이 곧 정치적 실천의 한 영역이라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성주의와 연계된 담론 분석 방법으로서 미시적 언어와 거시적 사회정치담론을 연계하는 비판적 담론 분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페어클럽의 접근에 따라 가치와 목표, 상황, 수단-목표의 세 가지 영역으로 담론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체제의 붕괴가 한국 변혁운동 담론의 구조, 전략노선의 변동과 역학관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준다.

첫 번째, 페레스트로이카는 NL-PD라는 한국 변혁운동 담론구조의 변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한국 변혁운동권에 형성되었던 NL-PD 논쟁구도는 실질적으로 소련의 붕괴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던 1989년도 후반부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논쟁의 핵심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비마르크스주의적 또는 수정주의적 입장 간의 대립구도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sup>84</sup> 특히 사구체 논쟁구도를 주도하였던 PD 진영의 이론적 통일성은 사회주의체제 붕괴라는 이론적·실천적 충격 속에서 극히 약화되었고 결국 NL-PD라는 사구체 논쟁구조는 1990년대 초반 종식되었다.

84 조희연, 1991, 앞의 글, 17쪽.

두 번째, 한국 변혁운동의 담론구조 변동에 대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은 NL과 PD 진영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에 더 강하게 노출되어 있던 PD 진영 내부에서는 급진적 변혁이론의 약화, 다양한 사상적 경향으로의 해체와 이념적 온건화 현상이 관찰된다. PD 진영에서는 사구체논쟁의 종식과 더불어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sup>85</sup> 소련식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입장,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정’과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 사회민주주의적 입장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으로 분화하였다.<sup>86</sup>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자생적 축적 기반의 발전과 한국 사회 서구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중진자본주의론, 종속약화론, 개량화론, 사회민주주의론 등 이념적 온건화 현상이 PD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87</sup>

반면 ‘주체사상’ 대안론을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에 참여하였던 NL 진영의 경우 그 이론적·실천적 충격을 더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NL 진영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전략노선을 바탕으로 조직적·이념적 통일성을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떻게 NL 진영이 2010년 통합진보당 세력과 2017년 민중당 세력으로 잔존할 수 있었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외적 변수가 어떻게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취약성 및 민주주의 이행이라는 국내적 변수와 맞물리면서 한국 변혁운동의 담론구조 변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이 분석결과는 또한 구성주의적 접근과 담론분석방법이 정치과정 분석에 갖고 있는 이론적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85 이병천, 2005, 앞의 글, 76쪽.

86 조희연, 1991, 앞의 글, 16쪽.

87 김동춘, 1997, 앞의 글, 199쪽.

## 참고문헌

### 1. 저서

- 김동춘, 1997,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창작과비평사.
- 김홍명, 1993, 『사회주의의 제문제』, 도서출판 나남.
- 박현채 · 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 박현채 · 조희연 편, 1991,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박현채 · 조희연 편, 1992,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 IV』, 죽산.
- 방인혁, 2009,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논쟁, 마르크시즘, 주체사상, NL, PD 그리고 뉴라이트까지』, 소나무.
- 이호룡 · 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2013,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 최성, 1991, 『소련공산당의 해체와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 한울.
- 편집부 지음, 1988, 『학생운동 논쟁사』, 일송정.
- 학술단체협의회 편, 1990,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 제3회 학술단체연합심포지엄, 한울.
- 페도시에프, P. N. 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사분과 옮김, 1990,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 도서출판 녹진.
- Fairclough, Isabela and Norman Fairclough, 2012, *Political Discours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New York, Sydney, Auckland: Edward Arnold.

### 2. 학술논문

- 고원, 2013,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과 메커니즘」, 이호룡 · 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 김명환, 1991, 「'종속약화, 종속심화' 논쟁의 오류와 사회구성체논쟁의 새로운 방향, 민족민주변혁론의 입장에서」, 박현채 ·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판 죽산.

- 김영수, 1991, 「말과 정치, 페레스트로이카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 『문학과사회』 4(1).
- 김학실, 2015,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 문용식, 1990, 「사회주의개혁의 논리와 쟁점」,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풀빛.
- 박영호, 1991,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경제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상논총』 9.
- 반형광, 1991, 「페레스트로이카와 사회주의 국제관계의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현대 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서덕희, 2011, 「담론분석방법」, 『교육비평』 (28).
- 손호철, 1991, 「페레스트로이카의 제3세계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작과비평』 19(1).
- 안상현, 1991,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소련철학의 개혁과 최근 동향」, 『실천문학』.
- 안현호, 2011, 「한국 사회성격논쟁의 현재성」, 『현대사상』 (9).
- 양원태, 1991, 「한국사회성격논쟁의 경과」, 박현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오세철, 1992a,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한국 사회변혁운동의 전망」, 『현상과인식』 16(1·2).
- 오세철, 1992b, 「개혁사회주의에 대한 환상과 회의와 좌절을 넘어서서」, 박현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 윤석인, 1989, 「1986년 상반기 학생운동 내부논쟁 개관, 자민투, 민민투의 등장과 그 논리」, 박현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 윤소영, 1990, 「해설: 페레스트로이카의 발본화?—두 개의 쟁점」,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 『논쟁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치경제학』, 도서출판 민맥.
- 이민호, 1991, 「식민지반자본주의론/NL'적 시각 I, 식민지반자본주의론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몇 가지 문제」, 박현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이병천, 1991, 「소비에트 제3세계론의 재검토, 새로운 한국사회론의 모색을 위하여」, 박현재·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이병천, 2005, 「전환 시대의 한국 자본주의론—'61년 체제'와 '87년 체제'의 시험대」, 『역사비평』 여름호 (통권 71호).
- 이수훈, 1991, 「현대세계체제의 전변: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경남대학

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정로, 1991, 「PD'파의 오류와 'NDR론'의 복권」,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이정로, 1992, 「고르바초프 개혁노선의 총괄적 체계와 문제점」,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 이정은, 2009, 「사회변혁을 위한 철학적 논의들, 시대와 철학(제20권 1호)의 서양철학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0(3).
- 이창언, 2013,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 장기표, 1992, 「교조적 해방논리로부터의 해방, 이 땅의 마르크스-레닌주의운동론에 대한 전면적 비판」,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 장은주, 1990, 「역사의 합법칙성과 역사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 요소의 역할-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철학적 반성을 위한 시론」, 『코뮤니스트』지 편집부 외 엮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사분과 편역, 『페레스트로이카 정론. 보수와 혁신의 도전을 넘어』, 도서출판 새날.
- 전재성, 2010,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국제정치논총』 50(2).
- 정근식, 2013, 「학생운동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 정성기, 2005,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논쟁, 또 하나의 성찰적 재론」, 『역사비평』 여름호(통권 71호).
- 조현연, 2000, 「19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역사적 성찰을 통한 희망의 부활」, 『정치비평』 7권.
- 조희연, 1989, 「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 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 죽산신서.
- 조희연, 1991, 「현시기 논쟁의 새로운 전개에 관한 연구」,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조희연, 1992, 「소련 및 동유럽사태와 우리사회 변혁론논쟁」,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 채만수, 1991, 「중진자본주의론 비판, 안병직 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를

- 중심으로」,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도서출판 죽산.
- 최형의, 2003, 「1980년대 이후 한국 마르크스주의 지식 형성의 계보학: 사회구성체논쟁과 민주민주주의(PD)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34).
- 하인츠 용, 김성구, 1992, 「페레스트로이카의 자기비판을 위하여」, 『이론』 2권.
- 허은, 2013,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이호룡·정근식 엮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학생운동의 시대』, 도서출판 선인.
- 홍정화, 2013,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 황진성, 1992, 「과학적 사회주의의 왜곡-사회민주주의」,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 IV』, 죽산.
- 황태연, 1988, 「'더 많은 사회주의' 로서의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창작과비평』 16(3).
- 「소련공산당체제 붕괴를 둘러싼 학생운동권의 논의들(I) 소련사회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현채·조희연 편, 1992,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V』, 도서출판 죽산.
- 「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박현채·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I』, 죽산신서.
- Carta, Caterina and Ruth Wodak, 2015, "Discourse analysis, policy analysis, and the borders of EU identity," *Journal of Language and Politics* 14:1.

## 한국 변혁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담론 1988~1992

유진숙

본 논문은 한국 변혁운동의 페레스트로이카 관련 저술의 번역·수용 과정과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론구조의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담론분석은 구성주의적 맥락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판적 담론분석의 이론틀에 근거하여 크게 상황, 가치와 목표, 수단과 목표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변혁운동은 1980년대 중·후반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민중민주파(PD)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해방파(NL)로 나뉘어 치열한 한국사회성격 논쟁을 전개한 바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라는 외적 충격에 당면하여 이 두 가지 분파의 전략적 노선과 두 분파 간의 담론적 역학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은 1980년대 후반 NL-PD 논쟁구도의 종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D가 주도하였던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은 단절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은 결정적으로 이론적·실천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두 번째,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은 한국 변혁운동의 전략노선 수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방향성과 강도는 진영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PD 진영은 전반적으로 이념적 온건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수정주의·사회민주주의·중진자본주의

등의 대안적 노선들로 분화·해체되어갔다. 반면 페레스트로이카 논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던 NL 진영은 주체사상을 대안으로 내세움으로써 비교적 장기적으로 이념적·조직적 통일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외적 변수가 어떻게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취약성과 민주화라는 내적 변수와 맞물리면서 한국 변혁운동 담론구조의 변화와 상이한 전략적·실천적 노선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이 결과는 또한 구성주의와 담론분석의 이론적 유효성을 검증해준다.

**주제어:** 페레스트로이카, 비판적 담론분석, 한국 변혁운동, 한국사회구성체논쟁, NL, PD

## ABSTRACT

# The Discourses on Perestroika by Korean Radical Social Movements

Ju Jinsook

This article analyzes the political discourse of Korean radical social movements regarding Perestroika. It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among external factors, discourse, and political practice, focusing on the process of reaction and revision of the strategic line of the social movement. Based upon the theoretical fram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analysis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value and goals, circumstances, and means-goal.

The radical social movement in Korea in the mid-1980s was divided into two factions, the PD (people's democracy), which supported the orthodox Marx-Leninism and the NL (National Liberation), which advertised Juche ideology from North Korea. Faced with the major crisis caused by the external factors of Perestroika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system, these factions reacted with various interpretations and perceptions. Meanwhile, one of the main issues was the revision of

the strategic perspectives of the social movement.

The debate regarding the Korean social characteristics was stopped abruptly, and the Marxist paradigm has lost political effect. In contrast, the Juche ideology, representing itself as an alternative to Marxism, continuously gained influence in the social movement. The Juche faction could initiate the building of the Tongjin Party in 2010 as well as the Minjung Party in 2017.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how the external factor, Perestroika, was differently interpreted, and how that different interpretation has caused the different change of the strategic line. This result demonstrates the explanatory power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Keywords:** Perestroika, discourse, left social movement,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regarding Perestroika, NL (National Liberation), PD (people's democracy)

#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노동시장 가족주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

홍찬숙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동북아 가족주의란 무엇인가
- III.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서구에서 1970년대 이래 진행된 제2차 인구학적 전환-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맥도널드(McDonald, 2000)는 그와 같은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 가족관계는 여전히 가부장적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지연 또는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동일한 현상을 가족행태의 개인화 또는 특히 여성의 개인화 개념으로 설명하는 벡(Beck, 1986) 역시 노동시장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가족관계와 가족복지의 보수성이 특히 여성들을 ‘제도가족에 대한 거부’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서구의 제2차 인구학적 전환 또는 가족행태의 개인화는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확대된 여성의 개인화 가능성과 보수적 가족제도 속에서 억제되는 여성의 개인화 가능성 간의 충돌 속에서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행동들의 집합적 결과라는 것이다. 서구 여성들은 제도가족을 거부하는 방향의 선택을 함으로써 개인화를 한층 가속화했다. 그 결과 양성평등을 측정하는 각종 지표들에서 서구 여성의 지위는 상승했다.<sup>1</sup>

각국 여성의 지위를 가늠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국제지표들은 대체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The Global Gender Gap Index [GGGI],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Gender Inequality Index [GII]), 정치적 지위(GGGI, GEM), 보건위생의 안전성(GGGI, Gender Development Index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6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노동시장 개인주의의 확산이 물론 긍정적 변화만을 이끌지는 않았다. 성역할 변화라는 긍정적 현상 외에도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노동위험을 개인화하는 부정적 현상 역시 수반했기 때문이다.

[GDI], GII), 교육기회의 형평성(GGGI, GDI)에 관한 것들이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지표들을 통해 측정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경제, 정치, 보건위생, 교육 수준의 네 차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그것은 보건위생이나 교육과 같이 사회의 ‘평균적’ 발전정도를 중심으로 측정된 지표(GDI)에 의존할 때 한국과 일본 여성의 지위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나 정치적 발언권에 비중을 두는 지표들(GEM, GGGI)을 보면, 한국과 일본 여성의 지위는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이다.<sup>2</sup>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의 ‘평균적’ 발전정도가 여성 개인들의 실제적 권리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어떤 ‘매개제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매개제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들이 실제로 향유하는 권리의 측면보다 ‘평균적’ 수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경향이 존재하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집단주의의 경향이 특별히 반여성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동북아 여성의 이와 같이 특이하게 ‘비일관적’인 국제적 지위는 동북아 특유의 가족문화 또는 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이 강력하게 존재해왔다. 그러나 위의 어떤 지표들에서도 가족 또는 가족문화와 관련된 여성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위의 지표들에서는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이나 정치조직에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여성 개인의 경제적·정치적 지위가 남성 개인들의 지위에 비교하여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평균적으로만 보여준다.

그러나 불평등한 성역할에 기초한 근대 가족제도의 영향 하에, 서구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뒤늦게 개인화를 경험했다. 말하자면 서구에서든 동북아에

---

2 예컨대 2014년 GDI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7위, 일본은 20위지만, 같은 해 GEM에서 한국은 68위, 일본은 58위였고, 마찬가지로 같은 해의 GGGI에 따르면 한국은 117위, 일본은 104위를 기록했다.

서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국제지표들이 보여주는 개인 수준의 표피적 결과들로부터 한 단계 내려가서 가족과 여성 지위 또는 가족변화와 여성지위 변화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는 ‘가족규범’과 관련된 제도적 현상과 관계들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그런데 맥도널드나 베이 관찰했듯이, 서구에서는 여성들이 제도가족을 회피함으로써 개인화를 재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측정된 위의 국제지표들이 서구 여성보다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 여성의 지위를 측정할 때 더 많은 아쉬움을 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다 더 정확히 그리기 위해, 한국 여성의 가족지위가 어떻게 변화해왔나를 살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및 그와 관련된 여성의 개인화-가 서구와는 다른 구조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힐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개인주의’ 대 ‘가부장적 가족’이라는 제도 영역 간의 충돌이 아니라, 노동시장 가족주의 ‘제도’ 대 (가족형성을 미루는) 개인화한 가족 ‘행태’ 사이의 충돌이 문제임을 밝힐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예컨대 결혼을 미룸으로써 ‘가족문화’로서의 가족주의는 회피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 가족주의는 개인수준에서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노동시장 가족주의가 ‘가족문화’로서의 가족주의보다 더 견고할 뿐만 아니라, ‘가족문화’로서의 유교가족주의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 가족주의’의 핵심을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제도화한 ‘장시간 노동체제’로 본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유교가족주의의 ‘내외’ 구분에 따라, 남편의 가족에 충성하는 전업주부를 배경에 둔 2.0인 몫의 남성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 개념을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다. 또한 이 논문에서 ‘동북아 가족주의’는 서구의 경우와는 현격하게 이질적인 한국 여성의 지위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으로도 읽힐 수 있다.

## II. 동북아 가족주의란 무엇인가

### 1. 동북아 가족주의의 특성

흔히 동북아 가족주의는 유교가족주의로 이해된다. 그것의 핵심은 ‘효’ 사상으로, 중국에서 유래한 부계 조상에 대한 숭배(제사)와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유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일본에서조차 조상숭배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문화적 특성으로 남아 있는데(Atoh, 2001), 그것은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면서 조상숭배가 불교와 결합했기 때문이다(시마다 히로시, 2011). 이후 메이지유신을 통해 ‘가족국가’ 일본이 신도뿐만 아니라 유교의 원리에도 기대어 강조됨으로써 일본에서도 조상숭배가 유교적 충효사상과 결합했다(남상호, 2015 비교). 이러한 메이지 시대의 가족주의가 현재 일본에서는 ‘전통’ 또는 ‘일본 고유의 가치’로 이해된다.

일본보다 2세기 정도 이른 17세기에 한국에서는 조상숭배가 중국식 친족제도인 종법제와 결합하면서, 유교가족주의가 ‘전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유교 종주국인 중국에서 부계 성을 계승하는 제도는 이미 은나라를 세운 ‘상 왕조(BCE 1600~1046)’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Surname”, Wikipedia), 주나라에 이르러서는 종법제도가 봉건제의 기본적 정치조직 원리로 정착했다. 주나라가 멸망하면서 종법제도가 약화되었다가, 송나라 때 신유가의 등장과 함께 왕조의 정치조직 원리가 아닌 일반적인 ‘사회적’ 원리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조상숭배는 일찍부터 부계제 친족체제와 결합되어 있었으며, 주나라의 종법제도를 동경한 유학자들을 통해 충효사상과 결합

했다.<sup>3</sup>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 유교가족주의의 역사와 성격은 나라마다 다르나, 그럼에도 공통된 기본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① 부계 친족-또는 이에-체계가 개인에 우선한다는 남성중심 출계(descent system)의 집단주의 원리, ② 유교의 충효 윤리를 통한 사회적·우주론적 정당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공통성으로 인해서 동북아 가족주의는 흔히 ‘유교가족주의’로 정의된다. 그리고 ‘유교가족주의’는 근대 서구의 개인주의와 구별되는 집단주의 도덕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북아 가족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에 앞서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 집단인 ‘가(家)’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개념적 혼란이 존재한다. ‘가’ 개념이 나라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예컨대 이정선, 2011 참조), 그것이 서구의 근대적 사생활 영역을 의미하는 ‘가족(family)’ 개념과도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서구의 근대적 ‘가족’ 개념과 달리 동북아의 ‘가’ 개념은 사생활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적 공/사 분리 개념과 다른 독특한 공/사 구분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최봉영(1998)에 따르면, 유교의 ‘가’는 혈통집단을 의미하는 ‘본가(本家)’, 직업집단을 의미하는 ‘업가(業家)’, 왕조를 의미하는 ‘국가(國家)’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혈연관계, 직업, 정치적 지위가 일가(一家)를 통해 귀속되는 신분적 집단주의는 유교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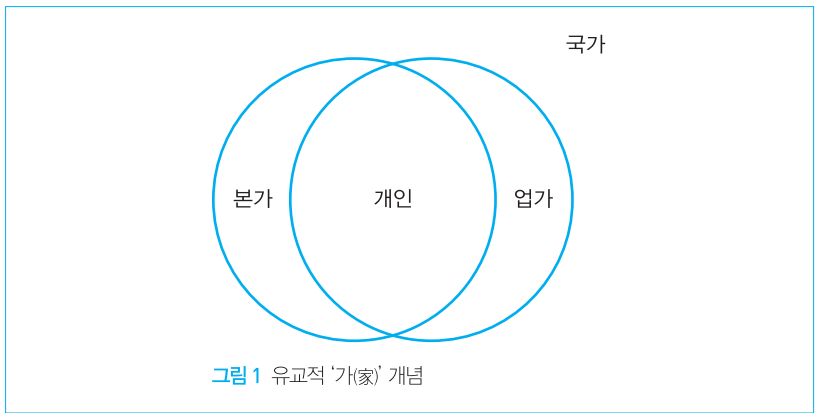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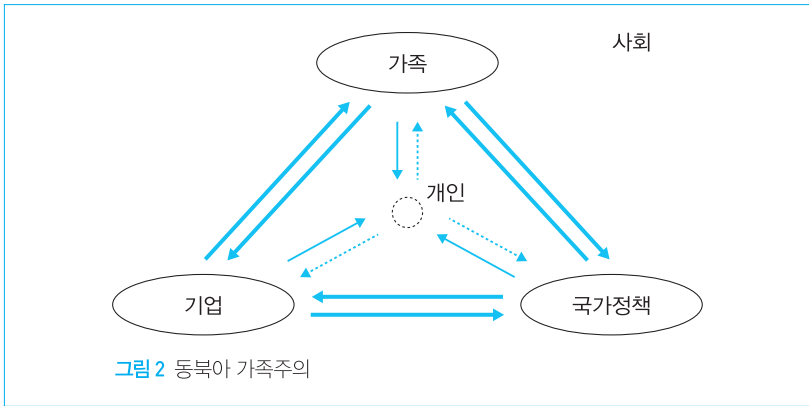
3 이와 같이 유교가족주의의 역사적 제도화 과정이 나라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드러나는 한·중·일 3국의 ‘가족가치’의 내용 역시 서로 이질적이다. 동북아의 가족가치 변화를 국가별로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가족가치는 대체로 점차 보수화하는 데 비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반대방향의 추세가 나타난다(은기수·이운석, 2005). 한·중·일 3국의 가족과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추이 비교는 이은영·서운석(2008)과 신승배·이정환(2015) 참조. 가족주의의 변화양상에 대한 비교는 박희봉·이희창·전지용(2008)과 이현정(2012) 참조. 남아선호사상의 변화에 대한 비교는 은기수(2013) 참조.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비교는 오시오·노자키·고바야시(Oshio, Nozaki, and Kobayashi, 2013)와 정혜영·서운석(2015) 참조.

려 전근대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유용태, 2001). 다만 서구의 경우에는 근대화를 통해 혈연신분/직업지위/정치적 지위가 가족/경제/정치의 영역으로 각각 기능적으로 분화했다. 그리하여 각 영역마다 자율적 원리를 갖추고, 일차적으로 개인주의 규범에 근거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 반면 동북아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규범에 대한 반동으로, 유교가족주의가 그에 맞먹는 최종적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동북아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교가족주의는 ‘가족문화’로 한정해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서구 기능분화 사회의 핵심적 사회원리인 개인주의에 맞서서 동북아식 근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는 최종적 사회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홍찬숙, 2017). 즉 동북아 가족주의는 단순히 유교적 특성을 갖는 ‘가족문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동북아 사회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경제/정치로 각각 분화된 ‘가’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일반적인 조직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유교적 ‘가’ 개념과 현대의 동북아 가족주의, 서구의 개인주의 기능분화의 성격을 도식적으로 비교하면 아래의 그림들과 같다. 먼저 그림 1은 유교적 ‘가’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국가란 왕조의 지배를 의미한다. 개인은 신분제적으로 ‘본가’와 ‘업가’에 귀속되어 왕조의 지배를 받는다.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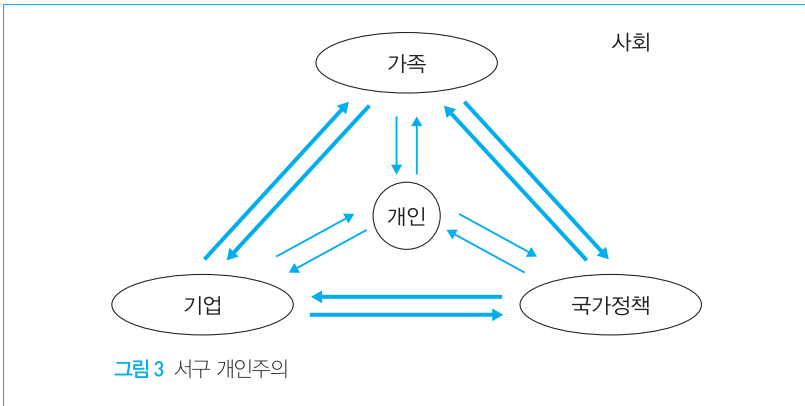


가와 업가는 대체로 일치하므로, 겹치는 부분이 넓게 표시되었다.

그림 2는 현대의 동북아 가족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이 약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표시한 동그라미의 크기가 작고 점선으로 그렸다. 굵은 화살표는 제도적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표시했으며, 두께가 가는 화살표는 개인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표시했다. 여기서 개인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므로 점선으로 표시했다.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왕조시대와 달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림 1과 달리 테두리의 네모는 사회로 표시되었다.

그림 3은 기능주의적으로 분화된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를 표현했다. 개인을 독립된 존재로 보는 개인주의 규범에 기초하므로, 개인을 실선으로 표시했고 개인을 표시하는 동그라미의 크기 역시 그림 2에 비해 크다. 개인과 제도의 상호관계가 대체로 자율적이고 쌍방적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모두 실선으로 표시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호작용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네모는 사회를 표시한다.

위에서 그림 2와 그림 3의 차이는 개인과 제도의 상호관계가 조율되는 방식이 다름을 보여준다. 동북아 사회에서는 개인이 집합적으로 규정되는 제도적 관계에 종속되며,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여전히 가족이 그림 1의



‘본가’와, 기업이 그림 1의 ‘업가’와 유사하게 가족주의적으로 이해되고, 국가정책 역시 그러한 가족주의의 영향력 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의 규범이 전근대적 집단주의의 규범을 대체한 것으로 이해되며, 사회의 구조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동북아 가족주의에서 ‘가족문화’를 지배하는 가족주의의 가치는 유교적 ‘효’ 사상을 통해 정당화되므로 중국의 영향이 크다.<sup>4</sup> 반면 ‘기업문화’를 지배하는 가족주의는 전통적인 중국의 영향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가족주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 ‘회사는 가족’이라는 모토 하에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복지제공이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시혜’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 대한 인신적 종속과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어왔기 때문이다.

4 물론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의 경우 가족법이 근대적으로 체계화하는 데에 일본 식민주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양현아, 2011; 이정선, 2011; 최우영·마수다 카즈미, 2013).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현재 가족법에서 일본식 잔재를 거의 제거한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유교적 가족주의를 축출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도 유교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유용태, 2001). 또한 개혁개방 이후에는 유교를 내세워 중국식 근대화 방식을 옹호하는 등 유교 전통에 대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2.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와 같이 가족문화와 기업문화를 결정하며, 그를 통해 가족-기업-국가정책의 제도적 관계를 최종 조율하는 동북아 가족주의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남성의 혈통을 통해 영속하는 '가' 개념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즉 서구와 달리 동북아에서는 여성의 지위 하락을 초래하는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이 가부장적 핵가족의 개인주의 도덕이 아니라 가부장적 집단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성지위 상승의 과정이 지배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여성 개인들의 풀뿌리 요구에서 기인할 때, 그것은 전통적 성역할에 기초한 남성에게서의 저항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저항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수준에서, 또는 제도와의 충돌과정에서 여성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 수준에서, 여성지위의 변화가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혁명 상황이 아닌 이상, 강한 제도적 저항에 마주하여 여성들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지위상승은 제도와 매우 강하게 충돌하고 제도로부터의 저항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제2차 인구학적 전환이 일본과 한국에서는 왜 제한된 형태로만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단순히 '가족가치'나 '가족형태' 변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동북아 가족주의'의 맥락 속에서, 기업문화와 국가정책의 방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경력형성의 길을 선택할 경우, 그러한 선택은 '가족문화'와만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기업가족주의를 통해 정당화된 장시간 노동체제로 인해서,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만 한다.<sup>5</sup> 따라서 노동시

---

5 한국에서 이와 같이 '생활을 포기'하도록 하는 장시간 노동 체제의 효과는 젊은 남

장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동거나 대안적 형태의 가족 ‘생활’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독신이나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독신 기간이 늘어나고 비혼 역시 증가하지만, 그러면서도 동거나 혼외자녀 출산이 억제되는 일본과 한국 특유의 가족변화 양상(Rindfuss, 2004; Rindfuss, Bumpass, Choe, and Tsuya, 2004; Raymo, Iwasawa, and Bumpass, 2004)으로 귀결된다.

이처럼 장시간 노동체제 속에서 여성에게 경력형성은 곧 생활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교육수준과 지위변화가 연동한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한국과 일본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지위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앞서 본 바, 한국과 일본에서 ‘발전’ 중심적 지표인 GDI와 권력·지위 격차 중심 지표인 GEM/GGGI 간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다. 말하자면 오늘날 산업화한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가족문화’가 유교가족주의의 핵심이 아니라, ‘기업문화’를 지배하는 유교가족주의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기업문화나 노동시장 구조와 같은 산업사회 핵심 영역에 내재하는 가족주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행태의 변화는 결국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전략들에 불과하다. 서구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그와 같은 미시적 행위들은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유교가족주의’에 의해 이미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제한성은 국가정책의 ‘유교가족주의’ 전통에 의해 더욱 고정되고 ‘당연시’된다.<sup>6</sup>

---

성들의 경우에도 나타나서, 우명숙(2014)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들이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여성들은 일·가족 양립이 어려운 와중에도 대체로 아이를 둘 정도 갖는 ‘이상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데 비해, 남성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거나 하나로만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명숙은 이것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남성들의 일 중심주의가 초래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에 여성들이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에도 둘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김미영·김미란(2015: 41-42)에 따르면, 남성들이 출산에 소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6 이 논문에서는 주로 가족-기업 영역을 잇는 가족주의에 초점을 둔다. 한편으로는

이처럼 유교가족주의의 핵심을 ‘가족영역’이 아니라 ‘산업영역’에서 찾음으로써 이 논문에서는 현대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족행태의 개인화’가 서구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에 명시적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에게 여전히 내면화된 유교적 ‘가족가치’로 인해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sup>7</sup>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의 핵심을 ‘가족가치’보다는 오히려 ‘노동시장 가족주의’에서 찾음으로써 여성들의 내면화된 가족가치의 내용과 무관하게 ‘구조적’ 현상으로서 제도가족에 대한 회피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와 같이 개인화한 행위전략이 굳건한 노동시장 가족주의와 충돌하면서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Ⅲ.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1. 한국 여성의 가족지위 변화

앞서도 말했듯이, 여성의 가족지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 지표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쉬운 대로 현대 가족변화에 대한

---

그것이 국가정책의 근간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정책, 특히 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장경섭(2009)과 오치아이·호소야(Ochiai and Hosoya, 2014) 참조.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는 기업문화와 유교가족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가족과 복지 부문 사이의 규범적 연결성만을 강조한다.

7 예컨대 장경섭·송민영(Chang and Song, 2010)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가족 개인화의 특이성이 여성들에게 여전히 강하게 내면화된 유교가족주의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들이 개인화를 원하지 않음에도 경제위기에 따라 개인화가 강요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심영희·한상진(Shim and Han, 2010)과 김혜경(2013)의 ‘가족지향적 개인화’ 개념 역시 그와 같은 전제를 공유한다. 이외에 한국의 ‘제2차 인구학적 전환’의 특성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전제가 공유된다(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Kim, 2009; 이민아, 2013; Ochiai and Hosoya, 2014).

국가별 특성 또는 국제비교 연구들에 기초하여, ‘여성의 가족지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짚어보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다.

가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여성의 가족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결혼의 당위성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서 퇴장할 자유 또는 권리

-본인을 위한 삶 대 내조/부모 부양/출산·양육·교육의 의무

### 1) 결혼의 당위성

한국의 혼인 건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3년 15~64세 기혼남녀의 54.4%만이 긍정적이었는데 비해 이후 오히려 계속 증가하여 2012년 63.3%로 상승했다.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견해 역시 2012년 기혼 여성은 78.2%, 기혼 남성은 80.6%로 매우 높았다(김승권 외, 2012: 101-122). 미혼인구의 경우에도 2013년 남성의 90.6%, 여성의 85.8%가 결혼 의향을 표현해서(조성호·변수정, 2014: 4), 일반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지배적이고 결혼에 대해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마찬가지로 ‘혼외출산’에 대해서도 2012년 기혼 여성의 82.7%, 기혼 남성의 81.0%가 반대했다. 이에 비해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다소 약해서 기혼 여성은 36.0%, 기혼 남성은 33.2%가 찬성했다.<sup>9</sup> 그러나 여기서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점이다. ‘혼외 성관계’에 대한 수용도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기혼 여성의

8 그러나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3~2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51.4%가 결혼이 단지 선택사항이라고 응답했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9 특히 이에 대해서는 미혼자와 기혼자 간의 차이가 현저해서 미혼 남성의 60.1%, 미혼 여성의 50.2%가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동거에 찬성했다(김승권, 2014: 5).

38.2%, 기혼 남성의 40.8%가 찬성했다. 특히 4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고, 같은 연령대 남성의 찬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말하자면 혼전 성관계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젊을수록 수용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김승권 외, 2012: 123-138). 말하자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규범이 강고한데 비해서, 성관계와 결혼 전 동거와 같은 부분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탈전통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 이렇게 당연시되는데도 만혼과 비혼의 현상이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2013년 미혼남녀 모두 ‘결혼자금’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한 남성이 절반에 가까운(49.5%) 데 비해서 여성은 1/3 정도(32.9%)로, 남녀 간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했다. 특히 그 격차는 여성이 ‘학업’이나 ‘직업’을 남성의 2배 정도로 언급했기 때문이다(조성호·변수정, 2014: 6). 2015년도 조사에서는 특히 30~44세 미혼 남녀에게서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성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남성의 41.4%가 소득 등의 경제적 이유를 든 반면, 여성은 32.5%가 ‘본인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대답하는 등 대다수가 비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이삼식 외, 2015).

실제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하여 2015년 성별·연령별 혼인율이 가장 높은 남성 30~34세 1,000명 중 혼인 건수는 62.4, 여성 25~29세는 72.9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연령대 여성은 1990~2010년 사이에 여타 연령대 여성들보다 가장 급격하게 유배우 비율이 감소한 경우다. 1990년에는 이 연령대 여성의 유배우 비율이 80%에 근접했으나 2010년에는 40% 이하였다. 이 연령대 전후 구간인 20~24세와 30~34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 역시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35세 이후 연령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단지 완만하게만 감소해서(이철희, 2011: 124), 비혼보다는 만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도결혼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설명이 틀리지 않음이 확인된다.

## 2)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에서 퇴장할 자유 또는 권리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정치철학자 오킨(Okin, 1989)은 양성 간 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그만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여성에게 단순히 이혼 제기의 권한을 허용하는 형식적 기회균등의 의미가 아니라, 롤스가 설명한 바와 같은 ‘결과로서의 평등’이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혼의 실질적 기회균등이란 ①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10</sup> ② 이혼이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혼이 ‘빈곤의 여성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이혼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혼 증가와 관련된 ‘빈곤의 여성화’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제도’로서 결혼의 공고함, 고학력 여성의 ‘결혼 후 노동시장 퇴출과 재진입 곤란’이라는 노동시장 특성, 그리고 결혼 후 여성이 수행한 ‘내조’의 재산형성 기여분을 인정한 1989년 개정 가족법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는 이혼의 양상이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박현준과 레이모(Park and Raymo, 2013)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혼 패턴의 독특성이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근대화’ 모델에 따르면, 이혼의 법적·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높은 국면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이혼이 우세한 데 비해서 이후 이혼의 비용이 경감되면 저학력 여성이 이혼을 주도하는 패턴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이 서구의 일반적 패턴인데, 일본과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전통적 성역할 분업, 전통적 가족 규범 등에 따라 이혼 비용이 높음에도 저학력 여성 위주로 이혼이 발생하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서구의 경우라고 설명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일본과 한국에서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 역시 유추할 수 있다.

10 예컨대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이혼율의 증가는 여성의 주도로 일어났다.

서구에서 이혼의 비용이 클 때 고학력과 이혼의 상관관계가 큰 이유를, 이들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들의 유리한 위치에서 찾는다. 예컨대 이들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서구에서 고학력 여성은 이혼의 비용을 감수할 만한 자원동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이혼이 일반화해서 이혼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자원동원 능력이 약한 저학력 여성들에게서 오히려 이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구에서의 이유를 일본이나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이나 한국의 고학력 여성은 이혼 비용을 상쇄할 자원동원 능력을 서구의 고학력 여성만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여성의 고학력이 이혼을 감수할 만큼 사회적 자원동원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빈곤의 여성화를 비껴갈 수 있는 노동시장 지위 또는 사회적 원조가 특별히 고학력 여성에게 일정 정도 보장이 되어야 고학력 여성이 이혼을 증가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의 고학력이 노동시장 지위의 개선과 연결되지 못한다. 흔히 인용되는 소위 L자 곡선은 고학력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며, 이후 재취업이 사실상 예외적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학력 여성의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게 이혼 후 계층하락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학력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거나 혼외 양육과 같은 대안적 가족모델이 사회적으로 억제되는 현실은 경제적 계층하락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타자화의 문제까지 유발한다. 또한 가족법 개정을 통해 아내의 내조가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의 주부역할은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의 영향으로 서구와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황혼이혼’이라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sup>11</sup>

11 예컨대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이 결혼생활 4년 이하인 ‘신혼이혼’을 2010년부터 추월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황혼이혼의 비중은

한국(과 일본) 고학력 여성의 이와 같은 경제적 지위의 취약성과 제도가족에 대한 의존성은 ① 대안적 가족형태에 대한 기대나 실제로 그것을 실험하는 가족 관련 개인화를 억제하며, ② 이혼에 긍정적인 태도와 이혼의 실제 행태 간의 괴리를 초래한다. 즉 고학력 여성들이 이혼에 대해 한층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앞서 보았듯이 실제 이혼을 증가는 저학력 여성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력에 따른 가구소득의 격차를 벌릴 뿐만 아니라,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만 족도를 낮추고 오히려 그들을 ‘기생적 존재’로 낙인찍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고학력 전문직 이혼 여성에 대한 한 심층면접 연구(박형숙 외, 2016)에 따르면, 직업이 의사, 학원 원장, 공무원, 초등교사 등인 이들의 절반이 월수입 400만 원 이하였다. 이들은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원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인지, 이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을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반면에 대부분 대졸 학력 이지만 이혼 후 대체로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지 못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김순남, 2009)에서는, 경제적 곤란 속에서도 오히려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가족’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는 사례들도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이상의 두 연구를 통해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도 이혼 후 소득 등 지위의 유지와

---

1991년 7.6%에서 2011년 27.7%로 증가한 반면, 신혼이혼은 각각 35.6%에서 24.7%로 감소했다(<http://stat.seoul.go.kr/pdf/e-webzine59.pdf>). 이와 같은 사정은 전국통계에서도 다르지 않다. 2016년 통계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혼 건수 중에서 황혼이혼의 비중이 29.9%로 가장 높고, 신혼이혼은 22.6%에 불과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 또한 황혼이혼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특이현상이다(Raymo, Iwasawa, and Bumpass, 2004; Shim, Choi, and Ocker, 2013: 580).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여대생들은 취업보다는 전통적 주부가 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가 있고(Inoue-Smith, 2014), 도쿄시에서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독신 취업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본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과 경제활동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Nemoto, 2008). 또한 일본 고학력 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도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는데도(Tsuya, Bumpass, Choe, and Rindfuss, 2005), 한·중·일 3국 중 성역할(‘가치관’이 아니라) ‘행태’는 남녀 모두에서 일본이 가장 보수적이다(Oshio, Nozaki, and Kobayashi, 2013; 정혜영·서운석, 2015).

사회적 인정이 모두 만만치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와 이혼 행태의 괴리 역시 만만치 않다. 2011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 연구(오지혜, 2015)에 따르면, 이혼에 대한 기혼 여성의 태도에는 연령이나 가구소득, 남편의 학력 등의 객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성의 개인주의 가치관 역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인주의 가치관은 학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치변화이기 때문에, 대체로 고학력·고소득 여성들이 이혼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의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의 긍정적 의견은 30대, 이혼이나 별거 중인 경우, 대졸 이상, 취업여성의 경우 높게 나왔다.<sup>12</sup>

그러나 한국에서 이혼 행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은 이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대졸 이상 학력의 영향은 오히려 부정적이다(Lee, 2006; Lee and Bumpass, 2008; Park and Raymo, 2013). 또 2012년 실제로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여성의 연령대는 앞의 ‘태도’에서와 달리 30대가 아니라 40대로써, 30대 이혼율은 이미 그 이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40대 이혼율은 이후 오히려 증가해서, 2015년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여성의 연령구간은 40~44세였다(통계청, 2016a: 23). 이것은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혼의 원인이 ‘여성들의 의식변화’에서 ‘경제문제’로 옮겨갔기 때문일 것이다(이주홍, 2003).<sup>13</sup>

12 반면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다 유사하나, 대졸자보다 고졸자들이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13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 이후까지 30세부터 34세 미만, 25세부터 29세 미만이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3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이혼율의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35세부터 44세까지의 연령층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특히 45세부터 49세의 여성들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혼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1997년부터 1998년 사이 급상승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40대 초중반 여성들의 이혼율과 비슷해졌다”(이주홍, 2003: 124).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고하면, 앞서 박현준과 레이모(Park and Raymo, 2013)가 제기한 한국 이혼패턴의 독특성은 외환위기로 인해 ‘이혼 비용과 가족생활유지 비용을 견

이상의 사실들을 볼 때, 한국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태도는 매우 허용적인 데 비해서, 실제로 이혼을 감행하는 경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혼 시 고학력 여성들의 자원동원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혼의 비용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구와 달리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들이 동일한 처지의 남성에게 비해 빠른 속도로 그러한 사건의 부정적 영향에서 회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udolf and Kang, 2015).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은 상황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이혼에 대한 태도와 행태 사이에 괴리를 보인다면,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① 고학력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아서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남들은 결혼이 불행하다면 이혼할 수 있다거나, ② 이혼 비용이 결혼생활의 불만족을 상쇄할 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후자라면, 제도결혼을 거부하지는 못하면서 동시에 냉소하는 아노미적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3) 본인을 위한 삶 대 내조/부모 부양/출산·양육·교육의 의무

여성이 가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가는 여성의 가족지위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다. 산업사회 특유의 핵가족 제도가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에 기초하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팽창과 함께 여성들의

---

주는 프레임'의 변화가 급작스레 일어나면서 야기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 이혼비용이란 절대적 값이 아니라, 가족생활의 이익과 견주어서 계산되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이다. 이주홍이 설명하듯이, 외환위기는 가족생활유지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이혼율 증가의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경제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는 이혼율이 1970~1980년대보다는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대체로 1997~2003년에 비해서는 완만하게 증가했다(Park and Raymo, 2013: 112). 따라서 박현준과 레이모의 경우에도 이주홍처럼 1997년 이전의 패턴과 이후의 패턴을 나누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박현준과 레이모는 대체로 1997년 전후에 이혼한 여성들을 학력별로 비교했다.

노동시장 기회가 증가하면서 제도가족에 대한 회피 현상 역시 증가했다. 여성들이 ‘가족을 위한 존재’라는 전통적 성역할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백-계른스하임, 2000). 특히 위에서 언급한 GDI의 높은 순위가 보여주듯이, 산업화 이후 획기적으로 향상된 한국 여성의 학력은 이와 같은 ‘개인화’ 욕구를 증대시켰다.

‘가족을 위한 존재’라는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은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남편을 위한 내조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라는 역할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교문화권에서는 ‘효’ 개념에 기초한 부모 부양이 주부의 의무로 인식되고, 자녀를 정서적·생물학적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훌륭하게 교육하여 가문을 빛내는 것 역시 주부의 의무다. 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과 한국에서 가족법이 개정되어 혈연 개념이 부계를 벗어나 여계로까지 확산되면서, 주부의 ‘효’는 전통적인 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정부모에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먼저 남편을 위한 내조는 대체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변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은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과 달리 ‘탈가족화’가 힘든 부분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대체로 복지제도를 통해 국가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으나, 가사노동은 사회서비스보다는 대체로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감된다. 말하자면 가사도우미나 외식업체에 의존하는 식이다. 맞벌이가 증가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는 최근 외식업체가 팽창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처럼 외식업체가 팽창하고 또 보육시설 역시 획기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한국에서 가사노동 규모는 스트레스

14 그러나 2015년 10월 유배우 가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로, 맞벌이가 아직은 지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또는 숙련 육체노동자의 경우 맞벌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서도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은 관리직 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도 40%를 넘어서, 맞벌이가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통계청, 2016b). 즉 맞벌이는 가장의 직업지위가 불안정한 경우에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에서 해방되거나 결혼만족도를 높일 만큼 축소되지 않았다(Oshio, Nozaki, and Kobayashi, 2013; 정혜영·서운석, 2015).

1990년대 이후의 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일본·대만의 가사노동 분담을 비교한 연구(Kim, 2013)에 따르면, 이들 3국 중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산업사회 핵가족 전통이 여전히 공고한 일본이다. 일본의 전업주부는 주당 67시간의 가사노동을 수행했고, 취업주부는 절반 정도인 31시간을 가사노동에 사용했다. 한국의 가사노동시간은 전업주부는 41.4시간, 취업주부는 21.2시간으로, 일본에 비해 보육시설 확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보다는 노부모의 손주 돌봄에 더욱 의존하는 대만의 경우에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일본과 한국에 비해 획기적으로 짧다. 전업주부는 25.2시간, 취업주부는 15.6시간에 불과하다. 아마도 저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과 외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Ochiai, 2014b).

남성의 경우는 3국 모두에서 여성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짧은 가사노동시간을 보였고, 특히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했다. 한·중·일 3국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한 또 다른 연구(정혜영·서운석, 2015)에서는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7.77시간, 일본 남성은 4.42시간, 중국 남성은 2.39시간으로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이 연구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일본이 가장 길어서, 일본 여성 평균 24.28시간, 한국 여성은 21.65시간, 중국 여성은 2.92시간이었다.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일본·중국 남성의 2배 가까이 된다고 해도, 한국 여성과 비교하면 1/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훨씬 평등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의식의 차원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2012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본다’는 성역할 규범에 대해 기혼 남성만이 반대보다 찬성의견이 많았고,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는 모두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또한 ‘남성들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가사노동 분담의 당위성에서도 기혼 남성만이 찬성보다 반대를 많이 했을 뿐이다(김승권, 2014). 따라서 전반적으로 당위성의 차원에서는 성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면서도, 이것이 현실로 실현되는 데에는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혼 남녀 모두가 가사노동(또는 가족생활)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것을 상기하면,<sup>15</sup> 이와 같은 ‘의식 따로, 실행 따로’의 문제는 예컨대 서구의 경우처럼 단순히 남성의 립서비스 문제(백·백-케른스하임, 1999)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 부양 문제로 넘어가서 한국·일본·중국·대만의 부모 부양을 비교한 연구(조지현·오세근·양철호, 2012)를 보면, 일본은 여타 국가에 비해 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좀 더 서구적인 경향을 보였다. 서구의 특징은 고령화 정도가 높고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행위는 약하다는 것인데, 일본이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는 한국·중국·대만은 고령화가 한창 진행 중이며,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행위가 강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고령화의 정도를 무시하고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행위만을 보면, 일본·대만은 독일·오스트리아 등과 마찬가지로 약한 정서적 부양행위를, 한국·중국은 스위스·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캐나다·미국 등과 같이 중간 정도의 정서적 부양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미국에 가까워서, 영국·핀란드 수준의 한국보다 더 정서적 부양행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위의 연구에 따르면 4개국 중에서 한국의 부모 부양의식이 가장 전통적이고

15 신승배·이정환(2015)에 따르면, 가족생활만족도와 행복감에서 한·중·일 3국 중 한국이 가장 낮았다. 또한 2016년 5월 캐주얼 신발업체인 크룩스에서 주요 시장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의 엄마들은 집안 일과 육아 때문에 바빠서 즐겁지 않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는 응답자 역시 한국이 가장 많았다.

16 여기서 ‘정서적 부양행위’란 ‘부친·모친과의 대면/비대면’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동아시아 사회조사(EASS) 2006년 자료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2001년 자료다.

대만, 중국, 일본의 순이었다.<sup>17</sup> 그러나 부모에 대한 실제 부양행위는 대만이 가장 많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순서였다. 이렇게 한국과 대만이 앞치락뒤치락하면서도,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나에 따라서는 대조를 보였다. 대만은 본인 부모에 대한 정서적·경제적·서비스 부양과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서적 부양 행위에서 최고값을 보인 데 반해서, 한국은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서비스 부양 행위에서 최고값을 보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2006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15년 출판된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2006년 63.4%에서 2014년 31.7%로 반감했다. 반면에 정부·사회가 가족과 함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26.4%에서 47.3%로 급증했고, 정부·사회가 가족을 대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에서 4.4%로 2배가량 증가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태도 역시 7.8%에서 16.6%로 늘어났다.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식들이 봉양한다'는 노인은 1980년 72.4%에서 2003년 31.1%로 가파르게 감소했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한다'는 노인은 같은 기간 16.2%에서 30.4%로 증가했다(주재선·송치선·박진표, 201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주로 배우자 부모를 중심으로 했던 여성의 '효'의 무가 규범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급격히 축소되면서, 부모 부양을 복지제도의 문제나 부모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부양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sup>18</sup>

17 그러나 흥미롭게도 김영미(Kim, 2013: 22)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부부의 비중은 한국이 가장 낮아서 타이완은 39%, 일본은 33%인 데 반해서, 한국은 8%에 불과했다.

18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5년의 OECD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0.2점을 받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곤경에 처했을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에 대해 93.26%가 긍정적 답변을 해서 평균보다 높았으나, 50세 이상은 60.91%로 조사 대상국 중 최저치를 보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088000017.HTML> 검색일: 2016. 8. 4). 이것은 부모 부양의 문제가 '탈가족화'하나, 그것의 방향이 복지부문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여성의 의무는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조주은, 2008, 2013). 반면 가계계승을 위한 여성의 출산의무는 상당히 완화되어, 2012년에는 그 이전과 달리 ‘자녀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대답한 15~44세 유배우 부인의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같은 연령대 유배우 남성의 경우에도 53.5%만이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계 중벌제의 핵심인 남아선호의 경우에도,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은 2012년 위 연령대 유배우 여성의 8.2%에 불과했다. ‘아들이 꼭 있어야 함’은 이들 중 15~2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고, ‘아들이 없어도 무관함’은 35~39세 연령층에서 많았다. 아마도 평균보다 일찍 결혼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커서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평균 출산연령에 가까운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에는 남아선호가 오히려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sup>19</sup>

‘가문유지’와 ‘제사’를 위해 ‘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마찬가지로 젊은 연령층, 저학력, 비취업자일수록 많아서, 15~44세 유배우 여성의 30.4%가 그러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 여성은 22.4%에 불과했고, 여성의 이상적인 ‘딸’ 수는 평균 1.33명으로 이상적인 ‘아들’ 수인 1.14명보다 많았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판단대로, “남아선호’는 불식된 것으로”(김승권 외, 2012: 214)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초저출산을 탈피하지 못하고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며, 출생성비가

---

으로의 흡수가 아니라 노인 개인의 일자리에 의존하는 ‘개인 리스크의 증가’로 감으로써 특히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이 여전히 자녀를 가족의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출산을 부모에 대한 의무(특히 제사봉송 관련)로 생각하는 등 유교가치를 고수한다는 연구(Yang and Rowenblatt, 2008)가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반대성향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들이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큰 (아마도 사립대학의) 대학생이고 또 특정 과목과 관련된 가치를 내면화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의식변화와 현실의 추세는 별로 괴리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2년 위 유배우 여성들의 이상적 자녀수는 2.2인이었는데, 이것은 앞서(각주 5) 우명숙(2014)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서구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이다.

## 2.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족지위의 변화 방향과 기업문화와의 관계

앞서 보았던 한국 여성 가족지위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 여성은 제도결혼을 여전히 당연시한다. ② 이혼의 자유는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태도와 행태 간에 괴리를 보인다. 즉 고학력 여성의 이혼 규범은 자유로우나 이혼 행태는 제한적이다. 이것을 결혼제도의 구속력과 관련시키면, 고학력 여성에 대한 제도결혼의 구속력이 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전통적 가족의무 중에서 부계 부모 부양이나 남아선호와 같은 ‘효’의 핵심은 탈제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조선 후기 이후 ‘전통’으로 자리 잡은 부계 종법제도의 영향력은 명백히 약화되고 있다. 자녀 양육의 의무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나 보육부문의 확대로 ‘탈가족화’의 경향을 보인다. ④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불균등한 성역할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또한 자녀 교육의 의무는 약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sup>20</sup>

이와 같은 경향은 현재 한국의 가족영역에서 여성의 주도 하에 개인화가 진행되며, 그것의 특징은 서구의 ‘개인화 제2단계’(백, 2013)와 달리 ‘핵가족화+1인 가구 증가 및 초저출산’의 특징을 보이는 ‘압축적 개인화’라는 필자의 주장(홍찬숙, 2015)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전일

---

20 위에서 자녀교육의 측면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으나, 자녀교육에 대한 여성의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사교육 확대와 입시에서 엄마의 정보력과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을 상기하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제 노동시장 경력에 기초하여 ‘개인화 제1단계’(핵가족 중심주의)에서 ‘제2단계’로 가족의 탈제도화를 주도한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비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화 제2단계’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전통적인 ‘효’의 의무가 약화되면서 핵가족 중심주의(개인화 제1단계)가 강화되는 현상이 공존한다. 이것은 일본의 ‘제2차 인구학적 전환’에서 서구와 달리 핵가족 제도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오치아이(Ochiai, 2014a, 2014b)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초저출산이 야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핵가족 제도는 도전받지 않고 공고하다.

물론 여기서 ‘핵가족’의 내용은 서구 산업사회 핵가족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서구의 경우 핵가족의 중심축은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부부관계였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부관계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부모-자녀 관계의 중심이 직계 존속과의 관계였던 전통적 ‘효’의 형태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몰입이라는 ‘사회적 지위 재생산’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한국의 가족주의는 부계 친족의 구속력에서는 풀려나고 있으나, 성인 부부가 자녀의 삶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여전히 효과를 발휘한다. ‘효’의 근간인 존속에 대한 의무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부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계 혈통이 아니라 불평등한 성역할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방식으로, 가족의 지위 재생산 기능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부계 가문이라는 전근대적 공동체 관계에서는 부부 중심으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의 ‘사회적 지위 재생산’과 관련해서는 ‘개인화’가 억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백이 ‘개인화 제1단계’로 본 산업사회 초기의 현상, 즉 ‘반쪽짜리’ 개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묘사하는 ‘자본주의 가족’은 현재 한국의 가족 못지않게 권위주의적이었고, 2차 대전 이후 ‘번영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근대적 핵가족이 제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거 유교가족주의에서는 입신출세한 개인의 출중한 성취를 조상의 음덕으로 돌려서, 가문의 계승과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켰다. 그러나 현재 자녀 교육에 대한 몰입은 자녀의 성취를 조상이 아니라 부모 당사자들의 능력에 돌림으로써 가문의 계승과 같은 유교적 원리보다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세대에 걸쳐 재생산하려는 ‘자본주의 가족’의 원리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낸다. 말하자면 부모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개인주의적 계기가 가족연대에 통합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가족의 권위주의를 파시즘의 심리적 기초로 설명했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가족’이란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엔겔스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사랑’이란 계급재생산이라는 가족 본래의 기능을 은폐하는 낭만화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들의 견해를 참고하면, 한국의 현재 제도가족은 유교가족주의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가족에 한층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부부 간의 낭만적 사랑이라는 개인주의적 이념의 미약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 이념의 미약성이 오히려 현재의 굳건한 제도가족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핵가족의 정상성이 온존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와 초저출산화가 동반되는, 서구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추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재 유교가족주의의 영향력은 역설적이게도 ‘핵가족의 정상성’ 규범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오치아이(Ochiai, 2014a, 2014b)는 현재 동아시아 유교권 사회에서 나타나는 초저출산이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Chang and Song, 2010; Chang, 2014)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수용한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유교가족주의의 핵심인 ‘효’가 가족제도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족 속에서 유교가족주의를 확인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즉 유교가족주의는 제도가족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강고하게 작용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족 영역에서 유교가족주의가 명백히 약화됨에도 가족에 대한 그것의 영향력은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발휘된다.

필자는 유교가족주의의 진원지가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가족관계로 규정했던 일본의 ‘이에’ 개념이 일본의 산업화 모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문화에 숨겨진 채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교가족주의의 진원지가 기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가문과 조상에 대한 헌신’이라는 유교가족주의가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동원되지 않았다면 서구와 마찬가지로 계급 갈등에 의해 위협받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제2차 인구학적 전환’의 특이성은 가족형태 변화의 독특성을 통해 관찰되지만, 그것의 원동력은 가족 안에 온존하는 유교가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문화에 통합된 유교가족주의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sup>21</sup> 유교가족주의에 기초한 기업문화가 남성의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노동시장 체제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틀에 맞지 않는 여성의 진입에 체계적 장애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남성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남편을 내조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이것은 특히 남성이 정규직이거나 기업의 핵심부문에 취업해 있어서 회사와의 일체감이 강할 경우 두드러진다. 따라서 기업에 필수적인 학력자본을 소유한 고학력 남성의 배우자가 될 고학력 여성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폐쇄성이 특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앞서 한국의 맞벌이에 대해 짚막하게 언급하면서(각주 14), 가구주가 관리직이나 숙련 육체노동자일 경우 맞벌이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혼 역시 노동시장에의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나 그 대신 노동시장지위가 불안정한 저학력 여성들을 중심으로 발생함을 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고학력 여성 개인의 미약한 경제적 지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21 한·중·일 3국의 기업문화를 비교한 연구(윤경우, 2005/2006)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문화 역시 유교가족주의와 무관하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이 유교를 실용주의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아마도 기업문화와 관련된 부분 역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여성노동 전체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녀 교육 투자의 팽창과 계층이동의 폐쇄성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 말하자면 고학력 맞벌이로 인한 횡단면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보다, 고학력 여성의 자녀 교육 몰입으로 인한 계층적 폐쇄성 증가와 세대에 걸친 양극화 심화가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sup>22</sup> 고학력 맞벌이로 인한 부의 양극화는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문화의 왜곡과 양극화는 ‘공공성’의 규범을 파괴하고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과 기업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고학력 여성을 제도가족 내에 종속시키고, 그와 함께 여성노동의 가치를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여 여성 일반의 사회적 지위를 낮게 유지하는 유교가족주의는, 단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도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와도 직결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교육의 자연스러운 효과인 고학력 여성의 개인화 욕구를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고학력 여성을 과도한 자녀 교육 몰입으로 내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학력 여성에게 나타나는 가족과 노동시장 양면에서의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그들을 ‘위험한 개인화’로 내모는 한국의 유교가족주의는, 서구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학력에 따른 여성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실업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양극화는 ‘무산계급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테제를 확인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전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위와 같이 양극화되어 사회가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 중간적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고학력 여성에게는 더 많은 개인화를, 저학력 여성에게는 덜 위험한 개인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고학력 여성의 전업주부화보다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증가가 사회 양극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아직까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이주희, 2012; 김현경·강신욱·장지연·이세미·오혜인, 2015; 김수정, 2015; 이상 신경아, 2016에서 재인용; 김영미·신광영, 2008).

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가족영역을 지배하는 유교가족주의는 사실상 무효화한 상태이고 오직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서만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기업부문에서 비권위주의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가족영역에서도 더 평등하고 덜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통합력의 제고로도 나타날 것이다.

#### IV. 맺음말

‘제2차 인구학적 전환’이나 ‘개인화’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현대 가족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의 가족변화가 단순히 저출산의 인구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변화, 정확히는 지위의 상승과 관련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여기서 동북아의 경우 저출산과 초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인구학적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서구를 따라잡는 데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사회적 지위 강화를 지원하는 가족제도의 ‘탈전통화’는 지극히 미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예컨대 197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한 서구의 경우, ‘노동시장 개인주의’의 영향력이 가족의 ‘공동체적’ 영역 안으로까지 침범하며 성역할 규범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통적 가족의 생활양식 안에서 여성의 일·가족 양립이 불가능할 만큼 노동시장과 가족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상충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은 내조를 직업으로 삼는 ‘전업주부’를 배경에 두는 ‘1.5인’의 개인을 요구했고, 가족은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남성을 내조하는 ‘성역할’을 당연시했다. 따라서 취업여성은 2.5인의 역할을 해내야 했다. 그러나 복지의 혜택이 개인의 노동이력에 기초한 노동사회가 제도화된 만큼, 노동시장 경력을 중시하는 여성들은 과감하게 ‘제도가족’의 생

활양식을 포기함으로써 '주부'라는 1인의 몫을 포기했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경력형성과 그것의 복지혜택으로의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행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sup>23</sup>

이와 달리 예컨대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체제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1.5인이 아니라, 2인의 개인을 요구한다. 서구에서는 산업사회의 노사갈등을 통해 0.5인 만큼의 가족생활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제도를 확보한 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서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서구에서처럼 전통적 가족의무를 포기한다고 해도, 전업주부를 배경에 둔 남성만큼 2인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노동은 아무리 고학력의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배제되기 쉽다. 게다가 체력이나 안전 등의 이유까지 더해져서 여성노동에서 남성노동만큼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이 차후 결혼하여 가족의무에 시간을 나눠야 할 것인가는 기업이 개입할 수 없는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은 여성이 결혼해서 가족의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을 리스크로 계산하게 된다. 특히 아직까지 결혼은 당사자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라 '집안문제'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여성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그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교육 동질화의 강력한 경향 속에서 고학력 여성은 좀 더 안정적인 지위의 남성과 결혼하여 전업주부화의 압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 고용의 리스크는 더욱 증가한다. 현재 한국의 아동 보육률이 매우 높음에도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L자 곡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고학력 여

---

23 서구에서도 남성들이 가족부양을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동반됨으로써 독신이나 동거와 같은 대안적 생활양식이 더욱 확대되었다. 즉 '내조자'로서의 여성 역할뿐만 아니라, '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 역시 도전받게 되었다.

성의 경우 가족의무의 핵심이 단순한 육아가 아니거나 또는 보육지원의 현실이 육아부담마저 충분히 감소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특히 중국이나 대만과의 가사노동 시간 비교를 통해서, 한국은 기업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남녀 모두 가사노동 부담 등으로 인해 가족생활만족도나 행복감이 가장 낮은 상태였다. 또한 일터에서의 평균적 노동 시간 역시 한국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기업과 가족 각각의 장시간 노동체제로 인해서 남녀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안적 생활을 시도하거나 상상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상호 소통할 만큼의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에서 전통적 가족제도와 관련된 남녀의 선택은 ‘대안적 형태’ 실험이 아니라 일방적인 ‘포기’로 나타나기 쉽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만혼, 비혼 등 1인 가구의 증가와 출산포기로 인한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속화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여전히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 지위로 말미암아,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이 과연 가족생활의 포기를 정당화할 만큼 성공적일 수 있는지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M자 곡선의 오른쪽으로의 이동과 또 여전히 유효한 고학력층의 L자 곡선을 통해 드러나듯이 비혼보다는 만혼이, 그리고 무자녀보다는 출산 연기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은 여전히 필요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말하자면 결혼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앞서 부모 부양 의무나 남아선호 등 전통적 유교가족주의의 약화와 관련해서도, 인식과 행태가 괴리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사노동 부담이나 이혼의 경우에는 인식과 행태의 괴리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규범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지위와 관련하여 여성의 인식과 행태를 어긋나게 하는 ‘구조’의 핵

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기업문화’로 변용된 유교가족주의에 기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꼽았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경력 형성을 위협하여, 이혼에 대한 그들의 자유주의적 태도를 상쇄하는 ‘구조’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또한 남녀 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비교적 평등한 의식이 실현되지 못하는 데에도 장시간 노동체제가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장시간 노동체제는 고학력 여성을 전업주부이자 ‘자녀 교육 전문가’로 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고, 이와 같이 ‘전업주부 제도’가 여전히 작동하는 ‘압축적 개인화’의 현상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전업주부 현상이 서구 근대 초기와 마찬가지로 고학력 여성들에게 제한되는 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2차 대전 이후의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전 계층에 걸쳐 보편화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역설적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서구의 과거 모습’에 묶어두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유교 문화권 고유’의 가족주의, 특히 특유의 기업문화이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통’의 이름으로, ‘효’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가족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적이고 산업사회적인 전업주부 제도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의식변화가 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오히려 자녀 교육 투자에 집중하는 ‘재가족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의식을 보이는 저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일과 가족 모두가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개인화’의 경향이 강하다. 이럴 경우 고학력 여성들의 ‘개인주의’는 서구 산업사회의 ‘반쪽 개인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저학력 여성은 ‘사회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특히 여성의 지위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

24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성의 경력형성이 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한국 전통의 과거 제도가 현대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과 국가고시를 통한 부문이다. 오히려 근대적 산업사회의 핵심인 사기업에서 여성의 경력 형성이 가장 어렵다.

는 고학력 여성들-의 인식과 행태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는 결정적 기제이며, 다시 강조하지만 그것은 여성 개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결과다.

따라서 ‘생활’ 자체를 위협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노동착취 구조가 ‘전통적 유교가족주의’에 의해 정당화되어왔다는 모순이,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가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의 통합 불가능성과 지속 불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학력 여성의 전업주부화 또는 ‘사교육 전문가화’를 ‘강제’하는 구조의 효과는 여성 개인 차원에서 인식과 행태가 괴리되는 아노미적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를 세대에 걸쳐서 더욱 강화하고 ‘가족생활’을 일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본’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규범적 아노미와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상호 강화하는 과정이 가속화하면, 결국 사회와 도덕에 대한 냉소가 지배적이 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일베’ 현상과 같이 ‘몰도덕적’인 새로운 풍조가 한국 사회에서 등장하는 것 역시 이러한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규범적 아노미로서만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의 수준에서도 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을 갖는 여성의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약화된 대로 약화된 가족 영역의 유교가족주의가 아니라, 기업문화에 체현된 유교가족주의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논점이다. 또한 기업의 유교가족주의가 ‘이에’ 전통에 기초한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한국(과 아마도 중국)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봄으로써 그것을 ‘동북아 맥락’의 유교가족주의로 이해했다.

## 참고문헌

### 국내 저서

- 김승권 · 김유경 · 김혜련 · 박종서 · 손창균 · 최영준 · 김연우 · 이가은 · 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경 · 강신옥 · 장지연 · 이세미 · 오혜인, 2015,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창비.
- 이삼식 · 박종서 · 이소영 · 오미애 · 최효진 · 송민영,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 2011, 『혼인·출산 태대 및 인구·가구구성 변화 연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조주은, 2013, 『기획된 가족』, 서해문집.
- 주재선 · 송치선 · 박건표, 2015,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찬숙, 2015, 『개인화: 해방과 위협의 양면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미영 · 김미란, 2015, 「기혼 무자녀 여성의 '가족실천'을 통해서 본 생애과정의 탈규범화」, 『젠더와 문화』 8(2).
- 김수정, 2015, 「누가 맞벌이를 주도하는가? 맞벌이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여성학』 31(4).
- 김순남, 2009, 「성별화된 이혼의 서사—상실의 경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 김승권, 2014,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246.
- 김영미 · 신광영, 2008,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 불평등의 변화」, 『경제와 사회』 77.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한국사회학』 47(2).
- 남상호, 2015, 「근대일본의 국민도덕론과 조상숭배」, 『韓國關係史研究』 50.
- 박경숙 · 김영혜 ·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훈, 성역할분리

- 구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 박형숙·배영실·이성화·유수정·전소영, 「고학력 전문직 중년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2(1).
- 박희봉·이희창·전지용, 2008, 「한·중·일 3국의 가치변화 성향 분석-신세대와 기성세대간 비교-」, 『한국행정논집』 20(2).
- 신경아, 2016,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관한 여덟 가지 질문」, 『페미니즘연구』 16(1).
- 신승배·이정환, 2015, 「동아시아의 가족가치관과 행복감 비교: 한국, 중국, 일본 비교」, 『사회과학연구』 39(3).
- 심영희, 2013, 「개인화의 두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와 이론』 23.
- 오지혜, 2015, 「한국 기혼 여성의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가정 내 요인과 가정 외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1).
- 우명숙, 2014, 「과잉노동사회와 고학력 기혼 여성의 일-생활 불균형」, 신광영 외,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한울.
- 유용태, 2001, 「집단주의는 아시아 문화인가」, 『경제와 사회』 49.
- 윤경우, 2005/2006, 「한중일 3국 기업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성 비교」, 『중소연구』 29(4).
- 은기수, 2013, 「동아시아 사회의 자녀 성선택」, 『가족과 문화』 25(4).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 이민아, 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할」, 『한국사회학』 47(2).
- 이은영·서운석, 2008, 「한·중·일 3국의 성별 인식 차이에 대한 현황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12(0).
- 이정선, 2011, 「식민지 조선·대만에서의 ‘家制度’의 정착 과정-‘戶主·家族’과 ‘戶主相續’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 이주홍, 2003,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5.
- 이주희, 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한국여성학』 28(3).
- 이현정, 2012, 「‘부모-자녀 동반자살’을 통해 살펴 본 동아시아 지역의 가족 관념: 한국, 중국, 일본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접근」, 『한국학연구』 40.

- 조성호·변수정, 2014,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 Issue & Focus』 267.
- 조주은, 2008, 「압축적 시간성을 통한 ‘바쁨’-서울지역 중간계급 유배우 취업여성들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4(3).
- 조지현·오세근·양철호, 2012, 「동아시아 4개국의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부양행위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 22.
- 최봉영, 1998, 「유교 문화와 한국 사회의 근대화」, 『사회와 역사』 53.
- 최우영·마수다 카즈미, 2013, 「한국·일본 전통가족의 역사와 현재-네트워크형 가족과 동심원형 가족의 비교」, 『한국학논집』 50.
- 통계청, 2016a, 「2015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 2016b,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6,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 홍찬숙, 2017, 「동북아 가족주의 맥락에서 본 한국 여성 개인화의 세 시나리오」, 『경제와 사회』 113.

#### 번역서

- 백-게른스하임, 엘리자베트, 이재원 옮김, 2000,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한 조각 내 인생과 아이 문제』, 새물결.
- 백, 올리히·엘리자베트 백-게른스하임, 배은경·권기돈·강수영 옮김, 1999, 『사랑은 지독한 혼란』, 새물결.
- 백, 올리히, 홍찬숙 옮김, 2013, 『자기만의 신』, 길.
- 시마다 히로미, 이소담 옮김, 2011, 『사람은 홀로 죽는다』, 미래의 창.

#### 해외 저서

- Beck, Ulrich, 1986,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Ochiai, Emiko and Leo Aoi Hosoya, 2014,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Leiden: Brill.
- Okin, Susan M, 1989, *Justice, Gender, and the Family*, New York: Basic Books.

- Atoh, Makoto, 2001, "Very Low Fertility in Japan and Value Chang Hypotheses,"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10.
- Chang, Kyung-Sup, 2014,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pp. 37~62 in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eds. by Emiko Ochiai and Hosoya Leo Aoi, Leiden: Brill.
- Chang, Kyung-Sup and Min-Young So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 Inoue-Smith, Yukiko, 2014, "Gender Differences in Aspirations for Career and Marriage among Japanese Young Adults: Evidence from a Large National University in Japan," *Journal of International Women's Studies* 15(2).
- Kim, Young-Mi, 2013, "Dependence on Family Ties and Household Division of Labour in Korea, Japan, and Tiwa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9(2).
- Lee, Yean-Ju, 2006, "Risk Factors in the Rapidly Rising Incidence of Divorce in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2(2).
- Lee, Yean-Ju and Larry Bumpass, 2008,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Divorce/Separation in South Korea: A Focus on Wife's Current and Desired Employment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nd Society* 37(2).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 Nemoto, Kumiko, 2008, "Postponed Marriage," *Gender & Society* 22(2).
- Ochiai, Emiko, 2014a, "Introduction: Intimate and Public Spheres in Asian Modernity," pp. 1~36, in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eds. by Emiko Ochiai and Hosoya Leo Aoi, Leiden: Brill.
- Ochiai, Emiko, 2014b, "Unsustainable Societies: Low Fertility and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and Semi-compressed Modernities," pp. 63~90 in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eds. by Emiko Ochiai and Hosoya Leo Aoi, Leiden: Brill.

- Ochiai, Emiko, 2014c, "Care Diamonds and Welfare Regi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pp. 164~189 in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eds. by Emiko Ochiai and Hosoya Leo Aoi, Leiden: Brill.
- Oshio, Takashi, Kayo Nozaki, and Miki Kobayashi, 2013,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in China, Japan, and Kore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4.
- Park, Hyunjoon and James M. Raymo, 2013, "Divorce in Korea: Trends and Educational Differentia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 Raymo, Iwasawa, and Bumpass, 2004, "Marital Dissolution in Japan: Recent Trends and Patterns," *Demographic Research* 11(14).
- Rindfuss, Ronald R, 2004,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 134~143 in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d. by Niroko O. Tsuya and Larry L. Bumpas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indfuss, Ronald R., Larry L. Bumpass, Minja Kim Choe, and Noriko O. Tsuya, 2004, "Social Networks and Family Change in Japa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 Rudolf, Robert and Sung-Jin Kang, 2015,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in Korea: When Gender Matters," *Feminist Economics* 21(1).
- Shim, Young-Hee and Sang-Jin Han, 2010, "Family-oriented Individualization and Second Modernity," *Soziale Welt* 61(3-4).
- Shim, Hyunjoo, Insuk Choi, and Bailey L. Ocker, 2013, "Divorce in South Korea: An Introduction to Demographic Trends, Culture, and Law," *Family Court Review* 51(4).
- Tsuya, Noriko O., Larry L. Bumpass, Minja Kim Choe, and Ronald R. Rindfuss, 2005, "Is the Gender Division of Labour Changing in Japan?," *Asian Population Studies* 1(1).
- Yang, Sungeun and Paul C. Rosenblatt, 2008,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s* 29(5).

## 인터넷 자료

“서울시, ‘20년 이상 산 부부, 신혼보다 이혼비중 높다’”. <http://stat.seoul.go.kr/pdf/e-webzine59.pdf> (검색일: 2016. 8. 4).

“의존할 가족·친구 있다?”…한국, OECD ‘꼴찌’. 연합뉴스, 2016. 07. 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088000017.HTML> (검색일: 2016. 8. 4).

“한국인 ‘10명 중 9명 스트레스 많아 … 더 즐거운 인생 위해’, 크룩스, 한중일영미독 6개국 Fun(즐거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뉴스와이어, 2016. 5. 10.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5404> (검색일: 2016. 7. 24).

“Surname”,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urname> (검색일: 2017. 11. 17).

## 동북아 가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노동시장 가족주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

홍찬숙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의 성공과 함께 서구에서는 여성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성역할 변화, 가족행태의 개인화 또는 제2차 인구학적 전환이 관찰되었다. 흔히 이러한 변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노동시장 개인주의 대 핵가족 가부장주의’ 간의 제도적 충돌을 든다. 반면 국제지표들을 통해 드러나듯이 한국과 일본 여성의 지위는 산업화 성공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 데, 경제활동참여율 정체, 성역할과 가족행태의 제한적 변화가 그와 관련된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의 구조적 원인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노동시장 가족주의 대 가족행태의 제한적 개인화’라는 제도 대 행위의 충돌을 든다. 여기서 기존의 관점과 달리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의 핵심이 유교적 가족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체제로 제도화된 노동시장 가족주의라고 본다. 노동시장 가족주의는 가부장적 가족과 달리 미시적 선택을 통해 벗어날 수 없고, 또 실상 가족문화로서의 유교가족주의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가족주의’ 개념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동북아 가족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

다. 그런 후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족지위 변화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가족지위 변화가 가족주의적 기업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가족주의의 성차별적 작용들이 단지 여성지위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임을 지적한다.

**주제어:** 가족행태의 개인화, 노동시장 개인주의, 노동시장 가족주의, 동북아 가족주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

## ABSTRACT

# Northeast Asian Familism and the ‘Social’ Status of Korean Women: Labor-market Familism vs. (Limited) Individualization of Family Behavior

Hong Chan-Sook

This study identifies the familism of Northeast Asia not only with family values but also with a system of normative rules, which coordinate the institutions of family, industry, and state policies. In this system men as well as women are not typically regarded as individuals. However, it is the women to whom family roles are especially ascribed. As many global indices of gender inequality do not reflect the status of women in the family, I analyze the changes in the family status of Korean wome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criteria: ① how marriage is still considered a normal affair; ② whether women have the effective right to exit unsatisfactory marriages; and ③ how forcing family duties are for women. My conclusion is that there have only been limited changes in the status of Korean women in the family, particularly due to the familistic culture of the labor market — that is to say, the culture of

extremely long working hours. As a result,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and in Japan, as well) seems very different from that in Western Europe. The institution of extreme working hours is justified by Confucian familism, and is a main contributing factor to the low status of women in Korea. It also leads to the anomie of the female gender role and the bi-polarization of socio-economic statuses.

**Keywords:** individualization of family behavior, labor-market individualism, labor-market familism, Northeast Asian familism, women's "social" status

#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조진구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I. 문제의식
- II.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과정과 배경
- III. 국가안보전략(NSS) 책정과 방위계획의 대강 개정
- IV.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안보법제, 그리고 헌법
- V. 맺음말



## I. 문제의식

2015년 4월 27일(워싱턴 시간)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이 합의되었다. 미일 양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 양국의 역할과 임무를 새롭게 하고 “보다 균형 있고 실질적인(a more balanced and effective)” 미일동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sup>1</sup> 케리 국무장관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역사적 전환’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틀 뒤인 4월 29일(워싱턴 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미 연방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신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하는 안보관련 법안을 “이번 여름까지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귀국 후 아베 총리는 5월 14일 임시각의를 열어 안보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다음 날 국회로 보냈다. 법안은 모두 11개로 기존 10개 법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무력행사를 하는 타국 군대에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한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의결정에 대해 일본 언론은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는데, 법안의 핵심은 ①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 ②외국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확대, ③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 시 자위대의 무기사용 권한과 임무 확대 등 세 가지다.

이미 일본 정부는 자위대 창설 60주년의 해였던 2014년 7월 1일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한 바 있다. 『마이

---

\* 투고: 2017년 5월 10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6일, 게재 확정: 2017년 11월 17일

1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A Stronger Alliance for A Dynamic Security Environment: The New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April 27, 2015; 일본어판은 「變化する安全保障環境のためのより力強い同盟-新たな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니치[毎日]신문』은 “헌법 9조를 근간부터 바꾸어 ‘자위의 조치’라는 이름하에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인정하는” ‘전후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며 각의결정에 반대하는 사실을 7월 1일자 조간에 실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7월 2일자 사설에서 전날의 각의결정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sup>2</sup>

각의결정문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헌법해석 변경이 이유로 들면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위를 위한 조치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sup>3</sup>

2014년 7월 1일과 2015년 5월 14일의 각의결정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악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의 공헌을 반복해서 지적했다. 특히 2014년 7월 1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아베 총리는 2015년 5월 14일 기자회견에서는 대부분의 일본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동시에 일본에 접근하는 국적불명의 항공기에 대한 자위대기의 긴급발진이 10년 전에 비해 7배 증가했다면서 간접적으로 중국의 위협 증가를 강조했다.<sup>4</sup>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은 일개 내각에 의한 헌법해석의 자의적인 변경을 통한 사실상의 헌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2014년 7월 1일의 각의결정문은 과거 정부의 해석을 답습하면서도 정반대의

---

2 “集团的自衛権 閣議決定に反対する”, 『毎日新聞』(2014. 7. 1) 사설; “集团的自衛権の容認-この暴挙を超えて”, 『朝日新聞』(2014. 7. 2) 사설.

3 「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平成 26年 7月 1日 国家安全保障會議決定 閣議決定.

4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은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4/0701kaiken.html](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4/0701kaiken.html)(검색일: 2017. 2. 1);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514kaiken.html](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5/0514kaiken.html)(검색일: 2017. 2. 1).

결론을 도출하는 공색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대상, 즉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미국을 가리키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2014년 7월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분쟁지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을 동맹국인 미국 함정이 수송하다가 일본 근해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미군 함정을 도울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정당화했다. 또한 2015년 5월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근해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에도 위험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자신의 위기”로 보고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sup>5</sup>

냉전 종식 이후 일본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하에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미군과의 공동활동 기회도 늘어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1978년 11월 처음 제정되고 1997년 9월 23일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냉전 종식 후의 상황을 반영하여 ①평소의 협력, ②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 시의 협력, ③주변사태 발생 시의 협력으로 구분해 미일 간의 협력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주변사태는 한반도나 타이완 유사를 상정한 것으로 주변사태 발생 시 미군에 대해 제공하는 일본 측의 협력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었다.<sup>6</sup>

그런데 이번에 재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의 자위대의 활동범위는 미일안보조약상의 범위를 초월하여 세계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일안보체제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와 일본과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일본의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고 있

5 위의 글.

6 조진구, 2006, 「미국의 동맹관계의 재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를 중심으로」, 『安保學術論集』 제17집 제1호, 295쪽.

다.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지리적  
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미일 간의 협력이 지리적인 제약  
즉 미일안보조약이 정한 극동의 범위를 초월하여 이뤄질 것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1997년의 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의 모든 행위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의 범  
위 내에서” 전수방위와 비핵3원칙 등의 기본방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지만,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삭  
제되었다.

또한 2015년 가이드라인은 양국 정부에게 입법, 예산, 행정 또는 기타 조치  
를 의무화하거나 법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자위대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  
다. 1997년의 가이드라인이 1999년에 제정된 주변사태법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었던 것처럼 2015년 가이드라인은 5월 14일에 각의결정된 안보법제로 법적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안보법제 각의결정은 전후 일본의 안  
보정책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인데, 절차적으로 이번에는 각의결정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을 거쳤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 관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목적으  
로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방하여  
2013년 12월 4일 설립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013년 12월 17일 외교국방분야  
의 포괄적 지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또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NSS에 입각해 방위정책의 기본방침과 방위력의 구체  
적 정비계획을 담은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도  
함께 채택했으며, 2014년 1월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  
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2012년 12월 아베의 두 번째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외교안보정책은 내용이  
나 구조면에서 대전환이라 불릴 정도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일  
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sup>7</sup> 지금까지 자위대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향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든 미군의 방호(防護)를 위해서든 자위대가 우리 영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여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가 우리의 안보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떠한 과정과 배경 하에 설치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 이후 일본의 안보(방위)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문서와 2015년 4월 27일 재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2016년 7월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내 개헌 논의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한일 양국은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유사시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을 매개로 해서 이뤄질 뿐 직접적인 군사협력 방식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및 중일 간의 갈등, 한중 경제관계의 심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 등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복잡한 동아시아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7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4. 7. 1;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5. 5. 14.

## II.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과정과 배경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 외교사 분야의 대가인 어니스트 메이 교수는 20세기의 전환기에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이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했으며,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고위급 기관도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반성에 입각해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7월 25일 성립된 국가안전보장법(The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바탕으로 NSC를 창설했다. 즉,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국내정책, 대외정책과 국방정책의 통합에 관해 대통령에 조언하고 이를 위해 행정부 부처 사이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NSC의 공식멤버는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네 명으로 이때 창설된 중앙정보국(CIA)은 NSC 산하에 있었지만 CIA 국장은 NSC의 공식 멤버는 아니었다.<sup>8</sup> 정책 조정과 조언에 정책입안이나 위기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다는 점에서는 NSC 창설 이후 아무런 변함이 없다.<sup>9</sup>

일본에서 미국의 NSC와 유사한 조직을 총리 관저 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냉전이 끝난 후의 일이지만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sup>10</sup>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간 재임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파벌이나 족의원외의 영향력을 배제시킴으로써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총리)관저 주도’

8 Karl F. Inderfurth and Loch K. Johnson, ed., 2004, *Fateful Decisions: Inside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xford University Press, pp. 1, 24~26.

9 花井等·木村卓司, 1993, 『アメリカの国家安全保障政策: 決定プロセスの政治学』, 原書房, 89~95쪽.

10 春原剛, 2014, 『日本版NSCとは何か』, 新潮社, 23쪽.

의 톱다운 형의 정책결정을 도입하려고 했다. ‘관저 주도’의 정책결정 시스템은 그가 내걸었던 구조개혁, 즉 공공사업비의 삭감이나 규제완화, 우정민영화 등의 내정개혁에서는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외교안보 면에서는 새로운 제도나 인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베 신조였는데, 아베 체제 출범의 일등공신은 고이즈미와 북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아베의 외조부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며, 1980년대 초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 밑에서 외상을 했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가 그의 아버지다. 정치 명문가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때까지 아베는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다. 정치가 아베의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진 이면에는 고이즈미의 배려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자세가 큰 역할을 했다. 또한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자 일본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했는데, 일본 정부 내에서 이를 주도했던 것이 아베 관방장관이었다.

아베는 고이즈미 총리의 전임자인 모리 요시로[森喜朗]와 고이즈미 밑에서 관방부(副)장관을 했을 뿐 각료 경험은 없었다. 그런 아베를 배려하여 고이즈미는 2005년 10월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의 중요 정책의 기획입안, 종합조정과 정보의 수집조사 등을 담당하는 관방장관에 임명했다. 1993년 처음으로 중의원에 당선된 이후 주로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외교부회에서 활동을 해왔던 아베는 외교안보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7월 초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포함해 7발의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을 때 관방장관으로서 시퍼 미국 대사나 스티븐 해들리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던 아베는 미국처럼 전문 인력을 갖춘 NSC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전후세대로서는 처음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2006년 9월 29일 국회 소신표

---

11 조진구, 2006, 「아베총리체제와 북일관계 전망」,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명연설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총리 관저의 사령탑 기능을 재편, 강화하고 정보수집 기능도 향상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판 NSC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sup>12</sup> 아베 총리는 이집트 유학 경험이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중의원 의원을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총리 관저와 백악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라는 아베의 지시에 따라 10월 초 고이케는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이 핵실험을 예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4일(워싱턴 시간) 해들리 보좌관과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내외에 과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NSC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했던 마이클 그린도 만나 미국 NSC의 역사나 NSC 설립 시의 유의점 등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다.<sup>13</sup>

11월에는 총리 관저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 강화회의’(이하 ‘강화회의’)가 만들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의장인 총리 이외에 의장 대리역인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했으며,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전 태국대사와 기타오타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 교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1명이 참가했다. 강화회의는 2007년 2월 27일 최종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때까지 7차례 열렸다.<sup>14</sup>

보고서는 “폭넓은 외교·안전보장 상의 과제에 대해 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기획 입안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사령탑은 ①외교안보의 중요사항에 관한 기본방침, ②복수의 성청(부처)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③외교·안전보장 상의 중대 사태에 대처하는 것에 관한 기본방침을 심의하는 기능·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 <http://www.kantei.go.jp/jp/abespeech/2006/09/29syosin.html>(검색일: 2017. 2. 1).

13 春原剛, 2006, 『ジャパン・ハンド』, 文芸春秋, 16~20쪽.

14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kaisai.html>(검색일: 2017. 2. 1).

일본은 1986년 기존의 국방회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전보장회의를 설치했는데, 보고서는 안전보장회의가 중대 긴급사태 대처 같은 극히 제한된 사항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많아 실질적이고 기동적인 논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내각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판 NSC는 미국처럼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뿐 내각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각의에서 이루어지며 NSC는 각의를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NSC에서 기동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NSC의 구성원을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대신과 방위대신 등 4명으로 제한하며 한 달에 두 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을 상설화하며, 10~20명 정도의 전임인력을 포함한 소수정예의 스태프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할 것도 권고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보부문의 강화는 물론 정보부문과 정책부문 간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내각정보관을 비롯한 각 부처의 정보담당자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NSC에 제공하고 국가정보에 관한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sup>15</sup>

강화회의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2007년 4월에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7월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한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서 법률안은 폐안이 되었다. 아베보다 리버럴한 후쿠다 야스오가[福田康夫]가 총리가 되었는데,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했던 아베와 달리 중국과의 관계도 중시했다. 후쿠다는 NSC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 관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1년 만에 물러났다. 후쿠다에 이어 총리가 된 아소 다로[麻生太郎]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15 「国家安全保障に関する官邸機能強化会議 報告書」, 2007. 2. 27.

2009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명실상부한 정권교체가 실현되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총리가 되었다. 하토야마가 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국가전략실’은 ‘세재정(稅財政)의 골격, 경제운영이나 다른 중요 정책의 기본방침의 기획, 입안 및 종합 조정’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어 외교안보정책은 다루지 않았다.<sup>16</sup>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최소한 현외 이전’ 공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하토야마의 뒤를 이어 간나오토[菅直人]가 총리가 되었다. 간 총리는 2010년 12월 17일 민주당 정권으로서 처음으로 ‘방위계획의 대강(이하 방위대강)’을 개정하면서 “총리 관저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하여 관계 각료 간의 정책조정과 내각총리대신에의 조언 등을 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포함시켜 일본판 NSC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sup>17</sup>

그 뒤 민주당은 종합적인 외교·안보전략 수립을 위해 만든 외교안보조사사회 5개 분과회 가운데 ‘NSC·인텔리전스’ 분과회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했다. 민주당 작업팀은 2011년 7월과 2012년 3월의 중간보고를 거쳐 2012년 8월 초 최종안을 완성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NSC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외무대신과 방위대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전보장·위기관리 담당 관방부장관을 신설해 그가 NSC 사무국장과 총리보좌관을 겸임하면서 총리에게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관련 부처에서 파견되는 관료로 100인 규모의 NSC 사무국을 만들고 그 안에 테러나 에너지 등 분야 별로 13개의 담당실을 두게 했다. 안전보장이나 위기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경제나 금융정책의 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sup>18</sup> 2012년 12월 3년 3개월간의 민주당 정권이 끝나면서 민주당의 안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16 春原剛, 2014, 앞의 책, 114~118쪽.

17 「平成23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0. 12. 17.

18 “日本版NSC, 国際経済・金融戦略議論 民主提言案”, 『日本経済新聞』, 2012. 8. 3, 電子版.

한편, 2012년 12월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판 NSC의 설치를 공약에 포함시킨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아베가 총리 자리에 복귀했다. 그런데 총리 취임 한 달도 채 안 된 2013년 1월 동남아 순방 중 알제리의 이슬람 무장 세력의 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해 일본인 10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리는 일정을 앞당겨 귀국을 했지만 정부의 초동대응이나 현지 정보수집, 정부 내 정보 집약을 위한 부처 간 연계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sup>19</sup> 특히 아베 총리는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총리나 관방장관에게 보고하는 기관이 없고 정보 분석 능력도 떨어진다는 데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sup>20</sup>

이에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에 관한 유식자회의’를 만들어 NSC 설치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시켰다. ‘유식자회의’는 5월 말까지 6번 개최되었는데,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전 외무성 사무차관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가 내각관방 참여(고문)로 참여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sup>21</sup> 5월 9일 제5차 회의에서 이소자키 요우스케[磯崎陽輔] 총리보좌관은 정부 측 초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NSC 설치준비실’을 설치하여 법안 작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NSC 설치 법안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총리에게 일임한다는 것도 결정되었다.<sup>22</sup>

5월 2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이소자키 보좌관은 ‘NSC 설치준비실’이 만든 NSC 설치 법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별도의 보

19 「在アルジェリア邦人に対するテロ事件の対応に関する検証委員会検証報告書」, 2013. 2. 28.

20 春原剛, 2014, 앞의 책, 109쪽.

21 [http://www.kantei.go.jp/jp/singi/ka\\_yusiki/kaisai.html](http://www.kantei.go.jp/jp/singi/ka_yusiki/kaisai.html)(검색일: 2017. 2. 1).

22 [http://www.kantei.go.jp/jp/singi/ka\\_yusiki/dai5/gijiyousi.pdf](http://www.kantei.go.jp/jp/singi/ka_yusiki/dai5/gijiyousi.pdf)(검색일: 2017. 2. 1).

고서는 만들지 않고 유식자회의는 종료되었다.<sup>23</sup>

‘NSC 설치준비실’은 안전보장회의의 명칭을 국가안전보장회의로 바꾸는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성안했으며, 6월 7일의 각의 결정을 거쳐 바로 중의원으로 이송되었다. 10월 25일 시작된 중의원 심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법률안 취지와 개요 설명 뒤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자민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생활의 당 등의 야당도 “건설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는 심의”와 “여야 간의 기탄없는 활발한 논의”를 요구했지만 NSC의 필요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오키나와 출신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공산당 의원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일본을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비밀보호법안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법안에 반대했다.<sup>24</sup>

11월 5일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사이에 수정협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자민당과 민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이 공동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11월 6일 중의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찬성다수로 의결된 데 이어 11월 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이 법안은 11월 2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되었으며, 11월 27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31명 가운데 찬성 213명, 반대 18명의 압도적인 찬성다수로 가결되어 아베 총리가 염원했던 NSC 창설 법안은 마침내 성립되었다.<sup>25</sup>

23 [http://www.kantei.go.jp/jp/singi/ka\\_yusiki/dai6/gijiyousi.pdf](http://www.kantei.go.jp/jp/singi/ka_yusiki/dai6/gijiyousi.pdf)(검색일: 2017. 2. 1). 정보수집의 통합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가 NSC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자들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비밀보호법의 제정도 권고되었다. 春原剛, 2014, 앞의 책, 131~133쪽.

24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118520131025004.htm](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118520131025004.htm)(검색일: 2017. 2. 1).

25 <http://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85/meisai/m18503183075.htm>(검색일: 2017. 2. 1).

총리의 자문 요구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SC 설치법 제2조는 NSC의 소장사무(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 및 방위정책의 기본방침 및 이들의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요사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세 가지 중요한 회합(회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방의 기본방침이나 방위계획의 대강 등을 심의하는 ‘9대신 회합’을 존치시키면서 두 회합을 새로 만들었다. 제2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중대긴급사태, 즉 무력공격사태나 주변사태 이외의 긴급사태 발생 시 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대신들이 모여 심의하는 ‘긴급사태대신회합’이 신설되었다. 긴급사태에 대해 NSC 설치준비실은 영해침입이나 불법상륙, 방사능 물질 테러나 대량피난민 발생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사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에 관한 외교방위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4대신 회합’이다.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대신과 방위대신 등 4명의 대신으로 구성된 이 회합은 평소에는 한 달에 2회 정도 만나 주일미군 재편, 대중관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 안보정세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방침이나 정책을 논의하는 NSC의 핵심이다.<sup>26</sup>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무장관이나 국토안보장관, 법무장관, 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 합참의장 등이 고문(advisor)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지만, 법에 정한 NSC의 공식 멤버는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네 명이다. 일본의 NSC가 미국의 그것을 모델로 하고 있는 만큼 ‘4대신 회합’은 4명의 미국의 법정 공식 멤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 따라 NSC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설치되었으며, 5명 이내의 보좌관을 둔다는 내각법에 따라 그중 한 명을 국가안보담

26 今井和昌, 2013, 「『国家安全保障會議』設置法案-安全保障會議設置法案など一部改正をめぐる国会論議を中心に-」, 『立法と調査』No. 347, 6~8쪽.

당 총리보좌관으로 지정하도록 상설화했다. 제1차 아베 내각 때와 가장 큰 차이 점은 당시 국가안전보장국을 NSC 밑에 두어 독립된 지위를 부여했던 것과 달리 정책의 종합과 조정 권한을 갖는 내각관방장관 산하에 둬으로써 국가안전보장국이 국가안보에 관한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의 기획입안과 종합조정을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sup>27</sup> 그렇지만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국가안보담당 총리보좌관의 역할 분담은 애매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sup>28</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3년 12월 4일 일본판 NSC가 창설되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NSC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다. 각국의 NSC와 정보교환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NSC 창설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첫 번째 NSC ‘9대신 회합’에서는 NSC의 규칙 제정에 대해, 그리고 ‘4대신 회합’에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의 대강,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대처방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sup>29</sup>

한편, 2014년 1월 7일 NSC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내각관방에 만들어졌다. 외무사무차관을 역임한 야치 쇼타로가 초대 국가안전보장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외무성과 방위성 출신의 두 명의 관방부장관보가 차장을 겸임하게 했다.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 등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60여 명이 ‘총괄·조정반’을 포함한 6개의 반에 배치되었다. 전략기획반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의 대강 등 중장기적인 안보정책을, 정보반은 정보수집과 분석 및 정보 관련 각 부처와의 연락조정을 맡도록 되었다. 또한 세계를 세 개 지역으로 나눠 정책1반이 미국과 유럽·호주·인도·아세안을, 정책3반이 중동과 아프리카와 남미를 각각 커버하고,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는 정

27 今井和昌, 2013, 위의 글, 11쪽.

28 今井和昌, 2013, 위의 글, 11~14쪽; 春原剛, 2014, 앞의 책, 142~145쪽.

29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hosyoukaigi/kaisai.html>(검색일: 2017. 2. 1).

책2반이 담당한다. 정책2반의 반장인 후나고시 다케히로[船越健裕]는 일미안보 조약과장과 일미지위협정실장을 역임하고 주한일본대사관의 정무공사를 했지만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아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의 정무공사를 했던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는 일미안보 조약과장과 주미일본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 국장을 4개월 한 뒤 파격적으로 차관급인 관방부장관보로 발탁되어 국가안전보장국 설치와 동시에 차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국가안전보장국 간부의 면면을 보면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야치 쇼타로 국장의 친정인 외무성 주도의 미일 동맹 중시 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0</sup>

### III. 국가안보전략(NSS) 책정과 방위계획의 대강 개정

2013년 12월 17일 NSC와 각의는 NSS와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 계획’ 등 세 문서를 채택했다. 이 세 문서의 채택은 NSC 창설 후 2주 만에 이뤄졌는데, NSC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NSC 설치준비실’이 실무를 담당했다. 또한 2013년 9월 10일 각료간담회에서 아베 총리가 NSS의 책정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간담회는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 교토대학 명예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와 함께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 에비하라 신[海老原紳] 전 주영대사, 나카에 기미토[中江公人] 전 방위성 사무차관 등의 관료출신, 오리키 료이치[折木良一] 전 통합막료장(합참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가정교사로 불리던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총장)이 좌장을 맡았다.<sup>31</sup>

30 『日本經濟新聞』, 2014. 1. 26, 電子版.

31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pdf/konkyo.pdf](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pdf/konkyo.pdf)(검색일:

간담회에는 아베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과 외무대신 및 방위대신 등 NSC의 핵심 회의라 할 수 있는 ‘4대신 회합’의 멤버와 두 명의 관방부장관보 등이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했다. 9월 12일 첫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국가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하면서 NSS가 안보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는 자신의 지론인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입각해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으며,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태세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방위대강을 개정하고 자위대가 부여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sup>32</sup>

간담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두 차례 열렸다. 12월 11일 마지막 제7차 회의에서 방위성 출신의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 관방부장관보는 그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측이 준비한 NSS와 방위대강의 개요를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반도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요하다”(강조는 필자)고 지적한 위원도 있었으며, 민간 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상황인식과 초안에 동감을 표하면서 기존 방위정책에서의 전환과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즉,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 중 하나였던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정부 측 안이 일본의 안보 기반 강화, 특히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 산관학이 민군 양용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또한 미일동맹 강화를 포함해 어떠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강화가 억지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기타오카 좌장은 NSS라는 “역사적인 문서의 책정(策定)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정부가 최종작업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

2017. 2. 1).

32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dail/gijiyousi.pdf](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dail/gijiyousi.pdf)(검색일: 2017. 2. 1).

했다.<sup>33</sup>

이런 과정을 거쳐 12월 17일 ‘국방의 기본방침’을 대체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이 발표되었다. 1957년 5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 재임 당시 만들어진 ‘국방의 기본방침’은 유엔 활동의 지지, 애국심 고양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기초 확립, 효율적인 방위력의 정비, 외부 침략에 대해 미일안보체제를 기조로 대처 등 네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비해 A4판 32장 분량의 NSS는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국가이념, 국익과 국가안보 목표),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상의 과제, 일본의 전략적 어프로치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포괄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NSS는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으로서 NSC가 10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정책결정 지침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NSS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일본이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일본의 안전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sup>35</sup>

---

33 제7차 간담회 요지는 [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dai7/gijiyousi.pdf](http://www.kantei.go.jp/jp/singi/anzen_bouei/dai7/gijiyousi.pdf)(검색일: 2017. 2. 1).

34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平成 25年 12月 17日,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 閣議決定.

35 일본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외교관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이토 겐이치(伊藤憲一)다. 1991년 펴낸 저서에서 이토는 “헌법은 일본의 소극적인 국제적 공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그 제9조에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금욕적인 자기규제(즉, 소극적 평화주의)를 제안하는 한편 전문 속에서 ‘공헌자가 되기’ 위한 이타적 자기희생(즉, 적극적 평화주의)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해석의 본연의 모습은 이 양자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야말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伊藤憲一, 1991, 『「二つの衝撃」と日本』, PHP研究所, 118쪽. 한다 시게루(半田滋)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기동인 평화주의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란 말은 30회나 등장하지만 결국 이것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에서 벗어나 자주방위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半田滋, 2014,

이런 기본이념 하에 NSS는 ①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 역지력의 강화, ② 미일동맹의 강화와 역내·외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 ③ 외교적 노력과 인적 공헌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된 번영하는 국제사회 구축 등 세 가지를 국가안전보장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NSS는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파워 밸런스의 변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테러 위협, 해양·우주공간·사이버공간과 같은 국제공공재에 대한 액세스와 활용 방해 위협, 빈곤·전염병·기후변화·재해·식량 등의 ‘인간안보’와 글로벌한 경제 리스크 등을 글로벌한 안보상의 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NSS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과 과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규정했다. 중국 국방 분야의 불투명성 이외에 중국의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침범과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라고 우려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핵탄두의 소형화로 지역 안보와 국제사회의 위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표명되었다.

NSS가 일본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상정했던 전략적 어프로치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경제력과 기술력, 외교력과 방위력 등 일본의 능력과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 가치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호주 및 아세안국가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 중기방)이다. 후자는 방위대강에 입각해 자위대의 기능과 능력을 고려하

---

『日本は戦争をするのか-集团的自衛権と自衛隊』, 岩波書店, 114~115쪽; 柳沢協二, 2014, 『亡国の安保政策-安倍政権と「積極的平和主義」の罫』, 岩波書店, 2014.

여 2014년부터 5년간의 방위력의 정비·유지와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다.<sup>36</sup>

1976년에 처음 만들어진 방위대강은 소규모의 침공에 대해서는 일본 단독으로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방위력을 갖는다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제시했다. 일본 본토의 소극적 방위에 한정되어 있던 1976년 방위대강은 1995년과 2004년 두 번 개정될 때까지 ‘기반적 방위력’의 개념은 존치되었지만, 민주당 정권 하의 2010년 개정 시 ‘정적 억지력’인 기반적 방위력은 고도의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동적 방위력’으로 전환되었다.<sup>37</sup>

방위대강의 개정은 일본 방위정책의 관심 지역이 일본 본토에서 주변지역, 나아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3년의 방위대강은 2010년 방위대강의 ‘동적 방위력’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이 기본방침이다. 2010년 개정 이후 3년 만에 다시 개정된 방위대강은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해 센카쿠열도의 방위와 탈환을 염두에 둔 남서지역의 이도(離島, 낙도) 방위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하고 부대의 신속한 전개와 운용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 명기되었다.

2014년부터 5년간의 방위력 정비 계획을 담은 중기방의 소요 예산은 이전보다 1조 1,800억 엔이 증가한 약 24조 6,700억 엔에 달했으며, ‘절도 있는 방위력 정비’란 표현은 삭제되고 “실효성 높은 통합적인 방위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질과 양의 측면에서 방위력 확충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또한 무기 체계도 중국 견제를 위한 성격이 농후해 이도 방위를 위한 미국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대, 수륙양용차량 52대, 글로벌 호크 등의 무인

36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 12. 17;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2013. 12. 17.

37 半田滋, 2014, 앞의 책, 116쪽.

정찰기 3기의 추가도입,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한 이지스함 2척의 추가 건조 계획이 포함되었다. 자위대 병력의 배치와 운용 면에서도 냉전시대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고정적으로 배치했던 육상자위대를 축소하고 홋카이도와 규슈 지역 이외의 전차부대를 폐지한다는 것이 담겨 있다.

중기방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해병대를 모델로 한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것이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주둔하는 도서방위 전문부대인 서부방면보통과연대(700명)를 2,000~3,000명 규모로 확대·개편하여 연대 규모의 복수의 수륙양용작전 전문부대로 구성된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제시되었던 것이다.<sup>38</sup>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가를 염두에 둔 소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부분이다. 중기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동맹 전체의 억지력 강화만이 아니라 일본 자신의 바람직한 대응 능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sup>39</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변화를 보였다. 이전과 비교해 총리를 비롯해 총리 관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이전부터 그 필요성을 설파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해 심의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안보법제, 그리고 헌법

미일동맹은 전후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축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10월 도쿄

38 半田滋, 2014, 위의 책, 117쪽.

39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18쪽; 半田滋, 2014, 위의 책, 119쪽.

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미일동맹이 더 강력하고 더 큰 책임을 공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sup>40</sup>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양에서의 힘을 통한 안정 훼손 행동, 중국의 군 현대화와 인간에 의한 재해와 자연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중국의 군 현대화와 불투명성 등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동맹이 더 강력하고 더 큰 책임을 함께 수행해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일본은 NSC 설치와 NSS 책정 준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의 개정 등 자국의 중요한 안보정책에 관해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일본과 긴밀하게 연계해가기로 했다. 또한 미일 두 나라는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주일미군의 재편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10월 8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 실무자들의 중간보고를 거쳐 2015년 4월 가이드라인의 재개정에 최종 합의를 봤다. 2014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일본의 희망을 반영해 중국 견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여 포함시킬 것인가와 더불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결정으로 협의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sup>41</sup>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지론이자 정치적 목표이기도 했다.<sup>42</sup> 2006년 9월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는 ‘전후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9월 26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합동 본회의에서 총리로 선출된 아베는 9월 29일 총리로서 첫 번째 소신표명연설을 했다.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란 말

40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Toward a More Robust and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 October 3, 2013.

41 박영준, 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아세아연구』 제58권 제4호, 22쪽.

42 집단적 자위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관련 논점을 정리한 것으로는 佐瀬昌盛, 2001, 『集團的自衛權-論争のために』, PHP研究所.

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의 핵심 과제는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었다.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외무사무차관과 주미대사를 역임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를 좌장으로 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만들어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했지만, 2007년 9월 건강문제로 총리를 사임하면서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sup>43</sup>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아베 총리는 권리는 있는데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민법상의 금지산자와 같다고 저서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sup>44</sup> 2012년 12월 총리에 다시 오른 직후인 2013년 2월 7일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간담회를 다시 만들었다.<sup>45</sup> 야나이가 2차 간담회에서도 좌장을 맡았지만, 그가 2011년 10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취임하면서 좌장대리였던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총장)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5월 17일 총리에게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6</sup>

첫째, 헌법 제9조는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①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②이것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③그 국가의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 ④필요최소한의 실력 행사를 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전 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3국의 영역을 통과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43 간담회는 2007년 5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다섯 차례 모임을 가졌으며, 아베 총리 퇴임 후인 2008년 6월 24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添谷芳秀, 2016, 『安全保障を問い直す-「9条-安保体制」を越えて』, NHK出版, 174~177쪽.

44 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 文藝春秋, 131~132쪽.

45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の開催について」, 2013. 2. 7.

46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報告書」, 2014. 5. 15.

둘째,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참여하여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의 제약이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셋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재외국민의 보호와 구출, 국제치안협력 등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제약이 없으며, 무기사용 기준이나 소위 PKO 참가 5원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sup>47</sup>

넷째, 조직적·계획적인 무력행사, 즉 무력공격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침해라도 이를 배제하기 위한 자위대의 필요최소한도의 합법적인 행동은 헌법상 용인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14년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했는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간담회 권고대로 “적절한 형태로 새로운 해석을 분명하게 밝히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했던 공명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온전하게 하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강조는 필자)”할 경우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이 제한되었다.<sup>48</sup>

47 ‘PKO 참가 5원칙’이란 냉전 종식 후인 1992년 6월 15일 자민당·공명당·민사당 등 3당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①분쟁 당사자 간의 정전 합의, ②당사자에 의한 자위대 파견 허가, ③분쟁 당사자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중립적 입장 유지, ④위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수, ⑤무기사용은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하여 자위대를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가시킨다는 것이다.

48 「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2014. 7. 1. 내각법제국과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이 간담회와 약간 다른 견해를

각의결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1972년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상의 정부에 의한 해석 개헌’이라 할 수 있다. 방위관료 출신의 야나기사와 교지[柳沢協二]는 각의결정에 앞서 일본 정부가 제시한 “현행 법제로 대응할 수 없는” 15가지 사례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자위대를 보내는지, 어떤 이념에 입각해 자위대를 활용할 것인지, 정치적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sup>49</sup>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역지력이 높아지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점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곧 실제 전쟁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을 억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미일 간에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지지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미일 양국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sup>50</sup> 미일 양국은 2013년 10월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합의하고 18개월 후인 2015년 4월 합의에 달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언론은 평화안전법제 또는 안보법제, 안전보장관련 법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반대 시위를 했던 시민들은 ‘전쟁법안’이라 불렀다. 법안은 자위대법을 비롯해 기존 10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새로 제정하는 ‘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7월과 9월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하여 2016년 3월부터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간담회 보고서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森本敏, 2015, 「日米防衛協力ガイドライン見直しの射程」, 『外交』 Vol. 33, 26쪽.

49 柳沢協二, 2015, 『亡国の集团的自衛権』, 集英社, 50~59쪽.

50 柳沢協二, 2015, 위의 책, 30~31쪽.

‘국제평화활동지원법’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참가하는 외국 군대에 대해 물품과 역무, 수색구조활동, 선박검사활동 등을 할 때 기본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평화지원법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무장세력의 습격을 받은 PKO나 NGO 요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1</sup>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활동은 국제협조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 지적대로 호주, 캐나다, 스웨덴, 최근에는 독일까지도 실제로 하고 있어 일본에만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개정된 법률은 두 개다. 하나는 2003년에 제정된 ‘무력공격사태 등에서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이 ‘무력공격사태 등 및 존립위기사태에서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으로 개칭되어 존립위기사태 시의 대응이 포함되었다.

다른 하나가 자위대법의 개정이다. 방위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위대법 제76조 제1호는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총리가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수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2호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와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저에서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 즉 존립위기사태 발생 시 자위대에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엔헌장이 허용하는 집단적 자위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유

51 안보관련 법안에 따라 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에 ‘출동경호’가 새로운 임무로 부여되고 난 뒤 첫 번째 부대가 2016년 11월 남수단의 주바에 파견되었다. 『朝日新聞』, 2016. 11. 22.

엔헨장 제51조는 가맹국이 외부에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잠정적인 권리로써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가 아니라 일본의 방위를 위한 권리라는 측면이 농후하다. 그것은 헌법 제9조의 틀 내에서 합헌 논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립위기사태’와 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도 일본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의 국익과 관계 없는 지역에는 자위대를 보내지 않겠다는 일본의 국익중심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기도 하다.<sup>52</sup>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각의결정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평화안보법제는 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55년 창당 이래 자민당은 개헌을 당시(黨是)로 내걸어왔으며, 아베 총리도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표명해왔다. 2005년 창당 50년을 기념해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신헌법초안)을 마련했는데, 제9조를 개정해 자위군을 창설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2년 두 번째 헌법 개정안(일본국헌법개정초안)을 공표했는데, 이전보다 더 보수적 색채가 강해졌으며 개정안 작성을 주도한 것은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었다.

2012년 초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천황을 일본의 국가원수며 통합의 상징으로 격상시키고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국기와 국가를 일본의 표상(表象)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은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바뀌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여 총리가 국방군의 최고지휘관이 된다는 것이다. 전력 불보유와 교전

52 添谷芳秀, 2016, 앞의 책, 193~206쪽.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사태’에 대해 유엔헌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일부에 해당하며, 평화안전법제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방위를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허용될 뿐 타국 방위를 목적으로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의 책, 206쪽의 주 49번 참조.

권의 부인을 담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위대의 성격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쟁에 중지부를 찍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sup>53</sup>

그러나 2012년 이후 실시된 국정선거에서 헌법개정문제가 쟁점이 된 적은 없다. 특히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자민당과 공명당이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에 2016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2016년 1월 4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키겠다는 의욕을 표명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2017년 10%로 인상하기로 했던 소비세 연기 등 경제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아베 총리는 선거유세에서 개헌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여당은 개헌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했으며, 자민당 선거 공약집에는 헌법 개정문제가 작은 글씨로 포함되는데 그쳤다. 선거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게 되어 이들 간의 합의만 되면 언제라도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2016년 11월 17일 약 1년 5개월 만에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재개되었다. 2015년 6월 참고인 질의에서 출석했던 참고인 전원이 평화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이것이 여야당 대립으로 이어져 중단되었던 것이다. 국회에서의 헌법 논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본 국민들의 여론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참의원 선거 전인 2016년 4월 중순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0% 이상이 헌법개정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

53 헌법개정안 발의 조건을 현재의 중의원과 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国内情勢研究会 編, 2016, 『検証 自民党憲法改正草案』, ゴマブックス.

〈표 1〉 2016년 7월 10일 실시 참의원 선거공약에서 밝힌 각 당의 헌법 개정에 관한 입장

| 정당                       | 입장   |
|--------------------------|--|
| 일본유신회                    | 시대에 부합하는 헌법으로 개정<br>- 교육의 무상화, 도주제(道州制) 실현을 포함한 통치기구의 개혁   |
| 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는 정당          | 자주헌법 제정을 목표  |
| 민진당                      | 9조 개정에 반대, 미래지향의 헌법을 국민과 함께 구상   |
| 생활당과 아마모토 다로 [山本太郎]와 친구들 |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 국제협조 등에 국민합의가 있다면 유연평화활동, 국회, 국가와 지방, 긴급사태 등 일부 수정 가능                                       |
| 신당개혁                     | 헌법 개정은 시기상조  |
| 일본공산당                    | 전문 포함해 모든 조항 유지, 헌법 제9조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보물   |
| 사회민주당                    | 평화주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이념을 담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게 하지 않을 것임   |
| 공명당                      | 참의원 선거공약에 헌법 개정 언급 없음<br>(아마구치 나쓰오 대표 6월 19일 당수 토론, “현재 헌법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새롭게 가치를 추가해가는 가헌(加憲)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출전 『日本經濟新聞』, 2016년 6월 12일 조간; 国内情勢研究会 編, 2016, 앞의 책, 140~145쪽 참고 필자 작성.

27.3%만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반면 30.5%는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며,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22.1%가 찬성, 39.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4</sup> 참의원 선거 후인 2016년 8월 13일과 14일 실시한 TV아사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에 응답자의 63%가 찬성하지만(반대는 23%), 전쟁 포기를 규정한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반대해 찬성(27%)의 두 배를 넘었다.<sup>55</sup>

최근 헌법 시행 70년을 맞이하여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

54 [http://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60506\\_1.pdf](http://www.nhk.or.jp/bunken/research/yoron/pdf/20160506_1.pdf)(검색일: 2017. 2. 1).

55 <http://www.tv-asahi.co.jp/hst/poll/201608/index.html>(검색일: 2017. 2. 1).

면, 현행 헌법이 “일본에게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각각 50%와 41%였지만, 개헌을 우선적인 과제로 보는 응답자(33%)의 약 두 배인 62%가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56</sup>

물론 자위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아베 총리의 의지, 국회의 개헌세력 3분의 2 확보라는 국내적인 요인을 들면서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보수파도 존재한다. 그들에게 헌법은 외부에서 강요된 굴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손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후세에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sup>57</sup> 2017년 5월 3일 아베 총리는 개헌파들의 집회 ‘제19회 공개헌법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2020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전쟁포기와 교전권의 부인,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9조를 그대로 두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58</sup> 국방군의 창설이라는 2012년 개정초안에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력 불보유와 자위대 명문화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애초부터 양립 불가능하다. 더구나 국회는 개헌 발의만 가능할 뿐 궁극적으로 헌법개정안의 수용 여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2020년까지 아베 총리가 계속 집권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56 『朝日新聞』, 2017. 5. 2.

57 田久保忠衛·加瀬英明, 2016, 『日本国憲法と吉田茂-「護憲」が招いた日本の危機』, 自由社, 160~164쪽.

58 『毎日新聞』, 2017. 5. 4.

## V. 맺음말

2006년 전후세대 출신으로 처음 총리가 되어 주목을 받았던 아베 총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1년 만에 물러났지만 5년 후 보기 좋게 재기에 성공했다.<sup>59</sup> 한국에서는 역사인식은 물론 외교안보정책이나 헌법문제까지도 ‘아베 정권=우경화’라는 매우 편리한 말로 비판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제1차 아베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sup>60</sup>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이전의 국방회의(1956년 창설)나 안전보장회의(1978년 개칭)와 달리 NSC가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sup>61</sup> 그러나 NSC가 창설된 지 3년 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발표된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2015년 4월 29일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마친 아베 총리는 사사카와재단 미국사무소에

---

59 아베의 재기에는 일본회의의 역할이 컸다. 일본회의에 관해서는 菅野完, 2016, 『日本会議の研究』, 扶桑社; 山崎雅弘, 2016, 『日本会議-戦前回帰への情念』, 集英社.

60 木宮正史, 2014, 「安倍政権下の日韓(朝)関係と在日コリアン問題」, 『일본학』 제38집, 19쪽. 일본 내 우경화에 관해서는 中野晃一, 2015, 『右傾化する日本政治』, 岩波書店.

61 千々和泰明, 2015, 『変わりゆく内閣安全保障機構-日本版NSC成立への道』, 原書房, 12~30쪽. 일본에서 전략책정이란 국제환경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검증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태대처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등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서 강연을 했는데, ‘강한 일본’에 대해 언급을 했다. 즉, “강한 일본은 안정되고 성장하는 경제에 토대를 둡니다. 젊은 세대의 일본인이 자신과 자신의 나라,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외교안보정책이 아베 노믹스와 표리일체를 이룬다고 강조했다.<sup>62</sup>

2010년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경제적인 기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나아가 군사적으로도 기여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sup>63</sup>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 요인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이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연동하여 군사대국화로 가는 구실로 이용될지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중관계나 미일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해오고 한반도 유사를 상정하고 미군과의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독자적인 행동계획을 검토하기도 했다.<sup>64</sup> 이런 움직임이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

62 <http://spfusa.org/wp-content/uploads/2015/04/Abe-Remarks-Transcript.pdf>(검색일: 2017. 2. 1).

63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가정교사로 불리는 기타오카 신이치는 평화를 위해서는 군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齋藤貴男, 2014, 『戦争のできる国へ-安倍政権の正体』, 朝日新聞出版, 28쪽.

64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와 통합

한반도 유사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주일미군이 기 때문에 일본의 협력은 불가결하다. 또한 주한유엔군사령관 지휘 하에 있는 주일미군도 지원에 나설 수 있지만, 한미동맹과 달리 미일동맹 사이에는 사전협의 제도가 있다. 즉, 주일미군의 배치, 장비와 전투작전행동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일본과의 밀약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자유롭게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2010년 미일 간의 밀약이 존재했었음이 밝혀지면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주일미군도 사전협의의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65</sup>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부정적인 한국의 입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일본이 주일미군 기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일본에게 미군의 기지 사용과 일본의 안보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sup>66</sup>

지난 5월 1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인 ‘이즈모’가 보소(房総)반도 인근에서 미 해군 보급함을 호위하면서 함께 항행했다. 2016년 3월의 평화안전법제 시행 이후 자위대법 제95조2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을 방호하는 첫 번째 사례다.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5월 9일 조기 실시된 대통

---

막료감부는 『K반도 사태 대처 계획(K半島事態対処計画)』이라는 이름의 극비문서를 통해 자위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검토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半田滋, 2013, 『自衛隊 vs 北朝鮮』, 新潮社.

65 조진구, 2016,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66 道下徳成・東清彦, 2015, 「朝鮮半島有事と日本の対応」, 木宮正史 編, 『朝鮮半島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1~192쪽.

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잇달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의 잔여 발사대 4기의 성주 배치를 지시했다.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인 북한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고강도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체제 수호를 위한 억제력으로 인식하는 북한이 핵포기 요구나 이를 전제로 한 교섭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과 저출산 고령화를 ‘국난’이라면서 갑작스럽게 중의원을 해산했다.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등 아베 총리의 측근들이 관여된 개인적인 스캔들을 감추기 위한 선거라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10월 22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정권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2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는 13%에 불과했다.<sup>67</sup> 아베 총리가 원하는 9조 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명기 이외에도 대규모 재해 등 긴급사태 발생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긴급사태조항 등 이슈별로 정당별로 입장이 다르며 당내 입장도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일본 국내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 지난 3월 30일 자민당 정무조사회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나 사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적기지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검토를 하라고 정부에 제언했다.<sup>68</sup> ‘반격’이란 용

67 『毎日新聞』, 2017. 10. 24.

68 “弾道ミサイル防衛の迅速かつ抜本的な強化に関する提言”(平成 29年 3月 30日,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해 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북한의 공격이 임박해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실행에 옮기기 어렵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서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의 보유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작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미중관계가 대립과 협력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미중 간의 대립이 현재화되면 한국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도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미중, 미일, 중일이라는 삼각관계는 우리에게는 외교적 시련이지만 주변 강대국의 이해를 세련되게 균형 잡고 조정하는 외교를 펼친다면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나라다.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고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한일 간의 협력 방안 등은 후속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영준, 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아세아연구』 제58권 제4호.
- 조진구, 2006, 「미국의 동맹관계의 재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를 중심으로」, 『安保學術論集』 제17집 제1호.
- 조진구, 2006, 「아베총리체제와 북일관계 전망」,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 조진구, 2016,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약'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 연구』 제32권 제3호.
- 菅野完, 2016, 『日本會議の研究』, 扶桑社.
- 国内情勢研究会 編, 2016, 『検証 自民党憲法改正草案』, ゴマブックス.
- 柳沢協二, 2014, 『亡国の安保政策－安倍政権と「積極的平和主義」の罫』, 岩波書店.
- 柳沢協二, 2015, 『亡国の集团的自衛権』, 集英社.
- 半田滋, 2003, 『自衛隊 vs 北朝鮮』, 新潮社.
- 半田滋, 2014, 『日本は戦争をするのか－集团的自衛権と自衛隊』, 岩波書店.
- 山崎雅弘, 2016, 『日本會議－戦前回帰への情念』, 集英社.
- 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 文藝春秋.
- 伊藤憲一, 1991, 『「二つの衝撃」と日本』, PHP研究所.
- 斎藤貴男, 2014, 『戦争のできる国へ－安倍政権の正体』, 朝日新聞出版.
- 田久保忠衛・加瀬英明, 2016, 『日本国憲法と吉田茂－「護憲」が招いた日本の危機』, 自由社.
- 佐瀬昌盛, 2001, 『集团的自衛権－論争のために』, PHP研究所.
- 中野晃一, 2015, 『右傾化する日本政治』, 岩波書店.
- 千々和泰明, 2015, 『変わりゆく内閣安全保障機構－日本版NSC成立への道』, 原書房.
- 添谷芳秀, 2016, 『安全保障を問い直す－「9条－安保体制」を越えて』, NHK出版.
- 春原剛, 2006, 『ジャパン・ハンド』, 文芸春秋.
- 春原剛, 2014, 『日本版NSCとは何か』, 新潮社.

- 花井等・木村卓司, 1993, 『アメリカの国家安全保障政策: 決定プロセスの政治学』, 原書房.
- 今井和昌, 2013, 「『国家安全保障会議』設置法案—安全保障会議設置法案など一部改正をめぐる国会論議を中心に—」, 『立法と調査』 No. 347(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 道下徳成・東清彦, 2015, 「朝鮮半島有事と日本の対応」, 木宮正史 編, 『朝鮮半島と東アジア』, 岩波書店.
- 木宮正史, 2014, 「安倍政権下の日韓(朝)関係と在日コリアン問題」, 『일본학』 제 38집.
- 森本敏, 2015, 「日米防衛協力ガイドライン見直しの射程」, 『外交』 Vol. 33.
- 「国家安全保障に関する官邸機能強化会議 報告書」, 2007. 2. 27.
-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平成 25年 12月 17日,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 閣議決定.
- 「国家安全保障会議の創設に関する有識者会議 開催状況」.
- 「国の存立を全うし、国民を守るための切れ目のない安全保障法制の整備について, 平成 26年 7月 1日, 国家安全保障会議決定 閣議決定.
- 「変化する安全保障環境のためのより力強い同盟—新たな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 2015. 4. 27.
- 「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会の開催について, 平成 25年 9月 10日 内閣総理大臣決裁.
-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の開催について」, 2013. 2. 7.
- 「安全保障の法的基盤の再構築に関する懇談会 報告書」, 2014. 5. 15.
-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報告」, 2014. 10. 7.
- 「在アルジェリア邦人に対するテロ事件の対応に関する検証委員会検証報告書」, 2013. 2. 28.
- 「第165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06. 9. 29.
-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26年度～平成30年度)について」, 2013. 12. 17.
- 「平成23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0. 12. 27.
-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 12. 17.

「弾道ミサイル防衛の迅速かつ抜本的な強化に関する提言」, 平成 29年 3月 30日,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Inderfurth, Karl F. and Loch K. Johnson, ed., 2004, *Fateful Decisions: Inside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xford University Press.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A Stronger Alliance for A Dynamic Security Environment: The New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April 27, 2015.

Joint Statement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Toward a More Robust and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 October 3, 2013.

Remark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Japan’s Global Role,” Sasakawa USA’s Second Annual Security Forum, “Updating the Alliance: Domestic Changes,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April 29, 2015.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April 27, 2015.

##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조진구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

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아베 신조,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안전보장국, 집단적 자위권,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미일동맹

## ABSTRACT

# The Abe Administration's Diplomacy and Security Policy: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Cho Jingoo

Since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as formed in December 2012, the foreign security policy of Japan has demonstrated a grand transforma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structure.

Structurally, Japan established its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December 4, 2013, by taking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as the model, and newly launched in January 2014 the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which is the working-level supporting organization for the NSC. In terms of content, Japan adopte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comprehensive guideline for the diplomatic affairs and defense policy, on December 17, 2013,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Moreover, on July 1, 2014,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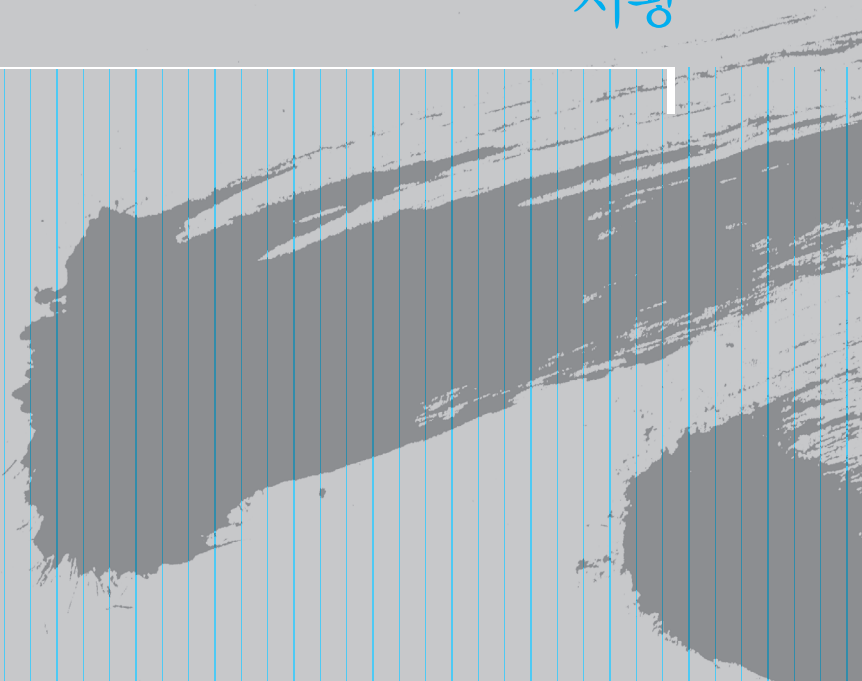
Cabinet-level decision to approv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y revising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its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any extraterritorial exercise of the right of defense of the Self-Defense Forces. At the 2+2 Meeting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n April 27, 2015, both states agreed to revise the Guidelines for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November 1978 and revised in September 1997.

These changes will be the core transition point of the post-war Japanese security policy.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pay attention that they have the possibility to bring about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Abe Shinzo, Japan's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 U.S.-Japan alliance



#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고구려 산성 자료의 집대성

---

– 정원철(2017),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양시은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 I. 고(故) 정원철 박사와 고구려 연구
- II. 『고구려 산성 연구』의 주요 내용과 평가



## I. 고(故) 정원철 박사와 고구려 연구

이 글은 2017년 10월에 발간된 고(故) 정원철 박사의 『고구려 산성 연구』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의 능력과 연륜이 부족함에도 작성에 흔쾌히 응하였던 것은 그와의 남다른 인연 때문이다.

정원철 박사와 필자는 모두 94학번으로,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다. 공부하는 공간은 달랐으나, 고구려 고고학이라는 동일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인과 필자는 세부 전공도 같다.

필자는 서울대학에서 2003년에 「한강유역 고구려토기의 제작기법에 대하여」라는 논문으로, 고인은 길림대학에서 2005년에 「고구려 토기 연구(高句麗陶器研究)」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이 이 논문을 준비할 때 남한 내 고구려 토기 자료를 구하는데 작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우리 인연의 시작이었다. 동북공정으로 인해 고구려 및 발해사 문제가 한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자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인이 중국 길림대학교에서 고구려 고고학의 권위자인 웨이춘청[魏存城]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상 중국 동북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고구려를 전공하려는 한국 유학생의 입학이 허가하지 않았고, 해당 전공으로 학위를 받기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고인은 고구려 토기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우수석사학위논문’으로 선정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씩스러운 표정으로 도움을 줘서 고맙다며 학위논문을 건네던 고



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석사학위 취득 이후 바로 박사과정에 진학한 고인은 2010년에 「고구려 산성 연구(高句麗山城研究)」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여전히 길림대학에서 수학하고 있었으나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고구려 유적의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인은 일찍부터 중국 내 여러 고구려 산성을 답사해왔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박사논문을 빨리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을 대하는 고인의 진지한 태도와 고구려 산성을 하나하나 답사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던 성실함 덕분일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에서는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과 남한의 고구려 산성 자료를 총망라하였는데, 고구려 산성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한 이는 고인이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2013년에 「고구려 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고인의 논문이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정원철 박사는 국내에 귀국한 후에 서해문화재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사이사이 학계에 꾸준히 논문을 발표했다. 가끔씩 만나 박사논문의 국내 출간 시점에 대해 묻곤 했는데, 그럴 때면 조금만 더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필자는 그의 부고를 중국에서 접하였는데, 고구려와 발해 유적을 답사하는 도중에 듣게 된 소식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정원철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1주기를 맞아 마지막 근무기관이었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고구려 산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고인의 박사논문을 발간하게 되었다. 재단의 김현숙 선생이 주축이 되어 작업을 하였고, 길림대학의 직속 선배였던 단국대학 이종수 선생이 번역을 하였다. 고인과 인연이 있는 여러 사람이 교정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필자 역시 이러한 과정에 미력하지만 힘을 보태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한글로 원고를 다듬어가며 작성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로 쓰인 박사논문을 번역한 것이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고구려 산성 연구』는 여전히 우리 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I. 『고구려 산성 연구』의 주요 내용과 평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 산성 연구』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에 분포한 고구려 산성에 대한 고고학 자료를 수합하여 집대성한 것으로, 분포 양상과 입지에 따른 유형 분류, 성의 구조 및 축성 기법 등을 검토하고,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 고구려 산성의 분기를 4기로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고구려 산성의 조사와 연구
3. 연구 과제와 연구 방법

### II. 고구려 산성의 분포와 유형

#### 제1절 분포

1. 연구 현황
2. 중국 경내 고구려 산성
3. 북한 경내 고구려 산성
4. 남한 경내 고구려 산성

#### 제2절 고구려 산성의 유형

1. 선행 연구
2. 산성 유형 연구
3. 유형 분석
4. 유형별 규모와 축성 재료

### III. 고구려 산성의 축성법 분석

#### 제1절 성벽의 구축

1. 성벽의 기초 시공과 하부 구조

2. 성벽 구조

제2절 성문

1. 웅성
2. 성문의 구조

제3절 성벽 부속 시설

1. 치
2. 여장
3. 돌구멍

제4절 산성 내외 시설

1. 궁전과 주거지
2. 고대식 건축물
3. 저수와 배수 시설
4. 내성 · 해자 · 차단벽

IV. 고구려 산성의 분기와 발전 양상

제1절 고구려 산성 분기에 관한 선행 연구

제2절 분기와 변화 과정

1. 제1기: 기원전 1세기~3세기 말
2. 제2기: 3세기 말~4세기
3. 제3기: 5세기~6세기 중엽
4. 제4기: 6세기 중엽~7세기 중엽

V. 결론

서론에서는 고구려가 존재했던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지금의 중국 요령성과 길림성, 북한, 남한의 북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구려 산성의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고구려 산성은 시기의 변화에 따라 입지 선정과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고, 산성의 기

본 형제(形制)를 알 수 있는 성벽과 이와 관련한 여러 시설(성문, 치, 여장, 돌구멍, 건축물, 저수시설, 배수로, 해자 등)에서도 그 형태와 축조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바, 고구려 산성을 구성하는 형제와 축조 방법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선행 연구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국, 북한, 남한으로 나뉘어 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산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면서 고구려 산성의 시기적 변화에 집중하여 각 분기별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고구려 산성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작업과 그 과정에서의 이론 성과는 정원철 박사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1980년대 이후 중국 내 주요 고구려 산성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연구자들은 비교적 일찍부터 고구려 산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언어적인 제약으로 인해 북한이나 남한의 연구 성과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북한의 고구려 산성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대대적으로 개축된 예가 많고, 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어서 고구려 산성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는 없었다. 남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고구려 보루를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성벽 둘레가 200~300m 내외의 작은 산성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은 당시 중국과 한반도에 분포한 고구려 산성에 대한 전체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연구자였고, 길림대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고구려 산성을 박사논문 주제로 선정할 때 지도교수였던 웨이춘청 선생이 적극 지지하였던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II 장에서는 당시까지 알려진 고구려 산성 246곳을 대상으로 분포 현황과 유형을 검토하였다. 한 가지 애석한 점은 대상 자료에 대한 현황표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박사논문에는 뒤편 부록에 국가별, 행정구역별로 고구려 산성에 대한 간략한 현황표가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 이 책이 고구려 산성에 대한 기본 개설서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생각할 때 기초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점

은 독자의 오해와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고구려 산성의 유형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개념인 포곡식 산성과 산정식 산성을 기본으로 설정한 반면, 복합식 산성의 개념은 제외하였다. 복합식 산성으로 알려진 유적 중에는 발굴조사 결과 두 형식의 시기가 서로 다른 예가 많아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며, 고구려의 내성이 있는 복합식 산성은 포곡식 산성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이 견해는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 다만 산정식 산성의 세부 유형을 평정식 산성, 산봉식 산성, 산정포곡식 산성으로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데, 산정포곡식 산성은 계곡을 끼고 구축되었기 때문에 포곡식 산성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 설정이나 고구려 산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고구려 성 연구』(2016, 진인진)에서 포곡식 산성을 입지한 지형에 따라 하곡평지형(河谷平地型)과 산상형(山上型)으로 구분하였다. 환인 고검지 산성, 심양 석대자산성, 서풍 성자산산성 등과 같은 산상형 포곡식 산성은 하곡평지형 포곡식산성과는 달리 성문과 성벽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집안 환도산성, 무순 고이산성, 봉성 봉황산산성, 해성 영성자산성 등과 같은 하곡평지형 포곡식 산성은 성문이 평지와 맞닿아 있는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출입이 쉽고,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축 산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상형에 비해 요하 지역의 중대형 산성에서 주로 발견되는 하곡평지형 포곡식 산성은 토성도 다수 확인된다. 또한 하곡평지형 포곡식 산성에는 내부에 기와건물지가 축조되는 경우가 많아, 군사방어적인 목적이 강한 산상형과는 달리 지방지배를 위한 거점성의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산상형 포곡식 산성이 하곡평지형 포곡식 산성에 비해 앞선다.

Ⅲ장은 고구려 산성의 축성 방법을 분석한 것으로, 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벽과 성문, 성벽 부속 시설, 산성 내외의 시설로 나누어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기존에 알려진 고고학 자료는 물론이고 본인이

답사하여 직접 확인한 내용을 담았다. 본문을 읽다보면 고인의 꼼꼼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장의 서두에 고구려 산성에는 석성과 토성, 토석혼축성, 그리고 석성과 토성을 결합한 형태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정작 성벽에 대한 분석에서는 석성의 축성법만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환인 고검지산성, 보란점 위패산성을 비롯한 많은 중국 내 고구려 석성은 고구려가 멸망한 지 1,30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고구려 성과 관련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중국 내 고구려 산성 답사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유적을 보고자 뽀뽀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낮에는 산에 오르고, 밤에는 다음 산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매일 힘준한 산을 올라가야한다는 점에서 육체적으로 힘은 들지만, 높이 5m 이상의 잘 쌓여진 성벽을 마주하게 되면 그간의 피로는 씻은 듯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고인 역시 고구려의 실체를 마주하는 즐거움에 요동 별판의 고구려 산성을 하나씩 올랐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만약 고구려 산성에 대한 실제 사진 자료들을 보고 싶은 독자가 있다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6년과 2010년에 발간한 『고구려 성 사진자료집』(이성제 編)이나 동북아 역사넷 홈페이지(<http://contents.nahf.or.kr>)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본문에서는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인 옹성 구조에 대해 크게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산성 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살핀 까닭에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요·금대의 옹성으로 밝혀진 성곽 구조물까지 고구려의 것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은 약간의 오류라고 하겠다.

고구려 석축 성벽 위에서는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방형의 돌구멍[石洞]이 여러 개 발견된다. 보통 여장의 바로 안쪽에 위치하는데, 모든 고구려 석성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또 석성 내에 1.5~2m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었지만, 배치 구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용도에 대한 여러 의견(기둥구멍설, 쇠뇌설, 목책설, 목책 치설, 결합설, 깃대설 등)이 제시된 상황이다. 고인은 중국 문헌에 기록된 고구려와의 전투 기록과 돌구멍의

구조적인 특징 등을 종합하여,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전투 시에 적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즉각적으로 목조 시설을 세우기 위해 설치한 기초 시설로 판단하였는데, 이 견해는 그간의 여러 주장과 비교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Ⅳ장 고구려 산성의 분기와 발전 양상은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고구려 세력의 발전과 산성의 각 요소를 서로 대응시켜 시기별로 산성의 발전과 변화를 살폈다. 본문에서는 고구려 산성을 4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는 고구려 건국 시점인 기원전 1세기부터 고구려의 영역이 혼하 중류 유역까지 확대되며 신성(新城)이 등장하는 기원후 3세기 말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고구려 산성은 도성을 중심으로 존재하였는데, 2세기 말~3세기 초 환도산성을 축조하면서 고구려 산성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졌고, 3세기 이후 고구려의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확립되면서 지방까지 고구려 산성이 확대되어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2기는 고구려가 신성을 축조한 3세기 말부터 요동성을 점령하기 전인 4세기까지다. 고구려와 모용씨가 줄곧 대결을 벌이던 시기로, 4세기 중반 소위 고구려 남북로를 이용한 모용씨의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구려는 4세기 말까지 요동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논문에서는 당시 고구려의 남도와 북도 문제를 고구려 산성의 배치 문제와 결부하여 검토하면서 기존 학계의 다수설과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는데, 나름 합리적이다.

제3기는 고구려가 요동성을 완전히 점령한 5세기 이후부터 평양 장안성이 축조되는 6세기 중엽까지로 설정하였다.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한반도 중부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시기이다. 고구려 산성 역시 확장된 영역 내에서 폭넓게 축조되었는데, 성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포곡식 산성이 주를 이루었으며, 군사방어적 성격 외에도 지방통치를 위한 행정 기능이 추가되었다. 석성의 여러 축조 기술 또한 한층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4기는 평양 장안성이 축조되는 6세기 중엽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중엽까지다. 이 시기에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이 결합된 평산성(장안성)이라는

새로운 도성 체제가 출현하였다. 본문에서는 천리장성(千里長城)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는 당(唐)의 위협에 대응하여 영류왕 14년(631)부터 16년간 고구려의 서부 변경에 쌓았다는 장성을 지칭한다. 학계에서는 천리장성의 실체에 대해 기존 고구려의 산성을 연결하는 개념적인 선이라고 하는 주장(산성연계방어선설)과 농안현과 회덕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토축부 즉, 노변강(老邊崗)이 천리장성의 남은 유적(노변강장성설)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천리장성을 동북쪽의 부여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서남쪽으로 송요평원을 가로질러 발해만의 영구지역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으로 구축된 하나의 방어선으로 보는 노변강 장성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근래 중국 학계의 발표(『吉林省長城資源報告』, 2015, 文物出版社)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해당 토축부에 대한 별도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다만 천리장성 후방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치된 토축으로 개축되거나 토축으로 축조된 중형과 중소형의 포곡식 산성에 대한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정원철 박사논문인 「고구려 산성 연구」가 발표되었을 때, 날을 새워가며 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전체 고구려 산성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데 모으고, 그간의 축적된 답사 경험과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고구려 산성의 축성법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묶어 고구려 산성의 변화 양상을 4기로 구분함으로써 고구려 산성에 대한 이해도와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발간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이 책이 출간되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고구려 산성 연구를 희망하거나 고구려에 관심이 많은 독자에게 널리 읽히고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고구려 고고학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눈을 반짝거리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던 고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서울대에서 그리고 길림대학에서 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길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고인과 시간을 보냈는데, 아쉽게도 중국 내 고구려 산성 답사를 함께하지 못했다.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때도 환도산성 입구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전부다. 여러 가지의 아쉬움과 미련, 표지 뒷장에 미소짓고 있는 고인의 사진을 뒤로 하고 이제 글을 마칠까 한다. 개인적 소회를 건어내지 못한 부족한 서평에 대해 양해를 바란다.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의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

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원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수**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임상범**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전호태**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운**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편집간사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58호(2017. 12)

초판 1쇄 인쇄 2017년 12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